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식량·원예·식품분야]

총4권중 제2권

2009. 12.

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총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농림수산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4권까지에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과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수산관련행정기관, 농협·수협·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10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의 국회심의나 기금사업의 계획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농림수산사업 관계규정
 - 제2권 : 식량·원예·식품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촌개발 및 임업·산촌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찾기)
 - 구입문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기획관리실
 - 연락처 : 전화 031-460-8803, 8816~7, fax 031-460-8819

차 례

제1권 농림수산사업 관계규정

I.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주요내용	4
3. 해설	8
제1장 총칙	8
제2장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	12
제3장 전문가위원회	13
제4장 농림수산사업	13
제5장 농림수산사업의 관리	21
제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3
제7장 보칙 및 부칙	25
II.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27
III.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설	77
1. 배경	79
2. 주요골자	82
3. 주요 변경사항	86
4. 해설	91
IV.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111
V. 기타 주요사항	141
1. 농림수산사업자금 대출안내	143

제2권 식량·원예·식품분야

【식량분야】

I. 생산기반 확충	149
1. 영농규모화사업	151
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180
3. 농지매입·비축사업	197
4. 배수개선사업	211
5. 방조제개보수사업	222
6.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32
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40
8.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259
9.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280
10.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	291
11. 고부가가치종자산업육성사업	300
12.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	319
13.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337
14. 농기계 임대사업	353
II. 생산 및 유통개선	373
15.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375
16.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404
17.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422

【원예·식품분야】

I. 생산 및 유통개선	431
18.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433

19.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446
20.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사업	459
21. 산지유통활성화사업	469
22.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503
23.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515
24.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525
25.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539
26. 농식품 소비지·산지상생협력사업	551
27.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563
28.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575
29.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596
30.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641
31. 농산물수출업체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645
32.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649
33.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	654
34. 생산자용·복합형 식품기업 육성지원사업	663
35.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운영사업	669
36. 천일염산업육성지원사업	693
II.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723
37.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725
38. 과수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742
39.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	759
40.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781
41. 과원영농규모화사업	794
42. 과수소득보전직접지불제	811

제3권 농촌개발 및 임업·산촌분야

【농촌개발분야】

I. 생산 및 유통개선	819
43. 생물학적 병해충방제사업	821
44.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	839
45. 친환경비료지원사업	849
46.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875
II. 기술개발	1011
47. 농림기술개발사업	1013
48. 신기술보급사업	1021
III. 인력육성	1031
49.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사업	1033
50.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1048
IV. 소득보전	1061
5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1063
52.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1131
53.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140
5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172
55.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1189
56.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1210
57. 농어업재해보험사업	1216
58.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1252
59.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1275
V.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1307
60.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1309

61. 한계농지정비사업	1350
62.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1359

【임업·산촌분야】

I. 생산 및 유통개선	1375
63. 산림경영계획사업	1377
64.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1386
65. 산림소득증대사업	1403
66. 산림바이오매스사업	1438
67. 사립수목원지원사업	1445
68.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1451
69.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1462
70. 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1470
II. 산림자원조성	1483
71. 조림·숲가꾸기사업	1485

제4권 축산·수산·광특회계 및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축산분야】

I. 사육기반확충	1501
72.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503
73. 쇠고기 생산성 향상지원사업	1532
74.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1548
75.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1557
76. 마필산업육성사업	1582
7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591
78. 양봉산업육성사업	1599
79. 낙농체험 관광사업	1610

II. 생산 및 유통개선	1623
80. 브랜드육 타운조성사업	1625
81. 가축 및 계란수송 특장차량지원사업	1631
82.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640
83.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1684
84. 축산종합지도(HACCP)지원사업	1745

【수산분야】

I. 생산기반 확충	1755
85. 자율관리 어업육성지원사업	1757
86. 바다목장(소규모)조성사업	1768
II. 생산 및 유통개선	1779
87.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사업	1781
88. 친환경어구 보급지원사업	1796
89.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1823
III. 기계화 및 인력육성	1829
90.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사업	1831
91. 수산장비 임대사업	1840
92.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업	1864
IV. 소득보전	1887
93. 수산부문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1889
94. 수산인 안전공제지원사업	1907
95.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	1915

【광특회계】

96.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1927

97. 농어업기반정비사업 1955

9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969

99.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지원사업 2007

100.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2034

101.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2041

102.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2049

103.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사업 2067

104.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2080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2087

식량분야

I. 생산기반 확충

1	영농규모화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전업농육성은 농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 지 과	과 장 류 이 현 사무관 정 수 경	02-500-1715 02-500-1721
	농산경영과 (전업농육성)	과 장 김 남 수 사무관 장 대 수	02-500-1986 02-500-1987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팀	팀 장 장 성 원 차 장 진 성 봉	031-420-3351 031-420-3378

※ 이 지침은 사업목적과 근거법령상의 정책방향에 맞게 해석해야 함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지의 매매와 장기임대차, 교환 또는 분리·합병을 통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 육성 및 경자유전 실현
- 주업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경영농지를 집단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 * 농지은행사업 중 농지매도수탁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정부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 지침으로 별도 운영
(문의: 국번 없이 1577-7770, www.fbo.or.kr)

2.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 제19조, 제22조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26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호당 평균규모 6ha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여 전체 벼 재배면적의 50% 담당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쌀전업농 경영면적비율(% , 주지표)	41	34	37	39	2011. 2	쌀전업농 경영면적/전체 벼 예상재배면적(932천ha)
▪ 쌀전업농 호당경영면적(ha, 부지표)	5.2	4.6	4.8	5.0	"	쌀전업농 경영면적/7만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4,273,063	320,500	251,235	211,760	635,280
용 자	4,273,063	320,500	251,235	211,760	635,280
○ 영농규모화사업	4,273,063	320,500	251,235	211,760	635,280
- 용 자	4,273,063	320,500	251,235	211,760	635,280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농지매매사업

- 경자유전실현 및 전업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 매입대상자 :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전업(轉業)·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 매도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 영농복귀자 등

나. 농지장기임대차사업

- 전업농업인 등의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전업 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공사가 장기 임대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
 - 농지임차 대상자 : 전업·은퇴·영농규모 축소 농가 등

- 농지임대 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등

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 농지의 집단화를 통한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법인)간의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공사가 지원
- 사업대상자 : 희망 농업인(농업법인) 및 집단 환지를 받은 청산금납부대상자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지매매사업

(1) 매입 대상자 : 공사는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

- ①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 ② 전업(轉業)·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
- ③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을 우선 하며,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
- ④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자

(2) 매도 대상자 : 공사는 매입한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

- ①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0세 이하(2010년도의 경우 195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다음의 경영 규모를 갖춘 자
 - 경영규모가 논 1.5ha 또는 밭 1.0ha(시설작물 0.3ha) 이상인 자
 - 다만,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에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에는 논 또는 밭 경영규모 1.0ha 이상인 자
 - * 경영규모는 동일세대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논, 밭 기준(이하 같음)
- ②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법인
 - 「농지법」 제2조제3호 및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8조(농업법인의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농업법인

- 법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논 또는 밭이 영농조합법인은 5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10ha이상

③ 영농복귀자

-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轉業)한 자로 전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여 벼를 주 작목으로 경영할 자

(3) 매도 제외자 :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지를 매도할 수 없음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2) 영농규모화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원리금 연체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결과 부적합한 자
-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4)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 다만, 행정구역 경계선이 한 들녘인 농지소재지와 연결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당해 농지 지원 가능
- 5)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6)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다른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는 지원 가능
- 7)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사업, 농지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 포함)을 지원 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8)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매도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중인자
- 9) 동일세대(법인 포함)에서 논·밭·과수원을 중복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자

나. 농지장기임대차사업

(1) 임차 대상자 : 공사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소유자를 우선으로 하되 다음 순위에 따라 임차

- ①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이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우선 임차
- ②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2) 임대 대상자 :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차한 농지를 임대
 - “가. 농지매매사업 (2) 농지 매도자” 요건에 해당되는 자
- (3) 지원 제외자 :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할 수 없음
 - “가. 농지매매사업 (3) 매도 제외자” 요건에 해당되는 자. 다만,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는 임차기간 중에도 지원 가능

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지원대상자

-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상호간에 논 또는 밭을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경지정리내 환지 청산금 지원대상자 포함)
 -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지원 제외

3. 지원 대상농지

가. 농지매매사업

(1) 공사 매입 대상농지

- (가)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밭 매입 가능
 - ① 경지정리가 완료된 논 또는 지원대상자의 소유논과 연결된 논
 - ② 받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안의 밭 또는 지원대상자가 경작하는 밭과 연결된 경사도 15% 이하인 밭
- (나)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매수청구를 신청한 농지

(2) 매입 제외농지

- (가) 농지매매사업·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 (나) 농지매매사업·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 포함)으로 지원한 농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매입 가능
 - ① 매도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
 - ② 채권확보를 위해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간척지를 분양 받은 농지와 장기 임대차 간척농지 매매사업으로 지원한 농지. 다만, 8년 이상 경작하고 용자금상환이 완료된 농지는 매입 가능
- (라)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에 따른 농지)
-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 토양으로

판명된 농지로서 복구되지 않은 농지

- (바)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 (사)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매입 가능
- (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서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매도하고자 하는 농지. 다만,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잔여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 (자) 매수청구농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
 - ① 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서 형질이 변경되어 매수 후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농지
 - ②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매입 가능
 - ③ 공사와 매수청구자가 서로 제시한 가격의 차로 매매가격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농지

나. 농지장기임대차사업

(1) 공사 임차 대상농지

-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논 또는 밭(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토지이용현황 기준)

(2) 임차 제외농지

- (가) “가. 농지매매사업 (2) 매입 제외농지”에 해당하는 농지
- (나)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 (다) 공사에서 임차한 농지 중 계약만료 전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
- (라) 비농업인 또는 비농업법인의 농지
- (마)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서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임대하고자 하는 농지. 다만,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잔여 지분 전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1) 지원 대상농지

-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논·밭(경지정리 사업지구내 포함)
 - 논과 논, 밭과 밭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이 원칙. 다만, 벼(밭작물)를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의 밭(논)과 벼(밭작물)를 주 작목으로 하지 않는 농업인의 논(밭)은 교환분합 가능

(2) 지원 제외농지

-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 (나) 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된 농지
- (다) 개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 내의 농지
- (라)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한 농지 등 기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농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 농지매매사업 : 비농업인,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 농지 매입대금
- 나.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장기 임차할 경우 선급금으로 일시 지급
- 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 농업인(농업법인)간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시 차액 지원 및 환지청산금 납부대상자가 납부할 청산금 지원

5. 지원형태

가. 농지매매사업

-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농지 매도(공사→전업농육성대상자 등)
 - 농지 매도대금은 다음의 한도 내에서 연리 2%로 최장 30년에서 15년 분할 납부 또는 일시 납부(초과분이 있는 경우 일시 자부담) 지원
 - 지원한도 : 논 m²당 9,075.0원(3.3m² 당 30천원) 이내
밭 m²당 10,587.5원(3.3m² 당 35천원) 이내

나. 농지 장기임대차사업

-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농지를 장기임대(공사→전업농육성대상자 등) : 무이자, 5~10년(계약기간) 임차료 분할 납부 또는 일시 납부지원

다. 농지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 농업인 등에게 교환 또는 분리·합병 자금 지원(공사→농업인 등) : 가격 차액, 환지청산금 연리 2%, 10년 분할 납부 지원

6. 지원한도 및 방법

가. 농지매매사업

(1) 지원 상한

- (가) 전업농육성대상자 :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10ha
- (나) 농업법인 :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20ha
- (다) 영농복귀자 : 전업 당시 공사에 매도한 농지 면적 규모 이내

(2) 1회 지원 하한 : 0.2ha

(3) 지원방법

(가) 공사가 매입시(농지소유자 → 공사) 가격 결정·체결 및 대금지급 방법

1) 농지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서 매입

2) 매입가격의 결정

- ① 공사는 농지가격 현지조사를 통해 이장, 인근주민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확인자, 거래시기 등을 반드시 기재)
- ② 매입가격은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지소유자와 합의 결정
 - * 지사 심의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 ③ 매수청구농지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개별 토지 가격). 인근 지역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

3)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방법

- ① 공사는 농지소유자와 매매협의를 완료된 때에는 매매계약을 체결
- ② 공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소유자에게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나) 공사가 매도시(공사 → 전업농 등) 가격 결정,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1) 지원대상자 선정

- ① 공사 지사장은 접수된 매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 순위 조서를 작성하고,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 * 경영규모 25~4ha미만인 자, 소유농지가 적은 자, 집단화 효과가 큰 자, 신규신청자 우선 지원 등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기준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명시
- ② 대상농지의 인근 전업농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포탈, 전자우편, SMS 등을 활용하여 매물 등 농지거래 정보를 농지소재지(시·군·구) 모든 지원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 지원대상자 결정후 농지은행 포탈을 통해 매입가격, 임차료 등 거래 정보를 공개

2) 매도가격의 결정

- 공사가 매입한 가격 기준. 다만, 채권확보를 위해 취득한 담보농지와 사후관리 위반으로 회수한 농지는 지사 심의회를 거쳐 실거래가격으로

매도가격을 결정

3) 매매계약의 체결 및 채권확보

- ① 공사는 매매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
 -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는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매매계약일부터 8년간 전매, 임대, 위탁 경영 등을 제한하여 사업의 부실화 방지
- ② 매도대금을 분할수납받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공사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

4) 매매대금의 납부방법

- ① 일시불 : 농지매입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일시불로 납부
- ② 분할납부
 - ㉠ 상환원리금 : 연리 2.0%
 - ㉡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분할 납부
 - ㉢ 농업인 납부기간 = 75 - 지원당시 연령(1월 1일 기준)
 - *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 농업법인 납부기간 : 20년
 - ㉤ 원금 균등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후 상환 잔여기간 동안 원금 균등 분할 납부 가능

나. 농지장기임대차사업

(1) 지원상한 : 제한 없음

영농복귀자는 전업 당시 공사에 임대한 농지면적 이내

(2) 지원방법

(가) 공사가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 임차시 계약체결 등(농지소유자 → 공사)

1) 농지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서 임차

2) 임차 기간 : 5년~10년

3) 임차료의 결정

- ① 공사는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31까지 읍·면·동별 지대별 임차료를 조사하여 당해 연도 임차료 상한을 정함

* 임차료 상한은 조사된 읍·면·동별 지대별 관행 임차료의 평균 수준으로 결정

- ② 임차료는 공사가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4) 임차계약의 체결 및 채권확보

- ① 공사는 농지소유자와 임대차료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대계약 체결
 - 계약 기간내 매매·증여 등 금지, 약정 위반시 위약금 부과 등 명시
 - ②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징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 ㉠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 ㉡ 연대보증인의 보증서(임차료 선급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 당해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보증인으로 할 수 없음

5) 임차료의 지급

- 공사는 계약체결 후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거나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서를 징구한 때에는 농지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일시불로 선지급 또는 분할 지급 가능)

6) 공사에 농지를 장기임대한 자(농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

- ① 각종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 ② 「농어촌정비법」 제5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부담하는 부과금(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제외)과 용자금의 상환금
- ③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으로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나) 공사가 전업농 등에 농지 임대시 계약체결 등(공사→ 전업농 등)

- 1) 지원 대상자 선정 : 농지 매매사업과 같음
 - 2) 임대 기간 : 5년~10년(농지소유자와 체결한 계약 기간)
 - 3) 임대료의 결정 : 공사가 선지급한 임차료 총액으로 결정
 - 4) 임대계약의 체결 및 채권확보
 - ① 공사는 임대 대상자와 임대료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대계약 체결
 - ②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인이 제공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거나 보증서를 징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 보증서 징구방법은 임대계약의 채권확보방법 준용
- * 당해 농지를 임대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보증인으로 할 수 없음
- 5) 임대료의 납부(전업농 등 → 공사)
 -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한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은 임대료를 일시납부

또는 임차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매년 공사에 납부

6) 공사로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

○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농지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1) 농업인(농업법인) 상호간 교환 또는 분리·합병에 따른 가격 차액 지급

① 교환 또는 분리·합병당사자 쌍방이 공사에 신청

② 가격 차액을 지불하고자 하는 자와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교환 또는 분리·합병 등기와 채권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자금 지원
- 교환 후 농지의 평가액이 감소된 자에게 공사가 대위변제

(2) 환지청산금 지급

①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교환 또는 분리·합병계획의 인가 승인을 얻은 사업 시행자는 청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조사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 공사 관할지사장에게 지원 협조를 요청

㉠ 청산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의 명단 1부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환지계획서 사본 1부

㉢ 농지의 환지계획 인가서 사본 1부

㉣ 당해지구 확정도면 및 종전도면 각 1부

② 공사는 지원대상자 명단과 환지계획서를 상호 대조하는 등의 지원심사를 거쳐 사업시행자와 지원받고자하는 자에게 지원여부 결정 통지

③ 공사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지원 자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

(3) 채권확보

○ 공사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징구(지원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불가)

(4) 지원금의 납부 방법 : 10년 이내 균등분할 납부

7. 자연재해 등에 따른 납부연기 및 임차료 감면

가. 자연재해 등에 따른 납부연기

○ 농지매매자금(농지구입자금,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자가 자연재해 등으로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1년간 납부 연기 처리. 다만, 지원받은 필지의 피해가 있을 때 신청가능

(1) 농어업재해대책법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한 자연재해(중앙행정기관에서 인정한 재해에 한함)로 인한 납부연기

①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 자료(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를 첨부하여 공사에 납부 연기신청
 - 농지구입자금은 농협중앙회에서 신청접수 받아 공사에 납부 연기요청
- ② 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 (2)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연재해에 준하는 피해로 인정된 병해충으로 인한 납부연기
 - ①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신고
 - ② 피해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 관련법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피해 인정 요청
 -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에 납부 연기신청
 - ④ 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 ※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란 농가에서 경작(소유+임차)하고 있는 모든 농지 중에서 피해 입은 농지의 피해율로 계산

나. 자연재해 등에 따른 임차료의 감면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중앙행정기관에서 인정한 재해에 한함)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연재해에 준하는 피해로 인정된 병해충으로 인하여 임차료의 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임차료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 신청절차 및 피해율 적용기준은 농지매매자금 납부 연기와 같음
 - 임차료 감면기준

피해율	임차료 감면율	피해율	임차료 감면율
30%~40% 미만	45%	60%~70% 미만	80%
40%~50% 미만	55%	70%~80% 미만	95%
50%~60% 미만	70%	80%이상	100%

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의 적용 : 벼 등이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될 경우 농업재해보험 본 사업(시범사업 제외) 2년차부터는 “가”, “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연기 및 임차료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8.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가.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 자격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가능성이 있고,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55세 이하(2010년도의 경우 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 경영규모가 논2.0ha(밭 1.0ha, 시설작물 0.3ha)이상이고 벼(밭작물)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쌀(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 농업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만 40세 이하인 농업인의 경우에는 경영규모(영농승계면적 포함)가 논1.5ha(밭1.0ha, 시설작물 0.3ha)이상인 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이내의 자로서 경영규모가 논1.0ha(밭1.0ha, 시설작물 0.3ha)인 자

- 다만, 만 56세 이상 60세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이양받고자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 가능

- 만 60세 이하, 경영규모가 논 1.5ha(밭 1.0ha, 시설작물 0.3ha) 이상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이양받고자 하는 농업인 지원요건 중 연령은 초과하나, 나머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의 영농승계자*는 신청 가능(재학중인 자 제외)

< *영농승계자 요건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 이상 영농에 종사 하고 있는 자(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자 포함)○ 직계비속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업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업계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졸업후 영농에 종사 하고자 하는 자(이 경우 영농경력의 제한은 없음) |
|--|

나. 신청자격 제한

- (1) 정책자금(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 시설자금 및 농기계자금 등)을 지원 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2) 허위·담합 부당지원을 받아 전업농자격을 취소된 자
- (3) 사후관리위반으로 전업농자격을 취소된 자가 위반사유 발생 이전으로 원상 회복하지 아니한 자
- (4)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5) 농가 단위로 중복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를 신청하는 자

다.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1) 추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2) 선정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전업농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지사에 신청(연중)

* 신청서 :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주요사업, 농지은행포탈 등에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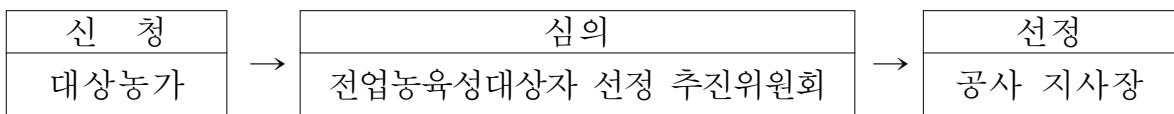
(3) 선정기준

- 영농경력, 교육훈련 실적, 기계화수준, 경영규모,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재배기술 등을 종합 평가하여 평점 60점 이상인 자(「전업농육성사업 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정방법」: 별표)

(3)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 「전업농육성사업 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정방법」(별표)에 따라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사업계획서, 개인별평가내용 등을 종합심의하고, 전업농 육성목표를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4) 선정절차



(5)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공사 지사장은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공사 지사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전업농단체 임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
-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 전업농육성지침에 의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영농규모화사업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성과목표, 재정투입 계획 및 지급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전년도 12월) 및 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1월상순)

한국농어촌공사

가. 공사 사장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시달된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전년도 12월말)

- '13년까지 6ha 규모 전업농 7만호 육성을 위해 2ha이상 6ha미만 농가 집중 지원

나.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 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시달된 사업시행 지침 및 승인된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10일 이상 공고(1월말)

다. 사업홍보

- 공사는 전업농육성대상자, 일반농업인 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연 2회 이상 홍보)

사업대상자

-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며, 관련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사업신청서 등 세부사항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명시
 -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 및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주요사업에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어촌공사

가. 매입·임차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임대 하고자 하는 농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사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나. 매도·임대대상자 선정 : 공사가 매입 또는 임차한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전업농육성대상자 등 지원대상자 선정

- 접수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자 결정 순위조서를 작성하여 지사 심의회를 거쳐 매도 또는 임대 대상자 선정

- * 농지은행 포탈, 전자우편, SMS 등을 활용하여 농지소재지(시·군·구) 모든 지원대상자에게 매물 등 농지정보를 제공

- * 지원대상자 결정후 농지은행 포탈을 통해 매입가격, 임차료 등 거래정보를 공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한국농어촌공사

가. 공사는 지역별 농업특성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영농 규모 실태분석을 통해 지역본부(지사)별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영농규모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나. 매입·임차 : 공사 지사장은 선정된 매입 또는 임차 대상자와 가격결정 및 계약체결

(1)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지사 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매입가격과 임차료 결정

(2) 매입계약 체결 후 매도대금 지급 및 임차계약과 채권확보 후 임차료 지급

다. 매도·임대 : 공사 지사장은 선정된 매도 또는 임대 지원대상자와 가격결정 및 계약체결

- 매도계약 체결과 채권 확보 후 소유권 이전등기, 채권확보 후 임차계약 체결

라. 사업추진실적 보고

(1) 영농규모화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

(2) 매수청구 농지 매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익년 2월 15일)

마. 매매 또는 임대차 농지의 행정기관 통보

○ 농지매매농지에 대한 매입·매도 내역은 분기별로 농지소재지 행정기관 (읍·면·동)에 통보, 임대차사업 농지에 대한 임차·임대내역은 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과 농지원부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 송신,

시·군, 농협

○ 농림사업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인 공사에서 관련자료 열람 등 요청시 시·군, 농협 등 관계기관은 보유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인 공사에 월별 지출계획 통보(1월 상순)

한국농어촌공사

○ 월별사업자금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 자금교부신청

- 공사는 융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대여 받아 계약 체결시 전체 사업비의 70%는 아래의 시·도별 예산 배정 기준에 따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는 본사에 유보하여 사업여건에 따라 수시 배정

* 시·도별 배정 기준 : (농지매매, 임대차사업) 영농규모 확대계획 50%, 지역본부(지사) 요구 50%, (교환분합사업) 환지청산지구 면적 비율

※ 사업비 정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7조,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영농규모화사업’에 따라 회계연도말까지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익년도 1월말)
- 사업정산결과 발생된 이익금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 손실금은 손비처리 요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가. 관리기간

- 상환기간이 최장기인 융자금의 상환만기까지

나. 사후관리 위반조사

- 공사는 전년도 12월말까지 농지의 매매(구입자금 포함), 임대차 및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으로 지원한 농지 및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위반 사항을 조사(매년 8월말까지)

- ① 지원농지의 전매·증여, 임대·전대 및 위탁경영, 무단전용, 휴경 등 지원농지 약정사항 이행 여부
- ② 농지매매, 전용 등으로 지원 농지의 당시 보다 경영규모 축소 여부
- ③ 지원을 받은 자와 영농승계자의 전업·이농, 이주, 타 직업 상시 종사, 사망 여부
- ④ 논, 또는 밭의 형상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타작물 재배 여부
- ⑤ 농지매매자금을 지원 받은 영농승계자 및 농업법인의 자격 상실 여부
- ⑥ 허위·담합 등 부당지원 여부

다.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

- (1) 공사는 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한 자로부터 지원 농지의 전매·증여, 임대·위탁경영, 전용 등의 동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동의

-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받은 농지를 전매·증여하는 경우
 - ①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장기간 체류하여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 ② 동일지역에서 농업이외 직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확인)
 - ③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당해 농지를 전매하는 경우
 - ④ 채권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고,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 ⑤ 질병 또는 사고,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장기간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 ⑥ 기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위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나) 「농지법」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3조제2호·제3호의 사유로 임대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전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 (라)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매도하거나, 집단화를 위하여 교환 또는 분합·합병하는 경우
- (마) 「농지법」 제35조에 따라 신고시설을 전용하는 경우

(2)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 및 전용시 조치

- 공사의 동의하에 농지를 전매하거나 농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면적 이상의 농지를 새로 구입하여야 함
 - 해당면적 이상 농지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는 부족면적에 대한 지원금 회수하고, 경영규모 축소 등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 취소, 미상환 잔액 또는 당해 농지 회수

라. 채권관리 : 공사는 불건전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권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적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한국농어촌공사(지역본부)

가. 사후관리 이행 여부 점검 및 보고

- 지역본부별 사후관리계획 수립(1월)
- 지역본부 관할 지사 사후관리 전수조사 결과 검증 및 보고(9월말)

나. 지원 적격 여부 등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확인 및 보고

- 관할 지사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확인 후 본사 보고(매 분기말)
 - 지원 적격대상 여부, 농지거래가격(매입, 임차) 적정성, 지원상한 초과, 지원조건 위반 등 부당지원 여부

한국농어촌공사(본사)

- 가. 사후관리계획 수립 지침시달, 자료 제공 및 평가 기준 마련
- 유관기관 사후관리 전산자료 지사 및 지역본부에 송부(1월)
 - 지사 및 지역본부 평가에 사후관리 및 영농규모 확대 계획 달성도 반영
- 나. 공사 지사 및 지역본부의 사후관리 이행 여부 평가 및 사후관리 보완(9월)
- 8월말까지의 사후관리 이행 실적과 유관기관에서 재 확보한 전산자료를 비교·평가 실시(평가 결과를 지사·지역본부 평가에 반영)
 - 재 확보한 전산자료를 지사에 통보하여 사후관리 추가 조사 및 보완 추진(9월)
- 다. 지원 적격 여부 등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확인 및 보고
- 본부별 지원 적격 여부 등 사업추진실태 조사결과 확인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매 분기익월)
 - 필요시 본부·지사별 교차단속 및 미흡한 본부·지사에 대해 본사 특별감사 실시
- 라. 행정사항
- (가) 지원농지 사후관리상황 및 부당지원여부 조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10월말)
- 조사결과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
- (나) 공사는 사업관리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활용하여 지원적격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조치결과 보고(매분기 익월)

농협중앙회

- 가. 농협은 농지구입자금 관련 불건전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권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법적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 나. 농협은 전년도말 기준 농지구입자금 미상환 잔액 현황을 공사에 통보(매년 1월말)
-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공사로부터 지원조건 위반으로 용자금의 회수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명단 포함)를 30일 이내에 공사에 통보

농림수산식품부

- 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공사를 통한 사후관리 등 현장실태 점검 (반기 1회 이상)
- (1) 사업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실태 현지점검

(2) 공사 사후관리 이행사항 점검 등

나. 사업추진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파악(매분기말) 및 사업비 정산을 통해 예산 집행 계획 및 실적 평가(연 1회)

《제재》

한국농어촌공사

가. 위반자에 대한 조치

○ 공사는 사후관리 상황 조사결과 무단전매, 경영규모 축소, 전업·이주, 타직업 상시종사 등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명시

○ 공사는 위반자가 시정기한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공사의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산관리 하여야 함

① 매도농지 : 미 상환 잔액 또는 당해농지 회수

② 구입자금 지원농지 : 융자금 회수

③ 임대농지 : 임대차계약 해지

*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이 고의로 경영규모를 축소한 경우 : 당해 농지 회수

나. 계약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와 기타 사후관리 위반 등으로 확인된 경우 위약금 부과

* 위약금 부과 방법 등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다. 회수농지 가격결정

○ 공사가 농지로 회수한 경우에 당초 매도가격(수납한 자부담금과 할부원금, 이자는 부가하지 않음)에서 다음의 위약금과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위반자에게 반환하되, 인근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한다

① 공사가 정한 위약금

②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제 비용

③ 기타 제세 공과금

6. 성과측정단계

- 전업농육성 성과측정결과를 활용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전업농육성 성과 평가결과를 활용
-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사업목표 점검, 중기재정계획 및 익년도 예산에 반영(익년도 4월)

□□ 전업농육성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성과목표, 전업농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전년도 12월)

한국농어촌공사

가. 전업농육성지침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사장(각 지사 포함) 명의로 전문지 및 공사 관할지사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1월말)

나. 사업홍보

- 영농규화사업과 같음

사업대상자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구비 서류 : 신청서, 전업농사업계획서,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장사본, 기타 <별표>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의 각 항목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 및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주요사업에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어촌공사

가. 전업농육성대상자 심의·선정

- (1) 공사 관할 지사장은 접수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하고, 규모확대를 위해 농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지역이 타

- 당하게 설정되었는지를 농지원부 등을 활용, 기초 점검 실시
- (2)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안)을 작성
- (3) 공사 관할 지사장은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나. 선정결과 통보

- 공사 관할 지사장은 선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업기술센터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0까지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한국농어촌공사

가. 경영지도

- (1) 공사 사장은 전업농육성대상자의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D/B를 구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경영지도 실시
- (2) 공사 사장은 지원대상자의 정보화 및 경영능력 제고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나. 업무지침의 운영

- 전업농육성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운영

4. 자금배정단계

- 해당사항 없음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가. 관리기간

-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년도부터 자격취소 시까지

나.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 공사 사장(지사장)은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매년 12월말)
- 점검결과 사업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 및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 융자금을 회수 및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농규모화 사업 참조

다. 자격 승계 승인

- 지원받은 자가 사망, 신병 등으로 전업농육성대상자나 농업후계인력에게 자격 승계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승계 승인 여부 결정
-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 확대가 가능한지, 전업농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적격자에 자격승계 조치
 - 피승계자의 자격 요건 : 영농승계자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배우자·형제자매에 한함(승계 받는 배우자·형제자매는 만 60세 이하에 한함)
- 공사 지사장은 승계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 및 농기계 등 영농 기반 전체 승계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를 확대한다는 조건으로 승인

라. 행정사항

- 사업 취소자 명단과 사유, 자금회수현황을 장관에게 보고(익년도 1월말)
- 사업 취소자 명단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업기술센터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0까지 통보

전업농 등 지원대상자

가. 사업계획의 변경 통지 등

- (1)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공사 지사에 통지하여야 함
- (2) 사업장소 및 관리기관의 변경 :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소의 이전이 가능하며, 당초 관할 공사 지사장에게 이전사실 통지
 - ① 댐·저수지, 산업단지·택지조성,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규모가 축소된 경우
 - ②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③ 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하여 거주지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나. 자격 승계 신청

- 지원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자격을 승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 지사에 자격승계 신청
 - ① 사망, 신병 또는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없는 경우

② 만 56세 이상으로서 농업후계인력에게 승계를 희망 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등

가. 전업농육성대상자에 대한 정책 지원(시장·군수) 및 기술지도(농업기술센터)

나. 사업 협조

-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관련기관은 공사가 전업농육성대상자의 경영규모 변동 및 사후관리조사 등을 위한 농지원부 확인 등에 적극 협조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공사를 통한 전업농육성 대상자 선정 및 현황 실태 점검 (반기 1회 이상)

《제재》

한국농어촌공사

가. 사업취소 사유

- (1) 허위·담합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2) 전업농 지원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3) 본인 또는 농업후계인력이 사망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4) 파산·금치산 선고 등 중대한 신용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5) 농업이외의 타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겸업을 하는 경우로 공사 지사장이 영농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외
- (6) 소유 논을 증여·매도, 임대·전대, 전용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할 자로서 축소 익년도부터 2년 이내에 종전면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되, 전업농육성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소

- ① 공공용지에 편입되거나 교환·분합사업 또는 각종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영 규모가 축소된 경우
- ② 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③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가 주 작목 이외의 농지를 매도·임대·전용하는 경우

- ④ 농업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지원받은 농지의 경우 상환완료 후 출자)
- ⑤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신고 시설로 전용한 경우(지원농지는 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 (7) 공사 지원농지를 행위제한특약사항에 반하여 전매·증여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소유자명의로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취소
- (8) 기타 공사 지사장이 전업농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시정조치 및 지원금 등 회수

- (1) 공사 지사장은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즉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자금(농지)을 상환(반납)토록 통보
- (2) 영농시설 복구 및 작목입식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취소사유 발생 확인시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전업농 자격취소 및 자금 회수 조치

* 다만, 신병, 사망 등으로 사업승계 불가 및 사업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일시 회수할 경우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공사 지사장이 판단할 때에는 융자시의 융자조건에 따라 회수

6. 성과측정단계

- 쌀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 추이와 규모별 벼 생산비 절감율을 비교하여 쌀전업농육성 및 지원효과 평가
 - (1)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2) 평가지표확정 : 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2013년 6ha 7만호 쌀전업농육성 목표 달성 가능지표로 확정(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또는 투융자계획서 작성시)
 - (3) 주요평가지표
 - ① 전체 벼재배 면적 대비 쌀전업농 경영면적비율
 - ② 쌀전업농 호당 평균 경영면적
 - (4) 성과지표측정(12월~익년도 2월) : 쌀전업농 경영면적 및 농가수를 근거로 쌀전업농 호당 평균 경영면적을 산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연보의 전체 벼재배면적 등을 모수로 하여 전체 벼재배면적 대비 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등의 성과지표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칙

- 매년 쌀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실적을 평가, 2013년까지 평균 경영규모 6ha 쌀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여 전체 벼재배면적의 50%를 담당토록 하는 중장기 사업목표의 원활한 달성 도모

나. 사업평가요령

- (1) 평가주관 : 농림수산식품부(협조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2) 평가기간 : 익년도 1월~2월
- (3) 평가대상 : 전체 쌀전업농
- (4) 평가기준

성 과 지 표	배점	측 정 수 식	의 미
①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 주지표)	70점	쌀전업농 경영면적/전체 벼재배면적	'13년까지 전체 벼재배면적 대비 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율(50%)의 달성도 측정
②쌀전업농 호당 경영면적 (ha, 부지표)	30점	쌀전업농 경영면적/7만호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쌀 전업농의 호당 경영면적 달성도 측정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1) 공사는 매년 '사업성과평가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승인 요청(전년도 12월)
- (2)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성과평가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시달(1월)
- (3)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성과 자체평가서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한 검증 후 확정(익년도 3월)

《환 류》

-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쌀전업농 육성목표 점검 및 중장기 쌀전업농 육성계획에 반영(익년도 4월)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참여 의향 등을 설문조사하여 사업물량 및 소요사업비 추정에 반영
- 사업추진에 관한 만족도 조사시 병행 실시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

나. 신청자격

(1) 영농규모화사업

(가) 농지매도 : 비농가,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나) 농지임대(선급금 수령) :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등

(다) 농지매입·임차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라) 교환 또는 분리·합병 : 자경농업인 및 집단환지를 받은 자중 청산금납부대상자 등

(2) 전업농육성사업

- 쌀 또는 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3년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 만 55세 이하이고, 경영규모가 논 2.0ha, 밭 1.0ha 이상인 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5년 이내의 자로서 논 또는 밭 경영규모가 1.0ha 이상인 자

다. 신청절차

- 농지를 매입, 임차 또는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를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제출

라. 구비서류

- (1) 농지매도신청서, 농지매입신청서, 농지임대신청서, 농지임차신청서, 교환 또는 분리·합병신청서 중 해당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 (2) 집단환지청산금지원 : 별도서식 없음(경지정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
- (3)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 : 신청서, 영농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마. 대상자 선정

(1) 영농규모화사업

- 공사 지사장은 신청자에 대한 제출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확인 등을 실시한 후 지원대상자 결정 순위조서를 작성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2) 전업농육성사업

- 공사 관할 지사장은 접수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전업농육성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별 표>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자 평가항목별 및 평가방법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영농경력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이상은 16점(최저)으로 하되 1년 단위로 2점씩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이상 : 20점 - 4년이상 5년미만 : 18점 - 3년이상 4년미만 : 16점 ※ 농업계학교(농업계학과) 졸업자 및 재학중인 자는 재학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 ※ 농업관련분야의 교사, 지도사, 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은 영농경력으로 인정
학 력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계대학·한국농업전문학교·여주농업전문교육원, 농업계 전문대졸·자영농과(자영농고·농고 중 자영농과) : 7점 ○ 농업계고등학교 : 6점 ○ 일반대학, 전문대학 : 5점 ○ 기타 학교졸업자 : 4점 ※ 사업시행년도 졸업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
교육훈련 실적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일이상 : 3점 ○ 5일이상 : 2점 ○ 3일이상 : 1점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 각 도, 공사, 농협의 훈련기관 ·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한 독농가 농장 및 연수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학교 부설 영농훈련기관 · 쌀 선도농업경영체,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정보교육원
기계화 수준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보유 : 1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종이상 : 12점 - 2종보유 : 10점 - 1종보유 : 5점 ○ 배점대상 기종(농협 면세유관리대장으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 :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건조기, 고성능방제기 - 밭 : 트랙터, 동력경운기, 관리기, 건조기, 동력분무기 ○ 농기계 임대사업 참여 : 3점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경영규모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규모/논 3.0ha)×30점(단, 30점을 초과 못함) ○ (경영규모/밭 1.5ha)×30점(단, 30점을 초과 못함) ※ 벼 또는 밭재배 경영규모에 한하며, 소유 및 임차 농지포함 ※ 경영규모는 동일세대가 소유,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논, 밭 기준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벼 또는 밭작물 재배기술 : 3.5점(상 3.5, 중 3, 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품질인증, 계약재배, 무농약 재배 등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 ○ 경영장부(영농일지) 기록 : 3.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기록 : 3.5점 - 1~2년 기록 : 3점 - 1년 미만 : 2점
사업계획 및 영농규모확대 의욕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적합성 : 3점(상 3, 중 2, 하 1) ○ 영농규모확대 및 자금조달계획 적정성 : 4점(상 4, 중 3, 하 2)
가 산 점 (총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점)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이 40세 미만이거나 여성인 자 : 6점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5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채/자산비율이 농가 평균 이하인 자 ②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 기록자, 기계화영농사 및 기계분야·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③ 농림수산정보센터 또는 특성화대학의 정보화교육 이수자 ④ 수도작후계자, 농전출신,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수자
계	100	

2 경영희생지원농지매입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과장 류이현	02-500-1715
		사무관 정수경	02-500-1721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팀	팀장 김준채	031-420-3341
		차장 권오승	031-420-3348

※ 이 지침은 사업목적과 근거법령상의 정책방향에 맞게 해석해야 함

I. 사업개요

1. 목적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라 함)이 부채를 갚고 경영희생 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지 또는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농지등'이라 함)을 매입, 매입농지는 당해 농업경영체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안정성 도모
- * 농지은행사업 중 농지매도수탁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정부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 지침으로 별도 운영
(문의: 국번 없이 1577-7770, www.fbo.or.kr)

2.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지 환매가 시작되는 '11년에 환매준비 농가 비율 75% 달성 목표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환매준비(자산증가) 농가 비율(%)	70	55	60	65	2011.1	환매준비(자산증가) 농가수 /'09까지 지원 농가 중 환매희망농가×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137,500	119,500	145,000	230,000	900,000
- 융자	137,500	119,500	145,000	230,000	900,000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다시 임차하여 농업경영을 지속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자

① 일반 농업경영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가 30백만원 이상
 -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한해·수해·풍해 등 농업재해로 연 농가피해율 50%이상
 - 부채는 신청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발생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대출잔액 및 이자) 중 신청일 현재 현금,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정. 다만, 신청접수 시작일 3개월 이내에 부채 중 자연재해로 인한 부채는 포함

* 3개월 이내 대환대출한 부채는 포함하되, 동 기간 중 상환한 부채는 제외

* 금융거래확인서, 고객종합상세정보 또는 금융거래 확인 동의서 등을 징구하여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파악

○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

- 부채비율 산정시 자산은 농지, 농업용시설 및 임야 등 농업경영체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포함

*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의료보험료 산정자료 등으로 보유 자산 확인

②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

- ‘일반농업경영체’ 요건을 모두 충족하되, 환매가능성 평가지표가 100%이상이고, 시설·축산부문 농업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이상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 환매가능성 평가 지표 = [(연간 농업소득) * 7년 / 부채] * 100

*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 주소에 최근 3년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기준으로 부채, 소득 및 자산규모 파악

* 신청인이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때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

나) 지원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 농지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하여 휴경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신청년도 1월1일 현재 71세 이상인 농업인. 다만,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71세이상도 지원 가능
- 농가세대원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생계수단이 농외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50% 이상인 자
 -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증명원 등을 징구하여 확인
- 세대원 기준으로 2주택 이상, 상가, 별장, 골프 또는 콘도회원권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은 제외
 - * 주택, 상가 등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 등으로 확인
- 사치, 도박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부채가 있는 농업경영체
- 소유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시 매매대금으로 부채전액 상환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i) 자산을 매각하여 잔여 부채를 전부 상환한 경우
 - ii)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가능하고 잔여부채를 농업경영회생 자금으로 대환하는 경우
 - iii)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부채가 중장기 저리 정책자금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없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iv)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8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농지가 있거나 잔여 부채의 규모, 조건 등이 상환에 어려움이 없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기타 사유로 공사 지사장 또는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

3. 매입 대상

가) 농지

-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최근 3년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간이 퇴비사 등 부속시설이 설치된 농지 포함
- 임대기간내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의 해당 부지로 사용되는 농지

나)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

-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최근 3년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의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 농지와 농업용시설물의 소유주가 동일하고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시설
 - 환매기간 내에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시설
 - 축사 1,000㎡,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3,000㎡, 버섯재배사 500㎡이상인 시설

다) 매입제외 농지등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 농지등
- 개별법에 따라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안의 농지등
- 농지매매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농지구입자금으로 지원한 농지로서 지원자금을 상환중인 농지
- 재해 등으로 인한 형질 변경이 없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등

-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철거 또는 이전이 어려운 지장물이 설치되었거나 매매 또는 영농이 제한된 농지등
- 국고 등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농업용시설로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시설이나 융자금 상환중인 시설
- 지원대상자 주소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 외의 지역에 소재한 농지등
-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60,000원/m² 초과하는 농지

라) 매입 방법

- 일반 농업경영체
 - 매입 대상 : 농지, 다만, 농지매매 대금으로 부채 전액 상환이 어려워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지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농업용시설 부지로 사용되는 농지 매입 가능
 - 농지 매입 방법
 - 과수원을 매입할 경우 과수목은 평가에서 제외
 - * 환매 포기시 공사에 과수목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이전하기로 특약하여 매입
 - 부속시설이 설치된 농지는 환매 포기시 무상 양도 및 철거 특약 조건부 매입
 - 농업용시설 해당부지 매입 방법
 - 환매 포기시 농업용시설에 대하여 무상 양도, 철거 특약 및 철거보증한 경우만 매입
 - * 철거 보증 방법 : 자선에 근저당, 보증보험 단, 철거가 필요없거나, 환매 포기시 매도 가능 등 기금 손실이 없다고 지사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철거보증 생략 가능
-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
 - 매입 대상 : 농업용시설 해당 부지(축사의 가축 운동장 포함)로 사용되는 농지 및 당해 시설, 다만, 부채 전액 상환이 어려워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지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농지도 매입 가능
 - 농업용시설 및 해당부지 매입 방법
 - 시설 개보수 의무 및 비용 부담에 동의하는 경우 매입
 - 농지 매입 방법 : 일반 농업경영체 매입 방법과 동일

4. 농지등의 매입

- 매입대상자 : 경영위기정도, 경영회생가능성, 경영능력, 영농기반 등 평가 기준(별표1)에 따라 감정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공사와 농지등의 매도가격 등 매매조건에 대해 합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일반 농업경영체는 농지 → 농업용시설 부지 순으로 매입
 - 농지는 일부만 매입할 경우는 다음 우선순위에 의해 필지별로 매입하되, 부채규모 이내에서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우선 순위 조정 가능
 - ①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 ② 농업진흥지역밖 경지정리 또는 기반이 정비된 농지
 - ③ 농업진흥지역밖 기타농지
- ※ 우선 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부채금액, 농지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입
-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경영체는 농업용시설 해당 부지(농지) → 농업용 시설 → 그 밖에 농지 순으로 매입
- 매입가격 : 다음의 금액 이내에서 공사와 지원신청자 간에 합의된 금액
 - 농지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금액
 - 농업용시설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임대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
- ※ 시설과 일체된 전기 설비, 냉·난방, 통풍 및 보일러 설비 등 부속 설비는 시설물 일체로 평가하되, 시설물과 분리되어 있는 시설운영 기계류는 무상 매입, 감정평가 비용은 농지 소유자 부담
- 매매계약 체결 : 매매협약이 완료되고 계약체결 전 이행사항이 완료된 때

5. 농지등의 임대

- 임대 대상자 : 경영회생을 위해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한 당해 농업경영체
- 임대기간 및 임대료
 - ① 임대기간 : 7년,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 법시행('09.6.30)후 최초로 임대하는 것부터 적용
 - 임대 연장은 경영전문성 향상 등을 평가, 60점 이상인 경우 승인
 - 농업용시설은 위 조건에 부가하여 연장기간 동안의 감가액을 선납할 경우 승인

② 임대료 : 필지별 매입가격의 1%이내(매입가격×'별표 2'임대요율)

○ 임차료의 감면 : 영농규모화사업 임차료 감면기준을 적용

6. 농지등의 환매

○ 환매 대상자 :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

○ 환매기간 : 임대기간(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기간)과 같음

○ 환매가격

- 농지 : '환매시점 감정평가 금액'과 '농지매입가격과 농지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연 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중 낮은 금액(감정평가 비용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

- 농업용시설 : 당초 매입한 금액. 단,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초매입 금액에서 감가상각 선납액을 차감한 금액

○ 환매대금 수납

① 일시납부

구 분	금 액	수 납 시 기	수납방법
○ 계약금	계약금액의 10%	○ 계약체결시	○ 계좌입금
○ 잔 금	계약금액의 90%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좌입금

② 분할납부

-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매대금의 100분의40이상을 환매 당시에 납부하고, 잔액은 3년 이내에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

- 상환금리 : 환매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정책 금리(연 3%) 적용

○ 환매신청 : 환매권자는 환매기간 만료일까지 공사지사장에게 환매신청

- 다음 사유 외에는 공사에 매도한 농지등 전부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함.

•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농지등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훼손 또는 유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공사 지사장이 판단한 농지등

7.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사에 소유농지등을 매도하기로 합의한 농업경영체의 농지등 매입비

8.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시행기관인 공사에 농지등 매입비 대여(농지관리기금 용자 100%, 무이자)

- 공사는 매입 농지등의 전체를 해당 농업경영체에 임대 및 환매권 보장

9.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부채규모의 1배 한도 내에서 매입하되, 경영체당 매입금액은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필지(시설)별 매입에 따라 매입액(감정평가액 기준)이 부채금액의 1배를 초과시 지원신청자와 공사 간에 부채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입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매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추진방향 등 사업시행계획 승인(전년도 12월말)

한국농어촌공사

- 시행계획 승인 요청(전년도 12월말) 및 승인된 시행계획에 의거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언론, 공사 및 농지은행 홈페이지 등에 홍보(1월중)

신청농업인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경영회생계획서, 부채 증빙자료 등 서류를 공사 지사(신청자 주소지관할 지사)에 제출
 - 사업신청서 등 세부사항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명시
 -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 및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주요사업에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어촌공사(지사)

- 사업홍보 설명, 신청서 접수 및 확인서 징구
 - * 신고한 세대원, 자산현황, 부채 및 예적금 내역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고, 각종 불이익이 있음을 설명, 금융정보거래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 징구
 - *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세부 지원기준 등을 설명하고, 확인서 징구
- 경영진단반 구성·운영 : 신청서류, 현지조사 등으로 지원 세부사항 검토 및 농업경영실태를 평가 실시

- 공사 지사별로 농지은행사업 등 종사 직원으로 구성·운영
- 경영진단반에서 신청서류, 현지조사를 거쳐 지원 세부사항 검토
 - 지원대상자 및 지원제외자 여부, 부채규모 및 성격, 자산보유 현황, 매입 대상 농지 등의 적정성 등 지원적격 여부 확인·검토
 - 현지조사시 마을 주민 3인 이상으로부터 신청자의 현황 및 요건, 경영의지 등 조사
- 현지조사, 경영진단반 검토결과를 기초로 평가기준(별표 1)에 따라 농업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점수 산정
 - * 현지조사 및 경영실태 평가 방법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지사 심의회 심의 : 경영진단반의 현지조사·검토결과 및 농업경영실태 평가결과를 심의, 지원적격성 및 평가의 적격성 검증
 - 공사 지사장은 지원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를 지역본부장에게 추천

한국농어촌공사(지역본부)

- 지역본부장은 지사 담당자, 본부직원 등으로 심의반을 구성, 지사에서 추천한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적격여부 및 평가의 적격성 검증
- 지역본부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일반 농업경영체 및 시설·축산 농업경영체의 지원 적격성 심의를 거쳐 지원 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를 본사에 추천
 - * 시설·축산 농업경영체는 집단화 단지 우선 및 경영위기 사유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한국농어촌공사(본사)

- 지원대상자 선정 점검 및 지도
 - 지역본부(지사)별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사 상황 및 내용에 대한 점검 및 지도
- 감정평가 대상자 선정
 - 지역본부별로 추천된 자에 대해 지역본부의 평가점수에 따라 예산 범위내 감정평가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역본부(지사)에 통보
 - 경영실태 평가점수가 같을 때는 첫째. 경영회생가능성, 둘째. 경영위기 정도, 셋째. 경영능력, 넷째. 영농기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
- 감정평가법인 선정

- 평가액 산출근거 구체적 제시, 재평가 요청시 성실 보완 의무, 부실·허위 평가시 손해배상 책임 및 선정 취소 등 이행각서 징구 후 선정
- * 부실·허위평가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감정평가법인 선정 취소

한국농어촌공사(지사)

○ 지사장은 감정평가대상자 순위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매입협약이 된 자에 대해 지원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① 감정평가 실시

- 공사 본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 공사 지사장이 평가 의뢰
-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은 농업경영체가 부담
- 현장조사 입회 :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위해 현장조사시에는 지사 직원이 함께 입회하여 조사 실시
- 감정평가 결과 검토 : 감정평가 이후에 현지가격, 인근 실거래가격을 조사하고, 감정평가금액이 공시지가의 1.4배를 초과하거나 공사가 조사한 현지가격보다 높은 경우 정밀 감정 의뢰
- * 매입대상이 아닌 농지, 시설물 등 포함 여부와 지목·면적 사정의 적정성 여부, 현지조사가격·인근 거래시세와의 균형 등 검토

② 매입가격 결정 및 지원대상자 선정

- 감정평가 금액 범위내에서 부채 금액 등을 고려하여 매입가격에 대한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대상자와 합의한 금액으로 매입가격 결정
- 매입가격을 합의한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 매입계약 체결 추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한국농어촌공사

가. 농지등의 매입

- 매매계약 체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매매계약 체결
- 계약시기 : 매매협약이 완료되고, 계약체결 전 이행사항이 완료된 때
- * 사전에 소유권 이외 제3자의 권리 말소, 업무의 특성상 계약금, 잔금 지급없이 매매대금은 대위변제로 지급됨을 협의
- 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
- 매매대금 지급 : 계약금 지급없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모든 부채

금액에 대해 채권자가 지정한 통장 계좌로 대위변제 실시(부채규모 1배 초과시 부채잔액 대위변제 후 잔액은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나. 농지등 임대

- 임대차 계약 체결 : 농지등을 매도한 당해 농업경영체와 임대조건 등 임대차 협의 및 채권 확보 등을 거친후 임대차 계약 체결
 - 계약 조건 위배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60일전에 통지)
 - 납부 약정일 20일전까지 고지, 납부 약정일까지 미납시 연체이자 부과
- 임대기간 연장 및 승인 : 임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임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 접수 1개월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

다. 행정사항

- 사업추진실적 보고 :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
- 공사가 매입하여 임대한 농지의 행정기관 통보

사업지원대상자

- 농지매각 및 매매계약체결
 - 합의한 매매가격에 이의가 없으면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매매계약
 - 소유권 이외 제3자의 권리 말소 등 농지매각을 위한 제반 사항 이행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납부
 - 제반 관리 의무 등에 동의시 계약 체결 및 납부 약정일 까지 임차료 납부
- 임대기간 연장 : 임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임차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
- 환매 요청 : 임대기간중에 전체 농지등에 대해 환매 요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인 공사에 월별 지출계획 통보(1월초)

한국농어촌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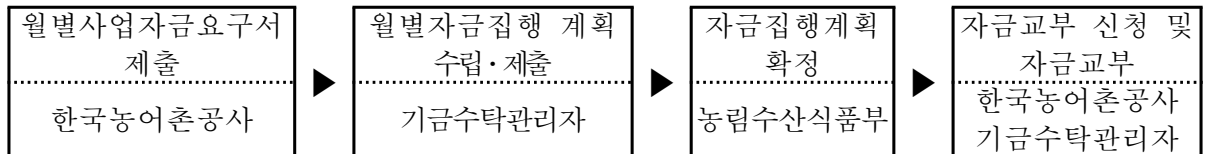
- 월별사업자금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 자금교부신청
- 융자금 대여약정 체결 후 대여받아 바로 시·도별로 사업비를 배정하지 않고, 매입계약 합의로 지사의 자금 요청시 본사에서 수시 배정

기금수탁관리자

- 월별자금집행계획서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공사에 자금교부

사업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되면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



※ 사업비 정산

- 사업정산서 제출 : 연도말까지(공사→ 농림수산식품부)
- 손익금의 처리 : 사업시행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농지관리기금에 귀속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어촌공사)

- 영농관리상황 조사(매년 11월30일까지)
 - 조사대상 : 당해년도 10월까지 지원받은 임차자 및 임대 농지등
 - 조사내용 : 자경여부, 환매준비 상황, 임대시설 파손·변경·멸실 여부 등 임대차 계약사항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
 - 조치내용 : 선량한 관리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 경비는 임차자에게 별도로 부과 징수 등 사후관리 강화

※ 농업용시설은 화재 등에 대비해 공사가 재해보험 가입 조치

- 경영회생능력 제고 (공사는 해당 농가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 특별관리)
 - 전문 컨설팅업체나 자체 경영능력향상 교육 등을 통해 회생능력 제고
- 매입 농지등 구분 관리
 - 공사는 매입농지 등을 공사자산과 구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매입농지 관리지침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사용자 강화, 부동산 알리미서비스 등록, 농지은행사업 구분계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부당 지원여부조사(매년 11월 30일까지)
 - 허위·담합, 지원조건 위배 등 부당지원 여부 조사
- 보고(공사 → 농림수산식품부)
 - 영농관리상황, 부당지원 여부 조사결과 및 매입농지등 관리실태 보고 : 12월 20일까지
 - 환매준비실태 조사결과 보고 : 익년 1월 20일까지
- 본사·본부 점검·평가 강화,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농규모화사업에 준하여 조치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실태 등을 점검하여 지침, 계획 등에 반영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4월, 10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한국농어촌공사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지원대상자 적격성, 농업경영실태평가 적정성, 영농관리실태 등

나. 제 재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어촌공사)

- 영농관리상황 조사결과 위반자 조치사항
 - 즉시 시정기한을 정하여 시정촉구, 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 유형별 조치

위 반 사 례	촉 구 내 용	시 정 기 한
○ 농지등 훼손	○ 원상회복	○ 3월이내
○ 전대, 위탁경작	○ 본인 또는 포괄승계인 경작	○ 3월이내
○ 임차농의 사망	○ 포괄승계인 승계	○ 3월이내

- 계약해지사유

공사가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경우
①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농지등을 전대한 때 ② 임차인이 고의로 임대농지를 경작하지 아니 하거나 타목적, 타용도로 사용할 때 ③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농지등을 훼손 또는 황폐하게 한 때	① 임차농지등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어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공사가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경우
④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5개월이상 임차료(선납금) 납부를 연체할 때	②임차인의 질병·사고, 징집, 취학, 복역 등으로 임차농지를 경작할 수 없게 될 때
⑤임차인이 사망하고 영농에 종사할 포괄승계인이 없을 때	③당해 농지가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농지 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⑥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국외로 이주할 때	④공사가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
⑦임차인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⑧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임대목적용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	
⑨당해 농지가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농지 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⑩임차인의 경영부실 등으로 계속 임대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 계약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로 확인된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부과
- * 위약금 부과 방법 등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 전년도 사업지원자의 금년도 경영성과를 평가(평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평가지표 확정 :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표로 확정(사업시행지침 작성시)
 - 주요평가지표 : 환매준비(자산증가) 실적
 - 성과지표 측정(12월~익년도 2월) : 지원농가의 환매준비(자산증가) 상황 파악을 위해 경영장부 기록 결과를 점검·확인하여 성과지표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 사업만족도, 제도개선 필요사항,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실시
 - 조사시기 및 대상 : 매년 11월중 연도별 사업지원자
 - 조사방법 : 현지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조사

- 조사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지원농가 경영분석
 - 평가기관 및 기간 : 한국농어촌공사, 12월 ~ 익년도 1월
 - 평가대상 : 환매준비(자산증가) 현황
 - 평가기준 : 임차 기간내 환매희망자 중 전년대비 자산증가 현황

나.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 설문조사 결과 정책 및 사업지침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반영
- 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시 우대 조건 부여나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의 임차 우대조건 부여 방안 등 마련
- 사업평가결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교육 자료로 활용
-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사업수요 조사 및 홍보

<수요조사>

- 매년 12월중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농업협동조합 협조 등을 통해 부채 농업인에게 사업 안내를 실시하고 사업지원희망자 파악

<홍 보>

- 사업지원 우수사례 발굴·홍보, 사업 안내 리후렛 등 제작·배포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3. 기타사항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별표 1]

농업경영실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평 가 방 법
경영위기의 정 도	20	가.재해 정도 : 20 - 10 + (피해율-50)/5	관련기관 발급 확인서 연체율 = $\frac{\sum (A_i \times B_i)}{\text{부채총액} \times 180} \times 100$ * A:부채금액, B:연체일수(B≥180이면 B=180), i:대출계좌 이자부담율 = $\frac{\text{연간 이자부담액}}{\text{연 농가소득}} \times 100$ ※ 재해피해률,채무이행 상황 중 택 일
		나.채무이행 상황 : 20 - 연체율×0.3점(최고 10점) + 이자 부담률×0.2점(최고 10점)	
경영회생 가 능 성	50	가.자산 대비 부채비율 : 10 20-부채비율/10(최고 10점)	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액}}{\text{자산총액}} \times 100$
		나.기술등 경영의 전문성 : 10 - 교육훈련 실적(7일이상), 브랜드 및 품질인증 보유 : 10 - 위 2개 보유 : 7, - 위 1개 보유 : 4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관계 서류로 확인
		다.부채 대비 농업소득비율 : 20 - 농업소득비율 × 0.1점(최고 20점)	농업소득비율 = $\frac{\text{연 농업소득} \times \text{연수}}{\text{부채총액}} \times 100$ ※연수는 7년간 소득실현 연수
		라.경영회생 의지 및 능력 : 10 <경영회생계획서 작성> - 양호 : 5, 보통 : 2, 미흡 : 1 <경영회생 의견 수렴> - 양호 : 5, 보통 : 2, 미흡 : 1	경영회생 계획서 및 마을대표 3명 이상 의견 수렴하여 종합평가
경영능력	20	가.농업경영 경력 : 5점 - 년수×0.625점(최고 5점)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 ※영농경력은 최초 농지취득일 부터 기산
		나.경영관리 : 5점 ◦ 경영컨설팅 수행 : 3 - 2회 이상 : 3, - 1회 : 2 ◦ 경영장부 기록 : 2 - 회계프로그램 사용 : 2 - 경영장부(금전출납부) 기록 : 1	
		다.농산물 판매실태 : 10 - 70%이상 계약·고정거래처 판매 : 10 - 50%이상 : 7, - 30%이상 : 4 ◦ 농업경영경력 : 년수×0.625점(최고 5점)	
영농기반	10	가.농지(농업용시설) 경영규모 : 5 - 3ha(1ha)이상 : 5 - 1ha(3300㎡)~3ha(1ha)미만 : 3 - (500㎡)~1ha(3300㎡)미만 : 1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 ※()는 시설이나 축산업 전문 경영체 평가기준임 ※일반 농업경영체 또는 시설이 나 축산업 전문 농업경영체별 로 각각 평가
		나.농지(농업용시설) 등의 여건 : 5 - 농로포장 및 관개 각 80% 이상(집단화 및 상태 양호) : 5 - 관개 80% 이상(상태양호) : 3 - 기타농지(기타농업용시설) : 1	
계	100	-	-

* 부채비율 산정시 자산은 소유농지(공시지가) 및 농업용시설(국세청 기준시가 기준)과 비농업용 부동산(재산세 과세 기준)을 포함, 부채는 지원대상자 부채규모 요건에 따라 신청 확인된 부채를 평가대상으로 함

[별표 2]

농지 임대료 요율

구 분	매 입 단 가	임 대 료 율	비 고
농 지	15,125원/㎡ 미만	농지매매금액 × 10/1000	필 지 별 로 계 산 하 여 합산
	15,125원/㎡ 이상 18,150원/㎡ 미만	15,124원/㎡ 이하 임대료 + 15,125원/㎡ 이상 금액 × 9/1000	
	18,150원/㎡ 이상 21,175원/㎡ 미만	18,149원/㎡ 이하 임대료 + 18,150원/㎡ 이상 금액 × 8/1000	
	21,175원/㎡ 이상 24,200원/㎡ 미만	21,174원/㎡ 이하 임대료 + 21,175원/㎡ 이상 금액 × 7/1000	
	24,200원/㎡ 이상 27,225원/㎡ 미만	24,199원/㎡ 이하 임대료 + 24,200원/㎡ 이상 금액 × 6/1000	
	27,225원/㎡ 이상 30,250원/㎡ 미만	27,224원/㎡ 이하 임대료 + 27,225원/㎡ 이상 금액 × 5/1000	
	30,250원/㎡ 이상 33,275원/㎡ 미만	30,249원/㎡ 이하 임대료 + 30,250원/㎡ 이상 금액 × 4/1000	
	33,275원/㎡ 이상 36,300원/㎡ 미만	33,274원/㎡ 이하 임대료 + 33,275원/㎡ 이상 금액 × 3/1000	
	36,300원/㎡ 이상 39,325원/㎡ 미만	36,299원/㎡ 이하 임대료 + 36,300원/㎡ 이상 금액 × 2/1000	
	39,325원/㎡ 이상	39,324원/㎡ 이하 임대료 + 39,325원/㎡ 이상 금액 × 1/1000	
농 업 시설물	-	시설물 매매금액 × 10/1000	-

3	농지매입·비축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 지 과	과 장 류 이 현 사무관 정 수 경	02-500-1715 02-500-1721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팀	팀 장 장 성 원 차 장 진 성 봉	031-420-3351 031-420-3378

※ 이 지침은 사업목적과 근거법령상의 정책방향에 맞게 해석해야 함

I. 사업개요

1. 목 적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원활한 농지매도 지원을 통한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

* 농지은행사업 중 농지매도수탁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정부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 지침으로 별도 운영

(문의: 국번 없이 1577-7770, www.fbo.or.kr)

2.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는 영농규모화 목표를 병행 추진하면서 새로운 농업경영체 육성 추진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쌀전업농 경영면적비율(% , 주지표)	41	34	37	39	2011. 2	쌀전업농 경영면적/전체 벼 예상재배면적(932천ha)
▪ 쌀전업농 호당경영면적(ha, 부지표)	5.2	4.6	4.8	5.0	"	쌀전업농 경영면적/7만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75,000	225,000
용 자				75,000	225,000
○ 농지매입·비축사업				75,000	225,000
- 용 자				75,000	225,000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 장기임대
 - 매입대상자 : 이농·전업(轉業) 또는 고령·질병 등으로 인하여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 임대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귀농인·후계농업경영인 등 새로이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2. 매입대상 농지

-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유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이농·전업(轉業)하고자 소유농지를 전부 매도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 다만,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
 -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농지를 전부 매도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 다만,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
 - 단계적인 이농·전업, 은퇴를 위해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매수청구를 신청한 농지

3. 매입제외 농지

- 이농·전업(轉業),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소유농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의 소유농지
 - m²당 감정평가가격이 25,000원을 초과하는 농지
 - 2,000m² 미만의 소규모 필지. 다만, 동일인이 소유(공사가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매입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서로 연접한 여러 필지의 농지로서 그 면적의 합이 2,000m² 이상인 농지는 매입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 또는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 구역 및 예정지안의 농지
 - 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 농지매매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농지구입자금을 지원 받은 농지. 다만, 농지매매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매도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입
 - 소유권 외의 권리나 처분 제한이 있는 농지.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매입가능
 -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철거·이전이 어려운 지장물이 있는 농지. 다만, 과수목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매매계약 전에 이전 조치할 경우 매입 가능
 -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여 매도하는 자 등 농지시장안정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소유농지
- 매수청구농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
 - 형질이 변경되어 매수 후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농지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매입 가능
 - 공사와 매수청구자가 서로 제시한 가격의 차로 매매가격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농지

4. 농지 매입

○ 감정평가 실시

- 공사는 매입신청 농지에 대해 농지여부, 매입단가 상한 초과 여부, 매입필지 규모 등 매입조건을 고려하여 매입대상농지로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농지에 대해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대상 농지 결정
- 공사에서 직접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
 - * 감정평가 비용은 농지소유자가 부담하며, 과수목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매입가격 결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지사별 심의회를 거쳐 농지소유자와 공사 간에 합의된 가격으로 매입
- 매수청구농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를 기준으로 매입

○ 지적 경계가 불분명한 농지는 경계 측량 실시 후 매입

※ 경계측량비용은 농지소유자가 부담

○ 매매계약 체결 : 매입가격 등 매매협의를 완료되고 계약체결 전 이행사항이 완료된 때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5. 매입농지 관리

< 매입농지 임대 >

- 매입농지는 장기 임대하되, 공익사업 편입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
- 임대 대상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임대대상자로 선정하되,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임대대상자 선정 평가기준(별표)’에 따라 지사 심의회 심의를 통해 고득점자를 임대대상자로 선정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귀농인·후계농업경영인 등 새로이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 임대제외자 : 동 사업 및 농지매매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한 자
- 임대기간 : 5년. 다만, 5년 단위로 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하여 재 임대

- 임대료 결정 : 공사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대대상자와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공사가 조사하여 정한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임대계약의 체결 및 채권확보
 - ① 공사는 임대 대상자와 임대료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대계약 체결
 - 계약 기간내 매매·증여 등 금지, 약정 위반시 위약금 부과 등 명시
 - ②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인이 제공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거나 보증서를 징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 ㉠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 ㉡ 연대보증인의 보증서(임차료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임대료의 납부 :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한 자는 임차료를 매년 공사에 납부하고, 공사는 납부 받은 임차료를 농지관리기금에 납입
- 임차료의 감면 : 영농규모화사업 임차료 감면기준을 적용

< 매입농지 매도 >

- 매입농지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공사 본사에서 매도
- 매도가격 : 매도시 감정평가금액
 - ※ 단, 공익사업을 위하여 편입되는 경우는 관련 법률에 따름
- 매도금액 수납
 - 계약금 : 매매계약 체결시 매도대금의 10% 계좌 입금
 - 잔금 :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출시 매도대금의 90% 계좌 입금

6.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이농·전업(轉業),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소유농지 매입비 또는 공사에 매수청구된 농업인 소유농지 매입비

7.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지관리기금(융자 100%, 무이자)
- 사업비 :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공사에 매년 농지매입비 대여
 - 공사는 농지임대료 및 농지매각대금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공사 시달(전년도 12월말)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 요청(전년도 12월말) 및 승인된 시행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은행 홈페이지 등에 홍보(1월중)

사업대상자

- 공사에 농지매도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농지 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연중 수시)
-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임차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농지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임대 공고시)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에 비치 및 농지은행포탈 (<http://www.fbo.kr>)에 비치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감정평가 대상농지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신청서류, 현지조사 등을 통해 매입대상 농지 요건 등 매입 농지 적정 여부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입 적정 농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대상 농지를 결정

3. 세부계획 시행 단계

한국농어촌공사

1) 농지매입

- 매입대상자에게 감정평가 대상농지 통보
 - 공사 지사장은 매도신청자(농지소유자)에 감정평가 실시 가능 여부를 통보

○ 매입대상농지 감정평가 실시

① 감정평가 실시

- 매도신청자(농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에 동의한 경우에 공사 본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 공사 지사장이 평가 의뢰
 -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은 농업경영체가 부담
- 현장조사 입회 :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위해 현장조사시에는 지사 직원이 함께 입회하여 조사 실시
- 감정평가 결과 검토 : 감정평가 이후에 현지가격, 인근 실거래가격을 조사하고, 감정평가금액이 공시지가의 1.4배를 초과하거나 공사가 조사한 현지가격보다 높은 경우 정밀 감정 의뢰
 - * 매입대상이 아닌 농지, 시설물 등 포함 여부와 지목·면적 사정의 적정성 여부, 현지조사가격·인근 거래시세와의 균형 등 검토

② 매입가격 결정 및 매입대상자 선정

-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 금액 등을 고려하여 매입가격에 대한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대상자와 합의한 금액으로 매입가격 결정
- 매입가격을 합의한 경우 매입대상자로 선정, 매입계약 체결 추진

○ 매매계약 체결

- 계약시기 : 매매협의를 완료되고, 계약체결 전 이행사항이 완료된 때

○ 매매대금 지급

- 계약금 :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의 10%를 매입대상자 지정 계좌로 지급
- 잔금 :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출시 매매대금의 90%를 계좌로 지급

○ 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

※ 매입농지는 공사의 일반자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

2) 매입농지 임대

○ 매입농지 임대차 계약 및 해지

- 임대차를 희망하는 자가 최대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사에서 임대공고를 통해 신청자 접수

- 신청자 중 임대대상자로 적합한 자를 임대대상자로 선정하되,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임대대상자 선정 평가기준」(별표)에 따라 공사(지사) 자체 농지은행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고득점자를 임대인으로 선정
- 지사에서 임대조건 등 임대차 협의 및 채권확보 등을 거친 후 임대차 계약 체결
- 계약 조건 위배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60일 전에 통지)
- 임대료 납부 고지 : 납부 약정일 20일 전까지 고지하고, 납부 약정일까지 미납시 연체이자 부과

○ 임대기간 연장 : 임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임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

3) 행정사항

- 사업추진실적 보고 :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
- 공사가 매입하여 임대한 농지의 행정기관 통보
 - 분기별로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읍·면·동)에 통보, 농지 임대내역은 공사 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과 농지원부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 송신

사업대상자

- 공사에 소유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 : 농지 매도 및 매매계약 체결
 -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없으면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매매계약
 - 소유권 이외 제3자의 권리 말소 등 농지 매각을 위한 제반 사항 이행
-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납부
 - 제반 관리 의무 등에 동의시 계약 체결 및 납부 약정일까지 임차료 납부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인 공사에 월별 지출계획 통보(1월초)

한국농어촌공사

- 월별 사업자금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 자금 교부 신청
- 융자금 대여약정 체결 후 대여 받아 매입계약 체결시 본사에서 직접 예산 지원

기금수탁관리자

- 월별 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금 요구시 교부

※ 사업비 정산

- 사업정산서 제출 : 연도말까지(공사→농림수산식품부)
- 손익금의 처리 : 사업시행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농지관리기금에 귀속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어촌공사)

- 매입농지 관리상황 조사(매년 11월 30일까지)
 - 조사대상 : 당해 연도 10월말 현재 공사가 보유 중인 농지 및 임차인
 - 조사내용 : 임대농지 경작 여부, 임대차 계약 위반사항 유무 등 매입농지 관리실태
 - 조치내용 : 위반사실 발견 즉시 시정기한을 정하여 시정 촉구,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사후관리 강화
- 적정 매입 여부 조사(매년 11월 30일까지)
 - 공사 본사는 매입대상 농지여부, 매입가격 등 농지의 적정 매입 여부를 조사 분석 실시
- 매입 농지등 구분 관리
 - 공사는 매입농지 등을 공사자산과 구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매입농지 관리지침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사용자 강화, 부동산 알리미서비스 등록, 농지은행사업 구분계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후관리, 적정 매입여부 등 조사결과 및 매입농지 관리실태 보고(공사 → 농림수산식품부) : 매년 12월 20일까지
- 본사·본부 점검·평가 강화,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농규모화사업에 준하여 조치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 매입·관리 및 임대 실태 등을 점검하여 지침, 계획 등에 반영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4월, 10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한국농어촌공사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매입농지의 적격성 및 관리실태, 매입·임대의 적정성, 임대농지 영농관리실태 등

《 제재 》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어촌공사)

- 채권관리 : 공사는 불건전 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적 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 영농관리상황 조사결과 위반자 조치사항 : 즉시 시정기한을 정하여 시정 촉구,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위 반 사 례	촉 구 내 용	시 정 기 한
○ 농지 훼손	○ 원상회복	○ 3월 이내
○ 전대, 위탁경작	○ 본인 또는 포괄승계인 경작	○ 3월 이내
○ 임차인의 사망	○ 포괄승계인 승계	○ 3월 이내

- 계약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와 기타 사후관리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위약금 부과
 - ※ 계약해지, 위약금부과 등 기타 사항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 전년도 사업지원자의 금년도 경영성과를 평가(평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주요평가지표 : 연간 매입·비축 목표 대 실적
 - 성과지표 측정 : 매입 농지 면적 조사(12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 사업만족도, 제도개선 필요사항,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실시
 - 조사시기 및 대상 : 매년 11월중 연도별 사업지원자
 - 조사방법 : 현지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조사
 - 조사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환 류 》

-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에 반영, 우수사례 홍보·교육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사업수요 조사

- 매년 12월중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를 실시하고 사업 수요 파악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매입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지를 매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를 신청농지 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제출
- 신청자격
 - 농지 매도 : 이농·전업(轉業),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공사에 농지를 매수 청구하는 농업인
 - 농지 임차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인, 농업법인, 새로이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구비서류 : 농지 매도·임차신청서(공사 지사 비치 및 농지은행 홈페이지 게재) 및 첨부서류
- 대상자 및 농지 선정 : 공사 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제출서류 검토, 현지조사 확인, 농지 매입 적정 여부 등을 실시하고 매입농지 및 임대대상자 결정

3. 기타사항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별표] 임대대상자 선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방법
계	100		
◦ 농지집단화 효과	(20) 20 1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신청농지로부터 임차희망자의 경작 농지가 1km 미만 ○ 1km 이상 ~ 5km 미만 ○ 5km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도, 임대차계약서 및 현지조사서 결과 확인 ○ 창업농, 귀농인의 경우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 농업경영계획	(40) 40 3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농지 영농계획의 적합성, 구체성, 실현가능성이 우수 ○ 보통 ○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받은 영농계획서 종합 평가
◦ 농업경영기술 전문성	(20) 20 1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기술 관련 교육 훈련실적(7일 이상) 또는 브랜드, 품질인증 보유 ○ 위 사항 중 2개 해당 ○ 위 사항 중 1개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관계 서류로 확인
◦ 연령(개인) 또는 재무건전성(법인)	(20) 20 1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세 미만 /자기자본비율 80%이상 ○ 40세 이상 ~ 55세 미만 /자기자본비율 50~80% ○ 55세 이상 /자기자본비율 50%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 주민등록상 연령 확인 ○ 법인 : 전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로 확인

[별지 제1호 서식]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매도신청서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매도신청서											
농지 소유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남/여) (연 령)			(세)					
	전 화 (휴대폰)	() - () -	e-mail 주소								
매도자 유 형	① 이농·전업희망 농업인 ② 은퇴희망 농업인 ③ 경영규모축소 농업인 ④ 매수청구 농업인										
매 도 농 지	사·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m ²)	희망 가격	용도 지역	진흥지역 여부	소유권 외권리	부대 시설
	계		필지		/	m ²	원	/	/	/	/
소유규모	필지, m ²										
기 타 사 항	※ 임대 현황, 공유 관계, 개발계획구역 편입 등 특이사항 기술										
첨 부 서 류	① 등기부등본 ② 토지대장등본 ③ 지적도등본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⑤ 농지원부 등 농업인 확인서류 (①~④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희망할 경우 신청인 부담으로 공사에서 발급 대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 소유농지를 귀 공사에 매도하고자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p>											

[별지 제2호 서식]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차신청서

1. 신청자 현황

신청자	성명 (법인명칭 및 대표자성명)		전화 (휴대폰)	- -
	주소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생년월일(남/여) (법인등록번호)	
	구분	①전업농육성대상자, ②농업법인, ③일반농업인, ④기타 새로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법인)		
	자본(총계) (※법인만 작성)	원	자산(총계) (※법인만 작성)	원

2. 임차신청농지 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재배희망작물
시·군	읍·면	리·동				
계			필지			

3. 영농이용 농지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재배작물	소유여부 (소유/임차)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계			필지					

4. 농업경영기술 전문성

(1) 교육훈련 실적(최근 10년 이내)

교육일시	교육시행기관	교육기간	교육내용

(2) 브랜드·품질인증 보유 현황

명칭	인가기관	유효기간	관련작물

위와 같이 귀 공사 소유농지를 임차·영농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첨부서류 : 1. 토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영농이용 농지현황 확인서류
2. 농업경영기술 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 등 확인서류
3. 임차농지 영농계획서, 4. 전년도 결산 대차대조표(법인만 해당)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4	배수개선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 장 김일환 사무관 유재중	02-500-1827 02-500-1834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총괄팀	실 장 강상기 팀 장 윤홍일	031-420-3115 031-420-3611

I. 사업개요

1. 목 적

- 홍수 발생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논에서의 원예작물 등 다양한 작물재배 여건을 구축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7조, 제8조, 제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전국의 상습침수 농경지 232천ha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 * 대상지 면적 조정(09.7.30) : (당초) 188천ha → (조정) 232천ha (증44천ha)
- 2010년 준공계획 4.3천ha, 사업 완료지역의 침수피해가 없도록 목표 설정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개선 완료지역 침수피해액 	0.0	-	-	-	2011.1.	-배수개선 완료된 전국 농경지 침수 피해액 *시도 농경지침수피해 집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2,903,829	208,164	213,451	213,118	1,786,638
보 조 용 자 지방비 자부담	2,903,829	208,164	213,451	213,118	1,786,638

▶ '10년 예산(213,118백만원) 내역 : 사업비 210,118백만원, 조사설계비 3,000백만원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

- 사업비 :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 *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농경지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중 농경지에 대한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 조사설계비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비는 기본계획 수립 또는 세부설계가 완료된 지구 중 신규 착수지구와 시행중인 지구 중 2010년 예산이 편성된 지구를 대상으로 당해 지구 농경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에게 지원
- 조사설계비는 시·도의 신청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가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한 지구를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사장에게 지원

3. 지원대상

- 홍수 발생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고, 농지로의 보전 가능성이 높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경지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
 - 다만, 개발제한구역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등에 포함된 지구로서 사업 후 장기간 농지활용 전망 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경지라도 대상지로 선정
 - 기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경지는 장기간 농지보전 가능성이 높고, 투자되는 사업비 이상의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구 중에서 사업 시행 후 농업진흥지역 편입을 전제로 면밀한 검토·분석을 거쳐 신중하게 선정
- 동일수계에 여러 사업지구가 있는 경우 하류의 지구부터 단계적으로 선정
-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낮은 지구, 타법·타사업 등으로 사업에 제약이 있는 지구, 배수 본천의 하천정비가 시행되지 않았거나 배수개선과 병행시행이 어려운 지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비는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의 공사비(자재대 포함)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으로 집행
- 조사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제8조의 기본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관리비 등으로 집행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구 분	사 업 비	조사설계비(기본조사비)
예산항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지원조건	국고 100%	국고 100%
재 원	농특회계	농특회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는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 * 총사업비는 배수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52호 ; '08.11.5.참조)
 - * 사업시행 인가후의 낙찰가격(계약)을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조정·관리하고, 이미 집행된 기본조사비는 제외
- 조사설계비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본조사비 소요액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예정자(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기본조사 대상지] ; 조사설계비(기본조사비) 집행관련

- 시·군·구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농림수산식품부가 시달하는 사업예정지 조사요령을 참조하여 지구당 50ha이상 사업예정지를 조사하여 시·도에 제출
 - 현황, 투자소요액, 사업효과, 위치도, 그밖에 사업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한 자료 첨부(농림수산식품부가 별도 시달하는 예정지 조사요령 참조)

[사업시행 대상지] ; 사업비 집행관련

- 시·군·구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기본조사 또는 세부설계가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한 신규착수와 시행중인 지구의 시행에 필요한 익년도의 예산을 신청

시·도

[기본조사 대상지]

- 시·도는 사업 타당성 및 시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정지조사결과 및 기본조사 대상지를 제출('10.1월)
 -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료, 시·도 우선순위 결정 및 평가·검토 자료 등 첨부

[사업시행 대상지]

- 시·도는 시·군·구의 예산신청 지구에 대한 타당성 및 우선순위,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 및 일정 등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익년도 예산을 요구
- 시·도는 시행중 지구의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시행중 지구의 조기 완공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 신규지구는 시행중인 지구의 추진공정 및 잔여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반영 요구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기본조사 대상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지구당 50ha이상 사업예정지 조사내용을 감안하여 기본조사 대상지를 선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기본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조사 대상지를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10.2월)
-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송부(수시)
- 다만, 50ha미만 지구는 시·도지사가 기본조사 시행여부 판단 및 기본조사자를 선정하고, 기본계획도 시·도지사가 수립(수시)

[사업시행 대상지]

-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체 수립한 기본계획과 지자체가 수립한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사업시행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는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선정

기본조사자(시·도,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제약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50ha미만 지구는 시·도 협의로 종결)
- 기본조사자는 당해지역 주민, 하천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인근에 경지정리 및 농촌마을종합개발 계획 등이 있을 경우 병행 시행여부를 검토

- 기본조사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규정사항과 다음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50ha미만 지구는 시·도에 송부)
 - 조사지역의 과거 피해이력 및 피해잠재성 등 피해정도
 - 하천정비 상태와 하천정비계획, 배수장설치로 인해 하천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농업진흥지역 편입여부와 미편입지역에 대한 해당 시·도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조치계획
- 사업효과는 식량생산 차원뿐만 아니라 재해방지효과를 최대한 계량화하되, 경제성이 결여될 경우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처리방안 협의(50ha미만 지구는 시·도와 협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설계 실시와 시행계획 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실시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 세부설계는 예산이 확보된 지구에 대해 실시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중에서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익년도 예산 협의 시 신규사업 예정지구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50ha미만 지구는 시·도와 협의)
- 세부설계자는 기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설계를 실시하되, 수혜면적의 변경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 협의(50ha미만 지구는 시·도와 협의)
- 세부설계서에는 완공후 배수장, 배수문 및 배수갑문 등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설계기준 및 빈도별 강우에 대한 시간별 추정 홍수유하량과 홍수위에 대한 조건표 및 시설운영지침 등을 제시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발주》

시·도

-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신규사업 시행지구를 선정 후 시·도지사를 통하여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공고내용과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시, 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보고하되,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내역과 검토내역을 첨부하고, 공사비가 기본계획보다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내역을 첨부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토대로 용지매수 및 공사발주, 계약 등을 이행

《공사추진》

시·도

- 총사업비는 농림수산물식품부가 별도 시달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정·관리하되, 설계 또는 착수이후 물가변동, 시설물 안전성 제고 및 법령 개정 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증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물식품부에 제출
-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수혜면적의 증감,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증감,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등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설계보완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동일 시·도에서 사업시행중인 기존 계속 지구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배수장, 배수갑문 등 주요공종의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기에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배수로 등 간단한 공작물이나 잔사업량이 경미한 공정 등은 영농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며,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호우기간 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뚝, 중장비 등)를 확보하는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함
- 공사감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에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
- 공사감리자는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미비 여부 및 공정 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 확인),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월별 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

시·도

- 사업시행지구의 사업기간을 가능한 확정 관리토록 하고, 사업지구별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함
-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함
- 배수장시설 등 핵심공종은 수해대비 공정을 감안하여 지원함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
-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동일 시·도에서 사업시행중인 기존 계속지구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사업시행자(시·군,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

6. 성과측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의 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
- 계획대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조사
- 지자체의 예산 조기집행상황을 파악하여 농림사업 지자체 평가시 반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평가한 결과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체 시·도별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 평가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평가
 - 사업대상지구 신청을 위한 지구별 우선순위 부여에 대한 적합 여부
 - 사업계획 대비 시행계획변경 적정성(변경 횟수, 건수, 변경금액 등)
 -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포함)
 -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지구 신청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요구 시 반영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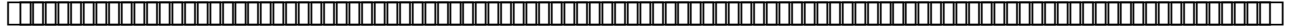
- 시·도지사는 2011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신청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11년도 예산 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인가 결과



○ 지구명 : (내지구명 :) ○ 면적 : ha
 ○ 위치 : 도 시·군 읍·면 ○ 사업시행자 :

(단위 : 백만원)

구분		최종 승인액	'09까지	'10예산	'11이후	비고
과목	공종별					
합계						
○ 공사비						
- 순공사비	소계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기타					
- 지급자금대						
○ 용지매수 및 보상비						
○ 기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기타						

< 기본계획 대비 변경내역 >

- 변경액 : → 백만원(%)
- 공종별 변경내역 및 사유 :

< 농림수산식품부 지시내용 이행내역 >

구분	지시내용	이행내역

※ 기본계획 수립 및 기타 지시내용

[별지 제2호 서식]

배수개선사업 진도보고



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위치		면적 (ha)	총사업 비	'09까 지	'10계획 및 실적					'11이 후	사 업 시 행자
	시 군	읍 면				총예산 액 (A)	집행계 획 (B)	집행실 적 (C)	%			
									C/ B	C/ A		

[부진 사유] : 집행계획 대비 80%미만인 지구명 및 부진사유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결과보고

1. 지구명 : 2. 수혜면적 : ha 3. 사업시행자 : 4. 주요공사 :
 5. 사업비 지원(변경전 기준)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변경전)	'09까지	'10예산	'11이후
-----------	-------	-------	-------

6. 시행계획 변경내역 : 수혜면적 (현행) (변경)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현행	변경	증 감		
			소계	물가변동	물량변동
계					
- 공사비					
- 용지매수보상비					
- 기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기타					

[물가변동] 기준시점 비교시점 인상율 인상액
 [물량변동] ※ 공종별 변경내역을 “1. 필요성, 2.변경내역, 3. 미반영시 문제점, 4. 당초 설계자 의견, 5. 기타 도면 및 참고자료” (필요시 표로 작성)
 [농림수산식품부 지시내용 이행내역]

[별지 제4호 서식]

○○지구 배수개선사업 준공처리 결과보고

1. 사업지구현황

- 위치 : ○ 수혜면적 : ha ○ 총사업비 : 천원 ○ 사업시행자 :
 ○ 주요시설 - 배수장 : m × m × 대 (Q = m³/sec), 유역면적 ha
 - 배수로 : m (최대단면 : b= , B= , h= , H=)
 - 배수문 : m × m × 런, SILL m, 유역면적 ha
 ○ 사업시행인가일 : ○ 착공 연월일 : ○ 준공년월일 :
 ○ 설계기관 : ○ 공사감리 : ○ 시공업체 : ○ 사업효과 :

2. 연도별 검정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인가액	준공검정액	증감	연도별 검정내역					
수입									
지출									

5	방조제개보수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 장 김일환	02-500-1827
		서기관 전경구	02-500-1839
한국농어촌공사	시설안전처	처 장 정진호	031-420-3116
		팀 장 심문산	031-420-3821

I. 사업개요

1. 목 적

- 방조제(국가관리, 지방관리)중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태풍·해일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8조, 제108조
- 방조제관리법 제6조, 제7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0년에는 168지구(국가 27, 지방 141) 추진
 - 준공 29지구(국가 5, 지방 24), 계속 38지구(국가 15, 지방 23), 신규착공 101지구(국가 7, 지방 94)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방조제 개보수율 (누계%)	43.3	38.0	39.9	42.2	2011.1	방조제개보수율(%)= (개보수완료지구수/개보수 대상지구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지정수	증장기 계획	'08 까지		'09 예산		'10 예산(안)		'11이후
				%	누계(%)	누계(%)	누계(%)		
합 계	1,598	3,490	1,393	39.9	74(145)	42.2	29(168)	43.3	1,980
- 사업량		23,381	11,081	47.3	1,003	51.7	903	55.5	10,394
- 사업비									
국가관리	108	206	140	68.0	12(31)	77.7	5(27)	76.2	49
- 사업량		9,133	5,171	56.6	460	61.7	414	66.2	3,088
- 사업비									
지방관리	1,490	3,284	1,253	38.2	62(114)	38.6	24(141)	41.2	1,931
- 사업량		14,248	5,910	41.5	543	45.3	489	48.7	7,306
- 사업비		9,657	3,820	39.6	380	43.5	342	47.0	5,115
· 국 고		4,591	2,090	45.5	163	49.1	147	52.3	2,191
· 지방비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

- 시설관리자 및 관리대행자(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방조제개보수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10년 예산이 편성된 지구를 대상으로 당해 지구 방조제를 관리(관리대행자 포함)하는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에게 지원

3. 지원대상

- 방조제관리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국가관리방조제 또는 지방관리방조제로 지정된 방조제로서 다음의 사유로 개·보수가 필요한 방조제
 - 노후·파손 등 시설물의 안전 또는 기능상실로 인해 재해발생시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어 방조제개보수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설
 -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판정(D,E등급) 시설
 - 시설 운용관리상 획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
 - 태풍·해일·호우 피해 방조제 중 개선복구가 필요하나, 지원되는 복구비가 부족하여 재해 반복이 예상되는 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방조제,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 등의 공사비(자재대 포함)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으로 집행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치단체자본보조(농특회계)

구 분	지원비율(%)	
	국 고	지방비
국가관리방조제	100	-
지방관리방조제	70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는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 * 총사업비는 방조제개보수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52호 ; '08.11.5.참조)
 - * 사업시행 인가후의 낙찰가격(계약)을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조정·관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설관리자(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

- 시설관리자(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사장)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현지답사후 시·도지사에게 방조제개보수사업 예정지(이하 ‘예정지’라 함) 조사 신청
- 지방관리방조제는 시설상태와 지방비 확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도지사에게 예정지조사 신청

시·도

- 신청된 예정지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재해예방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조사를 실시
- 시·도지사는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자가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한국농어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함.
- 시·도지사는 사업의 규모,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장관에게 예산을 신청(국가관리방조제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전 농식품부와 정밀안전진단결과를 반영한 주요공사 및 사업비 등에 대해 사전협의)
 - 재해대비 등 시급한 개보수를 요할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협의 후 예산신청

2. 사업지구 선정단계

- 선정기준
 - 방조제관리법 규정에 의한 관리방조제로서 노후·파손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함
- 우선순위
 - 노후·파손 등 시설물의 안전 또는 기능상실로 인해 재해발생시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어 방조제개보수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설
 -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판정(D,E등급) 시설
 - 시설 운용관리상 획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
 - 태풍·해일·호우 피해 방조제 중 개선복구가 필요하나, 지원되는 복구비가 부족하여 재해 반복이 예상되는 시설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설계 실시와 시행계획 수립》

시·도

- 사업시행자가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토록 조치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획기간 내 세부설계가 완료되도록 지도·감독
 - 설계자는 시설관리자(사업시행예정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 받은 자로 함
- 주요 공종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은 등 부실하게 설계된 경우에는 설계자에 대하여 용역입찰 참가제한 등 조치 가능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와 협의
- 세부설계자는 기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설계를 실시하되, 기본계획의 주요한 변경, 방조제 및 배수갑문 형식 및 구조의 변경, 주요 공법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발주》

시·도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을 기본계획 및 농림수산식품부가 배정한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승인
 - 사업시행계획을 면밀히 검수하여 미비사항은 보완 조치
-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예산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세부설계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도에 승인 신청
- 시·도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발주 및 착공

《공사추진》

시·도

- 총사업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별도 시달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조정·관리
 - 설계 또는 착수이후 물가변동, 시설물 안전성 제고 및 법령 개정 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증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승인
- 사업시행을 변경 승인하였거나,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수혜면적의 증감,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증감,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등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설계보완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동일 시·도에서 사업시행중인 기존 계속 지구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방조제, 배수갑문 등 주요공종의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기에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비교적 간단한 공작물이나 잔사업량이 경미한 공정 등은 영농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 하며,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호우기간 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뚝, 중장비 등)를 확보하는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함
 - 공사감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
 - 공사감리자는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 확인),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월별 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

시·도

- 사업시행지구의 사업기간을 가능한 확정 관리토록 하고, 사업지구별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함
-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함
- 방조제, 배수갑문 등 핵심공종은 수해대비 공정을 감안하여 지원함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
-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동일 시·도에서 사업시행중인 기존 계속지구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사업시행자(시·군,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

6. 성과측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의 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
- 계획대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조사
- 지자체의 예산 조기집행상황을 파악하여 농림사업 지자체 평가시 반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평가한 결과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체 시·도별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 평가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평가
 - 사업대상지구 선정시 선정기준 부합 여부
 - 사업대상지구 선정을 위한 지구별 우선순위 부여에 대한 적합 여부
 - 준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포함)
 -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지구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1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신청
- 농림수산식품부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11년도 예산 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지구 ○○관리 방조제개보수사업 시행인가 결과



○ 지구명 : ○ 면 적 : ha,
 ○ 위치 : 도 시·군 읍·면 ○ 사업시행자 :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 종 승인액	'09까지	'10예산	'11이후	비 고
과 목	공 종 별					
합 계						
○ 공 사 비						
- 순공사비	소 계					
	방 조 제 배수갑문 기 타					
- 지급자재대						
○ 용지매수 및 보상비						
○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기타						

< 기본계획 대비 변경내역 >

- 변경액 : → 백만원(%)
- 공종별 변경내역 및 사유 :

< 농림수산식품부 지시내용 이행내역 >

구 분	지시내용	이행내역

※ 기본계획 수립 및 기타 지시내용

[별지 제2호 서식]

○○관리 방조제개보수사업 진도보고



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위치		면적 (ha)	총 사업비	'09까지	'10계획 및 실적				'11이후	사 업 시 행자	
	시군	읍면				총예 산액 (A)	집행 계획 (B)	집행실 적 (C)	%			
									C/ B			C/ A
					()	()	()					
					()	()	()					
					()	()	()					

※ ()내서 :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진 사유] : 집행계획 대비 80%미만인 지구명 및 부진사유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지구 ○○관리 방조제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결과보고

1. 지구명 : 2. 수혜면적 : ha 3. 사업시행자 : 4. 주요공사 :
 5. 사업비 지원(변경전 기준)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변경전)	'09까지	'10예산	'11이후

6. 시행계획 변경내역 : 수혜면적 (현행) (변경)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현행	변경	증 감		
			소계	물가변동	물량변동
계					
- 공사비					
- 용지매수보상비					
- 기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기타					

[물가변동] 기준시점 비교시점 인상율 인상액
 [물량변동] ※ 공종별 변경내역을 “1. 필요성, 2. 변경내역, 3. 미반영시 문제점, 4. 당초 설계자 의견, 5. 기타 도면 및 참고자료” (필요시 표로 작성)
 [농림수산식품부 지시내용 이행내역]

[별지 제4호 서식]

○○지구 ○○관리 방조제개보수사업 준공처리 결과보고

1. 사업지구현황

- 위치 : ○ 수혜면적 : ha ○ 총사업비 : 천원 ○ 사업시행자 :
 ○ 주요시설 - 방 조 제 : L= m(평균높이= m, 제정폭= m)
 - 배수갑문 : 개소(m × m × 려)
 ○ 사업시행인가일 : ○ 착공 연월일 : ○ 준공년월일 :
 ○ 설계기관 : ○ 공사감리 : ○ 시공업체 : ○ 사업효과 :

2. 연도별 검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인가액	준공 검정액	증감	연도별 검정내역				
수 입	계								
	국 지방 기 타								
지 출	계								
	- 공사비 · 순공사비 · 자 재 대 - 용지매수보상비 - 기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기타								

6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 장 김일환 사무관 신동원	02-500-1827 02-500-1832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질처 지하수관리팀	팀 장 원종근 차 장 조재경	031-420-3711 031-420-3717

I. 사업개요

1. 목 적

- 가뭄발생지역의 당면영농을 위한 관정 및 간이용수원 개발·관리, 양수급수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 등의 용수대책비를 지원하여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 최소화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가뭄발생지역에 긴급 용수대책 지원으로 가뭄극복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수리답율(%)	80	79.3	79.5	79.8	2011.1	수리답면적/전체 논면적×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737,122	31,250	28,750	25,875	83,750
보 조	452,868	25,000	23,000	20,700	69,300
지방비	284,254	6,250	5,750	5,175	17,325

※ '94년부터 지원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군·자치구, 한국농어촌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시·군·자치구, 한국농어촌공사

3. 지원대상

- 가뭄발생지역의 당면영농을 위한 관정개발 및 관리, 간이용수원 개발, 양수저류, 저수지준설, 양수급수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 등의 용수대책비를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뭄발생지역 관정개발, 간이용수원 개발, 양수저류, 저수지준설, 양수급수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 지하수시설물 점검·정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이미 개발된 지하수시설물의 활용성 증대와 점검·정비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도별로 배정된 예산의 10% 이상을 지하수시설물 관리에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형태 및 기준 : 자치단체보조,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의무량 : 사업계획서상 사업량(가뭄극복에 소요되는 용수대책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도별 예산 배정액 내에서 시·군 등 사업대상자에게 지원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요구한 사업대상 예산소요를 검토·조정
- 시·도에서 신청한 내역에 대해 가뭄대책 집중관리지역 면적, 천수답면적, 사업의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성, 지방비부담 가능성 등을 검토

시·도

- 시·도는 관할 시·군의 사업대상 예산소요 조정·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

시·군

- 시·군은 가뭄지역조사 결과,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세부사업별 사업대상 후보지를 시·도에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사업대상 후보지도 해당 시·군에서 시·도에 신청

<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기준 >

-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여 영농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천수답 등 농경지)
- 가뭄상습지 가뭄대책 집중관리지구 등(1,633지구, 58천ha, 농림부 용수 51320-610(2002.8.30)호)
- 지자체별 가뭄대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구 관리 및 선정 지원
 - 예) 수혜면적 5ha이상 집단화된 우량농지(농업진흥지역)로 수리시설 미비 또는 내한능력 부족으로 작은 가뭄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 단, 5ha미만 우량농지는 지자체에서 별도 선정 기준 마련 추진 등
- 가뭄을 대비하여 기존 시설물의 점검·정비 및 관리 철저
 - 지하수시설물의 경우 지자체별 보유관정을 대상으로 영농기전 점검·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대상 관정을 선정
 - ※ 지하수시설물의 관리(지하수법 제7조의3, 제9조의5, 제20조)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 검사 및 정비, 수질검사 및 허가연장 영향조사 등
- 관정개발 지구 선정시에는 농촌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자원관리사업(농촌지하수넷, www.groundwater.or.kr)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대상지구 선정

2. 사업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가뭄대책비 소요, 수리불안전답을 등을 고려하여 시·도에 예산 배정

시·도

- 시·도는 당해 연도 배정예산에 대하여 시·군별 사업대상 우선순위, 지방비 부담능력 등을 토대로 예산을 확정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시·군에 시달

시·군

- 시·군은 당해 연도 배정예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 후보지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지구 선정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사업대상지 포함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

- 시·군은 당해 연도 배정예산에 대하여 지방비 확보 등 세부사업별 사업시행 계획 수립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함

<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유의사항 >

가. 계획수립 유의사항

- 기상예보 및 전망에 따라 지역의 부존수자원과 절수대책 및 가뭄대처능력을 사전에 검토
-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는 가뭄대책 예비비 성격임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당면영농을 위한 가뭄대책사업을 우선하는 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가뭄을 효율적으로 사전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의 점검·정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지하수시설물의 기술진단 및 정비 필요시는 「농업용 지하수시설물 관리지원단 (농림부 기반정비과-4013(2006.12.22)호)」에 기술지원을 받는 등 관리 철저

나. 사업시행 유의사항

- 하천굴착 등은 소나기성 강우에 대비 제방안전, 기자재의 유실 및 전동기 등의 침수방지 등에 대비하고 배수장애물을 제거하면서 풍수해 사전대비 간이용수원 개발을 추진하여야 함
- 전기모타를 설치 양수할 경우 감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다. 가뭄대책 장비 및 자재 확보

- 간이용수원 개발을 위한 중장비 등 확보
 - 하천굴착용 백호, 도자, 트럭 등 확보에 노력

- 자재확보 공급
 - 양수기, 송수호스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 비우심지역의 장비 및 자재 활용방안 강구

라. 가뭄지역조사 및 사업시행 건의

- 시장·군수는 가뭄이 발생하면 현지의 가뭄상황 및 대책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가뭄상황 및 대책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 현황(위치도, 가뭄상황, 농지의 고갈, 균열, 저수율, 항구대책 시설가능성 등)
 - 사업의 필요성과 개발효과
 -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시·도에 통지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당해 연도 예산에 대하여 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

시·도

-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당해 연도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교부된 국고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를 확보하여 시·군에 재교부
 - 체계적인 지하수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진단 및 정비비 등을 「농업용 지하수시설물 관리지원단」에 직접 지원 가능

시·군

- 시·도에서 배정된 당해 연도 자금을 대한 지방비를 확보하여 자금 집행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대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재교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군

- 사업시행자인 시·군(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은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사업추진 상황을 매 반기별로 시·도에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시·군은 농업기반시설물 관리규정 등에 따라 준공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
 - 농업용 공공 대형관정의 개발·이용, 점검·정비 등의 기술지원은 「농업용 지하수시설물 관리지원단」을 활용하고, 관리 내용은 농업용 관정관리시스템(농촌지하수넷, <http://www.groundwater.or.kr>) 및 시설물관리카드에 기록하여 이력관리

시·도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는 자금집행 적정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시·도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
 - 농림수산식품부는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 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점검 실시

《제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 및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
 - 시·도 및 시·군에서는 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잡수입, 불용액, 이월액 등 수익은 당해사업 수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자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6. 성과측정단계

-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의 전년도 사업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
 - 대상기간 :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 평가요소 :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홍보 등 프로세스별 성과달성여부 등
 - 평가방법 : 평가요소별 답변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전담부서에서 평가
- 시·도(지자체) 농정업무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상반기)
 - 대상기간 :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 평가요소 :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
 - 주요내용 : 대형관정 및 양수장비의 가동율, 정비비 확보 등 재해대책 시설물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가뭄 사전대비의 효율성 제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환 류》

-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

1.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가. 총괄

(금액 : 백만원)

시·도 (시·군)	농업용수개발계획(개소)						사업비			비고
	계	관정개발	소규모양수장	저수지준설	관정관리	기타	계	국고	지방비	
계										

나. 세부내역

○ 사업명 :

시·도 (시·군)	지구명	위치		수혜면적 (ha)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시군	읍면			계	국고	지방비	
계									

- ※ 1. 사업명 : 관정개발, 양수장설치, 저수지준설, 관정관리, 기타
 2. 사업량 : 관정개발(공, 비고에 암반대형관정, 소형관정 구분), 양수장설치(개소), 저수지준설(천m³)
 관정관리는 청소, 정비, 수질검사, 허가연장영향조사 등을 구분 표시(공),
 기타(개소, 배수로보수, 저수지보강, 보수 등)

2. 2010년 추진현황

(금액: 백만원)

사업명	계획		추진실적 (개소수)					비고
	사업량	사업비(A)	착수준비중	공사중	완료	실형액(B)	B/A(%)	
계								
○ 관정개발								
○ 양수장설치								
○ 저수지준설								
○ 관정관리								
○ 기타								

- ※ 1. 사업량 : 관정개발(공), 양수장설치(개소), 저수지준설(개소), 관정관리(공), 기타(개소)
 2. 사업비 : 국고기준, ()외서 지방비
 3. 추진실적 : 상단에 개소수, 하단에 ()로 완료예정일 기재
 - 착수준비중 : 미착수지구(개소)수 기재
 * 사업량(계획) = 착수준비중 + 공사중 + 완료지구수

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 장 김일환 서기관 전경구	02-500-1827 02-500-1839
한국농어촌공사	시설안전처	처 장 정진호 팀 장 심문산	031-420-3116 031-420-3821

I. 사업개요

1. 목 적

- 노후·과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 저수지, 양·배수장 및 수로 보수·보강, 저수지 준설, 안전진단 등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8조, 제10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22년까지 저수지 등 수원공 8,769지구 추진목표
- 2010년에는 410지구 추진계획(준공 80, 계속 246, 신규 84)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수리시설 개보수율 (누계%)	68.1	65.3	66.2	67.2	2011.1	(개보수 완료지구수 / 개보수 대상지구수)×100
▪ 수리시설 피해율 (누계%)	0			0	2011.1	(피해시설수/개보수시설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4,047,798	382,330	467,000	380,000	5,774,664
보 조	4,018,898	382,330	467,000	380,000	5,774,664
용 자	20,253	-	-	-	-
자부담	8,647	-	-	-	-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리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또는 세부설계가 완료된 지구
- 「재해대비」와 「영농편의」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배분을 및 시·도별 예산은 국가재정법 제37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의 총액계상 예산사업 협의 결과에 따라 배정
 - 재해대비 분야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농림수산물부가 사업지구 선정 및 예산 배정
 - 다만, 재해위험 등 긴급히 시설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개보수 계획 수립·추진
 - 영농편의 분야는 농림수산물부에서 배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가 사업지구 선정 및 예산 배정

< 재해대비 및 영농편의 유형구분 >

구 분	보수·보강 분야
재해대비 (수원공)	- 노후·파손 또는 기능저하로 재해위험이 있거나 효율성이 낮은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및 평야부 중요 구조물의 보수·보강 * 평야부 중요 구조물 : 대규모 수로(저폭 5m이상), 수로교(단면1.1×1.1m이상), 수로터널(2R=1.8m이상) - 수리시설의 안전상태 및 보수·보강 방안강구 등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영농편의 (평야부)	- 구조물이 파손되어 용수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물 손실이 많고 수초번성 및 토사퇴적 등으로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흙수로 및 친환경 공간정비 효과가 큰 수로의 보수·보강 - 토사 퇴적으로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저수지의 준설 - 농기계 통행 도모를 위한 농로 교차로 및 농경지 진입로 확장

3. 지원대상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노후·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 등 수원공 및 평야부 수로에 대한 보수·보강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저수지 중 토사가 퇴적되어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저수지의 준설
-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군 관리지역의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농로 교차로 및 농경지 진입로 확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리시설 보수·보강 공사비(자재대 포함)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 정밀안전진단 경비 등으로 집행

5.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민간자본보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 * 총사업비는 수리시설 보수·보강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써, 공사비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52호 ; '08.11.5.참조)
- 정밀안전진단 사업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립하여 보고하는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승인한 금액으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신청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및 해당 시·도에 제출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재해발생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현지답사 후, 시·도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예정지 조사를 신청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을 첨부한 개보수 사업계획 수립 제출
 - * 택지조성 등 타 사업계획이 예정·수립된 지역, 배수개선 등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시행하는 것이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은 개보수 대상에서 제외

시·도

- 시·도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요청 등을 토대로 필요시 사업 예정지 조사 실시
 - 예정지 조사시 지구현황, 공종별 사업비, 사업효과, 위치도 및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재해위험의 시급성과 해소방안, 영농편의 등을 포함 조사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예정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선정기준과 우선순위를 감안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다만, 가능최대홍수량(PMF ; Probable Maximum Flood) 적용지구는 예정지 조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2. 사업지구 선정단계

《개보수 유형별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1) 재해대비 개보수

○ 노후시설 기능회복

선 정 기 준	우 선 순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위험 등 개보수가 필요한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시설 및 평야부 중요 구조물 - 재해시 하류지역 피해, 시설 노후 정도 및 규모 등을 감안, 신규지구 선정 - 배수개선 등 타 사업계획이 수립 되었거나,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높은 지역은 개보수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안전진단결과 D·E등급 시설 또는 집중호우시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한 시설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로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 -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 이내 시설물 중 주요 부분이 D등급인 시설 - 안전점검결과 재해취약시설로 지적된 시설 - 기타 재해위험 또는 시설노후 등 기능저하로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

○ 홍수배제능력 향상 등 기능개선

선 정 기 준	우 선 순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저수량 100만^m이상, 유역면적 1,000ha이상인 저수지 중 재해위험이 높아 수문학적 안정성 평가(계획 수문량 재검토) 및 재해대비 보강이 필요한 시설 - 저수지 제체높이 15m이상으로서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하고 제당하류에 집단가옥이 있어 저수지 붕괴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상 1종 시설인 배수능력 2,000HP 이상인 배수장 (양·배수장 겸용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면적이 넓고 제당하류부에 집단가옥 및 공공시설물 등이 있어 재해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저수지 - 하천 주변 저지대에 위치하여 집중강우시 침수취약으로 보강이 시급한 배수장 - 수리시설개보수 시행계획이 수립된 시설 중 설계기준 미달 등으로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 및 배수장 - 과거 태풍 및 수해피해 경력이 있는 지역으로 피해재발 우려가 있는 시설

○ 양·배수장 리모델링

선 정 기 준	우 선 순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노후 및 현행 설계기준 미달로 기능발휘가 어렵고, 외관불량으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양·배수장의 기계, 전기 및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지대에 위치, 상습 침수되는 전기시설 - 침수시 가동이 불가능한 기계시설 - 현행 설계기준에 미달되어 제기능 발휘가 곤란한 기계, 전기시설 - 도로, 철도변 등의 가시권과 관광지에 인접한 외관불량 양·배수장 - 해안, 하천에 인접한 수문시설 중 시설 노후로 역류위험이 높은 시설

(2) 평야부 개보수(영농편의)

선 정 기 준	우 선 순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로 구조물이 노후·파손되었거나 구조물화를 요하는 흙수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토구간에 위치하여 사면붕괴가 우려되거나, 누수손실이 많아 유지관리가 어려운 흙수로 - 수초번성 및 토사퇴적으로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수로 - 수질오염으로 용수대체가 필요한 수로 - 수해가 우려되는 수로 또는 민원발생 수로 - 보수·보강중인 수원공시설과 연계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수로

농림수산식품부

- 재해대비(수원공) 분야의 사업지구는 정밀안전진단결과 및 시·도에서 제출한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선정
 - 가능최대홍수량(PMF) 적용지구는 예정지조사결과를 토대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후 시·도에서 기본조사 등 추진

시·도

- 영농편의(평야부) 분야의 사업지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시·도별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도가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세부설계 실시와 시행계획 수립》

농림수산식품부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해대비(수원공) 분야에 선정된 사업지구를 시·도에 통보
 - 가능최대홍수량(PMF) 적용지구는 예정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추진

시·도

- 사업시행자가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토록 조치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에 세부설계가 완료되도록 지도·감독
 - 설계자는 시설관리자(사업시행예정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 받은 자로 함
- 주요 공종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설계된 경우에는 설계자에 대하여 용역입찰 참가제한 등 조치 가능

한국농어촌공사(세부설계자)

- 기본계획을 토대로 측량설계를 실시하고, 사업확장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로는 수원공 시점부터 전체 수로에 대한 선형기본계획 및 수로조직표를 작성하고, 사업비 부담, 내구연한, 용수공급능력 조절(유속에 의한 시간단축, 공급배분) 등을 충분히 고려
 - 수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촌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 수로정비를 적극 반영
 - 용·배수의 흐름에 장애가 되는 제수문, 취입보는 최대한 설치를 억제하고, 암거시설은 통수단면 확보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로 계획
- 저수지, 양·배수장에 대한 성과품을 제출할 때, 시설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 운용지침을 작성 및 제공
-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공법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되, 개산설계는 허용하지 않음

- 마을 인접지역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친환경적으로 계획하되, 수로 주변의 주민편의시설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안 강구
 - 수로 본연의 기능과 거리가 먼 공종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지방비 등 타 분야의 사업비를 부담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발주》

시·도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은 기본계획 및 농림수산식품부가 배정한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승인
 - 사업시행계획을 면밀히 검수하여 미비사항은 보완 조치
 - 최신 기술 반영유도 및 최적대안 제시여부 등 검토 조치
 - 재해대비(수원공) 분야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예산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세부설계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승인 신청
- 시·도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발주 및 착공

《공사추진》

시·도

- 총사업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별도 시달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정 및 관리
 - 설계 또는 착수이후 물가변동, 시설물 안전성 제고 및 법령 개정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승인
- 사업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거나,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준공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준공검사를 실시
-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종과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기에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비교적 간단한 공작물이나 잔사업량이 경미한 공정 등은 영농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며,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하절기 호우기간 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뚝, 중장비 등)를 확보하는 등 현장관리에 철저
- 공사감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에 보고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
- 공사감리자는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
-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추진상황을 파악하며 수시로 현장을 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따름
-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 확인),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한 준공도서를 시·도에 제출 및 준공검사를 신청

4. 자금 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총액계상 예산사업 협의 결과를 토대로 당해 연도의 예산을 시·도에 내시 (1~2월)하고, 월별 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예산 재배정

시·도

- 시행지구의 사업기간은 사업규모 및 추진공정 등을 감안, 가능한 확정 관리 토록 하고, 지구별로 사업기간과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
- 준공지구 및 재해대비 공정에 대하여 우선 지원
- 당해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해당 시·도에서 시행중인 계속지구에 배정된 예산으로 조정·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는 타 지구에 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 시·도의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의 책임하에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사업추진상황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현지점검 확인을 실시
 - 점검일정 : 연간 2회(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지자체 및 농어촌공사 합동
- 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 명령을 할 수 있음

시·도

-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사업비 정산 및 시설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인계
-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
-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금은 예산회계 관련법령에 따라 정산 등 적법하게 처리

6. 성과측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준공결과 보고에 따라 매년도 준공지구수, 사업추진율 등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다음연도 1월까지 측정
- 사업시행자 및 수혜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만족도 조사 실시(11월중)
 - 사업시행 후 만족도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지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평가 결과와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평가
- 농림수산식품부는 평가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평가
 - 사업대상지구 선정시 선정기준 부합 여부
 - 사업대상지구 선정을 위한 지구별 우선순위 부여에 대한 적합 여부
 - 준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포함)
 -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는 2011년도 신규지구에 대하여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사업규모, 시급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신규지구 선정 통보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

저수지 준설시 고려할 사항

1.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 농림수산식품부가 시설관리과-146('08.1.15)호로 통보한 「준설대상지 조사보고서」 상의 준설대상지 중 준설이 가능한 저수지를 대상으로 내용적 측량을 실시하여 준설량 및 용수부족량 등을 확인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토사퇴적으로 저수용량이 부족하여 가뭄시 상습적으로 용수가 부족한 저수지
 - 준설여건이 양호하고 사업비가 저렴, 사업효과가 높은 지구
 - 준설토를 활용할 수 있고, 사토장 확보가 용이한 지구
- * 「준설대상지 조사보고서」의 작성시점과 비교하여 수혜면적 및 필요수량 등의 여건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내용적 측량을 생략하여 「준설대상지 조사보고서」의 준설 필요량 범위 내에서 준설 가능
- 「준설대상지 조사보고서」의 준설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은 저수지를 준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적 측량을 실시하여 물 부족여부 등 준설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상지로 선정
- 준설이 시급하지 않거나 효율성이 낮은 저수지의 준설은 순연 또는 제외하고, 수질개선 및 농업용수의 공급 등 다른 목적의 준설은 타 사업비로 추진
 - 하천을 보충수원으로 저수지 급수지역에 양수 급수할 수 있는 저수지
 - 수혜면적이 저수지 축조당시 보다 많이 감소된 저수지
 - 2개이상 저수지가 수계의 상하류로 연계되어 저류량이 충분한 저수지
 - 저수량(저수율)이 영농에 충분한 저수지

2. 조사설계 및 사업계획 수립

- 시·도는 예정지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의 준설여건 및 가뭄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준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
 - 농어촌공사가 시설유지관리 자료 및 현지답사자료를 기초로 수립한 대책을 예정지조사로 갈음할 수 있음
- * 농어촌공사는 시·도에 예정지조사 신청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준설계획을 첨부
- 시·도는 농어촌공사가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한 세부설계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시 보완 조치
 - 당초의 내용적 평면도가 있는 지구는 이를 참고하여 퇴적부위별 퇴적사항, 준설필요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공법을 선정
 - 준설토는 전문기관을 통해 토양조사를 실시하여 가능한 유용함으로써 사토비를 절감(객·복토용, 도로성토용, 저습지 매립용,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등)
 - * 국토해양부의 토석정보공유시스템(<http://www.tocycle.com>)을 이용
 - 사토장은 홍수시 준설토의 재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

- 당해년도 예산에 맞춰 가능한 갈수기에 육상준설 계획을 수립하되, 육상준설이 곤란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수중준설 계획을 수립
- 가능한 관개기전에 완공하고, 준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저수지의 물을 배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고예산으로 준설하는 지구에서 발생된 골재매각대는 준설사업에 재투자
- 부실공사 방지 및 민원방지 등을 위해 지역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3. 준설현장 및 사토장 관리(한국농어촌공사)

- 준설현장 관리
 - 사업착수전 내용적 측량을 실시하고, 저수지 상류 유입부의 좌·우측에 20m간격 격자망의 기준점을 각각 상·하류 2개소를 설치하고, 만수위(물넘이 표고)를 기준한 假BM을 설치
 - 내용적 측량(준설지역)은 저수지 평면도 또는 지적도에 水準측량 결과를 표시하고, 水準측량은 기준점에서부터 20m간격으로 종횡단의 격자망 위치에 대하여 지반고를 측량(소규모 저수지는 종·횡단면도 작성 가능)
 - 준설공사를 완공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즉시 시행후 내용적 측량을 하고 시행전후의 내용적 비교에 의하여 준설토량을 산정
- 사토장 관리
 - 준설토량의 반출은 반출대장에 일시·위치·용도·차량대수 및 수량을 기재하고 공사감독원이 서명·날인
- 검 사
 - 검측은 한국농촌공사 기술직원 2인이상이 하며, 공사 일시중단시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자가 평면도 및 내용적계산서(또는 종횡단도)에 날인후 보관
 - * 저수율이 상승하여 수중으로 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심측량 실시
 - 사토장 검측을 실시한 후 용적을 산정하고 준공도서와 함께 보관

< 준설현장 및 사토장에 비치할 사항(요약)>

구 분	준설지역	사 토 장
착공전	○ 저수지 평면도 위치표시 ○ 수중측량 또는 종·횡단면도 ○ 내용적표 및 도면 ○ 사진	○ 지적도 면적 산출 ○ 지반높이 측정(가B.M 설치) ○ 종·횡단면도 ○ 사진
공사중	○ 사진	○ 사진
공사후	○ 측량 성과품 - 표고 및 면적기재 평면도 - 토량산출 계산서 ○ 작업일지(기종, 대수, 토량 반출대장) ○ 사진	○ 측량 성과품 - 표고가 기재된 평면도 - 토량산출 계산서 ○ 사진

「별지 제1호 서식」

○○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수혜면적 :
- 시설규모 및 제원 :
- 사업내용 :
- 시행계획 승인(시행계획 수립)일 :
- 시 행 자 :

2. 인가내용

<사업량>

공 종	시행계획수립 (기본계획)	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 감	당해연도 ②	잔사업량 (①-②)

* 수원공이 여러 곳일 경우 수원공별로 작성

<사업비>

(단위 : 천원)

공 종	시행계획수립 (기본계획)	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 감	당해연도 ②	잔사업량 (①-②)

* 사업비 수지예산서에 준하여 작성

3. 검토내용

<세부설계시 기본계획에 따른 검토사항 이행내용>

검 토 사 항	이 행 사 항

<지시조건 등 이행사항>

4. 조치내용

※ 덧붙임 : 사업비수지예산서(별지 제2-1호 서식) 및 위치평면도(1/25,000~1/50,000)

「별지 제2호 서식」

○○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 결과보고

1. 위 치 :

2. 수혜면적 :

3. 사업내용 :

(당 초) ※ 수원공이 여러개일 경우는 수원공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변 경)

4.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5. 시 행 자 :

6. 추진현황(물량)

항 목	총 계 획		전년도 까지	당해연도계획		차년도이후계획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저수지>							
-							
<○○양수장>							
-							
<평 야 부>							
-							
-							

※ 항목은 수원공 및 평야부로 구분하여 작성

7. 보완내용

구 분	보 완 내 용				보완내용에 대한 의견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당초	변경	증감		
단가인하 낙찰차액 물량보완 - - 공감비 등				증액사업비를 말함	

※ 사업비는 순공사비 + 자재대 + 부가가치세 등 공종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계

「별지 제2-1호 서식」

사업비 수지예산서

○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00까지	'00계획	'00이후	
합 계							
○ 공사비							
- 순공사비							
· 저수지							
· 양수장							
· 평야부							
· 부대공사							
- 자재대							
○ 보상비							
- 직접보상비							
- 간접보상비							
○ 시설부대경비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별지 제2-2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m²,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 감		기정산액		당해년도		차년도이후		비고 (증감 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증감사유를 반드시 명기

「별지 제2-3호 서식」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공종별	기 승 인 액	금 회 승 인 액	연도별 내역			보완후 증감액					비고	
			기 정 산 액	당 해 년 도	차 년 도 이 후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입찰차액		
계												

※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

「별지 제2-4호 서식」

연도별 사업시행계획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차수 (년월일)	총사업비	공사비			기타	공사비 증감 내역						
		소계	순공사비	자재대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입찰차액	기타	

※ 최초 인가시부터 최종 변경시까지 차수별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결과보고

1. 사업지구 현황

- 시설명 :
- 위치 :
- 수혜면적 : ha
- 총사업비 : 백만원
- 사업내용 :
- 시행자 :
- 착공년월일 :
- 준공년월일 :

2. 사업 시행전후 시설변동 현황

당 초	준 공 후

3. 연도별 사업비 검정내역

구 분	최 중 인가액	연도별 검정내역 (백만원)								비고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 준공지구 도면(1/25,000) 및 주요공종에 대한 사업시행 전·후의 사진을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지구 저수지 준설사업 계획

(시설관리자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1. 시설개요

- 저수지명 : (주, 보조, 부속 수원공 구분)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 수혜면적 : 준공인가면적 : ha, 현재급수면적 : ha
- 유역면적 : ha (유역배율 : 배)
- 시설제원(축조년도 : 년)
 - 제 당 규 모 : 높이 H= m, 길이 L= m
 - 만 수 면 적 : ha 만수시 평균수심 : m
- 저수지 준설 타당성 검토

저수지내용적 측량결과(07.12)		용수공급능력		준설필요량	준설우선순위
총 저수량	유효저수량(A)	필요저수량(B)	부족량(B-A)		

(단위 : 천m³)

* 저수지 퇴적량 및 용수공급능력 등 준설필요성을 검토하여 용수가 부족한 저수지에 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정지 조사 신청

2. 준설사업 계획

- 저수량증대 목표
 - 유효저수량 : 준설전 천m³, 준설량 천m³, 준설후 : 천m³
 - 골재매각 수익 발생시 : 골재명 천m³, 수익 백만원
 - 농경지복토, 성토재 유용시 : 용도명 천m³, 수익 백만원
- 현재의 저수율 : % (년 월 일 현재)
- 준설사업계획

구 분	총계획	까지	전년실적	당해년계획	차년도이후	비고
준설량 (천m ³)						
사업비 (백만원)						

※ 준설 1m³당 단가 원, 사토거리 km

3. 추진상황

- 설계완료일 : (설계자) ○ 시행승인일 :
- 계약 일 : ○ 착 공 일 :
- 본격적인 공사기간(전망) : . . ~ . [백호우 : 연 대(일평균 대)
트럭 : 연 대(일평균 대), 도차 : 연 대(일평균 대)]
- 수익금 재투자 계획 : (언제 어느 지구에 얼마 투자계획인지 표기)

4. 기 타 (저수율이 높아 공사가 어려울 경우 예산집행 대책)

8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 장 김일환 사무관 신동원	02-500-1827 02-500-1832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정비처 사업관리팀	팀 장 박종대	031-420-3651

I. 사업개요

1. 목 적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기계화로 안전·편의영농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조 내지 제10조, 제108조, 제11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촌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고, 농지를 집단화·규모화된 안전영농지로 정비하여 재해대비 및 영농편의 향상
 - 2013년 까지 국고 49,713억원을 투입하여 가뭄상습지 107.5천ha를 10년 빈도 이상의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담화 추진

성 과 지 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7	'08	'09		
▪ 사업추진율(%)	58 (62.2)	50.6 (54.4)	52.7 (56.5)	57.5 (61.8)	2011.1	(준공면적누계/개발목표 면적)*100
▪ 수리안전담율(%)	46.6	45.5	45.9	46.5	2011.1	(재정집행실적누계/투자 목표)*100

※ () : 준공면적 누계(천ha)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3,614,885	200,000	309,800	182,500	664,115
보 조	3,614,885	200,000	309,800	182,500	664,115
용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 농업·농촌종합대책('04~'13년), 총계획기간 : '95~'13년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 가능(사업시행자에게 지원)

3. 지원대상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에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형태 및 기준 : 민간보조, 국고 100%
- 사업의무량 : 지구별 사업계획서상 사업량(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용수로 등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종)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세부설계결과에 따른 지구별 소요사업비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대상지구 선정》

- 수혜면적이 50ha이상이며 사업시행에 제약사항이 없고 효율이 양호한 지구
- 농업진흥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함.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제주도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지구로 상당기간 영농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등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을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역주민 2/3이상의 동의와 광업권 등 권리자 모두의 동의가 가능한 주민이 사업시행을 원하는 지구
-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시행가능한 지구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저수지>

- 저수지 위치선정은 지역실태(저수지 상류부 포함), 주민의 개발 희망사항, 수문,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안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농지가 과다하게 수몰되거나 마을이 수몰되어 집단 이주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가뭄상습지역에서는 지역 가뭄특성에 맞는 가뭄대응능력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함.
- 유역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수지 계산을 Carry-over System 등으로 비교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특히 간접유역에서 도수할 경우에는 그 유역의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축제용 토취장 및 석재장은 가까운 거리순으로 매장량을 조사한 후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선정하여야 함.
- 신설되는 저수지의 수혜구역내 소류지, 취입보 등 소규모 수리시설에 대

하여는 저수지 설치 후의 기능을 정확히 검토하여 이를 저수량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저수지 하류부에서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과수, 축산, 초지, 화훼, 특용단지, 하천유지용수 등의 용수수요도 조사하여 저수지 규모결정시 고려하고 필요시 재해대책차원에서 비상수문 설치를 고려하여야 함.
- 유역면적이 넓어 홍수조절이 필요한 저수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문 설치 등 홍수조절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함.

<양수장>

- 양수장 위치는 하천유심변동으로 매몰되지 않을 장소에 선정하여야 하고, 홍수시 침수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 갈수량 산정시는 상·하류부에서의 취수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 유사가 많은 곳은 양수기 기종선정과 취입구조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하고 도수 압거의 퇴적토사 제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용·배수로>

- 용·배수로 설계는 경지정리사업을 고려하여 설계함이 원칙임.
- 용수지거는 조립식 구조물을 활용함.
- 마을, 집단분묘, 과수원 및 특작지역 등에서는 민원발생 요인이 많으므로 설계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중장기계획에 따라 예정지조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는 전문기술자의 참여하에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예정지조사 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 현황(농업진흥지역지정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 현황, 배수현황 등)
 -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 사업시행 효과
 - 위치도

- 지역개발 여건(사업의 필요성, 사업제약 여건, 연관사업계획 등)
- 지역주민 의견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은 예정지에 대한 답사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시장·군수 의견서 첨부)
-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의 예정지 신청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해당 지역본부의 사업시행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함.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조사비는 확보된 예산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1조에서 정하는 요율 범위 내에서 집행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서(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송부함.

시·도

-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기본 조사를 건의할 수 있음.
- 수혜면적 50ha 이상의 기본조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 중장기계획의 추진, 예산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 하여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시에는 수혜민의 개발희망도 조사(비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업진흥 지역 편입의향 조사 등)와 지역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의견을 듣고 지역의 특수성(기존 수리시설의 물리 및 내한능력, 생활용수 확보계획 등)을 감안하여 사업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되 용수개발 외에도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함.

- 평야부는 특수한 지형여건을 제외하고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을 전제로 한 용수로 간·지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기본조사시에는 사업시행 후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홍수예경보, 급수관리, 수질관리 및 용수로의 관수로(Pipe Line)화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서(안)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함.
 - 기본계획의 개요
 - 기본설계도서
 - 사업비 수지예산서
 - 사업비 내역
 - 사업효율 분석결과
 -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 사업지구현황(진흥지역 지정,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 현황 등)
 - 개발계획과 주요공사 내용
 - 사업시행 여건(지역주민 사업시행동의 여부, 시장·군수·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의견, 연관사업, 권리설정 내역, 제약사항 등)
 - 조사자 인적사항
 - 종합의견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50ha 이상의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지구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중에서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세부설계를 실시하도록 함.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신규 착공지구를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

시·도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가 완료된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주요 설계 내용과 사업비 내역을 보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함.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적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도면에 사업계획을 등재하여 고시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신규착공지구로 선정되면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시행계획을 세워야 함.
 -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4항의 특수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를 자체 실시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위탁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우수한 설계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세부설계를 실시할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및 수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며,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주요 시설의 설계도에는 현장 시공시 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시공상세도 작성을 의무화하여야 하고,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공사입찰은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공정계획》

시·도

-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에 미달하였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공정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매분기별 현재의 추진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4호서식)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또한 예산액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별지 제3호 서식)
- 공사의 추진은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거양하고 가뭄발생시 시설물의 이용가능성과 재해방지를 고려하여 당해년도 사업목표량을 설정함.
- 공정계획은 인력, 장비 및 자재의 확보 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 절차를 고려하고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평야부 공사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년도로 지정되기 전에 평야부 계획을 재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경지정리사업과 병행 시행할 때에는 농촌용수개발사업 계획서와 경지정리사업 계획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하되,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수원공, 도수로, 용수간·지선 및 경지정리구역 외의 용수로 등으로 함.
- 준공예정지구는 전년도 3월 이전에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준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보완이 완료되어야 하며, 준공지구 지정 후 설계변경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고, 준공지구 지정 후의 설계변경으로 준공이 불가능한 지구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준공지구로 지정된 이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야 함.

《시행계획변경》

시·도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설계보완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와(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설계자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의 변경은 고시 생략 가능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 중 총사업비의 변경에 관하여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름.

《용지매수 및 보상》

사업시행자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의 보상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되,
 - 수원공 및 평야부에 대한 용지매수 및 보상을 가급적 공사착공에 앞서 우선 추진하고,
 - 보상평가서는 대법원판례, 공시지가, 타지구 보상사례 등과 비교 검토하여 적정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농작물 보상 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다만, 공사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급박한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작물보상을 할 수 있음.
-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지급한 수몰대상가구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미이주 경작 등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집단민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몰지내 오염원은 담수 전에 필히 제거하여야 함.
 - 건 물 :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에 철거조치를 하여야 함.
 - 농경지 : 경고문 등을 제시하여 임의경작을 방지하여야 함.
- 과목 등의 보상은 물건조사를 철저히 하고, 평가서 검토시에는 경제수령 등도 검토하여 보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

《공사감리》

사업시행자

-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한 공사감리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함.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공사감독 복무규정, 설계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이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떠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 공사감리 용역업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신고한 업체)가 공사감리를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 파악 등 현장확인과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함.
-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에 의거 산정. 단, 당초 구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하여 공사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구는 구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하나 공사비의 변경으로 요율을 변경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함(용수 51317-828 ('96.10.4) 참고)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 고시 제2006-60호('06.10.30)로 제정하여 시행중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과 공사감리 위탁계약지침(용수51340-893('96.10.25)호)에 의하여야 함.
- 시도별로 3개지구 이상 사업지구에 명예감독원을 선정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시는 물론, 대농민홍보, 민원 사전해소 등 사업주체와 지역주민간의 교량역할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함.

《사업준공 및 검사》

시·도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함.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할 수 있음. 단, 준공검사를 위탁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자를 공사감리자가 아닌자 중에서 선정하여 수행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결과 및 지적사항 시정내용, 유지관리 지침서

(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등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기타사항》

▶자재공급 및 관리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사도급자 책임하에 공급하거나 관급으로 조달하게 함.
- 자재를 사업시행자가 관급으로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5. 7. 6)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의 규정에 의함.
- 지급자재를 구매공급함에 있어서는 공장도, 분공장도, 레일도, 하치장도 등의 가격과 수송 제조작비를 포함한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함.
- 지급자재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되, 지급자재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풍수해 사전대비

사업시행자

- 공사현장에는 가마니, 새끼, 말뚝, 폐합판 등의 수방자재를 비치함.
- 저수지 공사현장의 가제당은 우기 이전에 계획고까지 시공완료
- 공사현장에서는 기상정보에 따라 사전대비하고 공사장 내의 배수, 장애물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여야 함.
- 기자재의 유실에 대비하고 전동기 등의 침수방지 등 사전대책을 강구하며 공사 진행중인 저수지의 제당 및 하천제방의 월류, 토공수로의 붕괴시 피해의 최소화 대책을 사전에 검토함.

▶타법 관련사항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하천법 등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는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면허관청과의 협의로서 갈음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 협의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에 행하도록 하여야 함.

(예) 하천법에 의한 허가·면허의 경우 치수과와 사전 협의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국공유인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및 하천부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나, 국공유인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되어있어 유상매입을 함으로써 사업비의 증액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국공유지외의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리환을 받아 사업시행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예산의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배정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확정하여 시·도에 예산을 변경 배정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평가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여타 농촌용수 관련 사업비 및 유보예산 지원시 확대지원 방안을 강구함.

시·도

- 시·도지사는 익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지구별로 신청하며, 지구별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함.
- 사업지구의 예산은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배정한 예산을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호서식)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구별로 배정된 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변경사유 및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5월 말까지 제출
- 시·도지사는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추진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보고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은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시켜서는 안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자금을 용지매수 및 보상비로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회계 관계규정에 의거 개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자금운용 및 관리》

사업시행자

-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 자금은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공사비 보다 우선하여 집행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사업시행자)

- 공사감리자는 사업준공시 준공도서 및 시설물관리규정을 검토하여야 함.
- 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조치 후 시설물을 관리자에게 인계인수 하여야 함.
-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인계·인수 등과 관련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기준(농림부 고시 제2006-60호, '06.10.30)에 의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사업시행자)

- 사업목적에 맞게 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금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분기별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 및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도

- 시행하고 있는 사업추진상황 점검, 자금의 적정집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승인(변경승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제5호 서식등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 승인(변경승인) 후
-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 사업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 승인 보고 : 승인시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 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 보고 : 변경승인시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 예산배정결과 보고 : 지구별 예산내시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 공정계획 보고 : 공정계획 작성 또는 변경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 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말 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 자금집행상황 보고 : 매분기말 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 준공결과 보고 : 사업준공 승인 직후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상황 점검, 자금의 적정집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실태 점검(상·하반기별)

《제재》

사업시행자

- 예산지원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예산을 전액 회수조치

- 지원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될 시는 반납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지원된 예산의 투입결과 나타나는 결과물에 대하여 성과로 측정(1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환 류》

-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별지 제1호서식]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배정 결과

시·도

(단위 : 천원)

사업 시행자	위 치			지구명	주 요 시 설 명	수혜 면적 (ha)	총 사업비	00년 까지	00년 계 획			00년 이후	비 고
	군	면	리						계	국고	지방비		
계													

주) 비고란에는 준공 또는 계속지구별로 구분 표시

[별지 제2호서식]

○/4분기 농촌용수개발사업비 집행상황

시·도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사업 시행자	지구명	예산액	예산재 배정액	시·도 자 금 수령액	사업시행자 자금집행액					비고
					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계	

[별지 제3호서식]

농촌용수개발사업 공정계획

확인자(사업시행자) : (인), 검토자(공사감독) : (인), 작성자(시공자) : (인)

도 명 :

지부명 : 지구명 : 수혜면적 : ha, 착공년월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물량 단위	00연도계획		분기별 공정계획								비 고	
		물량	금액 (C)	1/4		2/4		3/4		4/4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합 계													부분급수면적 ○ 2009까지 : ha ○ 2010년도 : " ○ 2011이후 : "
순공사비													
개답비	ha												
자재대													
양회	대												
철근	M/T												
기타													
용지매수 및보상비	ha												
수원공	ha												
평야부	ha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 리 비													
잡 지 출													
조합채 비													
영 선 비													
예 비 비													

[별지 제4호서식]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상황

도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위치	사업시행자	지구명	구분	시설명	수혜면적	총사업비			기정액	간사업비	당해연도 예산			실형액	진도 (%)		공후계획 착이누실	%	비고 (부진사유)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획	실적				
시군	읍면																			
계																				

- 주) 1. 사업별로 작성
 2. 구분은 준공, 계속, 신규로 구분
 3. 시설명 : 저수지, 양수장
 4. 진도(%) : 계획은 당월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5. 부진지구는 부진사유 및 대책을 별지로 첨부

[별지 제5호서식]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결과보고)

1. 사업명 :
2. 지구명 :
3. 위치 :
4. 개발면적 : ha(신규 ha, 보강 ha)
 - ○○지 ha(신규 ha, 보강 ha)
 - ○○지 ha(신규 ha, 보강 ha)
5. 주요공사개요

공종	당초	변경	증감

6.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사업시행자 : 시공회사 : 공사감리자 :
8. 추진현황(물량)

항 목	총 계 획		2009까지	2010계획	2011이후
	당 초	변 경			
○수원공 -○○저수지 · 제당 · 이설도로 -○○양수장 · ○평 야 부 · ○용지매수보상 - 수원공 - 평야부					

※ 항목은 수원공별로 작성

9.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및 검토의견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당초	변경	증감		
○ 단가인상 ○ 낙찰차액 ○ 물량보완 - ○ 용지매수보상 ○ 공감비 등				증액사업비	
계					

10. 설계자 의견

구 분	전 설계자 의견		금회 설계자 의견	
	소속	성명	소속	성명

11. 지시조건 이행사항

○ 농림부장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시사항	검토 및 이행사항

○ 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시사항	검토 및 이행사항

12. 종합의견

년 월 일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 가. 사업비 수지예산서 및 증감대비표
- 나. 시행계획변경승인공한사본
- 다. 사업계획 개요
- 라. 시행계획변경 심사서(9번항목을 자세히 심사)
- 마. 용지매수보상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 및 변경내역
- 바. 시행계획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 사. 년도별 공사비 명세서
- 아. 지급자재조서
- 자. 공사수량 이동조서
- 차. 시행계획변경도서 (농촌용수개발사업 수지예산서 작성요령에 의함)
- 카.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변경사항 표시
- 타. 기타 필요한 사진 및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6호서식]

공사감독 배치상황

도	사업 시행자	지구명	공사감독소장		공사 감독원수	비고
			직급	성명		

주) 비고란에는 소장임명(배치) 년월일을 기재할 것

9	농업용수수질개선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 장 김일환 사무관 신동원	02-500-1827 02-500-1832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처 수질환경팀	팀 장 김호일	031-420-3791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용수원인 저수지·담수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호소내 수질개선대책 및 퇴적물 처리를 통하여 깨끗한 용수공급기반 구축,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조 내지 제10조, 제21조, 제108조, 제114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 나쁨” 등급을 초과하는 농업용저수지 53개소에 대한 수질개선사업 추진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7	'08	'09		
· 농업용수 수질개선 추진율(%)	18.9 (10)	3.8 (2)	5.7 (3)	11.3 (6)	2011.1	(착공지구수누계 / 대상 지구수)*100

※ () : 착공지구수 누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22,699	5,876	20,500	20,628	397,897
○ 수질조사	14,125	2,200	3,200	3,500	17,800
○ 수질개선	8,574	3,676	7,300	7,128	380,097
○ 퇴적물처리	-	-	10,000	10,000	-

※ 국고보조 100%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비는 사업시행중인 지구 중 2010년 예산이 편성된 지구와 기본계획 수립 또는 세부설계가 완료된 지구 중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
 - 세부설계비는 시·도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
- 기본조사비는 시·도의 신청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가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한 지구를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

3. 지원대상

-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을 초과하는 농업용저수지에 대해 호내 수질개선사업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
 - 수면·유지(溜地)를 활용, 유지관리가 용이한 환경친화적 수질정화시설 설치
 - * 습지, 저수지 유입부 침강지, 점축산화수로, 인공식물섬, 갈대 식생수로 등
 - 저수지 상류유역의 오염물질 유입 차단 및 오염부하량 삭감을 위한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하수관거정비 등이 양호한 지역을 우선 시행
 - * 상류유역 환경기초시설 설치·확충은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
- 농업용 저수지 중 퇴적량이 많고 수질오염도가 높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퇴적물처리 시범사업 추진
 - * 퇴적물 준설, 오니침전저류지, 응집침전조, 오니처리시설, 처리토양 야적장 등
 - 내용적 확보를 위한 육상준설이 시행된 저수지는 바닥 퇴적량과 수질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낮은 지구, 타법·타사업 등으로 사업에 제약이 있는 지구, 목적외 사용 등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지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질개선 사업비는 호내 수질개선을 위한 공사비(자재대 포함) 및 용지매수

보상비, 시설부대경비(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로 집행

- 퇴적물처리 시범사업비는 퇴적물 준설, 처리를 위한 공사비(자재대 포함)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로 집행
- 조사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의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관리 등으로 집행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형태 및 기준 : 민간보조, 국고 100%
- 사업의무량 : 지구별 사업계획서상 사업량(습지, 침강지, 접촉산화수로 등 수질개선사업사업에 필요한 공종)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는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 * 총사업비는 수질개선·퇴적물처리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
 - * 사업시행계획 확정 후의 낙찰가격(계약)을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조정·관리
- 기본조사비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별도 승인된 금액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예정자(한국농어촌공사)

[기본조사 대상지] : 기본조사비 집행 관련

- 농림수산식품부가 시달하는 사업예정지 조사요령을 참조하여 사업예정지 조사결과를 시·도에 제출(별도 시달하는 조사요령 참조)
 - 수질개선 : 시설물 현황, 연도별 수질자료, 투자소요액, 사업효과, 위치도, 그 밖에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한 자료 첨부
 - 퇴적물처리 :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예정지조사 내용 외에 토사퇴적량, 준설 실적, 주변溜地현황 등을 추가 조사하여 자료 첨부
- 시·군·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예정지조사와 관련하여 당해 저수지의 상류

환경기초시설 가동·설치계획 등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을시 적극 협조

[사업시행 대상지] : 사업비(세부설계비 포함) 집행 관련

- 기본계획수립 또는 세부설계가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한 신규착수와 시행중인 지구의 시행에 필요한 익년도 예산을 신청

시·도

[기본조사(기본계획수립) 대상지]

- 사업 타당성 및 시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정지조사 결과 및 기본조사(기본계획수립) 대상지를 제출
 -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 시·도의 우선순위 결정 및 평가·검토 자료 등 첨부

[사업시행 대상지]

-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신청 지구에 대한 타당성 및 우선순위,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 및 일정 등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익년도 예산을 요구
- 시행중 지구의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시행중 지구의 조기 완공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 신규지구는 시행중인 지구의 추진 공정 및 잔여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반영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기본조사(기본계획수립) 대상지]

- 시·도가 제출한 사업예정지 조사내용을 감안하여 기본조사(기본계획수립) 대상지를 선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기본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조사 대상지를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 수질개선사업 대상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수시)
- 퇴적물처리시범사업은 기본계획수립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수립 대상지가 통보되면 예정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시·도

[사업시행 대상지]

- 농림수산식품부가 수립한 기본계획과 자체 수립한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

기본조사자(한국농어촌공사)

- 타법·타사업 관련, 지자체·주민 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제약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 당해지역 주민, 지자체, 지방환경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 규정사항과 다음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지구의 오염원 현황, 인구현황, 환경기초시설(마을하수도, 오수처리장 등) 설치 등 관련사업 추진현황(계획포함) 및 필요성 여부
 - 수환경조사 결과(수환경 구조, 하천자연도, 퇴적물 특성, 생태환경 등)
 - 사업시행 여건(지역주민들의 사업시행동의 여부, 사업시행자 의견, 해당 지자체장 의견, 연관사업, 권리설정 내역, 제약사항 등)
 - 저수지를 포함한 상류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수질오염저감대책 및 사업시행 전·후의 수질개선효과 예측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설계 실시와 시행계획 수립》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시·도

-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중에서 세부설계를 실시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 세부설계는 예산이 확보된 지구에 대해 실시

-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이 신청되면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 승인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되,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시사항 이행내역과 검토내역을 첨부하고, 공사비가 기본계획보다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내역을 첨부
-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지구중에서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 시행지구를 선정하고, 익년도 예산요구서 제출 전까지 예산신청 사업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가 신규사업 시행지구를 선정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시행계획을 세워야 함
 -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
- 시·도지사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용지매수, 공사발주 및 계약 등을 이행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퇴적물처리시범사업은 시·도와 협의)
- 세부설계자는 수혜면적의 변경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 협의(퇴적물처리시범사업은 시·도와 협의)
- 세부설계서에는 사업완공 후 저수지 수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 운영지침 등을 제시

《공사 추진》

시·도

- 총사업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별도 시달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정·관리하되, 설계 또는 착수이후 물가변동, 시설물

안전성 제고 및 법령 개정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증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수혜면적의 증감,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증감,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등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설계보완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
- 준공지구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동일 시·도에서 사업시행중인 기존 계속 지구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사업시행자

-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부대, 인공습지 등 주요공종의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기에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되, 공사로 인한 영농기 급수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호우기간 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뚝, 중장비 등)를 확보하는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함
- 공사감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에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
- 공사감리자는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미비 여부 및 공정 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 확인),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월별 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배정

시·도

- 사업시행지구의 사업기간을 가능한 확정 관리토록 하고, 사업지구별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함
-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함
- 부담, 인공습지, 퇴적물 준설 등 공중은 수해대비 공정을 감안하여 지원함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시·도

- 사업지구의 국고보조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

-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1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관리자에게 시설을 인계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

6. 성과측정단계

- 지원된 예산의 투입결과 나타나는 결과물에 대하여 성과로 측정(1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환 류》

-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별지 제1호 서식]

(사업명) 시행계획수립 승인결과 보고

1. 사업개요

- 지구명 : _____ ○ 수혜 면적 : _____ ha
- 위 치 : _____ 도 _____ 시·군 _____ 읍·면 _____ ○ 사업시행자 :

2. 시행계획수립(시행인가) 내용

<사업내용> ; 기본계획 대비 시행계획, 시행계획 대비 시행인가

공 종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① (시행승인)	증 감	당해연도②	잔여사업량 (①-②)

※ 공종별로 작성

<사업비>

(단위 : 천원)

공 종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① (시행승인)	증 감	당해연도②	잔여사업비 (①-②)

※ 사업비수지에산서에 준하여 작성

<기본계획/사업시행계획 대비 변경내역>

- 변경액 : _____ → _____ 백만원(_____ %)
- 공종별 변경내역 및 사유 :

<농림수산식품부 지시내용 이행내역>

구 분	지시내용	이행내역

※ 지시사항 및 주요검토사항에 대한 검토

3. 사업지구 도면(1/25,000)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명) 추진상황 보고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위치		면적 (ha)	총 사업비	'09까지	'10계획 및 실적				'11이후	사 업 시 행 자	
	시군	읍면				총예산액 (A)	집행계획 (B)	집행실적 (C)	%			
									C/B	C/A		

* 부진 사유 : 집행계획 대비 80%미만인 지구명 및 부진사유 기재

10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	과 장 조일호 사무관 원일연	031-467-0150 031-467-0275

I. 사업개요

1. 목 적

- 개인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활성화 지원을 통한 민간육종의 저변 확대로 국내 종자산업 발전 도모

2.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6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사업의 중장기적 목표(2010년)
 - 개인육종가 출원품종수 : 연간 83품종
 - 개인육종가 해외출원수 : 연간 10품종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품종개발비 지원건수	50건	48건	45건	46건	12월	목표 건수대비 지원건 수비율
▪ 해외출원비 지원건수	5건	1건	1건	3건	12월	목표 건수대비 지원건 수비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 신품종개발비용 및 해외출원비용 지원	420	250	260	275	350
- 보조	420	250	260	275	350
- 용 자					
- 지방비					
- 자부담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신제품개발비용 지원

1. 사업대상자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제품으로 육성되어 국내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최근 2년이내에 품종보호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품종
 - ※ 종자산업법 제24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은 제외

3. 지원대상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중 신제품 육종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개인육종가 및 소규모 기업의 신제품 육성에 따른 제비용을 보상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국고보조(직접 지원)
- '10년도 예산액 : 250백만원(50품종)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예산의 범위내에서 품종당 300만원까지 지원
 - 적격성 심사를 거쳐 동일인에게 연간 최대 3품종까지 지원 가능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신청공고 : 홈페이지 게시, 종자관련협회 및 개별통지
- 신청기간 : 2010년 매월 25일까지(12월은 20일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국립종자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2. 사업자 선정단계

- 신청인의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1순위 : 품종보호등록 품종
 - 2순위 : 출원공고 품종
- 적격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신청순으로 지원하되, 사업 시행연도의 예산한도를 초과하여 신청되는 품종은 익년도 예산으로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지원대상자의 신제품 육성·개발 → 국내 품종보호출원 → 심사 → 품종보호권 등록(출원공고)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지원

○ 신청서류

- 신제품개발비용 지원신청서(별첨1 서식)
- 사업자등록증(개인 : 주민등록등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재산세 완납증명서 사본
- 품종보호권등록증 사본은 생략하되, 등록원부를 통하여 등록여부 확인(품종심사과)

○ 접수처 : 국립종자원(품종심사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4. 자금배정단계

- 신청서류 심사 : 매월(25일까지) 신청받아 심사(단, 12월분은 20일까지)
- 보조금 교부 : 다음달 초 지급(단, 12월분은 당월 지급)
- 보조금 교부 : 적격자에 한해 예금계좌로 입금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보조금 지급대장에 기록하고, 추후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관리
- 품종개발비 지원후 지원품종에 대한 실용화 여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제재》

- 품종개발비 지원후 3년동안 실용화 실적이 없거나 5년이내에 품종보호권을 소멸시키는 출원인에 대하여는 추후 품종지원비 신청자격을 3년간 제한

6. 성과측정단계

- 개인육종가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2010)
 - 개인육종가(470명)에 대한 표본으로 설문조사 실시(20% 수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교부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지급범위, 지원효과 등을 자체 평가 실시

《환류》

- 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자격, 지원품종수, 품종당 지원금액, 지원예산 규모 등을 조정
- 평가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교부금 환수, 2년간 지급정지 등 페널티 부여

② 해외출원비용 지원

1. 사업대상자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
 - ※ 중소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의 범위 : 상시근로자수 200인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의 업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품종으로 육성되어 최근 2년이내에 해외에 품종보호 출원·등록된 품종
 - 최근 2년이내에 해외에 식물특허 출원·등록된 품종도 포함
 - ※ 종자산업법 제24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은 제외

3. 지원대상

- 내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육성하여 해외출원한 육종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개인육종가 및 중소기업에서 해외출원함으로써 소요된 비용을 보상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국고보조(직접 지원)
- '10년도 예산액 : 25백만원(5품종)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예산의 범위내에서 품종당 500만원까지 지원
 - 적격성 심사를 거쳐 동일인에게 연간 최대 3품종까지 지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신청공고 : 홈페이지 게시, 종자관련협회 및 개별통지
- 신청기간 : 2010년 매월 25일까지(12월은 20일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국립종자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2. 사업자 선정단계

- 신청인의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1순위 : 해외 품종보호 등록 품종
 - 2순위 : 해외 품종보호 또는 식물 특허출원 품종
- 적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신청을으로 지원하되, 사업 시행연도의 예산한도를 초과하여 신청되는 품종은 익년도 예산에서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지원대상자 → 신품종 육성개발 → 품종보호 해외출원 →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해외출원 진위여부 확인 → 대상자 선정 → 지원
- 신청서류

- 해외출원비용 지원신청서(별첨1 서식)
- 해외출원 증명서류(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접수증명서) 사본 1통
 - * 반드시 현재 권리자가 명시되어있고 권리자와 신청인이 동일해야함
- 위임장 1부 (출원인이 공유인 경우에 한함)
 - * 권리가 공유된 경우 신청인을 제외한 공유자 전체의 위임장(별지1) 및 인감증명서 함께 첨부
- 사업자 등록증(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사본 1부

- 접수처 : 국립종자원(품종심사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4. 자금배정단계

- 신청서류 심사 : 매월(25일까지) 신청받아 심사(단, 12월분은 20일까지)
- 보조금 교부 : 다음달 초 지급(단, 12월분은 당월 지급)
- 보조금 교부 : 적격자에 한해 예금계좌로 입금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보조금 지급대장에 기록하고, 추후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관리
- 육종가가 동일품종을 다수국에 출원할 경우와 국내에 품종보호출원하지 않고 해외에 품종보호 및 특허에 출원할 경우에도 출원건별 지원원칙에 의거 지원하여 우리품종 해외진출 확대 도모

6. 성과측정단계

- 해외출원 품종에 대한 해외출원 등록여부 지속적인 관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교부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지급범위, 지원효과 등을 자체 평가 실시

《환 류》

- 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자격, 지원품종수, 품종당 지원금액, 지원예산 규모 등을 조정
- 평가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교부금 환수, 2년간 지급정지 등 페널티 부여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작물별 개인육종가협회 및 협의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 대상 : 식량(특용), 채소, 과수, 화훼, 버섯작물 협회(협의체)
 - 시기 : 2009년 12월중
 - 제출방법 : 서면 제출
 - 제출내용 : 2010년도 품종등록 또는 출원공고 예정품종

해외 품종보호출원비 지원신청서

해외 품종보호출원비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서류접수대리인>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신청인	주소	우편번호 :	생년월일(개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개인)/ 회사명(업체)/		E-mail	
			전화/FAX	
			핸드폰	
			계좌번호	
			은행/예금주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과거 수혜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품종보호 해외출원	작물명 (학명)		품종명칭	
	국내출원번호		국내 출원일자	
	국외출원번호	국가명: 번호: 등록여부: <input type="checkbox"/> 심사중 <input type="checkbox"/> 포기 <input type="checkbox"/> 거절 <input type="checkbox"/> 등록 (※해당사항에 체크할 것)	국외 출원일자	
해외 출원비용	총발생비용	외화송금액 : 환율 : 한국화폐송금액 :	송금일자	
	신청금액	(최대 5,000,000원, ※총 발생비용이 5,000,000원 미만인 경우 총 발생 비용을 기입)		
해외 품종보호출원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2010. . (인)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국립종자원장 귀하</p>				
구비서류 1. 해외출원비용 지원신청서 2. 해외출원증명서류(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접수증명서) 사본 1부 3. 위임장(출원인이 공유인 경우에 한함 : 별지1) 4.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5.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1)

위 임 장

_____ A _____은 국립중자원이 운영하는 신품중 등록개발비(해외출원비용) 지원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_____ B _____에게 위임합니다.

위 임 자 : (인감)

생년월일 :

피위임자 : (인감)

생년월일 :

2010. . .

- * 위임자와 피위임자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할 것
- * A,B 작성시 개인인 경우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업체인 경우에는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함.
- * 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작성하여 제출

11	고부가가치종자산업육성사업
-----------	----------------------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종자산업육성TF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종자산업육성TF팀)	과 장 오 병 석	02-500-2445
		팀 장 조 장 용	02-500-1847
		사무관 이 변 구	02-500-1851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	연구관 양 미 희	031-467-0174

I. 사업개요

1. 목 적

-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 유출방지 및 병해충 국내유입 사전예방과 국내 채종기반구축 등을 위해 국내 채종단가의 일정액을 보조
- 난·거베라 등 돌연변이 육종 촉진을 위해 방사선 조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육종농가의 부담경감 및 신품종 개발여건 확충
- 조직배양을 통한 우량 씨감자 생산체계 구축으로 씨감자 공급을 확대하여 농가 수요충족

2.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6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 국내 채종전환 지원 : 2012년까지 무·배추의 국내채종전환 340톤을 지원하여 2013년까지 국내채종비율을 60% 이상 달성
 - * 채소종자 채종현황('08) : 1,505톤 (해외채종 1,265톤 84%, 국내채종 240톤 16%)
 - 무·배추 채종 : 955톤 (해외채종 743톤 78%, 국내채종 212톤 22%)
- 2) 방사선 조사비용 지원 : 2010년에 돌연변이 육종을 위한 방사선 조사를 200회 실시
- 3)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 2010년에 씨감자 생산기반 시설 1개소를 신설하여 연간 100톤 생산·공급 체계구축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국내채증비율 (무, 배추)	40%	-	-	22%	'11.8월	(국내채증량/총종자생산량)×100
▪ 방사선 조사횟수	200회	-	-	-	'11.2월	방사선 조사횟수
▪ 씨감자 생산량	100톤	-	-	-	"	씨감자 종서 생산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2012
합 계		7,000	20,260
보 조	-	3,500	10,130
지방비		1,000	1,000
자부담	-	2,500	9,130
○ 국내 채증전환 지원	-	4,940	18,260
- 보 조	-	2,470	9,130
- 자부담	-	2,470	9,130
○ 방사선 조사비용 지원	-	60	-
- 보 조	-	30	-
- 자부담	-	30	-
○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	2,000	2,000
- 보 조	-	1,000	1,000
- 지방비	-	1,000	1,000

II. 2010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1) 국내 채증전환 지원 :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해 등록된 종자업자
- 2) 방사선 조사비용 지원 :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해 등록된 종자업자, 개인육종가
- 3)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 시·군

2. 지원자격 및 요건

- 1) 국내 채증전환 지원
 -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해 등록된 종자업자로서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이며, 무·배추에 대해 육종능력과 품종보호권 등록실적이 있고, 해외채증경력이 신청일 기준 3년 이상인 자

2) 방사선 조사비용 지원

-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해 등록된 종자업자
- 국립종자원에 개인육종가로 등록된 자

3)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 감자 재배면적이 500ha 이상인 시·군
- 씨감자 조직배양에 대한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시·군
- 망실시설 하우스 설치 가능한 면적을 확보한 시·군

3. 지원대상

- 1) 국내 채종전환 지원 : 국내채종전환 종자업체와 계약한 무·배추 국내채종 농가
- 2) 방사선 조사비용 지원 : 조사비용 신청 종자업자, 개인육종가
- 3)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 씨감자 생산기반을 구축하려는 시·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1) 국내 채종전환 지원 : 무·배추 종자 해외채종분의 국내채종 전환 비용
- 2) 방사선 조사비용 지원 : 돌연변이 육종을 위한 방사선 조사비용
- 3)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 씨감자 생산 시설·장비 설치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1) 국내 채종전환 지원

- 재원 : 농특회계
- 지원한도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업체당 배정한도 결정
 - 지원내역 : 국내 채종단가 50%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50%, 자부담 50%

2) 방사선 조사비용 지원

- 재원 : 농특회계
- 지원한도 : 사업공고 후 신청자에 한해 일정비율로 보조금 지급
 - 지원내역 : 조사비 50%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50%, 자부담 50%

3)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 재원 : 농특회계

- 지원단가 : 2,000백만원 (국고보조 1,000, 지방비 1,000)
- 사업의무량 : 조직배양시설, 망실하우스 20,000m²이상 (씨감자 생산 100톤/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세부사업별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시달('09. 12월)

국립종자원 및 종자관련협회

- 국립종자원은 사업시행공고를 공문발송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대상자에게 공고('10. 1월)
- 종자관련협회는 회원사에게 사업내용 안내 및 참여유도

사업대상자

1) 국내 채종전환 지원

- 사업대상자중 참여희망 업체는 국립종자원에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
 - 신청기간 : 2010. 8. 1 ~ 9. 30(61일)
 - 신청서 양식 및 구비서류 : 별지 1호 서식

2) 방사선 조사비용 지원

- 지원자격을 갖춘 사업대상자중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국립종자원에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
 - 신청기간 : 2010. 1. 15. ~ 1. 30(16일)
 - 신청서 양식 및 구비서류 : 별지 3호 서식
- ※ 신청량이 미달할 경우 '10. 하반기에 추가 신청서 접수

3)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 지원사업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시·군은 사업신청서(별지 5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신청('10. 1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자를 평가·선정
 -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위원 등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 평가 실시(신청 시군이 2개소 이내시 현장심사로 선정)
 - 선정 시기 : '10. 2월
 -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여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는 선정된 사업자를 시·군에 통보

국립종자원

- 1) 국내 채종전환 지원
 - 국립종자원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신청업체를 평가·선정('10. 10월말까지)
 -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명단은 바공개로하고 심의절차를 공정하게 관리
 - 적격업체 선정과 업체별 사업물량을 심의 확정
 - 국립종자원은 선정된 사업자 및 사업물량을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및 사업자에게 개별통보
- 2) 방사선 조사비용 지원
 - 국립종자원은 신청자에 대해 자격 여부를 검토하고, 적격자에 한해 동일한 비율로 지원물량을 배정('10. 2)
 - 국립종자원은 확정된 적격자와 사업물량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및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 사업대상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확정 시달

국립종자원

1) 국내 채종전환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하여 국립종자원은 자금배정기준 및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10. 12월)
 - 국내채종 전환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내용만 공개하고, 업체별, 채종지역, 품목별 세부물량 등에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

2) 방사선 조사비용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하여 국립종자원은 확정된 사업물량을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에 통보하고,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세부조사일정을 확정하고, 국립종자원에 제출('10. 2월)

사업자

1) 국내 채종전환 지원

- 사업자는 확정된 사업물량에 따라 국내채종으로 전환하여 채종농가와 채종계약
 - 채종농가에 대해 계약서 작성시 채종단지 구성원간에 수매량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 삽입
- 사업자는 국내채종 전환물량에 대한 파종결과를 지역별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국립종자원에 익년 1월말까지 제출

2) 방사선 조사비용 지원

- 신청자는 확정된 세부조사일정에 따라 방사선 조사 희망종자를 조사 5일전 (영양체의 경우 2일)까지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에 제출
-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는 제출된 종자에 대하여 조사일정에 따라 방사선을 조사하고, 신청자에게 반환하되 별지4호 서식의 조사 확인증을 발부하여 신청자가 자부담 금액을 납부토록 함

3)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및 사업자가 확정 통보되면 즉시 시장·군수에게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을 통보
- 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련법령(유자격업체 선정 등)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요청해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
 - 사업계획 사업비가 30%이상 변경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
-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 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준공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내용 중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설·장비별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기타
 - 시장·군수는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 배정

국립종자원

1) 국내 채종전환 지원

- 국립종자원은 세부지원 계획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원자금을 배정요청
- 국립종자원은 수매시 종자매입의 사실관계 확인

2) 방사선 조사비용 지원

- 국립종자원은 세부조사일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원자금을 배정요청

사업대상자

1) 국내 채종전환 지원

- 종자수매에 따른 매입확인증 교부

종자생산업체 담당자는 종자 매입후 종자매입확인증(별지 2호 서식)을 3부 작성하여 1부는 자체보관하고 나머지는 각각 채종농가 교부 및 국립종자원에 제출하되, 종자매입확인증은 발행원부의 발행번호와 일치하여야 함

- 국내 채종전환 지원금 지급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생산업체 담당자가 제출한 종자매입확인증(별지 2호 서식)을 접수받은 달 말까지 채종농가에게 국내채종전환 지원금을 지급

2) 방사선 조사비용 지원

- 국립종자원은 자부담 금액의 납부가 완료되어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제출된 방사선 조사비용 청구서(별지 4호 서식)에 따라 매월 말 조사비용을 교부함

3)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 시·도지사는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매월 시장·군수로부터 사업 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집행 전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함
- 시·도지사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사업의 실적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지급하며, 지원비율과 정당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및 제제》

국립종자원

1) 국내 채종전환 지원

- 사업자 선정 및 집행기관(국립종자원)에서는 사업신청에서 정산까지 전 과정에 대해 세부프로세스를 작성하여 공정하게 관리
- 지원대상업체에서 제출한 국내채종전환 세부내역서에 따라 계약 필지수의 10% 범위내에서 파종여부를 현지 실사하여 사실관계 확인('11.3 ~ 5월)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제제조치
 - 사업의무량 또는 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불이익 등을 명확하게 적시
 - 채종농가가 부당하게 지원금 수령시 자금회수 등 제제조치 강구
- 지원결과를 사업종료 후 1개월이내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2) 방사선 조사비용 지원

- 국립종자원은 사업신청에서 정산까지 전 과정에 대해 세부프로세스를 작성하여 공정하게 관리
- 사업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자금회수 등 제제조치 강구
- 지원결과를 사업종료 후 1개월이내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시·도지사(시장 · 군수)

○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 평가주체 : 시·도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및 방법 : 사업착수 3~4월내에 사업추진 현장점검(사업계획 이행 점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및 방법 :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2월 이내, 사업추진 현장점검(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제도개선 및 지원방향개선 건의, 평가결과 홍보 등

- 기타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경우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농림수산식품부

1~2) 국내 채종전환 및 방사선 조사비용 지원

- 지원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도감독과 정산을 실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

3)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 평가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및 방법 : 사업착수 5~6월 중 사업추진 현장점검(사업계획 이행 점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

6. 성과측정단계

- 국내채종비율(%) 및 방사선 조사횟수를 기준으로 추진성과 평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연차평가
 - 평가시기 : 매년 사업종료 후 3월이내
 - 평가대상 : 국내 채종전환 및 방사선 조사비용 지원,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 평가방법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시행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사업계획수립, 제도개선 사항 등 발굴

IV. 행정사항 (씨감자 생산기반구축 사업만 해당)

1.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경우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2.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시·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즉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준공 검사를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3.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씨감자생산기반구축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시설은 10년, 기계·자재는 5년으로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사후관리기간중 법인의 파산, 해산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 할 경우 또는 시설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시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시설	10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기계·자재	5년	

V. 보고 및 기타사항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 사업정산실적 보고 : 익년 2월20일까지(국내 채종전환 지원사업은 익년 9월30일 까지)
- 씨감자 생산보급실적 : 익년 1월 31까지(별지 7호서식)

해외채종 국내전환 사업신청서

신청인	업체명	대표 성명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업체 및 포장소재지	(본사사무실) : (채종사업장) : (직영/위탁 구분)					
해외채종실적 및 계획	('10) : 무 톤(국가), 배추 톤(국가)		('11.P) : 무 톤(국가), 배추 톤(국가)			
	('12.P) : 무 톤(국가), 배추 톤(국가)		('13.P) : 무 톤(국가), 배추 톤(국가)			
국내채종량	('09) : 무 톤, 배추 톤		('10) : 무 톤, 배추 톤			
연차별 국내채종 계획물량	'11	'12	'13	'14년이후		
	무 톤 배추 톤	무 톤 배추 톤	무 톤 배추 톤	무 톤 배추 톤	무 톤 배추 톤	
'11년 생산계획	(무) 포장면적 ha x 단수 kg/10a = 생산예상량 (배추) 포장면적 ha x 단수 kg/10a = 생산예상량					
'11사업신청	(무) 톤, (배추) 톤					
<p>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 (업체명 및 대표자직 성명,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국립종자원장 귀하</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부사업계획서(무·배추 채종사업 현황, 신청품종 수량 및 예상단가 등) 1부. ② 종자업등록증 사본, 해외채종 입증서류(현지 채종계약서, 채종내역 등) ③ 위탁생산시 채종단지 확보현황(단지 소재지·면적·회원현황 등 단지현황 등) 						

- 주) 1. 연차별 국내채종 계획물량은 국내채종 및 해외채종 국내전환물량을 포함한 업체의 국내채종 총사업량을 기재
2. '11년 사업신청물량은 '10년도 해외채종실적에 '11년 해외채종 계획물량을 차감한 물량

[별지 제2호 서식]

No.()		종자매입확인증			(종자대금용·국내 채종국고보조금용)	
채종농가	주 소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성 명			입금 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작물명 (생산기호)	단 량	수 량	수매일	종 자 수 매 대 금		
				종자대금	국내채종 국고보조금	계
	kg			원	원	원
위와 같이 매입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발행자) 수매 종자업체명			수납자		(인)	
채종농가 귀 하						

- 주) 1. 이 확인증은 종자업체의 수매가 완료된 후 정확히 발행하여야 하며 수매대금 및 수량의 정정은 무효임
2. 국내채종 국고보조금은 수매후 국고에서 매월달 입금계좌로 직접 입금됨

[별지 제3호 서식]

방사선 조사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업체구분		업체명	대표 성명	전 화		
	종자업자	개인육종가					
주 소	시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작물명	처리 시기	신청점수	상 태 (종자, 배양 체, 식물체)	총중량 (갯수)	희망조사량		희 망 조사시간
					총선량	선량을	
	월	점		kg	Gy	Gy/hr	시간

우수품종 육성을 위한 방사선 조사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자 : (업체명 및 대표자직 성명, 서명)

국 립 종 자 원 장 귀 하

※ 구비서류

- 종자업등록증 사본(종자업자), 출원번호통지서·품종등록증 사본(개인육종가)

- 주) 1. 개인육종가의 경우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됨
 2. 희망조사량 및 조사기간은 신청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
 3. 조사비용 환산량 : 종자5kg/점, 영양체(배양체) 50 플라스크·병·튜브/점, 화분 30개/점

[별지 제5호 서식]

○○년 씨감자 생산기반구축 사업 계획서

1. 사업자(지자체명): (인)

2. 사업추진 부서(또는 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부서(기관)명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나. 종자 관련 기술자 보유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	경력

3. 설립 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m²

○ 부지 확보여부: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에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 설치계획

○ 총사업비

구분	계 (100%)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사업비(계)			
- 하우스			
- 저장시설			
- 기자재			
- 기 타			

* 부지구입비는 제외

○ 세부사업 계획

구 분	사업량	단가	사업비	설치종류	비고
- 부 지	m ²	천원	백만원		
- 조직배양 및 기본식물 재배시설					
- 씨감자 저장시설 설치					
- 망실하우스 설치					
- 기 타					

다. 사업추진일정(세부 계획)

○

4. 씨감자 생산 및 공급

가. 사업물량 확보

	품종명	시설 완공 후 연도별 생산 및 공급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씨감자 생산				
공급가격				
기 타				

나. 사업운영 계획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운영경비 확보	백만원									
운영요원 "	명									

다. 보증 및 품질관리 계획

○ 공급 씨감자에 대한 자체보증 계획 등

라. 사후관리계획

○ 씨감자 공급후 이품종, 잠재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

5. 기 타

○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및 사업년도 :

- 사업비(계 ○○백만원) : 국고보조○○백만원,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별지 제6호 서식]

씨감자 생산기반구축 사업완료 및 정산서

(시·군·보관)

1. 기관명 :
2. 사업년도 및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합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씨감자 생산 기반 구축	○○○○ (100%)	○○○○ (50%)	○○○○ (50%)

※ 합계는 세부명세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함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타
○○○○	계 ○○○○ ○○○○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등 필요사항 기재 - 자재구입·인건비 지출 등 각종 관련 증빙서류 (영수증 등) 별도 첨부
○○○○	계 ○○○○ ○○○○ · ·						
합계							

※ 합계는 총괄표 합계와 같아야 함

[별지 제7호 서식]

○○년도 **씨감자 생산·보급사업** 실적보고

(사업명 :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1. 사업자(지자체명):

2. 사업추진 부서(또는 기관) 현황

부서(기관)명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3. 사업의무량 보급내역

	품종명	보급실적	차년도 보급계획
씨감자 생산		톤	톤
공급가격		원 / kg	원 / kg
기 타			

4. 보급지역

품 종 명	공급량	보급지역	차년도 보급지역
	톤		

※ 보급지역은 시·도명(시·군 수) 표시

4. 제도개선 사항(문제점 포함)

12	우수품종증식보급사업
----	------------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종자산업육성TF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종자산업육성TF팀)	과 장 오 병 석 팀 장 조 장 용 사무관 이 번 구	02-500-2445 02-500-1847 02-500-1851

I. 사업개요

1. 목 적

- 종자보급체계가 미흡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딸기, 화훼 등을 대상으로 신품종 종자를 공급하여 농업 경쟁력강화
- 보증된 품종과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우량 종자(묘)를 공급함으로써 종자 사고를 사전에 예방

2.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65조 및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3호 및 제6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2년까지 딸기원원묘 증식시설 3개소와 원묘 증식시설 12개소를 육성하여 2013년까지 농가의 우량 신품종 재배면적을 80% 이상 확대
- 2011년까지 약용작물종자 보급센터 2개소를 육성하여 2013년까지 주요 약용작물 5종 이상 종자를 5톤 이상 보급
- 2013년까지 화훼종묘 보급센터 5개소와 우량묘 증식시설 12개소를 육성하여 농가의 우량 신품종 재배면적을 40% 이상 확대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딸기 국산품종 보급율	60%	34%	42%	50%	'11년 2월	농경연 재배의향조사
▪ 화훼 류(장미, 국화) 국산품종 보급률	15%	4.1%	7.4%	12%	"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2013년
합 계	-	7,428	7,350	27,850
보 조	-	2,994	3,275	10,565
지방비	-	2,994	3,275	10,565
자부담	-	1,440	800	6,720
○ 딸기원원묘 증식시설	-	700	1,400	700
- 보 조	-	350	700	350
- 지방비	-	350	700	350
○ 딸기원묘 증식시설	-	3,600	-	10,800
- 보 조	-	1,080	-	3,240
- 지방비	-	1,080	-	3,240
- 자부담	-	1,440	-	4,320
○ 약용작물종자 보급센터	-	2,000	2,000	6,000
- 보 조	-	1,000	1,000	3,000
- 지방비	-	1,000	1,000	3,000
○ 화훼종묘 보급센터	-	1,128	1,200	3,600
- 보 조	-	564	600	1,800
- 지방비	-	564	600	1,800
○ 우량묘 증식시설	-	-	2,000	6,000
- 보 조	-	-	600	1,800
- 지방비	-	-	600	1,800
- 자부담	-	-	800	2,400
○ 천마종균 배양센터	-	-	750	750
- 보 조	-	-	375	375
- 지방비	-	-	375	375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약용작물종자 보급센터(2개소, 계속사업), 화훼종묘 보급센터(1개소, 신설) : 시·도
- 딸기원원묘 증식시설(2개소, 신설) : 시·도,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종묘업체
- 우량묘 증식시설(4개소, 신설) :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종묘업체
- 천마종균 배양센터(1개소, 신설) : 시·군

2. 지원자격 및 요건

○ 딸기원원묘 증식시설

- 우수 신품종 기본묘를 증식·유지할 수 있는 시·도기관
- 원묘를 증식하는 타 시·도 2개소에 필요한 원원묘를 분양할 수 있는 시·도기관
- 품질관리 기자재(Virus 검정 마커 등)를 보유하여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종묘 생산이 가능한 시·도기관, 다만, 관내에 동 시설을 구비한 1개소 이내의 법인·종묘업체와 공동으로 신청가능

○ 약용작물종자 보급센터 설립(계속사업 : '09~'11)

- 약용작물 재배면적 1,000ha 이상의 시·도기관을 대상으로 함
 - * 1개 시·도의 약용작물 재배면적이 1,000ha 미만인 경우 2개 시·도 이상이 사업구역을 공동으로 하고 주산단지 시·도가 대표로 신청가능
- 지원 대상 시·도는 최소 10,000m² 이상의 채종포를 사전에 확보해야 함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 또는 사업자 선정 후 6월이내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한 자

※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기준(요건)

구 분		보존현황	관리인력	시설현황
식 물	종 자	- 종자자원 100점 이상 보유	- 석사급 이상의 관리인 2인 이상	- 500점 이상의 종자자원을 단기보존 할 수 있는 장비 보유
	영양체	- 영양체 자원 50점 이상 보유	- 석사급 이상의 관리인 2인 이상	- 5a(150평) 이상의 영양체 보존포 확보 - 또는 온실 33m ² 이상 - 또는 기내 조직배양실 확보

-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자 선정 후 6월이내에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 화훼종묘 보급센터 설립

- 화훼 재배면적이 500ha 이상인 시·도를 대상으로 함
 - * 1개 시·도의 화훼 재배면적이 500ha미만인 경우 2개 시·도 이상이 사업구역을 공동으로 하고 주산단지 시·도가 대표로 신청가능

- 지원 대상 시·도는 최소 3,300m² 이상의 모본포 및 증식온실을 사전에 확보해야 함
- 우량묘 증식시설 설립
 - 우량묘 재배면적이 500ha이상인 시·도의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종묘업체를 대상으로 함
 - 지원 대상자는 최소 660m² 이상의 모본포 및 증식온실을 사전에 확보해야 함
 - 대상품목은 수출주력품목인 과채류(파프리카, 멜론, 토마토 등) 대상으로 함
- 천마종균 배양센터 설립
 - 천마종균 재배면적 20ha 이상의 시·도 소속의 시·군으로 330m² 이상의 채종포를 사전에 확보해야 함

3. 지원대상

- 딸기원원묘 증식시설 : 증식용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육묘용 베드 등 증식시설
- 약용작물종자 보급센터 : 종자의 저장 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설치비
- 화훼종묘 보급센터 : 품종 전시용 철골온실(유리 또는 비닐), 종묘 증식용 철골온실(유리 또는 비닐), 육묘용 베드 및 온습도 조절장치 등 증식시설, 종묘의 저장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자재
- 우량묘 증식시설 : 증식용 온실, 육묘용 베드, 온습도 조절장치 등 증식시설
- 천마종균 배양센터 : 종균배양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설치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되는 자금은 종자 증식시설 및 기자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토지 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FTA 기금
- 개소당 지원단가 및 조건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사업 의무량	단가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딸기원원묘 증식시설	시·도	3,300㎡이상	700 (100%)	350 (50%)	350 (50%)	-
	농협, 농업법인, 종묘업체	"	700 (100%)	210 (30%)	210 (30%)	280 (40%)
약용작물종자 보급센터	시·도	10,000㎡이상	1,000 (100%)	500 (50%)	500 (50%)	-
화훼종묘 보급센터	시·도	3,300㎡이상	1,200 (100%)	600 (50%)	600 (50%)	-
우량묘 증식시설	농협 농업법인, 종묘업체	660㎡이상	500 (100%)	150 (30%)	150 (30%)	200 (40%)
천마종균 배양센터	시·군	330㎡이상	750 (100%)	375 (50%)	375 (50%)	-

주) 농협·영농조합법인·종묘업체 공동 신청사업은 지방비·자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예시 : 딸기원원묘 증식시설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영농조합법인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6조 별표3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단,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 지원 대상자는 지원 시설내에서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품종의 비율을 70% 이상 증식·보급해야 함
 - 육성년도가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품종
 - 농가의 대외 로열티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품종
 - 수출 유망품종 또는 수출대상국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지 않는 품종
 -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 등에서 우수품종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품종
 - 약용작물종자 보급센터 지원 대상은 국내에 자생하는 토종종자(품종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종 포함)
- 민간사업자는 사업 착수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따른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함
- 우량묘 표시 :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보증표시를 포장지 및 운반상자에 유인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 분류번호 : 딸기원원묘 1, 딸기원묘 2, 약용작물 3, 화훼종묘 4, 우량묘 5, 천마종균 6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시달('09. 12월)

시·도(시·군)

- 딸기원원묘 증식시설, 약용작물종자 보급센터, 화훼종묘 보급센터, 천마종균 배양센터 대상사업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시·도는 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신청
 - 신청시기 : 화훼종묘 보급센터 : '10. 1월,
딸기원원묘 증식시설 및 천마종균 배양센터 : '10. 2월
 - * 타 시·도와 공동으로 신청시 업무협약서 첨부
- 우량묘 증식시설 사업신청
 - 대상사업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종묘업체는 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신청
 -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지원대상자중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신청시기 : '10. 3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자를 평가·선정
 -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전 현장실사 및 종자위원회 위원 등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 실시(사업별 신청지역이 2개소 이내시 현장심사로 선정)
 - 평가·선정시기 : 화훼종묘 보급센터 '10. 2월,
딸기원원묘 및 천마종균 배양센터 3월, 우량묘 4월
- 심사결과 선정된 사업자를 해당 시·도에 통보

시·도(시·군)

- 시·도는 선정된 사업자를 해당 시·군에 통보(해당 사업에 한함)

3. 사업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자로 선정된 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종묘업체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 계획 검토·조정 및 확정 시달

시·도(시·군)

- 지자체장은 사업계획 및 사업자가 확정 통보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을 통보
- 시공·감리
 - 지자체장은 주요 시설(온실, 공정육묘장 등)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과 같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
 - 철골(유리, 경질판) 온실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건축법 등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통해 지역, 작물특성, 효율성, 안전성, 실용성이 높은 시설을 설계
 - 자동화 비닐온실의 경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에 의한 내재해형 규격시설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 구조해석을 거쳐 제작된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적설심, 풍속 등) 기준” 이상인 시설을 사용하여야 함
 - 온실, 육묘장 설치 규모가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시설비 1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도급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온실시공능력평가 공시업체 등)를 통해 시공
 - 지자체장은 별도의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 시·도)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요청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
- 사업계획 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주요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해야 함
-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준공검사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내용 중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설·장비별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야 함
- 기타
 - 사업주관기관은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 배정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 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전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함
- 시·도지사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사업의 실적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지급하며, 지원비율과 정당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 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시·군)

- 평가주체 : 해당 시·도 및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및 방법 : 사업착수 3~4월 중, 사업추진 현장점검(사업계획 이행 점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필요시 사업계획 수정 등 사업정상화 조치, 지도감독 소홀시 제제조치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및 방법 :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2월 이내, 사업추진 현장점검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제도개선 및 지원방향개선 건의, 평가결과 홍보 등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및 방법 : 사업착수 5~6월 중, 사업추진 현장점검(사업계획 이행 점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

《제재》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경우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6. 성과측정단계

- 딸기 및 화훼류, 우량묘 국산품종 보급률 등을 기준으로 전년도 추진성과를 평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시행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환 류》

-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 배분, 추가지원 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IV. 행정사항 및 기타

1.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경우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2.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준공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준공 검사를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 하여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3.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 규정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시설은 10년, 기계·자재는 5년으로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사후관리기간중 법인의 파산, 해산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 할 경우 또는 시설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시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시설	10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기계·자재	5년	

4. 보고 및 기타사항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 사업정산실적 보고 : 익년 2월 20일까지
- 생산·공급실적 보고 : 익년 1월말까지(별지 4호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년 우수품종증식 보급사업 계획서

(세부사업명 :)

1. 사업자(시·도명 또는 기관명): (인)

2. 사업추진 부서(또는 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 딸기원원묘, 화훼종묘보급센터, 약용작물종자 보급센터, 천마종균배양센터의 경우

부서(기관)명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 딸기원원묘(법인·종묘업체와 공동신청), 우량묘 증식시설의 경우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 타 시·도와 공동 신청시 업무협약서 첨부

나. 종자 관련 기술자 보유 현황

○ 딸기원원묘, 화훼종묘보급센터,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및 천마종균배양센터의 경우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	경력

○ 우량묘 증식시설의 경우

종자업자	종자업 등록일	종자업 등록번호	기술자현황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경력

다. 병해충 검색 기자재 보유 현황(공통)

기자재명	검색대상병해충	보유 수량	구입년도	기자재 운용 전문인력 확보 여부
	(진균, 세균, 바이러스, 해충 등으로 표시)			(○,×로 표시)

3. 종묘증식 및 보급센터 설립 계획(공통)

가. 부지확보계획

- 위치: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m²
- 부지 확보여부: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에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 설치계획

- 총사업비(딸기원원묘 증식시설의 경우)

구분	계 (100%)	국고보조	지방비
사업비(계)			
- 유리온실			
- 비닐온실			
- 베드 설치			
- 기 타			

- (주) - 부지구입비는 제외
 - 종묘업체와 공동신청시 자부담 금액 기재

- 총사업비(화훼종묘 보급센터의 경우)

구분	계 (100%)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사업비(계)			
- 온실 설치			
- 베드 설치			
- 기자재 구입			
- 기 타			

- (주) - 부지구입비는 제외

○ 총사업비(우량묘 증식시설의 경우)

구분	계 (100%)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사업비(계)				
- 비닐온실 설치				
- 베드 설치				
- 저장시설				
- 기타				

(주) - 부지구입비는 제외

○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설립의 경우

- 채종포면적 : m²
- 청사면적 : m²(지하 층, 지상 층)

○ 딸기원원묘 및 우량묘 증식시설의 세부사업 계획

구분	사업량	단가	사업비	설치종류 (형식)	비고
- 부 지	m ²	천원	백만원		
- 유리온실 설치					
- 비닐온실 설치					
- 베드 설치					
- 저장 시설 등					

○ 화훼종묘 보급센터의 세부사업 계획

구분	사업량	단가	사업비	설치종류 (형식)	비고
- 부 지	m ²	천원	백만원		
- 유리온실 설치					
- 비닐온실 설치					
- 베드 설치					
- 기자재명 등					

○ 약용작물종자 보급센터 및 천마종균 배양센터 세부사업 계획

구분	사업량 (수량)	단가	사업비	용도	비고
○ 부 지		천원	백만원		
○ 기자재명					
○					

(주) - 부지구입비는 제외

- 지원조건: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다. 사업추진일정 (세부계획)

○

4. 종자(종묘)생산 및 공급(공통)

가. 사업물량

	품종명	시설 완공 후 연도별 생산 및 공급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종자(종묘)생산		주 또는 kg		
공급가격		원/주 또는 kg		

* 공급가격은 예정가격을 말함

나. 사업운영 계획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운영경비 확보	백만원									
운영요원 확보	명									

다. 보증 및 품질관리 계획

○ 공급에 대한 자체보증 계획

○ 무병묘 및 우량 품질묘 공급을 위한 자체 관리 계획

라. 사후관리계획

○ 공급후 이품종, 잠재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

○ 약용작물종자의 경우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의 업무수행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행계획

5. 기타(공통)

○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및 사업년도 :

- 사업비(계 백만원) : 국고보조 백만원,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완료 및 정산서

(시·군·보관)

1. 사업주관기관명 :
2. 사업년도 및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합계	국고			지방비보조	자부담
		보조	용자	소계		
	○○○○ (100%)	○○○○ ()	○○○○ ()	○○○○ ()	○○○○ ()	○○○○ ()

※ 합계는 세부명세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함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타
○○○○	계 ○○○○ ○○○○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등 필요사항 기재 - 자재구입·인건비 지출 등 각종 관련 증빙서류 (영수증 등) 별도 첨부
○○○○	계 ○○○○ ○○○○ · · ·						
합계							

※ 합계는 총괄표 합계와 같아야 함

채종단계별 구분이 필요한 종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보증종자(우량묘)</div>	
원원종	
분류번호 :	
품 종 :	
품 종 명 :	
발아율(%, 영양체 제외) :	
이품종율(%) :	
수량 : g, 주	
포장일자 : 년 월 일	
보증기관(업체) :	
종자관리사 :	

* 바탕색은 흰색으로 대각선은 보라색으로, 글씨는 검정색으로 표시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보증종자(우량묘)</div>	
원 종	
분류번호 :	
품 종 :	
품 종 명 :	
발아율(%, 영양체 제외) :	
이품종율(%) :	
수량 : g, 주	
포장일자 : 년 월 일	
보증기관(업체) :	
종자관리사 :	

* 바탕색은 흰색으로 대각선은 보라색으로, 글씨는 검정색으로 표시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년도 우수품종증식보급사업 실적 보고

1. 사업명 :

2. 사업자 기관(업체)명 :

대표자 :

3. 사업자 주소 :

4. 사업의무량 보급내역

	품종명	보급실적	차년도 보급지역
종자(종묘)생산		주 / kg	주 / kg
공급가격		원/주, kg	원/주, kg

4. 보급지역

품종명	공급량	보급지역	차년도 보급지역
	톤		

※ 보급지역은 시·도명(시·군 수) 표시

4. 제도개선 사항(문제점 포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과 장 홍성재 사무관 조래청	02-500-1852 02-500-1859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팀	팀 장 이은수 차 장 강성면	031-420-3251 031-420-3993

I. 사업개요

1. 목 적

- 한국은 매년 1,400~1,500만톤 수준의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 구조적 곡물수입국
 - 경지면적은 178만ha로 국내 부존자원 활용으로 식량자급에는 한계
- 불안정한 국제곡물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곡물도입 방식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안정적 해외공급선 확보
- 축산·원예·종자·농자재 등 농산업의 해외진출 투자 촉진 도모
 -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재정, 금융, 기술·정보 제공 및 외교적 지원 등의 지원 시스템 구축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 내지 제3조, 제11조 등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 제34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식량·사료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해외농업개발 지원 사업 만족도(%)	82	-	-	80	'10.12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교육·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을 지원받은 기업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	-	24,000	24,000	542,000
보 조	-	-	3,000	3,000	46,000
용 자	-	-	21,000	21,000	448,000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5. 용자업무 일반기준

가. 용어의 정의

- 용자 :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민간업체 등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함
- 해외농업개발사업 : 국외에서 농·축산물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는 것을 말함
- 해외농업개발사업자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서를 신고한 자를 말함
- 조사사업 : 해외농업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농업환경조사,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을 말함
- 해외농업개발사업비 :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용자금 지원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업비[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비용[이하 “농장형”이라 함,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하 “유통형”이라 함)]

나. 용자 원칙

- 용자, 용자원리금 상환은 이 지침의 용자조건에 따름
- 용자금액, 용자원리금 상환액의 표시는 원화를 기준으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원화와 미법화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법화를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

다. 용자지원대상자 : 해외농업개발사업자

라. 용자대상사업 : 해외농업개발사업

마. 용자업무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바. 용자조건

- 지원한도 :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를 원칙으로 함. 다만, 사업자 별 용자지원 한도액/비율은 연간 예산규모, 용자 신청 규모를 감안하여 용자 심의회에서 결정

구 분	금 리	용자기간(년) (거치/상환)	상환방법	비 고
농장형* 및 유통형**	연 2.0%	3/7	균등상환	

주. * 농장형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비용

** 유통형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담보 : 국내담보를 원칙으로 하며, 담보의 종류는 용자업무대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용자관련 세부규정에서 정함

사. 용자신청

- 용자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함 <구비서류>

- ① 해외농업개발자금 용자(대출)신청서, ②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③ 사업계획서, ④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 자료, ⑤ 관련계약서, ⑥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⑦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

아. 용자심사

- 용자신청에 대하여는 용자심의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사함

①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 i)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실적, 사업계획에 대한 경제성 및 기술검토
- ii) 계약 조건
- iii) 당해사업에 관한 투자대상국 승인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법적 하자 유무
- iv) 대상 사업비의 적정성
- v) 사업내용이 관계법규 및 이 지침에 부합하는 지 여부

②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에 관한 사항

- i) 신청인의 신용상태
- ii) 신청인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③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용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기술심사, 법적심사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음
- 용자지원 우선대상자를 선정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지 조사를 통해 최종용자대상자를 결정

자. 용자심사의 위탁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용자심사에 관한 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용자심사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음

차. 용자승인 및 통보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자신청일로부터 60일 이

내에 용자심사 결과에 대하여 용자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

- 한국농어촌공사는 용자심의회 심의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용자결정에 관한 사항을 용자신청인 및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는 용자대상사업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용자 승인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자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음

카. 용자금의 회수

- 용자지원 대상자가 용자금을 용자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용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용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타. 기타 승인사항

- 한국농어촌공사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용자심사 및 용자심의위원회 운영 등 용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세부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함

파. 용자심의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자심의회를 설치

< 용자심의회 >

① 구 성

- i)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ii) 용자심의회 위원은 해외농업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
- iii)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 iv) 용자심의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 v)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② 기 능

- i) 용자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 해외농업개발사업 자금 용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 용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 용자 원리금 감면에 관한 사항
 - 용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용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운 영

- i) 용자심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가능

- ii)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iii)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짐
- iv)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용자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심의·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원 수당 등 비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음

하. 해외농업개발사업 자급에 소요되는 용자금 지원계획의 수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용자 소요예상액을 조사하여 용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함

거. 비상시 해외농업개발 자원의 반입명령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용자신청인에게 용자결정을 통보할 때,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6. 기타사항

- 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축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개발사업자

* '10년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농·축산물의 범위가 확대 변경된 점을 감안, 해외자원개발신고서와 용자 신청서 동시 제출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 타당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자
- 해외농업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자
- 해외농업개발 해당 국가로부터 투자계획 승인을 받는 등 용자 결정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7조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밀, 옥수수, 콩 등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을 개발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곡물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자 우선 지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 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비용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토지의 임차, 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융자지원 대상금에서 제외

4. 지원형태

- 국고 융자(금리 연 2.0%,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를 원칙으로 함. 다만, 사업자별 융자지원 한도액/비율은 연간 예산규모, 융자 신청 규모를 감안하여 융자심의회에서 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해외농업개발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전년 12월까지)
- 사업대상자, 융자 규모, 융자 조건,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 및 사업자 신청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신청 공고에 대한 안내 및 신청서 접수
- 사업신청 내용 검토 후 정리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융자심의회 운영 등 융자업무에 관한 세부규정 제·개정 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득하고, 운영

사업(신청)자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고한 사업신청 일정에 따라 사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

<구비서류>

- ① 해외농업개발자금 용자(대출)신청서, ②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③ 사업계획서, ④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자료, ⑤ 관련계약서, ⑥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⑦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용자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승인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

한국농어촌공사

- 용자심의회에 상정할 용자 심의서 작성
 - 신용조사 등 전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용자심의회 심의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사업(신청)자

- 용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요청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제공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지

한국농어촌공사

- 농식품부의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후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변경 필요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관리기금 지출계획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월별 지출계획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및 자금 배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자의 사업추진현황을 분기별로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 용자 신청에 대하여 담보설정, 대출시기 등을 협의하여 자금지출
-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비 정산
 -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말까지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사업(신청)자

- 한국농어촌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자금대출 신청
- 대출관련 추가 서류 등의 자료를 요구가 있을 때 성실히 제공
- 사업자는 용자목적에 적합하게 자금을 집행
-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 상황 등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제공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사항은 제도개선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완료이후 용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말을 기준으로 사업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 필요시에 현지점검을 통해 운영상황을 정밀 조사 실시

사업(신청)자

- 사업 완료 후 용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말을 기준으로 사업운영 상황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
- 사업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 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

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익년도 1/4분기 중에 사업추진 결과에 대하여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측정

나. 만족도 조사

- 용자지원 업체에 대하여 용자지원제도, 용자지원 효과 등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연도 말에 실시
- 사업자의 불편사항,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함께 조사하여 향후 사업추진 방향 수립 등에 반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 용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

- 필요시에는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 실시

나. 환 류

- 사업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사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와 부진 사업자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효율화 제고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8. 기타사항

- 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농지관리기금사무 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IV.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1년도 수요조사는 '10년 상반기 중 공고를 통해 실시, 2011년도 예산규모 등 2011년도 계획수립에 참고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 사업시행지침, 융자기준 등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4/4분기 중 2011년도 예산 확정 후 공고 예정

[별지 제1호서식]

해외농업개발자금 용자(대출)신청서				
신청자	1. 상 호	(전화번호 :)		
	2. 대 표 자			
	3. 주 소			
사업개요	4. 사 업 명	5. 대상작물		
	6. 사업명칭	개발사업		
	7. 사업장 소재지			
	8. 투자방법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합작	9. 참여지분비율	%
	10. 계약상대자		11. 계약형태	
	12. 국내 합작투자자			
	13. 해외 합작투자자			
	14. 계약체결일		15. 계약기간	(년)
	16. 사업 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
자금소요	17. 전기간 총 사업비			
	18. 신청년도 총 사업비			
	19. 신청인 부담액			
	20. 용자신청금액			
	21. 용자방법	<input type="checkbox"/> 원화	22. 담보종류	
<p>「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해외농업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기준」 제20조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자금을 용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p> <p>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p>				
첨부서류	<p>1.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2. 사업계획서(진출국주재 아국공관이나 진출국의 공공기관 확인) 3.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 자료 4. 관련계약서 5.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6.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발급후 3개월 이내 분)</p> <p>※ 투자 대상국 현지의 서류는 현지 공관의 확인 등 의견을 첨부하되,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번역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p>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별지 제2호서식]

해외농업개발 사업 계획서

(※ 아래 각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추진배경

추진경위(검토개시/계약/참여/허가/생산개시/지분이전 등 기재)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추진사업 개요

- 사업명 :
- 사업소재지 :
- 사업추진단계 :
- 대상작물 :
- 개발방식 :

합작사 및 지분

참여사 및 합작사(국적)	투자지분(%)

* 운영권자

(합작)계약 주요내용

- 거래 당사자 :
- 합작 회사명 :
- 거래지분 및 지분구조 :
- 거래가격 및 대금지급조건 :
- 생산물 판매계약 :
-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방식 :

- 세제(로얄티, 법인세, 소득세, 배당세 등) :
- 기타사항 :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계획

- 프로젝트 총 소요자금

(단위 : 백만원, US천불)

구 분	총사업비	해외파트너 부담액	한국측 부담액		
			계	○○사(%)	○○사(%)
합 계					
기 투자비	소계				
당년도 (‘○○)	소계				
향 후 투자비	소계				

* 구분 내용은 사업비 항목별로 작성

- 신청인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US천불)

구 분	자금조달 실적 및 계획				
	계	농기금	자체자금	외부차입	기타
합 계					
기 투자비					
당년도 투자비					
향 후 투자비					

2. 해외농업개발현황

가. 농 장 형

농장 개요

- 농장 위치 :
- 농장 면적 :
- 대상작물 선정 :
- 토지조건(토양) :
- 수원공 및 관개시설 현황 :
- 농기계 현황 및 소요량 :

입지여건

- 기 후 :
- 노동력 :
- 교통(일반) :
- 철도/항구 :
- 전 력 :
- 기타사항 :

개발여건

- 작업조건 :
- 주요작물 생산물 :
- 용수계획 :

생산 및 판매 실적

- 생산실적 :
- 판매실적 :

나. 유통형

유통시설 개요

- 사 업 량 :
- 위 치 :
- 시설면적 :
- 시설규모
 - 건조 : 톤/년
 - 저장 : 톤/년
 - 가공 : 톤/일

- 입지여건
 - 기 후 :
 - 노동력 :
 - 교통(일반) :
 - 철도/항구 :
 - 전 력 :
 - 기타사항 :

- 개발여건
 - 작업조건 :
 - 주요작물 생산물 :
 - 용수계획 :

- 생산 및 판매 실적
 - 생산실적 :
 - 판매실적 :

3. 사업계획

- 사업추진일정

사업기간 (YY.MM~YY.MM)											
일련 번호	수행 내용	추진 일정 (년도)									비고
		'00	'00	'00	'00	'00	'00	'00	'00	'00	
1											
2											
3											
4											
5											

- 사업규모
 - 개발
 - 개발대상 추정량
 - 품질 등급
 - 생산규모 : 톤/년

- 시설투자계획
 - 투자목적 :

- 투자방법 및 항목 :
- 년도별 시설투자 총괄표

(단위 : 백만원, US천불)

시설투자내역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 시설투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US천불)

시설투자내역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가격×수량	가격×수량	가격×수량	가격×수량
토지구입/임차					
농기계 구입/임차					
건조시설					
저장시설					
가공시설					

- 생산 및 판매계획

- 생산계획

(단위 : 톤)

구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 판매계획(장기공급계약의 경우 계약조건 명시)

(단위 : 톤)

구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 주요 판매처 :

□ 사업검토 및 분석

- 시장성 및 기술성
- 경제성(수익성) 검토
 - 투자비 추정
 - 손익 추정
- 투자 소요자금의 검토
 - 자체자금
 - 차입금(차입조건)
- 사업의 경제성
 - 생산량 및 판매량
 - 판매가격(추정근거 제시) :
 - 생산원가(추정근거 제시) :

구 분	제 출 자 료	비 고
개 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위치도 ○ 농장개발 조사보고서 ○ F/S 보고서(현금흐름표 등 경제성 분석 결과) ○ 내부평가보고서 ○ 생산설비 설치계획 ○ 투자비 산정자료 	

- 사업자의 투자수익률
 - 프로젝트 전체(IRR, NPV, PBP 등)
 - 판매가격(IRR, NPV, PBP 등)
 - 민감도분석 등

□ 기대효과

14	농기계임대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물부 농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물부	농산경영과	과 장 김남수 사무관 김기주	02-500-1986 02-500-1998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2년까지 350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 방식
		'07	'08	'09		
▪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수 (천호)	52	14	25	36	2월	전국 발농사용 농기계 임대실적 (사업추진실적보고서)
▪ 임대농기계 연간사용 실적(일/대)	6.6	5.9	6.2	6.4	2월	[농기계 대여일수/대여농기계 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후
합 계	19,350	32,000	40,000	50,000	474,000
보 조	8,925	16,500	20,000	25,000	237,000
용 자	-	-	-	-	-
지방비	9,200	16,500	20,000	25,000	237,000
자부담	1,225	-	-	-	-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광역시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할 것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임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할 것
 - 임대사업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 임대료 징수 및 관리, 대체농기계 구입, 사후관리, 홍보 등 임대사업 운영전반에 대하여 책임관리
 - 발작물브랜드, 고품질쌀브랜드, 들녘별경영체육성, 조사료생산 등 경쟁력제고 사업과 연계 추진

3. 지원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보한 임대용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농기계은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중 농작업 대행을 직접 수행하는 농협에 임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및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도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는 연간 이용시간이 적거나 기계화율이 낮은 밭농사용 파종·이식 및 수확 등에 필요한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는 부속작업기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엔진이 부착된 소형 작업기의 본체구입은 가능하나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은 구입할 수 없음.
 -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벼농사용 농기계는 농협에서 『농기계은행사업』으로 추진
 - 임대농기계는 많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함. 다만, 발작물브랜드, 고품질쌀브랜드,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등 농식품부의 경쟁력제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거나 농기계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중 농작업 대행을 직접 수행하는 농협에는 장기임대 할 수 있음

○ 임대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
- 지게차 등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구입비
- 임대농기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컴퓨터 및 S/W 구입)
 - ※ 가급적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보급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입출고 관리 및 임대료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
- 운영비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등 (연간 30백만원 이내)
 -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비와 자체예산을 활용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총사업량 : 50개소(사업 신청량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 사업단가 : 600~1,20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총사업비 : 50,000백만원(국고 25,000백만원, 지방비 25,000백만원)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50개소	50,000 백만원	25,000	25,000	-	25,00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도지사는 시·도별 국고지원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설사업과 증설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함.
 - 신설(추가)사업 : 사업단가 1,2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농기계 및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 지원(처음 설치 1,200백만원 이내, 추가설치 1,000)
 - 보관창고 규모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설치하되, 총사업비의 50%이내 이어야 하며, 필요시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음.
 - ※ 신설사업 :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처음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
 - ※ 추가설치 : 농식품부 지원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설치하였으나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해당 시·군·구 관내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증설사업 : 사업단가 6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농기계 및 사후관리 장비 지원(보관창고는 지원하지 않음)
 - ※ 증설사업 : 임대수요 증가로 기존 농기계임대사업장내에 임대농기계 및 사후 관리 장비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지원조건, 자금용도, 임대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1월)

시·도

-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시·군·구에 시달(전년도 11월)
- 시·군·구가 제출한 임대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대해 현지 확인하고 우선순위와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신청(전년도 12월)

시·군·구

- 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대상 지역의 영농 현황,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한 농기계 임대사업계획을 첨부, 임대사업신청서를 시·도에 제출(전년도 12월)
 - 사업계획 수립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가 통보한(기초기술 공학과-259호, '06.10.24)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가이드”를 활용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시 장기적인 임대농기계 확보계획을 감안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다단계재 방안 등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신청서 양식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함.
- 고품질쌀브랜드, 들녘별경영체육성, 발작물브랜드 등 경쟁력제고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임대농기계 구입계획, 농기계 임대방식, 임대료 징수방법 및 이용율 제고방안 등에 대한 중·장기 세부계획서(최하3년 이상)를 수립하여 추가 제출함
 - 장기 임대시는 농기계를 임차하는 농업인 등의 보관창고 확보현황, 수리비 부담, 공동이용 농가 및 경지면적, 농기계 공동이용방법 등을 종합하여 수립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임대사업신청서의 적정성, 농기계임대사업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계획량 및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함(당년도 1월)

-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농기계임대사업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사업자 선정은 농기계임대사업의 최초신청 여부 또는 그 동안의 지원액 등을 감안하여 시·군별로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선정
 - 다만, 농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시·군·구는 우선 선정할 수 있음.

<선정시 고려사항>

- 신설사업중 최초설치의 경우 보관창고·운영조직 확보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신설사업중 추가설치 경우 임대사업 운영실적(이용율), 보관창고·운영조직 확보 여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 증설사업의 경우 임대사업 운영실적(이용율), 보관창고·운영조직 확보 여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되, '06년이전에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설치한 시·군·구는 우선 선정가능
 - * 추가설치 또는 증설사업의 경우에는 <붙임> 농기계임대사업 세부계획서의 5.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제출

시 · 도

- 농림수산식품부가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대상자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함 (당년도 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 · 군 · 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후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함(수시)
 - 단, 승인된 사업계획서보다 지자체의 자체예산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추진

(임대농기계 추가구입, 보관창고 확대설치 등)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지사가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함

-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조기에 제정하고, 임대농기계 구입 및 이용에 따른 A/S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등은 시장·군수·구청장과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스피드스프레이어,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 농작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적정 작업면적을 확보하고, 기존 임작업자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임대료는 임대농기계 구입가격, 내용연수, 지역 임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산정하되, 내용연수 경과 이후 임대농기계를 재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임대료는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한 금액을 감안하여 산정
 - 임대료 산정시 반드시 농업인, 지역농협,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 임대사업의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대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농기계임대사업의 명칭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사용하기를 권장함.
 - 일부 시·군에서 『농기계은행』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농협에서 '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벼농사용 농기계임대사업 명칭을 『농기계은행』으로 사용하고 있어 명칭 중복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함(당년도 2월)

시·도

- 시·군별,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당년도 2월)

- 농림수산식품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함(분기별)

시·군·구

-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구입 및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자금수요를 파악, 제출함
-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임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현지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임대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현지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함
 - 시·도지사는 상반기중 현지점검 결과를 '10. 7. 3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을 현지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당년도 10월)
-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11. 1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시·군의 보조사업비 정산시 임대농기계 구입 증빙서류를 징구·확인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본 제출

자금관리주체(시·군·구)

-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고장을 감축을 위해 반드시 안전사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농업특성화기술교육(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기계 교육·훈련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강화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 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제·개정시 1부를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리대장,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3호서식]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정부가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200 년 월 일
 ○ ○ 시장·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아크릴, 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해야 함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임대용농기계	○기종별 내용연수 - 탈곡기, 곡물건조기 : 8년 - 경운기, SS기 : 6년 - 관리기, 방제기 등 : 5년	○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의 사용금지	○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 사용 ○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망실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10년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자금관리주체(시·군·구)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추진한 시·군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보완토록 하고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04년이후 농기계임대사업(자체사업 포함)을 추진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당해연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10.12.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분석하여 사업성과를 측정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임대사업 평가회를 개최(년 1회 이상)하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 및 추가 지원시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환 류》

- 임대사업 설명회 및 평가회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1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내용 : 2010년과 동일
-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신청서류 : 시·군·구의 농기계임대사업신청서 1부.(세부계획서 불필요)
- 신청기한 : 2010년 1월 15일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신청은 '10.6월말까지 제출, 기타 사항은 '10년도와 동일함

<붙임>

농기계임대사업 세부계획서(예시)

1. 일반현황(시·군)

경지면적 및 농가수

('08.12월말 현재)

논	밭	농가수	호당 면적		비고
			논	밭	
ha	ha	호	ha		실재배면적 기준

농기계 보유현황

('08.12월말 현재)

구분	논 농사용								밭 농사용				
	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방제기	바인더	콤바인	곡물건조기	계	관리기	SS기	농산물건조기	온풍난방기
보유대수	대												
보급율	%												

2. 다른 사업과의 연계추진 여부(발작물 브랜드, 고품질쌀 브랜드 등)

- 사업명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천원
 - 농기계 구입, 시설장비 확보 등 세분화하여 작성
- 세부 사업내용
- 임대사업으로 공급할 농기계 내역(기종명, 규격, 수량, 단가, 소요금액 등)

3. 임대사업 추진 개요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여부 :

*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로 첨부

□ 사업량 및 총 사업비

사업량	총 사업비 (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개소	(100%)	(%)	(%)

□ 임대 농기계구입 및 사후관리 지원 소요금액

구분	총 사업비	임대농기계 구입		보관창고 설치		관리장비 구입		기타 (천원)
		수량 (종/대)	소요금액 (천원)	규모 (m ²)	소요금액 (천원)	수량 (점)	소요금액 (천원)	
합계	(100%)		(%)		(%)	점	(%)	(%)
임대사업								
관련사업								

4. 세부 추진계획

□ 임대사업 수요조사 결과

- 조사기간 :
- 조사지역 :
- 조사대상 농가수 :
- 조사결과
- 조사결과를 임대사업에 반영한 내용 :

□ 임대농기계 구입

구분	기종명	규격	수량 (대)	단가 (천원)	소요금액 (천원)	비고
임대사업						
(소계)						
관련사업						
(소계)						
합계						

주) 1. 구입기종이 많은 경우 별표로 작성

2. 훈련용 농기계를 임대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별표로 작성 첨부

□ 임대 유형

임대 유형	대상 농기계	임대 대상자	비 고
장 기			
단 기			
농작업 대행			작업면적 확보내역 (대상지역, 면적 등)을 기재

□ 임작업료 징수액

- 기종별로 임작업료 징수금액 및 산출근거를 표기(필요시 별표로 작성)
- 민간 임작업자가 징수하는 임작업료 현황을 참고로 추가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계획 및 확보내역

- 신규설치

면적 (㎡)	구 조	설치장소	부대시설	완료시기

* 부대시설은 호이스터, 세차시설, 정비실 내역 등을 표기(필요시 별표로 작성)

- 사업부지 확보 여부 및 계획 : (창고 부지를 확보한 경우 건축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고 사업확정 후 바로 건축이 가능한지, 또는 관련 절차(도시계획 변경, 농지전용 등)를 진행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작성)

- 기 확보

면적 (㎡)	구 조	설치장소	설치시기	현재 사용용도	비 고

* 사진 및 증빙서류 첨부

□ 임대 농기계 교육 및 사후관리 방안

- 임대시 운전조작요령 교육방법
- 임대사업 전담인력 확보내역, 임대농기계 공제(보험) 가입계획
- 임대농기계 관리방법 등을 표기

5.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실적

□ 임대실적 및 임대료 징수액('07~'09까지 3개년 실적)

연도별	벼농사용				밭농사용			임대료 징수액 (천원)
	농기계 임대실적 (대)	임작업·임대일수 (일)	작업면적 (ha)	수혜농가수 (호)	농기계 임대실적 (대)	임작업·임대일수 (일)	수혜농가수 (호)	
2007								
2008								
2009								

- 주) 1. 임작업·임대일수(작업면적)는 임작업과 임대일수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
 2.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실적은 추가설치 또는 증설사업을 신청한 시·군만 작성

□ 기종별 임대실적

기종명	연도별 임작업·임대일수			비고
	2007	2008	2009	
평균 이용일수				

6. 행정사항

조례제정 추진계획

- 조례(안) 작성, 입법예고, 의회의결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일정을 표기

임대사업 홍보계획

구 분	수량 또는 보도횟수	홍보 시기	비 고
리후렛			
지역방송, 지방지			
반상회보			
기 타			

세부사업 추진일정

사업별	내용 및 추진일정	비 고
임대농기계 구입	○ 입찰공고 : 2010. . . . ○ 계약체결 : ○ 납품완료 :	
보관창고 설치	○ 설계완료 : ○ 건축완료 :	
조례 제정	○ 조례(안) 확정 : ○ 의회 의결 :	
사업추진 실적	○ 사업추진실적 보고 : 2010. 12. 20.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보고 : 2011. 1. 10.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임대사업 정산결과보고

1. 시·도 :

2. 사업비 집행명세

총괄표

(단위 : 천원)

시·군별	계 획			집행 실적			이 월			불용· 집행잔액 (국고)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시											
○○시											
○○군											
○○군											

시·군별 세부집행실적

(단위 : 천원)

시군별	구 분	사 업 비 집 행 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
		계	국고보조	지방비		
○○시	합 계					
	임대농기계 구입					
	보관창고 설치					
	관리장비 구입					
	기 타(운영비 등)					
○○군	합 계					
	임대농기계 구입					
	보관창고 설치					
	관리장비 구입					
	기 타(운영비 등)					

* 차년도 이월 또는 불용시 그 사유를 제출

[별지 제3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	---------------------------------

구입 금액			
계	국비	시·도비	시·군비
원			

구입 년월일		형 식 명	
규 격		제 조 번 호	
성 능			
주요 특징			
제 조 회사 · 구 입 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 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실적

(기 송부한 엑셀 서식으로 작성)

1. 임대농기계 구입실적('10년)

총괄

시·군명	임대농기계 구입							비고
	사업비	계	발농사용	벼농사용	과수용	축산용	공용	
합계	천원	대						
○○시								
○○군								
○○군								

시·군별 임대농기계 구입내역('09년도에 기 송부한 엑셀 서식으로 작성)

시도	시군	사업구분	사업명	구입연도	동력원	기종명	사업량(대)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비고(용도)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용자	

<작성요령>

- ① 작성대상은 농식품부의 농기계임대사업 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지원사업(농진청, 기타부처 사업 포함) 및 지자체의 자체사업 등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 하면서 임대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작성기준은 2010년 구입실적
- ② 사업구분은 농식품부, 농진청, 자체 등 사업 지원기관 표시
- ③ 사업명은 해당 사업지원기관의 사업명 명시
- ④ 동력원 란은 동력원이 자체엔진을 이용하는 경우 “자주형”, 타 농기계에 부착하여 활용하는 경우 “부속작업기”,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전기”로 표시
- ⑤ 기종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기계가격표』의 기종명으로 통일하고, 기종별로 작성(예시: “관리기 외 10종” 등의 작성은 안됨), 기종은 띄어쓰기 없이 모두 붙여씀.
- ⑥ 사업비는 정부지원액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한 사업비가 있는 경우 포함하여 작성
- ⑦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농기계를 시·군으로 배분하여 임대사업에 활용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 실적으로 작성
- ⑧ 비고란에는 발농사용, 벼농사용, 과수용, 축산용, 공통 등 해당 농기계의 주 사용용도를 기재

2. 임대실적 및 임대료 징수액('04~'10 설치 시·군)

□ 총괄실적

시·군	벼농사용				밭농사용			임대료 징수액 (천원)
	농기계 임대실적 (대)	임작업·임대일수 (일)	작업면적 (ha)	수혜농가수 (호)	농기계 임대실적 (대)	임작업·임대일수 (일)	수혜농가수 (호)	
○○시								
○○시								
○○군								
○○군								

* 임작업·임대일수(작업면적)는 임작업과 임대일수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

□ 기종별 임대실적

시·군	기종명	보유대수	임작업·임대일수	비고

3.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여부('10년 설치 시·군)

시·군	설치내용		사업비 (천원)			
	면적(m ²)	구조(형식)	합계	국고	시·도비	시·군비
○○시						
○○시						
○○군						
○○군						

4.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개정 여부

시·군	제·개정 여부	제·개정 일자
○○시	제정	20 . . .
○○군	개정	20 . . .
○○군	개정	20 . . .

*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제·개정한 시·군은 조례내용을 한글 파일로 첨부

5. 수리비 지출현황('04~'10 설치 시·군)

시·군	수 리 비 (천원)			비고
	계	지자체부담	농가부담	
○○시				
○○군				
○○군				

* 농가부담 : 임대계약에 따라 농가에서 수리비를 부담한 금액임

6. 임대농기계 보험가입 현황('04~'10 설치 시·군)

시·군	가입대상 농기계	가입대수(대)	보험료(천원)	보험회사
○○시				
○○군				
○○군				

7.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요원 확보내용('04~'10 설치 시·군)

시·도	시·군	운영요원 (명)			비고
		계	정규직	비정규직	

식량분야

II. 생산 및 유통개선

15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과 장 김남수 사무관 홍인기	02-500-1986 02-500-1990
지자체 (시·도 및 시·군)	농산유통과/농산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①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I. 사업개요

1. 목 적

- 최근 쌀의 공급 과잉기조 지속, 수입 개방확대, 소비자 요구변화, 대형유통업체 성장 등 쌀 유통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차별화를 위한 쌀 브랜드화가 불가피
- 통합 RPC(Rice Processing Complex) 중심으로 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시·군단위 대표 브랜드쌀 육성을 통해 국내 쌀 품질경쟁력을 높이고자함

2.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19년까지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생산·유통거점별 대표브랜드쌀 100개 육성
 - 브랜드쌀 육성목표(누계) : ('10) 8개소(34) → ('11~'19) 66(100)
 - * 기선정된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기존시설 증설사업 10개소 별도 지원
 - 대표 브랜드쌀 유통비중(%) : ('10) 25 → ('19) 50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대표 브랜드쌀 유통 비중(%)	25%	10%	15	20	익년 2월	사업대상 경영체의 대표브랜 드쌀 유통비중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17,600 (8개소)	17,600 (8개소)	22000 (10개소)	24,400 (8개소)	243,350 (76개소)
보 조	7,200	7,200	8800	9,760	97,340
지방비	4,000	4,000	4400	4,960	51,740
자부담	6,400	6,400	8800	9,680	94,270
○ 시설현대화	16,000	16,000	20000	24,000	228,000
- 보 조	6,400	6,400	8000	9,600	91,200
- 지방비	3,200	3,200	4000	4,800	45,600
- 자부담	6,400	6,400	8000	9,600	91,200
○ 교육 홍보 및 컨설팅 지원	1,600	1,600	2000	400	15,350
- 보 조	800	800	800	160	6,140
- 지방비	800	800	400	160	6,140
- 자부담	-	-	800	80	3,070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미곡종합처리장(RPC) 중심의 규모화된 사업법인 형태의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
 - 시장·군수의 협조하에 결성된 사업법인 형태의 규모화 된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지자체+농업인+유통업체 등이 출자하여 결성한 법인, 기타 법인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RPC간 통합 등으로 규모화된 RPC경영체
 - 요건 : 원료곡 취급물량 15천톤이상인면서, 고품질 브랜드쌀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브랜드 경영체(단, 한 시·군에 2개소(농협 1, 민간 1)를 초과 못함)
 - * 시장·군수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 등 RPC 규모화 유도
- 기 지원된 대규모 브랜드경영체는 기존라인에 대한 증설 지원 가능
 - 요건 : 쌀 취급규모 32천톤이상인면서, 대규모RPC로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 경영체

3. 지원대상

- 생산·유통거점별 대표브랜드쌀 육성을 위한 비용을 포괄 지원
 - 가공시설의 현대화, 교육·홍보·컨설팅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브랜드 경영체 시설현대화 지원

- 지원시설
 - 고품질쌀 가공을 위한 기계 설비류 설치
 - GAP(우수농산물) 및 자동화 시설
 - 쌀품질검사 장비류 구입, 기타 부대 설비류 등

<주요 지원시설별 내역>

구 분	구성부문	기 계 종 류
고품질 가공 및 품질고급화 기계설비류	원료정선부	원료정선기
	현미부	현미기 및 왕겨풍구, 현미분리기, 입선별기, 현미석발기, 현미색채선별기 등
	정미부	정미기, 작은싸라기선별기, 큰싸라기선별기, 백미색채선별기, 연미기 등
	포장부	자동포장기, 로봇자동 적재기 등
	재고관리부	재고관리 및 자동수율 시스템 등
	부대시설	유도배출형 버켓엘리베이터, 집진시설, 미강 및 왕겨시설, 전기공사 등
GAP 시설		공정간 건축 칸막이, 환기시설, 해충침입방지 이중문, 공장내 바닥공사 등
품질검사 장비류		외관분석기, 성분분석기, 제현율 또는 도정수율 판정기, 백도계 등

* 상기사설 신규 설치 후 건축공사 지원가능

- 기계설비 기준 : 처리용량 7.5톤(백미)/시간당 이상
 - 가공기계류 : 연중 균일한 품질(외관·식미 등)의 안전한 고품질쌀 생산이 가능한 구조
 - 품질검사 장비류 : 계량, 제현 및 도정수율판정, 성분분석(단백질 등), 백도, 외관 및 품질분석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나.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및 브랜드 컨설팅 지원

- 지원범위 : 브랜드 경영체의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등을 위한 계약재배농가 교육·홍보지원, 브랜드쌀 홍보, 브랜드 컨설팅 비용 등

<쌀 브랜드경영체 교육·홍보·컨설팅비용 배정기준(예시)>

세 부 내 역	구성비
○ 교육·홍보 부문 - 브랜드 경영체 및 참여조합 임직원 국내 위탁교육 (경영, 브랜드, 마케팅, 전문CEO 교육 등) * 농협중앙회 주관하에 집합교육 실시 가능 - 대형유통업체 종사자(바이어 등) 초빙 교육 - 우수 계약 작목반 평가 및 시상 등 - 계약재배 농가교육 및 홍보물 - 계약재배 농가교육용 홍보물 제작 - 대도시 쌀유통매장, 쌀가공식품업체 현장견학 등 -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초청행사 등	65%
○ 브랜드쌀 홍보 부문 - 시·군 단위 통합 브랜드 개발 - TV, 라디오, 지하철 등 홍보추진 - 홍보용 전단지 제작 및 인터넷 홍보 등 행사추진 - 지자체 주관 브랜드쌀 특판행사 참여 홍보 - 브랜드 경영체의 통합 기획전시회 개최 및 홍보 등	
○ 시설 및 브랜드 경영컨설팅 부문 - 시·군단위 시설통합, 현대화, 성능평가 등 시설 컨설팅 - 가공시설 및 운영에 관한 경영컨설팅 추진 - 브랜드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추진 * 생산, 유통, 홍보, 경영 등의 전반적인 내용 - 판매 담당직원의 마케팅 교육 추진 등	30%
○ 지자체와의 협력 부문 - 브랜드쌀 품질관리 조례제정 등 관련 협의회 추진 - 시·군내 쌀산업 관계자 교육 및 홍보 추진	5%
합 계	100%

* 세부내역 및 구성비는 쌀브랜드 경영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 변경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쌀가공 시설현대화 : 국고 40%, 지방비 20, 자담 40
 - 교육·홍보·컨설팅 : 국고 40%, 지방비 40, 자담 20
 -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비율을 상향할 수 있으며, 자담비율중 일부를 추가 지원 가능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쌀가공 시설현대화 : 개소당 총사업비 3,000백만원(1년간 지원)
- 교육·홍보·컨설팅 : 개소당 총사업비 200백만원(4년간 균분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주관기관 : 시장·군수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 수립시달(전년도 12월말)

브랜드경영체

- 브랜드경영체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고품질 브랜드쌀 중장기 육성계획(5개년)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에 연도별 사업목표 설정, 브랜드쌀 생산기반 조성, 지역공동브랜드 개발 및 품질관리 기준설정, 브랜드관리 및 마케팅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생산·유통거점별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 지역 쌀 산업여건과 전망 분석
 - * (예시) 재배동향, 품종, 호당 재배면적, 농기계 보유, 재배기술, 수확후 관리, 쌀 판매 등
- 연도별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목표 설정(5개년 계획)
 - * (예시) 1차년도 계약재배를 전체의 %에서 연차적(5개년)으로 확대하여 사업종료 연도에 %이상 확대
 - * (예시) 대표 브랜드쌀 취급비율 : (1차년도) 10% → (종료연도) 50% 이상
 - 고품질쌀 브랜드 품질관리 목표 설정 및 실천 계획
- 〈 품질관리 목표 : 예시 〉
 - 질소질 비료 사용 : 7kg/10a당 · 단백질 함량 : 6.5%이하
 - 완전미 비율 : 95%이상 · 재배 품종 : 1~2품종
 - 수확후 관리 : RPC 전량처리 및 구분보관
- 품질관리 기준 등 대표브랜드 관리 규약
- 브랜드 경영체 및 소규모 브랜드의 통합 계획
- 브랜드 경영체 농가조직화, 품질균일화·브랜드 구축 및 홍보 계획
- 대표브랜드 개발, 교육·홍보 계획
- 브랜드 경영체 자금 확보계획(자부담 및 지방비)
- 지자체의 추가 지원계획(지원확약서 있는 경우 첨부)
- 브랜드 마케팅, 유통·판매 지원 계획 등
- 기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계획수립시 쌀 생산·유통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 통하여 각계의 의견 수렴·반영
 <구 성>
 - 농업인 대표, 농관원 출장소, 학계, 행정, 유통전문가, 브랜드 경영체대표 등 10명 내외 구성
 <기 능>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계획 심의, 품질기준 설정 등 대표브랜드 관리규약 심의, 대표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

시·군

- 브랜드경영체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농정관련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시·도에 제출(매년 8월말)
 - 해당지역의 쌀산업 발전방향과 이에 부합한 RPC 통합, 대표브랜드 육성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
 * 2개 시·군 이상 연계해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관 시·군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시·도

- 시장·군수가 추천한 브랜드 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경영체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추천(매년 9월말)
 - 시·도지사는 시·도단위 중장기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계획을 토대로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적합성, 발전가능성, 지원계획 등을 중점검토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계획서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 투자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여 사업계획이 부실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평가기관 선정 및 전문평가위원단(7명 이내) 구성
- 서면·현장평가 및 공개발표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사업대상 순위결정
 - 가중치 : 서면 및 현장평가 70%, 공개발표평가 30%
- 사업자 선정결과를 지자체에 통지
 -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 사후관리

※ 평가절차

<서면평가> : 전문평가기관

-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붙임1)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총점 100점 기준 70점 미만인 경우 현장평가에서 제외

<현장평가> : 전문평가기관

- 전문평가기관에서 평가팀을 구성하여 서면평가를 통과한 경영체에 대해 현장평가 실시
 - 주요 평가내용 :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 사업추진 여건확보 여부 등
 - 현장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발표 평가에서 제외

<공개발표평가> : 전문평가위원단

- 시장·군수 또는 사업주체 대표자의 사업계획서 주요내용을 발표 및 질의·응답, 서면·현장평가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전체 평가항목평균 70점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요청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세부시설 설치 전에 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야 함
 - 민간RPC의 경우 시설·장비 설치에 관하여 한국식품연구원 등 설계 및 설비 설치에 관한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

지자체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
 - 시장·군수는 브랜드 경영체 농가 조직화 교육·홍보 및 브랜드 컨설팅사업 계획 검토 확정시 특정부문에 사업비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 배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3월말)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을 반납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사업자 및 지자체

1) 브랜드 경영체 시설현대화사업

가) 설계 : 건축·건설 관계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설계서를 이용할 경우는 공사착수 전에 시장·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공

나) 시설업체 선정

○ 시설업체의 자격

- 해당분야 관련법에 의한 공사면허를 가진 자(일반 또는 전문면허)로서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설비에 참여 허용
- 건축·전기·통신·소방·환경 등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

○ 선정방법

- 생산자단체 및 일반사업자는 관련단체(농협중앙회 및 협회 등)의 책임하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함
- 농협중앙회 및 개인 RPC 단체에서는 계약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계약업무 교육·홍보 실시
- 이미 설치한 건조·저장시설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시공사 참여 제한가능

다) 감리

- 생산자단체 및 일반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감리를 할 수 없음)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감리업체 선정 계약 및 감리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업체 미선정시 이를 시정토록 행정지도 강화

라) 성능검사

- 시설설치 후에는 전문공공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 시설설치 → 검사의뢰 → 성능검사 → 검수 및 대금지급

마)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2) 브랜드 경영체 농가 조직화 교육·홍보 및 브랜드 컨설팅 사업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사업계획을 확정
- 브랜드 컨설팅 업체는 브랜드 경영체 경영, 브랜드 시설 등의 컨설팅 수행실적, 품질분석 장비보유, 컨설턴트 확보, 컨설팅 제안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

- 브랜드 컨설팅업체 선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선정
 - 시장·군수는 브랜드 컨설팅업체 공모결과를 계통보고(시·군→시·도→농식품부)
- 3) 사업추진 일반사항
- 브랜드쌀 생산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참여농가의 이행체계를 구축
 - 브랜드 경영체는 농가조직체 대표, 기술센터 등과 협의하여 재배 및 품질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 생산관리 프로그램에는 브랜드 경영지침서의 품종선택, 토양·수질관리와 재배 및 수확후 관리의 표준화 등을 포함해야 함
 - 농업인의 생산관리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시 브랜드 사업의 참여 배제 등 불이익 조치
 - 시·군 및 브랜드 경영체는 고품질벼 보급종중에서 품종을 선택하여 계약재배
 - 국립종자원에서 정부 벼 보급종 공급시 RPC에 대한 보급종 사전주문·공급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우량종자 공급추진
 - 브랜드 사업계획 수립 등
 - 브랜드 육성사업 계획에 따라 농가조직체와 협의하여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벼 매입 실시
 - 수확후 유통·저장·가공단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
 - 브랜드(이름·디자인·로고 등) 개발, 마케팅 전략, 브랜드 홍보 및 파워제고 등을 위한 전략수립 추진

4. 자금배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대상 경영체의 시설현대화 사업계획 적정여부, 농가조직화 및 교육·홍보, 브랜드컨설팅 사업계획 적정여부,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경영체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 확인후 보조금 교부
 - 특히 통합RPC의 경우 시설통합계획 면밀히 검토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호에 의거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 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상황,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및 브랜드 컨설팅 지원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6월, 11~12월)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농협중앙회, 개인 RPC 단체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시설현대화 분야 : 주요설비 설치계획 및 진척도, 기계설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지원계획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교육·홍보·컨설팅 분야 : 브랜드 경영체의 농가조직화 및 기반 조성 정도, 세부추진계획, 지자체 지원계획 등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사진촬영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브랜드 경영체 교육·홍보 및 컨설팅사업비 정산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는 RPC 시설관리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RPC와 생산농가간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종통일, 공동농작업, 브랜드 판매확대로 지역특산미를 육성하고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도모
- RPC 쌀 수탁판매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도

- 시장·군수는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매년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사업대상 브랜드 경영체의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미곡종합 처리장 (건조·저장· 가공시설 포함)	시설설치 완료익년 부터	10년간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10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시설 양수도를 할 수 없음. 단,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에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가능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비고
○ 사업계획서	○ 시장·군수	○ 시·도지사 (농식품부장관)	○ 전년도 8월말까지	○ 별지1호서식
○ 사업추진실적	○ 시장·군수	○ 시·도지사 (농식품부장관)	○ 매분기 익월10일까지	○ 별도 시달
○ 사업비검정 및 정산 실적	○ 시장·군수	○ 시·도지사 (농식품부장관)	○ 익년도 1월말까지	○ 별도 시달

기 타

- 농협중앙회 및 개인 RPC 단체에서는 자체 기술지원단(또는 기술자문단)을 구성하고 시공(설비)업체와 연계하여 기술지원 및 운영지도를 실시
 - 브랜드 경영체 종사자가 구입장비류의 사용방법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도 실시
 - 설치모델 선정 및 설치규모의 적정성 검토 등 전문적인 기술지원
 - 건조·저장·가공 및 기타시설의 고장, 기계작동 불량시 신속한 수리·보수 실시로 가동의 원활화 도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경영체의 대표브랜드쌀 유통비중(%)을 조사
 - 사업대상 시·군을 통해 대상 경영체의 대표 브랜드쌀 유통비중 조사
 - 성과지표 측정(익년도 1월) : 각 브랜드 경영체별 대표브랜드쌀 유통비중을 조사하여 성과지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군수
- 평가시기 : '09. 12월말 기준
- 평가방법 : '09. 12월말 기준
 - 시장·군수가 브랜드 경영체의 브랜드쌀 생산·유통, 계약재배, 농가조직화, 대표브랜드 개발 및 홍보, 품질관리 규격 설정 등 브랜드육성 노력을 평가
- 시장·군수는 브랜드 경영체 교육·홍보 및 브랜드 컨설팅 사업비에서 브랜드 경영체 자체 경영진단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

농림수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시기 : '10. 상반기(시·군단위 평가이후)
- 평가방법
 - 시장·군수의 평가결과와 사업대상자의 브랜드 육성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이행여부, 사업성과, 제도개선사항 등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1년도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10.2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사업참여 희망 경영체가 제출한 2011년도 사업신청서를 시·도에 제출('10. 3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우선 순위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역별 배분계획과 선정기준에 따라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추천('10. 4월말까지)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신청서의 수요를 기초로 2011년도 예산요구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1>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계획서

1. 현 황

가. 일반현황

- 지 역 : 시·도 시·군 읍·면
- 농가인구, 전체 가구수 및 인구수 :
- 영농현황

구 분	농가수(호)	벼 재배면적(ha)	생산량(M/T)	소득액(백만원)	생산비중(%)	
					전국대비	시·도대비
'09						
'08						
'07						

- 쌀 전업농 수 및 브랜드사업 참여 전업농 수 :
- 호당 재배면적 :
- 주재배 품종명 :
- 수확후 관리방식 : 생산량 대 RPC 처리비중
- 쌀 관련 농업법인체수(영농조합·농업회사 법인 등)
- 친환경농업실천 농가수 및 면적 : 호, ha

나. 사업신청 조직체 현황

- 조직 명칭 :
- 조직 결성일
- 참여 조직현황

	농가수	재배상황		작목반 및 농가수	계약재배		농가조직 관리규약 유·무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09	호	ha	M/T				
'08							
'07							

* 조직 관리규약은 별도첨부

- 사업신청 조직체 시설보유 현황
 - 생산시설 등

공동육묘장	방제기	상토제조기	공동퇴비장	친환경자재 생산시설	왕겨처리시설	기 타
개소 (ha)	()	()	()	()	()	()

* 기타 : 세부내역 별지 첨부

- 수확후 관리 및 유통시설 등

	건조·능력	저장능력	저온창고	농가·작목반 보유		판매장
				건조기	저장시설	
개소	M/T	M/T	동, M/T	대	동	개소

다. 브랜드쌀 생산·유통현황

	브랜드명	매입량	출하량	주요 판매처
대표브랜드		M/T	M/T	
일반브랜드				
계	-			

○ 대표브랜드 출하비율 : $\%(\text{대표브랜드 출하량} / \text{전체출하량} \times 100)$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시중브랜드쌀 평가 수상실적

라 계약재배 현황

	계약재배면적	매입량	친환경쌀 인증면적	계약재배	
				농가수	농가조직체 (작목반 등)
'09	ha	M/T	ha	호	개소
'08					
'07					

○ 계약재배비율 : $\%(\text{계약재배 면적} / \text{시·군 전체 면적} \times 100)$

○ 친환경쌀 인증면적비율 : $\%(\text{친환경쌀 인증면적} / \text{계약재배 면적} \times 100)$

○ 계약재배 품종 및 농법 표준화 정도

계약재배면적	재배품종수	계약재배 약관 유·무	재배기술지도		
			자체실시	기술센터 협조	기 타

* 계약재배 약관 첨부

* 재배기술지도 : 해당 “란”에 O표시하고 증빙자료 첨부

○ 계약재배 물량관리 상황

매입물량	자체처리량	위탁처리량	농가건벼 매입량	기 타
M/T	M/T	M/T	M/T	M/T

○ 계약재배 농가 조직화 현황

조직명	농가수(호)	계약재배면적(ha)	매입량(톤)	농가조직화 약관 유·무

*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해 마을단위작목반 등 농가조직 구성 및 활동내역을 기재

○ 미참여 조직현황(지역내 쌀 관련 조직체)

조직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 종류	미참여 사유

마. 지역 쌀 산업여건과 전망(상세히 기재)

○ 지역 쌀 산업현황과 문제점 등 여건분석, 향후전망

○ 쌀 브랜드 생산·유통현황, 대표브랜드 육성현황, 소비자 인지도 등

2.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가. 주요항목 및 추진목표

구 분	계약재배 면적(ha)	계약재배 비율	농가조직체수 (작목반 등)	대표브랜드 쌀 취급비율(%)	브랜드 경영체 통합	브랜드 통합
'10						
'11						
⋮						
*()년						

* ()는 사업목표 년도 기재

* 계약재배비율 : $\%(\text{계약재배 면적} / \text{시·군 전체 면적} \times 100)$

나. 고품질쌀 브랜드 품질관리 목표

구 분	질소질 비료사용량(10a당)	완전미비율 (%)	단백질 함량(%)	재배 품종수	브랜드 경영체 처리량
'10					
'11					
⋮					
*()년					

* ()는 사업목표 년도 기재

다.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항목별로 상세히 작성하고, 근거자료 첨부)

① 대표(공동) 지역브랜드 개발활용 현황 및 추진 계획

② 시·군 쌀 브랜드 육성 심의회 구성·운영

③ 쌀 품질관리 기준 설정 등 대표(공동) 브랜드 관리를 위한 규약

- ④ 품질관리·브랜드 마케팅 전문인력 확보실적 및 계획
- ⑤ 브랜드 경영체의 컨설팅 사업추진 실적 또는 계획
- ⑥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홍보실적 및 계획
- ⑦ 농업인 교육·홍보를 위한 자체 지원실적(지자체·농협포함) 및 계획
- ⑧ 영농지도 전문인력 확보실적 및 계획
 - 영농지도 전문인력 확보 운영상황 포함
- ⑨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 제정 및 운영 내역
- ⑩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판촉실적 및 계획
- 대표(공동)브랜드 홍보실적 및 계획
- ⑫ 브랜드 경영체 통합실적 및 추진 계획
- ⑬ 브랜드 경영체 취급규모 확대실적 및 계획
- ⑭ 브랜드 통합실적 및 추진계획
- ⑮ 대표(공동) 브랜드쌀 판매실적 및 계획
- ⑯ 지자체의 추가지원계획(지원확약서 있을 경우 첨부)

3. 세부사업 시행계획

가. 사업별 계획

○ 총괄표

세부사업별	사업량 (시설장비류)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 브랜드 경영체 시설현대화						
- 브랜드 경영체 농가 조직화 교육·홍보 및 컨설팅						

-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
- 세부사업별 추진 일정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지방비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자부담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다. 사후관리 체계

- 사업평가/ Feedback/ 사후관리계획
 - * 자체평가지표, Feedback계획서 등
- 기타 관리계획 등

〈붙임 2〉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심사·평가표

평가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1-1. 사업목표의 명확성	5	4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육성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었는가?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계획(5개년)은 실현가능하게 수립되었는가? ○ 브랜드 육성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이 수립되었는가? 	
	1-2. 사업계획의 적정성	5	4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 목표는 실현가능한가? ○ 브랜드 경영체의 조직·인적 구성이 적정하며, 사업추진의지가 확고한가? ○ 지자체·농업인·브랜드 경영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수립되었는가? ○ 가공능력 등 시설설치 계획에 지역 버 생산여건, RPC 취급규모 등이 고려되었는가? 	
	1-3. 지자체 지원 및 자담조달 계획과 능력	10	8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자금지원계획은 적정한가? ○ 연차별 자부담 계획과 조달능력이 있는가? 	
2. 브랜드 경영여건 (35점)	2-1. 통합 등 RPC 규모화	10	8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RPC의 취급규모는 상당한가? ○ 통합 등 규모확대 계획의 수립여부 및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2-2. 전문인력 확보, 컨설팅	5	4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경영체의 전문경영인(CEO)을 채용하고 있는가? (향후 확보계획은?) ○ 품질관리, 브랜드 마케팅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향후 확보계획은?) ○ 브랜드 및 경영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는가? (향후 컨설팅 계획은?) 	
	2-3.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6	5	4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경영체의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농업인 교육·홍보 실적과 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가? ○ 농업인 교육·홍보를 위한 자체지원 실적과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재배과정의 영농지도 전문인력 및 기술지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2-4. 농가조직화 관리	3	2	1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경영체가 관리하는 농가 조직체수에 따라 배점 * 30개이상(3점), 30~20(2), 20~10(1), 10미만 (0) * 들녘별 경영체(100ha기준)와 계약재배시 개소수만큼 가점 부여 	
	2-5. 브랜드경영체 조직형태	8	4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경영체 조직운영 형태에 따라 배점 * 통합RPC(8점), 조합·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4), 기타법인(3), 개인(2) 	
	2-6. 쌀전업농 브랜드 육성사업 참여 비율	3	2	1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전업농이 브랜드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배점 * 15%이상(4점), 15~10(3), 10~5(2), 5미만(1) * 쌀전업농 브랜드 육성사업 참여비율(%) = (사업 참여 쌀전업농 수/시·군 전체 쌀전업농 수)×100 	

평가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3. 품질관리 (30점)	3-1. 브랜드쌀 품질관리 규약	5	4	3	2	○ 대표브랜드 관리규약 유·무 * 없는경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되었는가? ○ 쌀품질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 없는경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되었는가?	
	3-2. 계약재배 실적(고품 질 생산)	5	4	3	2	○ 브랜드 경영체의 계약재배비율, 계약재 배량 매입이행 실적에 따라 배점 ○ 연도별 계약재배 확대계획의 적정성	
	3-3. 품종통일· 농법표준화 정도	4	3	2	1	○ 브랜드 경영체의 계약재배 품종을 1개 이내로 하고, 시비·방제 등 농법도 표 준화하고 있는가? * 계약재배 규약 및 이행정도에 따라 차등배점	
	3-5.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3	2	1	0	○ 계약재배 면적중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점 * 10%이상(3점), 10~5(2), 5~1(1), 1미만(0)	
	3-6. 수확후 관리	5	4	3	2	○ 계약재배 물량을 자체시설(건조·저장)을 활용하여 처리한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점 (저온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1점 가점 부여) * 100%(5점), 100~70(4), 70~50%(3), 50미만(2) ○ 수확후 관리개선을 위한 계획은 적정한가?	
	3-7. 품질·품종별 구분관리	8	6	4	1	○ 저장능력 및 원료투입구수에 따라 차등배점	
	- 저장능력(4점)	4	3	2	1	* 저장능력(4점) : 6천톤이상(4점), 6~4(3), 4~2(2), 2미만(1)	
	- 원료투입구(4점)	4	3	2	0	* 원료투입구(4점) : 5개이상(4점), 5~3(3), 3~2(2), 1미만(0)	
4. 브랜드쌀 마케팅 (15점)	4-1. 마케팅계획	5	4	3	2	○ 대형 유통업체 등과 브랜드쌀 판매실적 및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이 있는가?	
	4-2. 대표브랜드 개발여부 및 활용계획	4	3	2	1	○ 대표브랜드 개발 활용 유·무 ○ 대표브랜드가 없는 경우 향후 개발 및 활용 계획이 수립 되었는가?	
	4-3. 대표 브랜 드쌀 출하 물량(비율)	3	2	1	0	○ 브랜드 경영체 전체 출하물량 중 공동 브랜드 출하비율에 따라 배점 * 50% 이상 (4점), 50~30%(3점), 30~10%(2점), 10% 미만(1점)	
	4-4. 시중유통 브랜드쌀 평가	3	2	1	0	○ 농림수산물식품부 주관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 수상실적에 따라 차등 배점 * 3회 이상(3점), 2회 (2), 1회(1)	
합 계		100점					

②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I. 사업개요

1. 목 적

- 벼 등의 부족한 건조·저장시설(Drying Storage Center : DSC) 지원으로 수확기 벼 등 매입량 확대에 기여하고
- 벼 등의 매입·건조·저장·가공 및 포장 과정을 일관 처리함으로써 수확 후 관리 비용절감과 쌀 등의 품질향상 및 산지 쌀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함

2.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9년까지 건조·저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체 벼 유통량 대비 저장 능력을 6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벼 유통량대비 RPC 저장능력(%)	44%	38%	40	42	익년 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RPC 등 시설능력 조사결과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 합 계	466,500	57,550	54,400	47,100	421,200
- 보 조	173,980	25,270	23,860	20,730	183,960
- 용 자	101,200	-	-	-	-
- 지방비	27,260	5,755	5,440	4,710	42,120
- 자부담	164,060	26,525	25,100	21,660	195,120

II. 2010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RPC 사업자(통합 RPC 사업자 포함), DSC 사업자, 비RPC 농협
 - 일반 정미소, 쌀 영농조합법인, 클러스터사업단 등은 제외
 - * 비RPC 농협은 '11년부터 지원에서 제외하되, RPC가 없는 시군은 존치

- 국산밀 생산자 단체
 - * 도축세 폐지 시·군의 사업자 우선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통합 RPC 건조·저장시설 : 통합 RPC 사업자, 국산밀 생산자 단체 등
 - 농협 RPC : 농협 RPC가 통합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3에 의해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설립된 농협 RPC
 - 개인 RPC : 통합 RPC 사업자로 인정된 개인 RPC
 - 조곡 취급규모 33천톤이상 RPC도 통합RPC에 준하여 지원 가능
- 증설(위성) 건조·저장시설 : RPC·DSC 사업자, 비RPC 농협, 국산밀 생산자 단체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경영체와 RPC 경영평가 결과 상위등급 업체에 우선지원 하되, RPC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DSC 사업자, 비RPC 농협에 대한 지원은 RPC의 신청물량이 배정된 사업 물량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지원하되, 지원후 RPC로 인정요구를 않겠다는 공증각서 제출시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선정시 정부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지역여건, 농가편의, RPC간 경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하여야 함
 - * 증설시설 : RPC 등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원료의 일관 처리가 가능토록 컨베이어벨트·엘리베이터로 연결 작업권내)에 설치하는 건조·저장시설이며, 원료투입구·조선기 등 설치가 가능
 - * 위성시설 : RPC 등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외에 RPC 사업자가 가공 시설을 제외한 벼 수집검사 및 건조·저장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저온저장시설 : RPC 사업자, 국산밀 생산자 단체
 - 우선지원 대상 및 지원제외 업체 등에 대한 사항은 "증설(위성) 건조·저장 시설" 내용과 같음
- 방폐장 지역 건조·저장시설 : 경북 경주시 RPC 사업자 및 비RPC 농협
 -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경북 경주시에 지원('08~'10년까지 3년간)

3. 지원대상

- 벼(국산밀) 등 건조·저장 시설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영체에 지원
- 건조·저장시설에 필요한 기계설비 및 부대장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통합 RPC 및 방폐장 지역 건조·저장 시설

- 지원시설 : 벼(국산밀) 등 건조·저장시설, 기계설비 및 부대장비, 도정시설
철거 후 저장시설 개조 비용
- * 부지구입비 및 쌀가공 시설비는 제외
- 설치규모 : 건조·저장 시설(각각 1,000톤 이상) 및 입·출고, 자동제어시설 설치
- * 입·출고시설은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 가능
- 기계설비 기준
 - 입고 및 출고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구조
 - 건조 : 순환식 등 건조 전용시설
 - 저장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고(우레탄 단열재 50mm 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냉각장치 등 구조
 - 자동·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가공·품질검사·저장비 곡온관리 등을 연계 또는 단독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나) 증설(위성) 건조·저장 시설

- 지원시설 : 벼(국산밀) 등 건조·저장시설, 기계설비 및 부대장비
- 설치규모 : 저장시설(800톤 이상)과 입·출고시설(원료투입구 등) 또는 건조시설 등 설치
- * 예시) 저장시설+자동제어시설+입출고시설+건조시설, 저장시설+자동제어시설+입출고시설, 저장시설+자동제어시설+건조시설 등
- 기계설비 기준 : 입·출고, 건조, 자동·제어시설은 "통합 RPC 및 방폐장 지역 건조·저장 시설"과 동일함
- 저장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고(우레탄 단열재 50mm 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저장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구조

다) 저온저장 시설

- 지원시설 : 벼(국산밀) 저온저장 시설
- 설치규모 : 저온저장 처리능력을 벼(국산밀) 등 400톤 이상으로 설치
- 기계설비 기준
 - 저온저장 : 벼(국산밀) 등을 15℃이하로 저장할 수 있도록 우레탄 등의 단열장치, 저장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냉각장치 등 구조
 - 자동·제어시설 : 입고·저온저장·출고·가공·품질검사·저장비 곡온관리 등을 기존시설과 연계 또는 단독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시설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단가 및 지원조건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지원대상	단가	국고보조	지방비	자담
통합 건조·저장 시설	통합 사업자, 국산밀 생산자단체	900	450	90	360
증설(위성) 건조·저장 시설	RPC·DSC 사업자, 비RPC 농협, 국산밀 생산자단체	600	240	60	300
저온저장 시설	RPC 사업자, 국산밀 생산자단체	300	150	30	120
방폐장 지역 건조·저장 시설	경주시 RPC 사업자 및 비RPC 농협	900	540	90	270

- 지원조건 : [통합 건조·저장 시설] 국고 50%, 지방비 10, 자담 40
- [증설(위성) 건조·저장시설] 국고 40%, 지방비 10, 자담 50
- [저온저장 시설] 국고 50%, 지방비 10, 자담 40
- [방폐장 지역 건조·저장 시설] 국고 60%, 지방비 10, 자담 3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비율을 상향할 수 있으며, 자담 중 일정비율을 추가 지원 가능

- 2010년도 사업비(예산) 내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83	47,100	20,730	4,710	21,660
통합 건조·저장 시설	10	9,000	4,500	900	3,600
증설(위성) 건조·저장 시설	50	30,000	12,000	3,000	15,000
저온저장 시설	21	6,300	3,150	630	2,520
방폐장 지역 건조·저장 시설	2	1,800	1,080	180	540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자

- 건조·저장시설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건조·저장시설 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매년 2월말까지)

지자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추천(매년 3월)

- 관내의 RPC(DSC 포함) 분포상황, 우리밀 생산여건, 농가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고,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추천

* 시장·군수는 건조·저장시설 설치 예정지역이 농업·농촌기본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환경보전법 등 각종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사전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강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량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매년 4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매년 10월 중순)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역별 배분계획과 선정기준에 따라 시·도 농정심의회 심의(서면심의 가능)를 거쳐 시·군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게 보고(매년 3월)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대상 경영체
- ②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통합 RPC 사업자
- ③ RPC 사업자, ④ DSC 사업자, ⑤ 비RPC 농협, ⑥ 국산밀 생산자 단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건조·저장시설 사업계획(별지 제1호서식) 및 세부 사업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서 포함)을 수립,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가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시·도지사는 사업자변경 승인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시설물 설치공사 추진》

사업자 및 지자체

(가) 설계

- 건축·건설 관계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설계서를 이용할 경우는 공사착수 전에 시장·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공

(나) 시공업체 선정

○ 시공업체의 자격

- 해당분야 관련법에 의한 공사면허를 가진 자(일반 또는 전문면허)로서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설비에 참여 허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 시설별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

○ 시공업체 선정방법

- 관련 단체(농협중앙회 및 관련협회 등)의 책임하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함
- 농협중앙회 및 개인 RPC 단체에서는 계약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계약업무 교육·홍보 실시
- 이미 설치한 건조·저장시설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시 공사참여 제한가능

(다) 감리

- 생산자단체 및 일반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감리를 할 수 없음)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감리업체 선정 계약 및 감리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업체 미선정시 이를 시정토록 행정지도 강화

(라)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4.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 서식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요청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대상자의 기본적인 지원자격 적합여부, 지원시설 및 신규설치 시설능력 적정여부,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개별 사업자별 사업 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적합여부 등을 검토 확인후 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대상자의 건조·저장시설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보고(2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호에 의거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 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건조·저장시설 사업대상자의 시설공사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6월, 11~12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개인 RPC 단체 합동현지 방문점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시·도(지자체)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함(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가 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 후 정산)
 - 검정 및 정산서는 국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건조·저장 시설설치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 위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
- 시장·군수는 RPC 시설관리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RPC와 생산농가간 계열화 확대, 계약재배 등을 통해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종통일, 공동 농작업, 브랜드 판매확대로 지역특산미를 육성하고 비용 절감과 품질향상 도모
 - RPC 쌀수탁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 건조·저장시설	시설설치 완료 익년 부터	10년간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10년간 사후 관리를 하여야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시설 양수도를 할 수 없음. 단,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가능(사전승인시 시·군을 경유하여 제출)

○ 보고사항

보고 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 기일	보고 서식
○ 건조·저장시설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시·도지사	당년 2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
○ 건조·저장시설 사업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식품부장관)	당년 2월말까지 (당년 3월말까지)	별도 서식
○ 사업비 집행·정산실적(완료)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식품부장관)	익년 1월말까지	별도 서식

기 타

- 농협중앙회 및 관련 민간단체는 자체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기술지원 및 운영지도 실시
 - 건축 및 기계설비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 설치모델 개발·선정 및 설치규모의 적정성 검토 등 전문적 기술지원
 - 건조·저장·가공 및 기타시설의 고장, 기계작동 불량시 신속한 수리·보수 실시로 가동의 원활화 도모
 - 설치 공장별 경영분석 및 운영활성화 방안강구

6. 성과측정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RPC 시설능력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유통량 대비 RPC 저장능력 측정
 - RPC 시설능력 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월말까지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건조·저장시설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반영
 - 사업량 과다 이월 또는 반납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감배정
 - 배정된 사업물량을 이월치 않고 연도내 완료하는 지자체는 사업량 추가배정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RPC 및 DSC 사업자, 국산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건조·저장시설 사업 수요조사
 - * 비RPC조합에 대한 지원은 '11년부터 중단하되, RPC가 없는 시군은 지원가능
- 건조·저장시설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건조·저장시설 사업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을 수립하여 제출(1월말까지)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건조·저장시설 사업 계획서

1. 사업명 :

2. 사업목적 :

3. 사업자 :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장 위치

○ 위치도(1/5,000 축척지형도)

○ 사업부지

- 면적 : m², 소유자 :

- 지번 및 지목 :

- 농업진흥지역 여부 : (농지전용가능지역 여부 :)

- 개발제한지역 여부 :

-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법, 도시계획법, 농발법 등의 저촉여부 :

- 자기 토지, 비 수집지역, 제반여건 등을 상세히 기재

나. 사업규모(부지, 건축물, 시설능력 등)

다.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계획

라. 사업운영방안

5. 사업여건 검토

- 생산자단체의 경우 : 농가수, 관내 논면적, 벼 생산량, 최근 3년간 조합의 경영수지상태, 최근 3년간 쌀 판매실적, 합병 또는 공동 출자내역, 사업계획 이사회 결의, 공동건조 및 저장에 관한 합의결과 및 참여 농가수, 신규 고정투자 여력 등
- 일반사업자의 경우 : 농가수, 관내 논면적, 벼 생산량, 평창고 보유현황, 조곡 매출 및 조곡 공매참여 연도와 최근 3년간 취급물량, 농업인과의 계약재배와 생산자 조직과의 산물벼 수집 계획량 및 공동건조·저장에 관한 합의결과와 참여 농가수, 신규 고정투자 여력 등
- 국산밀 사업자의 경우 : 농가수, 최근 3년간 국산밀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체의 경영수지상태, 농업인과의 계약재배와 국산밀 생산계획량 및 공동 건조·저장에 관한 합의결과와 참여농가수, 신규 고정투자 여력, 향후생산 및 시설 증설계획(장기적으로 저장규모가 3~5천톤 이상 이어야함) 등

16	고품질쌀최적경영체육성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과 장 김남수 사무관 장대수	02-500-1986 02-500-1987

I. 사업개요

1. 목 적

- 현행 쌀 농업은 소규모, 다품종 생산체제로 품질 향상에 어려움이 있고 농가 단위별 재배로 경영개선에 한계가 있어 쌀 농업으로 구조개선이 불가피
-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쌀 품질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쌀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들녘단위 50ha이상의 면적으로 조직화·규모화하여 경영하는 「들녘별 고품질쌀 최적경영체」(이하 “들녘별경영체”라 한다)를 육성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4년까지 쌀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 쌀 들녘별경영체 200개소 육성
- 들녘별경영체 육성목표(누계) : ('10) 30개소 → ('11) 60 → ('14) 200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의 산출시기	측정방식
		'06	'07	'08		
들녘별경영체내의 평균쌀 전업농 경영 면적비중/전국 평균 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중	110%	-	-	-	익년 4월	들녘별경영체의 평균 쌀 전업농 경영면적 비중조사, 전국평균 쌀전업농 경영면적비중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	3,000	4,500	52,500
보 조	-	1,500	2,250	26,250
지방비	-	1,200	1,800	21,000
자부담	-	300	450	5,250

II. 2010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벼를 주작목으로 설립한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또는 벼 재배를 목적으로 구성된 농가조직체
 - 지원대상 규모 : 들녘단위 50ha이상의 규모화·조직화·집단화된 지역 단, 100ha이상의 지역에 대하여는 사업 우선선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들녘별경영체 육성계획(5개년)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한 들녘별경영체(법인 또는 농가조직체)
- 시장·군수가 주도하거나 시장·군수와 협의하에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대상 경영체(RPC, 이하 “브랜드경영체” 라 한다)와 계약재배를 의무화하여 약정한 들녘별경영체
 - * 시장·군수가 수립한 들녘별경영체 육성계획(5개년) 수립·추진 내용과 들녘별경영체와 브랜드경영체간 계약재배 등의 이행노력을 평가하여 들녘별경영체를 선정하고 이 사업에 참여한 브랜드경영체에 대하여는 벼 매입자금 등 우대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가) 들녘별경영체 생산시설 및 장비·기계지원

- 생산시설지원 : 자동화 공동육묘장, 자연녹화온실, 상온통풍 종자건조 저장시설, 자체채종포 등 준영구적 시설의 신규설치, 시설 확대 및 개보수 지원
- 기계·장비지원 : 공동직파기, 개량용·배수물꼬 등 장비의 신규구입 지원

구 분	지원대상 내용
생산시설	자동화 공동육묘장, 자체채종포, 상온통풍 종자건조저장시설, 기타 들녘별 경영체 단지 운영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계·장비	공동탈망기, 공동직파기, 개량 용·배수물꼬, 공동광역방제기, 기타 들녘별경영체 단지운영에 필요한 기계·장비

※ 지원매뉴얼(예시) : 아래 참조

나) 생산시설 및 기계·장비의 기술검토

- 시장·군수는 생산시설의 기계 및 기계·장비류의 선정·공급시 가급적 검증기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선정·공급하여야 함.

다) 들녘별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지원범위 및 용도

- 지원액 : 20백만원 이내 ('09년도 사업참여 들녘별경영체 : 10백만원)

- 지원범위

- ① 품종·재배법 통일, 친환경기술보급 등 교육·훈련, 경영진단 등의 컨설팅 비용 : 지원액의 80%
- ② 들녘별경영체 회원조직화, 경영개선, 단지 관리를 위한 협의회 개최 등 비용 : 지원액의 20%

* '09년도 사업을 추진한 들녘별경영체에 대한 조직화·규모화를 지속 유지·확대하기 위해 개소당 10백원씩 '10년도 예산에서 지원

< 고품질 쌀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 지원 매뉴얼(예시) >

사업내용	단위	100ha기준	소요금액	세부산출근거	지원이유
○ 자동화 공동육묘장 설치(자연적응녹화 온실포함)	개소	661m ² (200평)	250,000	1개소당 250,000천원	고품질·저비용 생산 (고령화 대비)
○ 자체 채종포 설치	개소	1ha	9,000	ha당 일반쌀 소득 (6,000천원)×1.5배	고품질 생산 (양질의 종자생산)
○ 상온통풍 건조저장 시설	개	10톤1기	20,000	20,000천원×1기	"
○ 공동탈망기	대	2대	6,000	3,000천원×2대	저비용·고품질 생산 (직파 연계)
○ 공동직파기	대	2대	28,000	14,000천원×2대	저비용·고품질 생산 (직파 연계)
○ 개량용 용·배수물꼬	개	600	10,200	ha당 6개 (개당 102천원)×100ha	"
○ 공동광역방제기	대	1대	180,000	180,000천원×1대	"
○ 컨설팅 지원			20백만원 이내	컨설팅 비용 20백만원 × 80%이내 협의회 개최 등 비용 20백만원× 20% 이내	조직화·집단화·기술지원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

4. 지원형태 및 기준 등

- 재원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 지원단가 및 조건

사업명	사업량 (개소)	지원단가 (백만원)	재원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고품질쌀 들녘별경영체 육성	15	300	4,500	2,250	1,800	350

- 단, 사업량 및 지원단가는 사업신청 법인 또는 농가조직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규모별·등급별로 차등지원 할 수 있음

<규모별·등급별 사업량 및 지원단가 차등지원(예시)>

- 사업량 : 15개소 내외
- 지원단가 및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평가성적(2등급)	
		A	B
면 적 (4등급)	200ha이상	300	280
	150~200ha미만	270	250
	100~150ha미만	240	220
	100ha미만	210	200

* 면적별 4등급, 평가성적별 2급으로 세분화하여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주관기관 : 시장·군수>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함 사업지침 수립 시달(전년도 12월말)

지 자 체

- 시장·군수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군단위 들녘별경영체 육성계획(5개년) 수립
 - 지역내 들녘별경영체 대표(CEO), 브랜드경영체(RPC), 쌀 재배농가, 학계, 관련 기관·단체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한 다음, 「시·군 고품질 쌀 들녘별경영체 육성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시장·군수는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으로 적합한 경영체를 선정
 - 시·군에서 주도하여 결성한 규모화·조직화된 사업법인, 농가조직체 등을 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시 반드시 「시·군 들녘별경영체 육성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들녘별경영체의 육성계획을 수립
 - 사업계획에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재배관리목표, 세부사업 시행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 시장·군수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들녘별경영체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 지사에게 제출(전년 8월말까지 제출)

고품질쌀 들녘별경영체 육성협의회 구성·운영

◆ 구 성

- 쌀 재배농가, 들녘별경영체 대표(CEO), 브랜드경영체(RPC) 대표, 행정, 농업 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국립종자원, 한국농어촌공사, 학계 등 10명 내외 구성
- 시장·군수는 시·군 들녘별경영체 육성 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함

◆ 기 능

- 시·군 들녘별경영체 육성계획 심의 조정
- 들녘별경영체 육성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조정
- 들녘별경영체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심의 확정
- 기타 들녘별경영체 육성 관련사항 협의 등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들녘별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경영체를 선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추천(전년 9월말까지 추천)
 - 시·도단위 중장기 들녘별경영체 육성계획을 토대로 자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적합성, 발전가능성, 지원계획 등을 중점검토
 - 사업대상자를 복수이상 추천시 반드시 우선순위를 부여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계획서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 투자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여 사업계획이 부실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평가위원단 구성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 후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 순위결정
 - * 동점 발생시 평가 항목 중 “규모화·조직화·단지화 체계구축 정도”기준으로 순위 결정
- 사업자 선정결과를 지자체에 통지(지자체에서 사업계획 승인 및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절차

◆ 서면평가(전문평가위원단)

-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총점 100점 기준 70점 미만인 경우 현장평가에서 제외

◆ 현장평가(전문평가위원단)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평가팀을 구성하여 서면평가를 통과한 경영체에 대해 현장평가(현장실사) 실시
 - 사업계획서내용,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 사업추진 여건확보 여부 등을 중점평가
 - 현장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평가결과 종합 및 사업자 선정

- 전문평가위원단은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심사
- 농림수산식품부는 평가점수 및 심사내용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단계

가) 세부사업계획 수립

지자체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컨설팅지원, 생산시설 및 기계·장비지원)별로 사업대상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확정하되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 조치
 - 시장·군수는 검토 확정시 지역의 쌀산업의 특성과 들녘별경영체의 특징에 따라 사업비가 고품질·저비용 쌀 생산에 집중되도록 조정 배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확정된 세부사업별 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세부사업별 계획서 제출시기 : 컨설팅지원(당년 2월말까지), 생산시설, 기계·장비 지원(당년 4월말까지)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을 반납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하되 경미한 사항은 생략가능

나) 사업시행

1) 컨설팅 지원

- 컨설팅업체 선정은 시장·군수 주관으로 「들녘별경영체 육성 협의회」 및 들녘별 경영체(RPC) 대표와 협의하여 선정
- 컨설팅업체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인증 받은 전문업체를 우선 선정하되 컨설턴트 확보, 컨설팅 실적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업체를 선정
 - 컨설팅업체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
- 시장·군수는 전문컨설팅업체 선정결과를 보조금교부 요청전까지 농림수산 식품부에 계통보고(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시장·군수는 들녘별경영체와 전문컨설팅 업체간 컨설팅 계약시 컨설팅 종료후에도 일정기간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계약 추진

- 시장·군수는 들녘별경영체대표가 「들녘별경영체 육성 협의회」 및 들녘별 경영체 소속임원 등과 협의하여 조직화, 경영개선 및 단지관리 등을 위한 협의회를 수시 개최토록 추진하고 지도·관리

2) 생산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 시장·군수는 들녘별경영체의 확정된 생산시설 및 기계·장비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 들녘별경영체 육성협의회」를 주관하여 들녘별경영체 지원 및 사업지도·감독

<생산시설> : 자동화 공동육묘장, 상온통풍 종자 건조·저장 시설 등

(가) 설계

- 건축·건설 관계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설계서를 이용할 경우는 공사착수 전에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공

(나) 시설업체 선정

○ 시설업체의 자격

- 해당분야 관련법에 의한 공사면허를 가진 자(일반 또는 전문면허)로서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설비에 참여 허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

○ 선정방법

- 시장·군수 책임하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함
- 시장·군수는 계약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계약업무 교육·홍보 실시
- 이미 설치한 생산시설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시 공사참여 제한가능

(다) 감리

- 생산자단체 및 일반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감리를 할 수 없음)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감리업체 선정 계약 및 감리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업체 미선정시 이를 시정토록 행정지도 강화

(라)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 자체 채종포는 종자구입 비용, 인건비, 노동비, 현장사진 등 근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근거 증빙자료 및 현장 확인으로 검사

<기계·장비구입> : 공동탈망기, 육묘상장운반기, 공동직파기, 산물벼 자동이송 콘테이너 등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장비·기계구입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청구 확인하여 검사
- 시장·군수는 검증된 생산설비의 기계 및 기계·장비류를 구매·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음

3) 기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시장·군수는 고품질·저비용 쌀 생산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참여농가의 이행체계를 구축
- 들녘별경영체 농가조직체 대표는 기술센터 등과 협의하여 재배 및 품질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 생산관리 프로그램에는 품종선택, 토양·수질관리와 재배 및 수확 후 관리의 표준화 등을 포함해야 함
- 농업인의 생산관리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시 들녘별경영체 사업의 참여 배제 등 불이익 조치
- 시·군 및 들녘별경영체는 고품질벼 보급종 중에서 품종을 선택하여 계약재배 실시
- 국립종자원에서 정부 벼 보급종 공급 시 들녘별경영체에 대해서는 정부 보급종을 사전주문 받아 우량종자 공급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들녘별경영체와 시·군단위 브랜드 경영체(RPC)간 연계를 의무화하여 전량 계약재배, 재배관리 약관 등의 이행체계 구축

- 인센티브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들녘별경영체에 대해서는 병해충방제사업, 농지규모화사업,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 및 농기계임대사업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
 - * '10년 농지규모화사업,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 시행지침 및 농기계임대사업 지원지침 참조
 - 브랜드경영체(RPC)에 대해서는 RPC평가에 반영하여 벼매입자금 우대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패널티 부여
 - 계약재배 약관 등을 위반한 들녘별경영체 및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농지규모화사업, 농기계임대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브랜드경영체(RPC)에 대해서는 RPC평가에 반영하여 벼매입자금, 시설자금 지원 사업축소 또는 제외 조치

4. 자금교부단계

지 자 체

-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 서식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요청
 - 컨설팅 지원(당년 2월말까지), 생산시설·기계장비 지원(당년 5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컨설팅지원은 컨설팅사업계획의 적정여부, 지방비 확보여부 등을 확인 후 보조금 교부(당년 3. 15일까지)
 - 생산시설, 기계·장비 지원은 업계획의 적정여부, 지방비 확보여부 등을 확인 후 보조금 교부(당년 6. 15일까지)

지 자 체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반드시 들녘별경영체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 확인후 보조금 교부
 - 컨설팅지원 : 당년 3월말까지
 - 생산시설, 기계·장비지원 : 당년 6월말까지
- 생산시설 및 기계·장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 및 구입실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 생산시설, 기계·장비는 지자체 교부 요청 시기부터 지방비 우선집행 가능
 -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호에 의거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컨설팅지원, 생산시설 설치 및 기계·장비구입,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컨설팅지원(4~5월), 생산시설,기계·장비구입(10~11월)
 - 점 검 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농촌진흥청 합동점검 및 시·도교차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컨설팅분야 : 세부사업계획 적정여부, 컨설팅업체 선정 적정여부, 컨설팅비용 사용 실적 및 계획의 적정 여부, 지자체 지원 실적 및 계획 등
 - 시설기계장비 : 주요설비설치계획 및 진척도, 기계·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지원계획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지 자 체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된 증빙 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반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컨설팅 지원에 대한 정산시 사업비 집행 실적(법적으로 인정된 세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들녘별경영체 관리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들녘별경영체와 브랜드경영체(RPC)간 계약재배 등을 통해 생산단계에서 부터 품종통일, 공동 농작업, 브랜드 판매확대로 지역특산미를 육성하고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도모
- 시장·군수는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매년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사업대상 들녘별경영체의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자동화공동육묘장 상온통풍종자 건조·저장시설 기계·장비	시설설치 완료 익년 부터	10년간 5년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10년간 사후관리(기계·장비는 내용연수까지)를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시설(기계·장비)양수도를 할 수 없음 단,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가능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비고
○ 사업계획서	○ 시장·군수	○ 시·도지사 (농식품부장관)	○ 전년도 9월말까지	○ 별도시달
○ 세부사업계획 - 컨설팅지원	○ 시장·군수	○ 시·도지사 (농식품부장관)	○ 당년도 2월말까지	
- 생산시설, 기계·장비지원	"	"	○ 당년도 5월말까지	
○ 사업계획변경	○ 시장·군수	○ 시·도지사 (농식품부장관)	○ 변경시	○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비검정 및 정산 실적	○ 시장·군수	○ 시·도지사 (농식품부장관)	○ 익년도 1월말까지	○ 별지 제4호 서식

기 타

- 시장·군수는 자체 기술지원단(또는 기술자문단)을 구성하고 시공(설비)업체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연계하여 기술지원 및 운영지도를 실시
 - 들녘별경영체 종사자가 구입기계·장비류의 사용방법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도 실시
 - 설치모델 선정 및 설치규모의 적정성 검토 등 전문적인 기술지원
 - 건조·저장·가공 및 기타시설의 고장, 기계작동 불량시 신속한 수리·보수 실시로 가동의 원활화 도모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들녘별경영체내의 쌀 전업농경영면적 비중(%) 및 전국 평균 쌀 전업농경영면적 비중(%)을 조사하여 성과지표를 측정
 - 사업대상 시·군을 통해 대상 들녘별경영체내의 쌀 전업농 경영면적 비중 조사
 - 성과지표 측정(익년도 4월) : 들녘별경영체내의 쌀 전업농경영면적 비중을 조사하고 전국 평균 쌀 전업농 경영면적과 대비하여 성과지표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지 자 체

- 주관기관 : 시장·군수
- 평가시기 : '10. 12월말 기준
- 평가방법 : '10. 12월말 기준
 - 시장·군수가 들녘별경영체의 재배관리, 공동 농작업, 계약재배, 농가조직화 등 들녘별경영체 육성 노력을 평가
- 시장·군수는 들녘별경영체에 대한 컨설팅에서 들녘별경영체 자체 경영진단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

농림수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시기 : '11년 상반기(시·군 단위 평가이후)
- 평가방법
 - 시장·군수의 평가결과와 사업대상자의 들녘별경영체 육성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이행여부, 사업성과, 제도개선사항 등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1년도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10. 3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사업참여 희망 경영체가 제출한 2011년도 사업신청서를 시·도에 제출('10. 4. 15일까지)
 - 시장·군수는 「들녘별경영체 육성협의회」 심의를 거쳐 우선 순위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시·도지사는 지역별 배분계획과 선정기준에 따라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10. 4월말까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신청서의 수요를 기초로 2011년도 예산요구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사업조직체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3. 소재지 :
4. 사업 변경 내용 :

사업계획(당초)		변경		사 유
생산시설, 장비·기계별	금 액	생산시설, 장비·기계별	금 액	
	천원		천원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시장·군수 귀하

※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시설)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주요기본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고품질 쌀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생산시설) 준공검사 신청서

사업조직 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 . 부터 . . 까지	완료일자			
신고인	주 소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p>고품질 쌀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 생산시설(○○○)의 준공검사를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 귀하</p> <p>* 붙임 : 시설물공사 세부내역 1부</p>					

고품질 쌀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 기관명 :
2. 작성 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생년월일)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100%)	()	()	()

○ 세부명세

- 생산시설 및 기계장비

생산시설 (장비·기계)명	소요자재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	계 ○○○○						○ 거래처 및 전화 번호 기타 필요 사항 기재
합 계							

- 컨설팅 지원(예시)

지원항목	지원내용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 협의회 개최	○ 회의교재 인쇄비	50부	2	100	○ 거래처 및 전화 번호 기타 필요 사항 기재
합 계					

<작성요령>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첨부
(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함.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기타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검정 및 정산담당자는 위 세부명세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현장에서 대조·확인
- 세부사업 지원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함.
- 컨설팅지원에 대해서는 컨설팅업체 지원, 회의개최 비용 등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구분작성하고 관련집행 증빙서류(법적으로 인증된 세금영수증 등) 첨부

17	농작물병해충방제지원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과 장 김남수 사무관 이상집	02-500-1986 02-500-1992
농촌진흥청	식량축산과	지도관 이병석	031-299-2718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에 대한 방제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수급에 기여
- 사과, 배의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의 조기 박멸로 국산과실 경쟁력 제고
 - * “과수원정비지원사업”이 '10년 폐지됨에 따라 내역사업인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 사업”을 “농작물병해충방제사업”에 포함하여 지원
- “외래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국가가 내린 방제명령(폐기·소각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

2. 근거법령

- 식물방역법 제31조(방제), 동법 제38조(손실보상)

3. 성과목표 및 지표

-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급증하는 병해충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에 기여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병해충방제 효과 율(%)	16.0	13.8	15.0	15.0	'11.1월 중	방제하지 않은 포장의 감수율(%) - 일반농가 포장의 감수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 보조	-	3,000	3,000	3,213	3,213
- 융 자	-	-	-	-	-
- 지방비	-	3,000	2,500	2,713	2,713
- 자부담	-	-	1,250	1,250	1,250

II. 2010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병해충발생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사전 또는 사후방제가 필요한 시·군·구
- 사과, 배 농가의 과수가지검은마름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경기, 강원지역으로 제한)
- “외래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국가가 내린 방제명령(폐기·소각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자

3. 지원대상

가. 병해충방제비

- 대상 병해충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돌발 병해충, 흰잎마름병, 줄무늬 잎마름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도열병, 키다리병, 멸구류, 나방류, 노린재류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병해충
- 지원대상
 - 사전방제 : 병해충 특성상 사후방제 보다 사전방제 효과가 높은 병해충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500ha이상 피해를 입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의 방제비
 - 사후방제 : 당해연도에 발생한 병해충의 면적이 100ha이상인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시 150ha)의 방제비
- ※ 다만, 지구온난화 등으로 발생된 돌발병해충의 경우 병해충예찰결과 및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발생면적 및 지원단가 등의 기준을 별도 결정

나. 과수가지검은마름병 : 사과, 배 농가의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비(경기, 강원 지역에 한함)

다. 손실보상금 : “외래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린 방제명령 이행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병해충방제비 : 약제구입비 및 방제기기 임차료 등
- 과수가지검은마름병 : 사과·배 과수원 약제방제 및 작목전환 비용
- 손실보상금 : 외래병해충 방제명령에 의해 발생한 농업인의 손실보상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병해충 방제비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규모 : 병해충 발생지역 60~70천ha
- 지원단가 : 100천원/ha
- 사업비 : 2,5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보조 40%, 지방비보조 40%, 자부담 20%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비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규모 : 병해충 발생지역 1,352ha
- 지원단가 : 315천원/ha
- 사업비 : 213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보조 50%, 지방비보조 50%

손실보상금

- 지원형태 : 보상금
- 지원단가 : 「외래병해충 공적방제 손실보상 기준」(농림수산식품고시 제2009-58호)을 적용하여 산출
- 사업비 : 5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병충해 방제비 : 시·군·구당 국고 20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지원조건 및 사업규모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시·군·구)에 시달
- *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 세부지침은 과수화훼과에서 별도 공문 송부 ('10.1월중)

시·도

- 사전방제 사업 : 3년 이내의 피해발생 사례, 예찰결과, 사업타당성, 효율성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3. 5일까지)
- 사후방제 사업 : 병해충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3~10월)
- 손실보상금 지원 사업 : 신청자의 신청서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손실규모를 파악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손실보상 청구서” 송부

시·군·구

- 사전방제 사업 : 3년 이내의 피해발생 사례, 예찰결과, 사업타당성, 효율성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3. 5일까지)
- 사후방제 사업 : 병해충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도를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신청(3~10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전방제 사업 : 시·도(시·군·구)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농촌진흥청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자를 선정(3월중)
 - 농림수산식품부의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및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참여 시·군·구를 우선선정
- 사후방제 사업 : 병해충 발생면적이 큰 지역을 우선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 합동 현지점검결과를 근거로 사업자를 선정(3~10월)
 - 농림수산식품부의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참여 시·군·구를 우선선정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예방 및 방제권고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가중시킨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지원받은 시·도(시·군·구)는 지원 우선순위에서 제외
- 손실보상 사업 : 손실보상 청구서 및 시·도의 의견서를 근거로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규모 확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촌진흥청

- 시·도(시·군·구)의 병해충 방제세부 계획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예찰 및 검정결과 제공, 방제기술자문 및 현장지도 등 지원추진

시·도(시·군·구)

- 병해충 방제를 위한 『지역방제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약제 선정과 방제요령 등을 결정 후 사업추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시·군·구)의 병해충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비 신속지원
- 손실보상 명령을 이행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시·도(시·군·구)로 배정

시·도(시·군·구)

- 병해충방제비 :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방제약제 일괄공급 또는 시·도(시·군·구) 주관 공동방제 추진
 - 개별 농업인에게 사업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은 지양
- 손실보상금 : 배정받은 손실보상금을 청구자에게 신속히 지급
- 국가회계시스템(디브레인)과 지방회계시스템(이호조) 연계 및 입력 등 보조금 집행관련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5. 이행점검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시 이행사항을 점검
- 정부지원금을 부당사용한 경우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도

- 시·군·구가 농림수산식품부의 보조금 교부조건 및 병해충방제지원 사업지침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추진 시·군(시·군·구)의 방제효과를 농촌진흥청의 『병해충 방제예찰포』 발생현황과 비교하여 사업성과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 시·도(시·군·구)에 대한 현지점검 및 사업평가 등을 통하여 사업효과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

《환 류》

- 현지점검시 제기된 문제점과 시·도(시·군·구)의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2011년도 제도개선 추진

농작물병해충방제사업비 신청서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사전방제	<input type="checkbox"/> 사후방제
신청기관	시·도 [시·군, 시·군]	
발생상황	병해충명	
	발생지역	
	발생면적	
	피해면적 (피해율)	
소요액	총사업비	천원[발생면적 ha × 단가(100천원/ha)]
	부담구분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사용약제		
원인 및 전망		
붙임	병해충 사전방제사업 계획서 1부.	
<p>농작물병해충방제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병해충방제사업비(국고)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p>		

원예 · 식품분야

I. 생산 및 유통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물부 채소특작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물부	채소특작과	과 장 이재욱 사무관 안형덕	02-500-2012
농협중앙회	원예인삼부	팀 장 하명곤	02-2080-6231

I. 사업개요

1. 목 적

- 물류장비 지원 및 물류기기 공동이용 촉진을 통해 물류이동을 규모화하고, 농산물유통의 표준화 및 하역기계화를 통해 물류효율화 촉진
 - 농산물 유통단계에서 사용되는 지게차, 광폭차량, 컨베이어 등의 물류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의 표준화 및 기계화 촉진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의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통한 농산물 유통의 규모화 및 하역기계화로 물류 효율화 촉진

2. 근거법령

-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4조①항, 제31조①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지에서 농산물을 규모화하여 소비지에 표준화·기계화(파렛트, 컨테이너 출하 등)된 상태로 출하하여 물류 효율화 촉진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하역기계화율	32.0	25.2	28.0	30.0	2011. 3.	파렛트·컨테이너로 출하된 농산물량/전체농산물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후(P)
합 계	228,457	42,746	40,376	50,266	251,884
보 조	111,898	23,739	22,554	22,553	114,650
용 자	33,106				
자부담	83,453	19,007	17,822	27,713	137,234
○물류기기 구입지원	150,866	23,090	20,720	25,800	112,920
- 보 조	65,501	11,545	10,360	10,320	45,168
- 용 자	33,106				
- 자부담	52,259	11,545	10,360	15,480	67,752
○물류기기 공동이용	77,591	19,656	19,656	24,466	138,964
- 보 조	46,397	12,194	12,194	12,233	69,482
- 자부담	31,194	7,462	7,462	12,233	69,482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물류기기 구입지원

-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작목반
- 공영도매시장 (농산물공판장,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하역회사, 하역노조, 산지유통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국산농산물 가공공장·저온저장업체 등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작목반
 - 공영 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된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
- <공통적용사항>
- 법인화된 조직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6조의 별표3에 적합해야함
- * 2011년부터 작목반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물류기기 구입지원

- 생산자조직은 원예농산물을 규모화하여 공동출하하는 조직
- 공영도매시장 등은 파렛트 취급실적, 시설규모 등이 우수한 조직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원예농산물을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다단식목재상자 등으로 출하하는 사업대상자
-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사업대상자 우선·우대 지원

<구입지원 및 공동이용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농림수산식품부선정 공동마케팅조직(공동마케팅조직에 출하하는 조직포함), 산지유통전문조직, 품목대표조직 추천조직
- 2순위 : 산지유통일반조직, 정부지원 APC 운영조직
- 3순위 : 친환경인증, 지리적표시, GAP 농산물 생산유통조직
- 4순위 : 파렛트출하실적이 우수한 생산자조직, 파렛트 취급실적이 우수한 공영도매시장, 시장도매인, 공판장 등

* 사업대상자가 매년 동일한 물류기기 구입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여 물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유도

3. 지원대상

□ 물류기기 구입지원

- 「물류설비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9-241호, '09.5.27)의 고시장비중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장비와 향후인증대상장비로 열거된 기기를 구입시 구입비용 일부지원
 - * 물류설비표준장비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윈바디차량, 절속기, 제함기, 랩핑기, 테이핑기, 롤러·벨트·유닛로드용 수직컨베이어, 유동·적층·파렛트랙
 - * 광폭차량, 윈바디차량은 4.5톤이상으로 파렛트 2열적재가 가능한 차량임
 - * 향후 인증대상장비 : 비과과당도측정기, 당도측정기, 선과(별)기 (단순 저울기능의 음성선별기는 제외), 진공포장기, 라벨기, 세척기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원예농산물 수송용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팻릿 철상자 등의 임차료 일부 지원

4. 지원자금의 용도

□ 물류기기 구입지원

- 지원대상 장비 구입비에 한정
- 사업단가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게재된 기준단가를 참고하되 실구입가를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 물류기기 공동이용

- 파렛트,플라스틱상자 등을 풀회사로부터 임차하여 농산물을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가공공장(김치가공공장,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경우 임차료 일부 지원

5. 지원형태

□ 물류기기 구입지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40%, 자부담 60%(부가가치세 해당액은 자부담)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지원기준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 일부 지원(수송용에 한해 지원)
 - * 지원단가는 세부사업지침에 의하여 출하유형별 임차료 단가(원/매)를 기준으로 보조 지원함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부가가치세 해당액은 자부담)
 - * 유형구분, 유형별 차등지원 등은 사업시행자(농협중앙회) 세부지침에 의하며,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비율을 상향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물류기기 구입지원

- 사업대상자별 지원한도액 : 국고보조금 기준으로 1억원 이하
- 장비당 지원한도액 : 국고보조금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 * 장비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농협지역본부에서 타당성 검토후 지원가능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사업자별 배정기준은 과거년도 사업실적, 당해연도 사업계획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별 예산 배정
 - 사업여건 변경 시 주관사업자가 사업자간 예산 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① 물류기기 구입비 지원 >

1. 사업신청단계

- 사업대상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월중에 농협시군지부에 사업신청
- 농협시군지부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사업신청
 - '10년도 사업은 '09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09.3월에 사업신청 완료
 - * '11년도 사업신청은 "Ⅳ.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항목 참조

농림수산식품부

- 2010년도 사업추진 방향 및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지침 통보('09.12월) 및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게재
- 농협지역본부별 2010년도 사업예산 배정('09.1월)
 - 시·도별 사업신청 물량,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

농협지역본부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시행지침 통보(1월)
- 농협지역본부별로 배정된 2010년도 사업예산을 농협시군지부에 배정('09.1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협시군지부

- 전년도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제4장) 및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2월말)하여 통보하고, 농림사업통합시스템을 통해 지역본부에 선정결과 보고(2월말)
 - 개소당 지원한도액 및 장비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 * 사업자선정시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되 사업신청자가 보유한 시설현황,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물류시스템을 갖추수 있도록 지원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농협지역본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자에게 사업변경 승인을 하고 사업포기시 후순위 사업대상자 선정

농협지역본부

- 농협지역본부에서는 농협시군지부의 사업선정 결과에 대해 농림사업통합시스템을 통해 농협중앙회에 보고(3.10까지)
- 농협시군지부에서 사업대상자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신청시 사업변경 승인 및 농협중앙회에 보고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지역본부의 사업선정 결과에 대해 농림사업통합시스템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3.15까지)
- 농협지역본부별 변경사항 발생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매월30일기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지원 대상 장비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및 자부담금 집행확인서(카드결제,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첨부하여 농협시군지부에 국고보조금 지급 요청
- 사업대상자는 구입 장비 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농협시군지부에 사업변경 신청을 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포기 의사를 농협시군지부에 통보

농협시군지부

- 농협시군지부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적정장비 구입여부(지원대상 장비여부, 물류표준설비 인증장비 여부) 및 증빙자료 확인하여 국고보조금 청구
 - * 스티커형 표지 부착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지게차 등 관련법(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이 필요한 장비는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국고보조금 청구

- 농협시군지부에서는 사업비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지원조건에 따라 농협지역본부에 국고보조금 지급요청
- 농협시군지부에서는 사업비 정산시 지원대상 장비 여부(물류표준설비인증, 향후인증대상장비)를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9조 ④항에 의한 스티커 표지 부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 **물류표준설비 인증장비**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인증받은 장비로 농림사업통합시스템(Agrix)에 게재된 업체의 장비만 지원 가능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분기별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농협중앙회에 국고보조금 교부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도별 사업추진 상황 및 자금집행 상황 점검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에서는 국고보조금 지급요청서를 검토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매월 25일 이전에 지급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지역본부, 농협시군지부에 통보

농협시군지부

- 농협중앙회에서 통보받은 국고보조금 지급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사업대상자별 국고보조금 지급 실적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업비 추진 실적 관리
- 농협시군지부에서는 사업종료시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마감조치를 하고 농협중앙회에 완료 보고(차년도 1월)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변경되어 지원받은 시설·장비를 내용연수 전에 매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농협시군지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승인을 받아 매각을 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4조①항 관련 [별지5호서식]의 경영장부 작성요령의 감가상각비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여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사고차량, 장비 불량 등의 사유로 내용연수 경과전에 매각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할 경찰서 발급 사고경위서 또는 차량수리 내역서를 첨부하여 농협시군지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게차 등 관련법(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이 필요한 장비는 반드시 등록 후 사용: 화물트럭, 지게차

사업시행주체(농협시군지부)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농협시군지부장은 농림사업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6조에 의거, 작목반은 농협중앙회장에 의한 사업시행지침 세부기준에 의거 사후관리
- 지원된 시설·장비는 농협지역본부장 또는 농협시군지부장의 승인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구입 또는 설치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되도록 지도·감독
 - 사후관리 기간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4조①항 관련 [별지 5호 서식]의 작성요령에 있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에 준하여 5년으로 함
- 농협지역본부장 또는 농협시군지부장은 농림사업통합전산시스템에 지원된 시설·장비에 대해 반기별로 사후관리 점검결과를 기재하고, 연도말 기준으로 사후관리 대장을 출력하여 보관·관리 하여야 함
 - 시설·장비는 부당 사용·처분 방지를 위해 5년간 반기별로 확인·점검하고, 부당사용 또는 처분을 한 경우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거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사고차량, 장비 불량 등의 사유로 내용년수 경과전에 매각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할 경찰서 발급 사고경위서 또는 차량수리 내역서를 확인하여 농협시군지부장이 처분 승인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농협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및 농협지역본부에서는 시·군별 사업추진 및 집행점검하며, 반기별로 사후관리 실시 및 사후관리 대장 관리 점검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분기별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자금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반기별로 현장 점검 실시
- 2008년까지 지원한 물류기기의 사후관리를 시군(지자체)를 통하여 점검
 - * 지자체(시·군)은 2008년까지 지원한 물류기기의 사후관리를 함

《제재》

사업관리주체(농협시군지부)

- 사업대상자가 지원 시설·장비를 부당 사용 또는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거 보조금 회수하고
 - 향후 3년간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보조금을 불용한 경우에는 향후 3년간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농림수산식품부·농협중앙회

-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 실적이 미흡하거나 사업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농협지역본부, 시군지부는 차년도 예산 배정시 불이익 적용

6. 성과측정단계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당해연도에 출하처인 공영도매시장, 대형마트, 가공공장에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출하된 농산물의 물량을 조사하여 하역기계화율 산정(차년도 1분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시·도별 사업예산 집행 실적 및 사후관리 점검 현황 평가

《환류》

- 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점검 실적을 평가하여 예산 배정에 반영

<② 물류기기 공동이용>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2010년도 사업추진 방향 및 사업대상자 선정 계획 등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지침 통보(12월) 및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게재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에 필요한 사업내용,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사업신청공고 실시
 - 사업신청공고는 농업전문지,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nhpool21.co.kr) 등을

통하여 전년도 12월부터 사업당해년도 1월 중에 실시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별 농산물 파렛트/플라스틱상자 등 풀이용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생산자조직(산지유통인 포함)

- 생산자조직(산지유통인)은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을 물류기기 통합관리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지역농협(산지유통인연합회)에 제출(1월중)
 - * 사업계획 물량은 전년도 물류기기 이용 실적 대비 120%로 한정하고 신규 사업대상자는 '09년도 평균 물량내에서 적용
- 지역농협은 생산자조직별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농협 시군지부와 농협지역본부를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로 제출하고 산지유통인연합회는 산지유통인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농협중앙회로 제출
 - * 사업계획서 제출은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지역농협, 농협시군지부, 산지유통인연합회는 사업안내, 추가접수 등의 역할 담당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10년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지원계획 등을 통보

농협중앙회

- 사업공고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 한 사업자에 한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전년도 물류기기 이용 실적 및 사업계획 물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 배정
- 확정된 사업자 및 사업비 지원계획을 농협지역본부, 사업대상자등에 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완료 후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nhpool21.co.kr)을 이용할 수 있는 ID와PASSWORD를 개별사업자에게 부여

생산자조직(산지유통인 포함)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nhpool21.co.kr)에 접속하여 이용ID와PASSWORD를 확인 후 사업진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세부계획수립

농림수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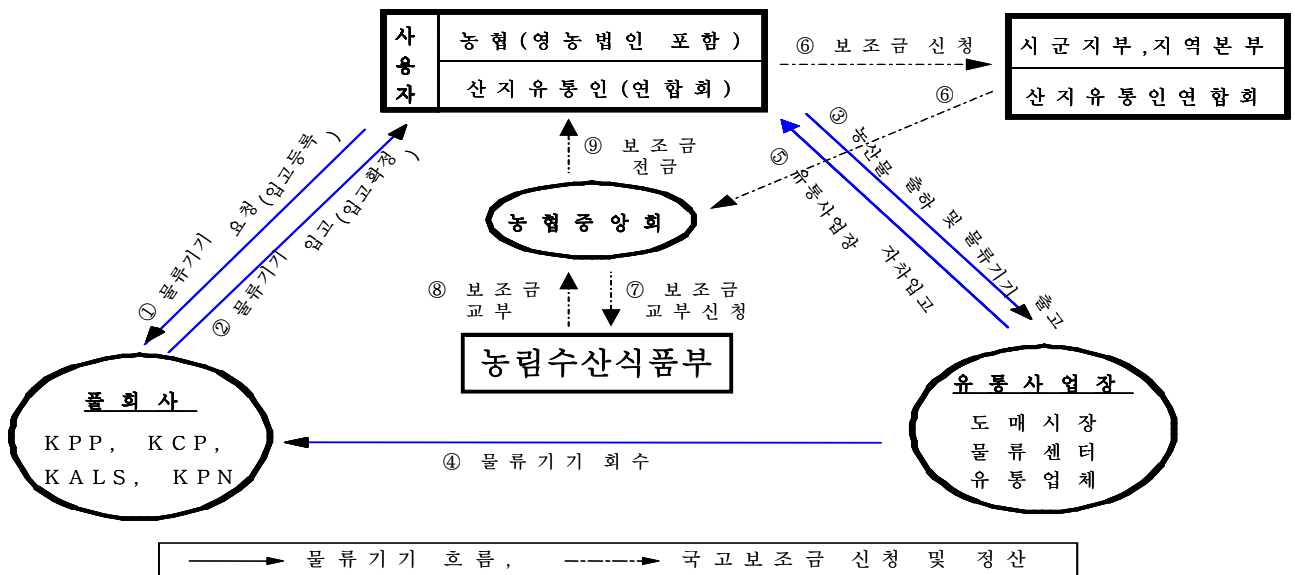
- 물류기기 공동사업 정책방향, 예산확보, 시행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농협중앙회에 통보

농협중앙회

-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세부시행지침을 개정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 요청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연간 사업방향 및 자금운용계획 수립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관련조직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조정
- 연도 중 사업여건 변화로 인하여 물류기기 소요량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장이 전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타당성을 검토 후 변경승인 및 지역별 예산내역 변경 조치
 - 지역별 예산 조정은 농협중앙회장이, 관내 사업자간 예산조정은 농협지역본부장이 사업자별 사업여건을 고려,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탄력 조정

<사업추진 체계도>



나. 사업시행 단계(사업절차)

- 국고보조를 받는 물류기기의 사용 및 국고정산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사전협의한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시행
- 물류기기사용내역, 사업추진, 국고정산, 마감등의 절차는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nhpool21.co.kr)을 이용
- 농협중앙회는 사업추진 내용, 풀 이용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풀회사와 사전협약 체결
- 풀회사와 산지이용자와의 물류기기공급계약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시행지침 및 이용약관에 동의한 사업자에 한함
 - 산지이용자와 풀 회사간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기기손망실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표준계약 체결가능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협중앙회의 사업비 교부요청에 의해 매월 국고보조금 교부
 - 개별사업별 자금배정은 주관사업자인 농협중앙회에서 배정
- 연간 사업비 집행현황 확인 및 예산 운용방안 지도

농협중앙회

- 사업자별 예산은 사업연도 배정기준에 의해 개별사업자에게 연간 단위로 배정
 - 다만,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분기별 불용예산 발생 시 지역간 전수배를 통하여 예산 조정 가능
- 사업비 정산은 매월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의 월별 풀 이용료 정산대상 금액에 따라 개별사업자별 정산 실시
 - 월별 정산금액 확정 후 국고보조금 해당액을 농림수산식품부로 교부신청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후 자부담액을 합산하여 풀 회사별로 정산 실시
 - * 사업비정산 대상은 당해월 해당분만 가능하며 지난월 해당분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생산자조직(산지유통인 포함)

- 지역농협은 매월별로 자체분 및 영농조합법인 등의 보조금을 지역본부에 신청하며, 영농조합법인 등은 보조금 신청 시 자부담분(부가가치세 포함) 풀 이용료를 접수농협에 선납하여야 함
- 산지유통인은 매월별로 보조금을 산지유통인연합회에 신청하며 보조금 신청시에는 자부담분(부가가치세 포함) 풀 이용료를 산지유통인연합회에 선납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물류기기 이동내역을 전산등록하고 이동전표 및 거래명세서 등 보조금 신청서류를 편철보관하여야 함
 - * 접수 대행조직은 정산일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지급요청서와 월별 이용내역을 제출받아 전산등록내역과 일치여부를 확인후 보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물류기기 공동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집행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을 위하여 년 2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은 상하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

담당자가 점검횟수 및 시기는 조정할 수 있음

- 현장 점검과정에서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체계, 지원절차 등을 사업이용자에게 적극 교육·홍보
- 물류기기 공동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집행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을 위하여 년 2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은 중앙회와 농협지역본부가 합동으로 실시
- 현장 점검과정에서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 * 사업세부지침에서 산지유통인연합회의 역할을 포함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지게차, 차량	5년	매각, 교부 목적의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제재》

- 보조금 부당 사용조직에 대해서는 부당사용금액 및 부당사용비율에 따라 1~5년간 지원중단
- 자부담액 대납, 보조금 부당사용 풀 회사는 부당사용 금액 및 부당사용 비율에 따라 1년 이상 사업 참여 제외
- 풀 이용료 집행 시 출하량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 하였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지체 없는 회수 및 지원중단 등 조치
- 주관사업자인 농협중앙회는 풀 회사에서 공급하는 물류기기의 세척, 청결상태 등을 수시 확인 후 문제점 발생 시 개선지도

6. 성과측정단계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당해연도에 출하처인 공영도매시장, 대형마트, 가공

공장에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출하된 농산물의 물량을 조사하여 하역기계화율 산정(차년도 1분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대상자별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출하한 물량을 평가
《환류》

○ 사업대상자별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출하한 물량을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 배정 및 물류기기 구입비 우선 지원

IV. 2011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① 물류기기 구입비 지원 >

1. 2011년도 사업신청

○ 2010년도 3월말까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사업신청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 <http://www.agrix.go.kr>에 접속

- 파렛트 2열적재가 가능한 4.5톤이상 광폭차량은 윈바디, 탑차량에 한정하여 지원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대상 장비 및 사업대상자 선정은 '10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준함

<② 물류기기 공동이용>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 방법

- 사업 수요조사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물량 및 과거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사업규모 추정

○ 수요조사 시기

- 수요조사 시기는 전년도 12월부터 사업 당해연도 1월까지 실시

○ 제출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은 물류기기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기접수도 병행하여 실시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19 |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과 장 안 광 옥	031-463-3205
		서기관 정 영 환	031-463-1581
농협중앙회	원예인삼부 산지활성화팀	팀 장 하 명 곤	02-2080-6231
		차 장 강 규 성	02-2080-6236

I. 사업개요

1. 목 적

- 산지 생산자조직의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를 유도하여 농산물을 규격 상품화함으로써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 농산물의 포장화·규격화를 통한 물류표준화 촉진으로 수송·적재 등의 효율성 제고 및 유통비용 절감

2. 근거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1조 1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3조 2항, 3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 향상
 - 2013년까지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을 80%까지 제고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율	76.7	73.6	75.7	76.2(P)	연간실적	표준규격 농산물 출하량/농 산물 출하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1,728,375	154,458	143,098	115,937	120,253
보 조	493,107	45,873	41,273	32,993	33,534
지방비	62,421				
자부담	1,172,847	108,585	101,825	82,944	86,719

* '10년 국고보조금 세부내역 : 포장재비(11,913백만원), 공동선별비(11,000),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10,080)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공통사항》

○ 총 사업신청액(국고보조금)이 30만원 미만인 사업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
가. 포장재비 지원

- 농식품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 친환경인증, 지리적표시, GAP,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생산자조직 및 개별 생산농가
-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기타 생산자조직(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산지유통인

나. 공동선별비 지원

- 농식품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 깎마늘(쪽마늘 포함) 또는 신선편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료농산물에 공동선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다.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

- 결구배추·무를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생산자조직(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산지유통인, 개별 생산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공통사항》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 포장재비 지원

-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개별 생산농가, 산지 유통인
 - 산지유통인은 양배추, 마늘, 쪽파, 대파, 알타리무에 한하여 지원

나. 공동선별비 지원

- 농산물의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하고,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¹⁾를 사용하며, 공동출하·공동계산²⁾하는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출하하는 물량과 기타 출하처 중 출하실적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에는 사업량으로 인정
 - 연합형 또는 광역화된 공동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지점·지소·법인)별 공동계산 가능

다.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

- 결구배추·무를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생산자조직(농협, 작목반, 영농

1) 지자체와 생산자조직이 함께 개발하여 활용하는 브랜드 또는 다수의 생산자조직이 참여한 시·군단위 이상의 브랜드, 산지유통전문조직 이상에서 사용하는 1개의 고유 대표브랜드

2) 참여 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등급별 평균단가로 생산자에게 공동 정산하는 제도(다만, 친환경인증농산물 등은 별도 공동계산 가능)

-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산지유통인, 개별 생산농가
- 「농안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에 출하하는 물량 중 도매시장 법인 등의 각 취급장에서 출하 확인한 물량에 한하여 사업량으로 인정

3. 지원 대상품목

구 분	지 원 대 상 품 목
○ 포장재비	○ 사과, 배, 포도, 팽이버섯, 감귤, 방울토마토, 풋고추 (파리고추·홍고추 포함), 감자, 참다래, 토마토, 단감,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 공동선별비	○ 결구배추, 무,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결구배추·무(열무, 알타리무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포장재 제작 또는 구입비, 공동선별비 지원

5. 지원 형태

가. 포장재비 지원

- 대상 포장재
 - 자재 : 골판지상자, 그물망(스티커 포함), PE대, PP대, PET, 펄프용기, 지대, 생분해성 플라스틱수지, 플라스틱용기(화훼류에 한함)
 - 포장치수 : 한국산업규격(KS A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계열치수 69개 모듈 또는 T-11형 파렛트(1,100X1,100mm)의 평면 적재효율이 90%이상 인 것으로 하고, 높이는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
 - 단량
 - 농산물의 표준거래 단위로 한다. 다만, 5kg 미만과 품목별 최대 거래단위 이상 포장품은 표준거래 단위를 적용하지 않으나 포장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 지원 비율(국고 보조)
 -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품목 : 40%
 - 수박, 마른고추(2 품목)
 - 표준규격 출하율이 30%이상 ~ 80%미만인 품목 : 20%
 - 지원비율 40% 및 10%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

- 표준규격 출하율이 80%이상 ~ 90%미만인 품목 : 10%
- 자두, 복숭아, 메론, 피망(파프리카 포함), 참외, 가지, 오이, 애호박(쥬키니호박 포함), 조롱수박, 상추, 당근, 양배추, 거베라, 백합, 장미, 카네이션(16 품목)

*** 최근 3개년 표준규격출하율이 90%이상인 품목은 지원제외**

- 공동선별비 지원조직의 신선편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료 품목에 관계없이 10% 지원
- 우대 및 가산지원
 - 마늘, 쪽파, 대파, 알타리무를 표준규격으로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60%, 기타 장소에 출하하는 경우 40% 지원
 - 도매시장 등에 표준패킷으로 출하하는 경우 품목별 지원 비율을 5% 가산하여 지원
- 사업량 결정
 - 포장재 신청량에 대해 해당 조직의 평가등급을 반영하여 지원 사업계획량을 결정
 - 우대품목인 마늘, 쪽파, 대파, 알타리무를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한 경우에는 해당 포장재 수량의 100%를 지원
 - 산지유통전문조직 등이 공동선별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출하한 경우에는 출하물량에 해당하는 포장재 수량의 100%를 지원

나. 공동선별비 지원

- 지원 비율(국고보조)
 - 수탁선별 50%, 매취선별 20% 지원
- 가산지원
 - 당도표시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당도를 선별 표시·유통한 물량에 한하여 지원비율을 30% 가산 지원하되, 당도선별·표시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

다.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

- 대상 포장재 : 골판지상자, 그물망, PE대, PP대
- 지원비율(국고보조)
 -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 50% 지원
 - 「농안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거나 대형 유통업체, 김치공장에 출하하는 경우 : 20% 지원
- 가산지원
 - 도매시장 등에 표준패킷으로 출하한 경우 지원비율을 5% 가산하여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사업 안내

농관원(지원, 출장소), 농협(시도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 관내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내용 및 신청에 관한 세부내용을 안내(전년도 12월말~1월초)
 - 주요 안내 내용 : 사업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나. 사업 신청·접수

사업 대상자

《생산자조직 및 개별 생산농가》

- 포장재비와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생산자조직 및 개별 생산농가는 【별지1-1호 서식】의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서」 1부를 작성한 후 사업장 관할 지역농협('10. 1. 10.까지) 또는 농관원 출장소에 제출('10. 1. 15.까지)

《산지유통전문조직·공동마케팅조직》

- 공동선별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대상 조직은 【별지1-1호 서식】의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서」 3부를 작성한 후 사업장 관할 농협 시·군지부에 제출('10. 1. 10.까지)

《산지유통인》

- 포장재비 및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산지유통인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별지1-1호 서식】의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서」 1부를 제출('10. 1. 15.까지)

농협중앙회(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포장재비 지원》

- 지역 농협장은 생산자 조직 또는 개별 생산농가가 제출한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계획서」를 취합하여 관할 농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출('10. 1. 15.까지)

《공동선별비 지원》

- 농협 시·군지부장은 공동선별비 사업대상 조직이 제출한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서」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1부를 농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출('10. 1. 15.까지) 하고, 시·도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회장에게 제출('10. 1. 20.까지)

* 사업계획서 검토사항 : 조직원의 실 경작 및 사업계획량의 적정여부, 표시사항 (공동브랜드 등) 적정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농관원(출장소)

《포장재비 지원》

- 농관원 출장소장은 포장재비 신청조직의 전년도 실적 등을 검토하여 '10. 1. 31.까지 사업신청자 우선순위 결정
- <포장재비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 2순위 : 기타조직(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 순으로 지원)
-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붙임 1-1】의 「생산자조직 평가표」에 따라 지역농협과 합동으로 평가하여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으로 분류('10. 1월중)

< 생산자조직 등급분류 및 지원 사업량 >

구 분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
평가점수	9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지원비율	신청량의 90%이상	신청량의 60~90%미만	신청량의 60%미만
평가항목	시설규모, 상품의 고급화, 소비지 점검결과, 품질관리활동, 특별가·감점 등 5개 항목		

- 생산자조직 평가를 하지 않는 산지유통인 등은 아래 사항의 적발(위반)건수를 합산하여 사업계획량에서 차감하되, 예산 및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
 - 전년도 표준규격품조사의 부적격 적발횟수
 - 적용범위 : 품위(속박이)부적, 중량부족, 등급 허위표시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GAP 등 사후관리의 부적격 적발횟수
 - 전년도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발생 및 행정처분 건수, 유통조절명령제 위반 건수
- 농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2호 서식】의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 계획서」를 농협 시·군지부장 및 지원장에게 통보('10. 2. 5. 까지)하고,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지원 제외 대상자에게 통보('10. 2. 10.까지)

《공동선별비 및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농관원 출장소장은 지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별지2호 서식】의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원 계획서」를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지원 제외 대상자에게 통보('10. 2. 10.까지)

농협중앙회(시·도 지역본부 포함)

《공동선별비 지원》

- 농협 시·도 지역본부장은 사업대상자의 당해연도 신청액, 전년도 집행액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농관원 지원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중앙회장에게 보고('10. 1. 25.까지)

<공동선별비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 기존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공동마케팅조직
- 2순위 : 신규 산지유통전문조직
- 농협중앙회장은 시·도 지역본부별 지원계획을 검토하여 농관원장과 협의 확정하고, 농관원장과 농협 시·도지역본부장에게 통보('10. 1. 31.까지)
- 농협 시·도지역본부장은 해당 시·군지부장에게 통보('10. 2. 5.까지)

농협중앙회(시·군지부)

《포장재비 지원》

- 농협 시·군지부장은 농관원 출장소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 계획서」을 지역농협장에게 통보('10. 2. 10.까지)

《공동선별비 지원》

- 농협 시·군지부장은 시·도지역본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동선별비 지원 계획」을 사업 대상자에게 통보('10. 2. 10.까지)

3. 사업 시행단계

농관원(본원)

- 농관원장은 사업의 세부추진지침을 작성하여 지원장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전년도 12월말 ~ 1월초)

농관원(지원·출장소)

《공통 사항》

- 농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와 함께 【별지3호 서식】의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제작협의를서」를 2부 작성하여 농관원과 사업자가 각각 1부씩 보관

《포장재비 지원》

- 농관원 출장소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 및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 계획서」와 상이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장에게 국고보조금 지급 요청
- 사업단가는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납품가격을 적용하되, 최고 사업단가는 매당 1,3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포장재비 계산 : 공급단가(세액제외)×포장재제작수량×품목별지원비율×조직별 지원비율

《공동선별비 지원》

- 농관원 출장소장은 산지유통전문조직 등에서 작성한 「공동선별비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사업내용 일치여부를 농협 시·군지부장과 공동으로 확인(기관장 결재)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장에게 보조금 지급 요청
 -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되, '10. 11. 30.까지 대금 정산한 물량의 보조금은 '10. 12. 15.까지 신청
 - 지원단가는 【붙임 2】의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를 적용
 - '09. 12. 1. 이후 대금 정산한 물량은 '10. 2월말까지 신청하되, '09년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10년도 예산으로 지원
-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에서 '수출물류비3'가 지원되는 수출농산물은 지원이 제외되며, 대형유통업체 등의 출하 농산물중 유통업체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산물(PB 등)은 지원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

- 출하지역별(소비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장은 각 사업장 대표가 제출한 【별지4호 서식】의 「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실시간 품질·검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각 취급장 대표가 「전산화일 형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품질·검사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이상 유무를 확인('10. 11. 30.까지 출하한 물량을 12. 10.한)
- 주소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출하지역별 관할 출장소장이 입력한 품질·검사관리시스템의 「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검토하여 지원장에게 보조금 지급 요청('10. 11. 30.까지 출하한 물량을 12. 15.한)
 - '09. 12. 1. 이후 출하물량은 '10. 2월말까지 신청하되, '09년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10년도 예산으로 지원

농협중앙회(시·도 지역본부, 시·군지부 포함)

- 농협중앙회장(시·도 지역본부장)은 사업대상조직의 당해연도 신청액, 전년도 집행액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농관원장(지원장)과 협의하여 수립(1월중)
- 농협중앙회장은 공동선별 지원단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현지실사 후 농관원장에게 소요비용 조사계획을 제출하여 합동조사 실시

사업대상자(생산자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산지유통인 등)

3) 수출농산물의 선별비, 포장제비, 국내·외 운송비 등 지원

《공통 사항》

- 사업대상자는 포장재 제작 전에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을 해당 농관원과 협의하여 표준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에 제작한 동일 포장재를 계속 제작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고, 농협에는 공동 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를 대리하여 제작 협의할 수 있다.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에서 정한 표시사항과 “포장재중량”, “포장치수”를 반드시 표시
 - 판매단위가 속(소)포장인 경우에도 표준규격품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 “포장재중량” 및 “포장치수”의 표시는 생략 가능
 - 다단식목재상자 등에 산물형태로 출하되어 날개단위로 판매되는 농산물은 날개별 표준규격품 표시사항 준수(스티커 또는 꼬리표 부착)
- 산지유통전문조직의 경우 표준규격품 표시사항⁴⁾ 중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란에 산지유통조직명(개인, 작목반 명칭 사용 불가)과 전화번호를 기재
 - 친환경인증·지리적표시·GAP·이력추적관리농산물도 생산자란에 산지유통 전문조직명을 기재하되, 관련법에 따른 생산자명을 ()내에서 병기 가능
- 포장재비 및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16-1호 서식】의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변경계획서」를 농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선별비 사업대상조직은 【별지16-2호 서식】의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변경계획서」를 농협 시·군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사업대상조직은 농관원, 농협으로부터 관련 근거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재비 보조금 신청》

- 사업대상자가 포장재비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5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를 작성하여 포장재 공급자가 발행한 품목, 단량,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작성연월일, 등록번호(공급자, 공급받는자)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와 【별지6호 서식】의 「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시행 관할 농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생산자조직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직원별 입금내역 또는 정산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공동선별비 보조금 신청》

- 사업 대상조직은 공동선별·계산·정산이 완료된 후 【별지8호 서식】에

4)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8-21호) 제9조 및 「별표4」에 따름

따라 「공동선별비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정산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출장소장에게 「공동선별비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09. 12. 1. 이후 대금 정산한 물량은 '10. 2월말까지 신청하고, '10. 11. 30.까지 대금 정산한 물량의 보조금은 12. 10. 까지 신청하여야 함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보조금 신청》

○ 사업대상자가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5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를 작성하여 포장재 공급자가 발행한 품목, 단량,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작성연월일, 등록번호(공급자, 공급받는 자)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주소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09. 12. 1. 이후 출하한 물량은 '10. 2월말까지 신청하고, '10. 11. 30.까지 출하한 물량의 보조금은 12. 10. 까지 신청하여야 함

- 산지유통인은 사업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출장소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 각 취급장(도매시장법인,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등) 대표는 해당 취급장에 출하된 결구배추·무에 대해 표준규격품 여부, 출하수량 등을 확인한 후 출하당일에 「표준규격 출하확인서」 2부를 발급하여 1부는 자체 보관, 1부는 발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농관원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자가 「표준규격 출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이 때 「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전산 화일 형식」으로도 발급할 수 있다.

- 각 취급장 대표는 【별지15호 서식】의 「표준규격출하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4. 자금 배정 단계

농관원(본원)

○ 농관원장은 최근 연도 집행실적, 품목별 생산량 및 출하량 등을 종합하여 시·도별, 사업별 예산을 배정

농관원(지원)

○ 농관원 지원장은 최근 연도 집행실적, 품목별 생산량 및 출하량 등을 종합하여 시·군별, 사업별 예산을 배정

- 농관원 지원장은 농산물의 출하량이 사업계획량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어 시·군 간에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배할 수 있으며, 농협 시·도지역본부장으로부터 공동선별비의 시·군 간 전배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협의하여 전배할 수 있음

농관원(출장소)

- 농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별 조직평가 결과와 품목별 지원비율 등을 종합하여 예산을 배정하되, 조직평가 등급이 동일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GAP 농산물의 우선지원 가능
- 농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별 보조금 신청 상황과 농산물의 출하량을 수시로 파악하여 사업계획량에 미달하거나 초과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농협 시·군지부장으로부터 공동선별비의 사업대상조직 간에 조정·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관원(본원·지원), 농협(중앙회·지역본부)

- 농관원장 및 지원장은 년2회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현지확인 실시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표준규격품 출하실태 등 확인
- 농관원장은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하여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농협중앙회장 및 시·도지역본부장은 포장재비 등이 지원되는 지역농협과 공동선별비가 지원되는 산지유통전문조직 등의 자체 추진사항 점검(년2회)

농관원출장소·농협시군지부·지역농협

- 농관원 출장소장 및 지역농협장은 지원대상 조직에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품목별 출하시기에 표준규격출하 수시 지도
- 포장재비 지원시 「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 및 「제작포장재」 확인
- 농관원 출장소장과 농협 시·군지부장은 공동선별비 지원조직의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등의 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 * 특히, 조직의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별하는 산지유통전문조직은 철저히 확인
- 농관원 출장소장은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을 위하여 품질·검사관리 시스템의 출하실적을 수시 확인

- 농관원 출장소장은 행정처분(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 이행 여부를 현지 확인

《표준규격품조사》

농관원(지원·출장소)

- 농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산지와 소비지 출하농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품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품질·검사시스템에 입력하고, 사업시행 관할 출장소장은 그 위반사항을 농협 및 사업자에게 통보
- 농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각 취급장(도매법인 등)을 수시 방문하여 결구배추·무, 양배추, 마늘, 쪽파, 대파, 알타리무에 대한 표준규격품조사와 함께 품목별 출하수량,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 발급상황, 발급대장 기록 여부 등을 확인

《제재 사항》

농관원(지원·출장소)

- 농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과다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시 감점 및 사업신청량에서 차감하고, 해당 지원등급의 후순위 부여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에 확정 사업량의 50% 범위 내에서 차감
- 농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조치
 -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부당사용금액에 따라 1~5년 동안 지원 제한, 보조금의 회수

6. 성과측정단계

- 분기별로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 및 포장화율을 조사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전국 5개 공영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포장재비는 사업대상자인 생산자조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물량을 차등하여 배정하고, 표준규격출하율을 조사하여 표준규격 출하가 정착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비율 하향 조정 및 지원 중단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사업계획량 배정
- 생산자조직의 표준규격품조사, 안전성조사 등 사후관리 결과 위반 건수, 잔류 농약 허용기준 초과 검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 유통조절명령제 위반 건수를 반영하여 사업신청량을 차감

《환 류》

-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에 따라 품목별 포장재비 지원비율 조정 및 중단
- 공동선별비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공동마케팅조직·산지유통전문 조직으로 선정된 조직에 한하여 지원하되, 당도표시 유통 물량에 대해서는 가산지원

8. 기타사항

-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관련 세부사항 및 각종 서식(사업계획서, 국고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의뢰서, 출하확인서, 사업 변경계획서, 공동선별비 지원단가 등)은 생략하였으므로, 필요하신 사업대상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게재된 「2010년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세부추진지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포장재비 : 농관원 출장소(매년 1.15.까지) 또는 지역농협(매년 1.10.까지)
- 공동선별비 : 농협 시·군지부(매년 1.10.까지)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주소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매년 1.15.까지)

나. 지원대상 제외

- 최근 3개년 평균 표준규격출하율이 90%이상인 품목은 포장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외 품목(신규 예정) : 복숭아, 메론, 피망(파프리카 포함), 참외, 가지, 애호박, 조롱수박, 상추, 양배추, 거베라, 카네이션
 - * 종전 제외품목 : 곡류,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 사과, 배, 포도, 팽이버섯, 감귤, 방울토마토, 풋고추(파리고추·홍고추 포함), 감자, 참다래, 토마토, 단감
- 사업대상자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지원에서 제외

다. 신청자격 및 절차, 구비서류, 생산자조직 평가 등 세부내용은 '10년 지침서 준용

20	품목별대표조직육성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물부 채소특작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물부	채소특작과	과 장 이재욱 사무관 안형덕	02-500-2011 02-500-2012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팀	팀 장 성창현	02-6300-1581

I. 사업개요

1. 목 적

- 대표조직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품목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산업육성 체계를 개편(정부주도 → 대표조직)함으로써 품목별 경쟁력 조기 확보
 - 조직화를 통해 규모의 영세성 극복 및 시장교섭력 강화
 - 수급조절, 경쟁력제고, 품질관리, 마케팅 등을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급속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자율적 대응능력 확보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제11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0년까지 품목별 대표조직 30개소를 육성, 자율적 품목육성 기반 구축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대표조직수	30	-	2	6	'11.1	○ 품목별 대표조직수 총계

* '10년 목표 : 농수산물 생산액의 80%를 커버하는 품목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	-	-	3,000	6,000
보 조	-	-	-	3,000	3,600
자부담	-	-	-	-	2,400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법령에 의거 설립된 품목별 대표조직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민법 제32조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 * 품목 대표성이 없이 지역 등을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은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품목 대표성 확보
 - 사업을 신청한 전년을 기준으로 전국생산량(액) 대비 회원구성원 생산량(액) 비율 또는 전국출하량(액) 대비 회원 출하량 비율이 50%이상인 조직
 - 해당품목 유통, 가공·소비, 수출 등에 관여하는 자에게도 회원가입 허용 (일부만 허용가능, 정관에 명시)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품목담당과)이 대표조직으로 인정한 조직
 - 전문성·책임성 구비
 - 독립된 사무국과 1인 이상의 전담인력 확보
 - 법령에 의해 설립된 조직
 - 운영기반 및 목적 실현 가능성 확보
 - 조직 및 품목발전에 관한 장·단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함
 - 목적 실현을 위한 재정적 기초 마련 및 사업 수행능력 확보
- < 지원제외 >
- 3년내 자발적 운영방식으로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조직(재정 등)

3. 지원대상

- 단일품목으로 구성된 품목별 대표조직
 - 단, 품목특성상 상호 작목대체가 빈번하여 단일품목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품목연합대표조직도 지원가능(예 : 무배추대표조직)
 - 생산방식에 따라 여러개의 품목을 통합한 조직은 제외(예 : 친환경농산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되는 자금은 이사회(자조금 관리위원회 포함)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용도로 사용
 - 품목별 재배기술, 생산·유통분야 등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교육
 - 회원조직화 구축비용(출하정보 수집·분산 네트워크 구축, 회원D/B등)
 - 품목별 연구회, 조직운영 컨설팅, 품목발전 R&D등 비용
 - 출하·수급조절, 품질관리 추진비

- 기타 사무국 운영(인건비 포함), 협의회 등 대표조직 운영비
- < 지원제외 >
- 자조금사업비를 지원하는 품목은 소비촉진홍보, 시장개척비 지원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대표조직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10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조직당 지원한도(1년차) : 200백만원
 - 기본사업비 : 50백만원(공통지원)
 - 사무국 운영, 품목별 연구회 운영비 등
 - 품목발전 사업비 : 150백만원 이내
 - 출하조절 네트워크 구축, 회원관리, R&D 등 기본사업비 이외 사업
 - * 추가사업비는 사업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 인건비는 지원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규모 감안, 자조금사업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조직은 기본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음
 - 총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기본사업비와 품목발전사업비간 상호 이동(전용)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물식품부

-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여 대표조직 등에 시달
- 품목별 대표조직 담당부서는 관련 대표조직에 사업내용 등 안내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원대상자 평가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10년 사업비 지원계획 및 신청 안내

품목별 대표조직

- 대표조직은 해당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사업신청서를 제출(2.15일한)
- < 첨부할 서류 >
 - 품목산업 장·단기 발전계획, 대표조직 발전계획

- 최근년도(3년간) 회원 생산(출하)실적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해당품목의 전국적인 생산규모(량 또는 액)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대표조직의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평가 실시
 - 서류심사후 필요시 현장조사 등 가능
- 지원신청 조직 평가가 완료되면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3.10일)
 - * 품목별 대표조직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시 협조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내에 「대표조직 평가협의회」 구성
 - 인원 : 10명 내외
 - 구성 : 식량원예정책관(위원장), 품목담당과장, 유통공사 등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지원대상자 평가결과를 제출해오면,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조직과 조직별 지원금액을 확정(3.20)
- 지원계획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품목담당부서, 해당조직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 통보(3.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품목별대표조직

- 품목별 대표조직은 지원계획에 따라 연중 사업 실시
- 여건변화로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변경승인 요청

농수산물유통공사

- 대표조직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분기별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
- 여건변화로 대표조직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요청해 오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포기자 발생시 : 농식품부 보고 → 대상자 추가선정 등 조치(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 품목담당부서에서는 대표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및 지도 실시

4. 자금배정단계

품목별대표조직

- 품목별 대표조직은 해당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분기별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제출(4.10)
- 자금소요 시기 도래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보조금 신청

농수산물유통공사

- 대표조직의 분기별 자금집행 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요청(분기별 또는 수시 가능)
- 대표조직의 보조금 지원요청시 이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조건을 붙여 당해연도 자조금조성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교부조건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당해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에 의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사업취소 등으로 동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집행완료 후 소정기일내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잔액이 있을 경우 이자와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사업담당부서는 보조금 교부시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는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품목별대표조직

- 품목별 대표조직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결과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익년 1.31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대상자의 자금집행 적정성, 추진상 문제점 파악 등을 위한 현장점검
년 2회이상 실시
- 사업완료후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추진결과 정산서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집행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을 위하여 년 2회이상 점검 실시
- 점검과정에서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 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조치
- 사업이 완료된 경우 정산서를 검토하여 마무리 조치

《제재》

- 보조금 부당사용 조직에 대해서는 부당사용 금액 및 부당사용 비율에 따라
1~5년간 지원중단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평가지표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익년 4.30)
 - 평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평가지표 : 대표성, 단체의 역할 및 기능, 사업추진 능력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단체별로 조직화 정도, 사업수행능력, 재정적 기초마련 정도 등을 평가

《환 류》

- 평가결과 사업추진 부진조직에 대해 지원 불이익 등 조치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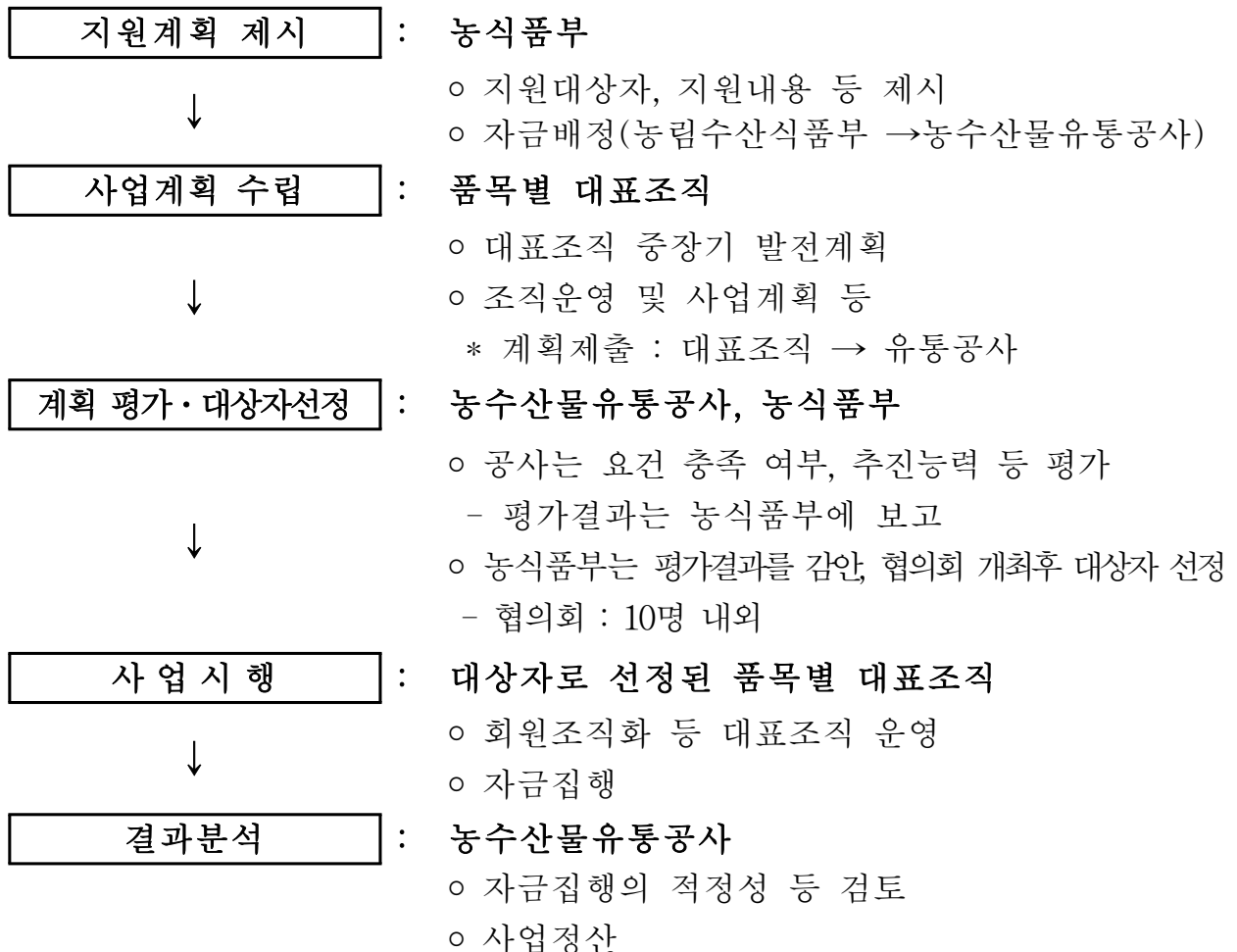
- 2011년도 품목별대표조직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은 사업담당 부서에 신청
 - 제도총괄 : 농림수산물식품부 채소특작과(02-500-2012)
 - 사업시행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팀(02-6300-1581)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신청
 - 단, 국고보조율은 70%로 조정하여 신청

<붙임 1>

□ 사업추진절차



<붙임 2>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사업 지원 신청서

□ 조직현황

조직의 명칭		설립연월일	
주 소			
대 표 자			
전 화	FAX :		
회 원 수	명(생산자회원: 명, 유통인 등 :)		
생산량('08)	전 국	톤	회 원
조직의 기구	사무국 : 명(독립사무국 확보여부 : O, X)		
<재정확보 계획(백만원)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자체확보			
정부지원			
* 자체확보 수단 :			

□ 사업비 신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보조신청
합 계		
기본사업	0 0 0	
	0 0 0	
	0 0 0	
	0 0 0	
품목발전사업	0 0 0	
	0 0 0	
	0 0 0	

- * 첨부 : 1. 대표조직 정관
 2. 조직의 기구, 회원수, 생산량 점유비 등 입증자료
 3. '10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4. 대표조직 발전 및 장·단기 품목산업 발전계획

<붙임 3>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사업자선정 평가표

필수요건

- 품목대표성 : 생산량의 50% 이상
- 법인화된 조직
- 독립 사무국 및 운영인력 확보
- 자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품목(1년내 시행시 허용)
 - 최근 3년간 자조금 보조지원 실적이 연간 10억원 미만

평가지표

평가항목		등급						등급 심사 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F		
1.사업계획 (35점)	1-1. 사업목표 및 연차별 사업계획 (15점)	15	12	9	6	3	0	○ 품목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사업 목표가 제시되었는가?	
	1-2. 자본조달 및 자금 운영계획 (10점)	10	8	6	4	2	0	○ 향후 3년간 자본조달계획 및 규모는 연차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충분 하고 실현가능한가? ○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은 적절한가? · 자금조달계획, 자금운용계획 · 정부지원 운영자금 사용계획	
	1-3. 품목연구 회운영 (10점)	10	8	6	4	2	0	○ 품목연구회 운영계획이 적절하게 수립 되었는가?	
2.사업수행 능력 (30점)	2-1.인력 및 운영기구 (10점)	10	8	6	4	2	0	○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확보되었는가 ? ○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자문기구는 있는가 ?	

평가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F		
2.사업수행능력 (30점)	2-2.자생력 (10점)	10	8	6	4	2	0	○ 자조금을 활용한 자립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자조금단체와 대표조직 분리시 낮은 등급	
	2-3.출하조절 수단 확보 (10점)	10	8	6	4	2	0	○ 수급불안에 대비한 출하조절 방안이 효율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3.발전가능성 (15점)	3.장단기 발전 계획 (15점)	15	12	9	6	3	0	○ 품목특성에 맞는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4.조직화정도 (10점)	4.구성원 참여 율	10	8	6	4	2	0	○ A : 90%이상 ○ B : 85% ○ C : 80% ○ D : 75% ○ E : 70% ○ F : 60%	
5.종합평가 (10점)	추진의지 등	10	8	6	4	2	0	○ 이상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합계		100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 식품산업진흥과입니다.

1. 사업목적 및 통합배경

- '07년부터 산지 생산자·유통조직에 대한 농산물 구입자금 지원사업을 통합, 포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자금집행의 효율성 증대
 - 1단계('07년)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및 수급안정(시설채소, 과실) 통합
 - 2단계('09년) : 수급안정(노지채소) 및 수매지원(저장용, 산지가공) 추가 통합
 - 3단계('10년) : 원예브랜드육성사업 추가 통합
- 우수조직 중심으로 유통종합자금을 집중지원하고 사업평가를 통해 경쟁체제 도입,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유통효율화를 유도함으로써 산지유통의 핵심체를 육성
 - 엄격한 선정심사를 통해 우수조직을 선발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함으로써 경쟁체제 구축

2. 지원대상 사업 내용

- 조직·품목에 대해 각 사업별로 분산지원되고 있는 자금을 조직에 대한 종합 자금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되 지원조건(금리 등)은 기존 체계 유지

구 분	자 금 용 도	지 원 조 건
산지유통활성화사업	①공동마케팅조직 지원사업	○선도금, 계약금, 매취자금, 운전자금, 시설개보수 등 ○3년, 1%
	②산지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선도, 계약금, 매취자금, 운전자금, 시설개보수 등 ○3년, 1~3%
	③산지유통일반조직 지원사업	○선도금, 계약금, 매취자금 ○1년, 3%
수급안정사업	①노지·시설채소 약정출하사업	○계약자금(70~80%, 품대+제비용), 손실대비용 운용자금(20~30%) ○공동·전문조직 : 3년 ○일반조직 : 1년
	②과실수급안정사업	○계약자금(70%, 품대+제비용), 손실대비용 운용자금(30%) ○상동
수매지원	①저장용	○농산물 매입 등 ○1년, 3~4%
	②산지가공	○농산물 매입 등 ○1~2년, 3~4%

3. 통합자금 운용방식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및 수급안정사업(노지채소, 시설채소, 과실)자금은 일괄 신청·지원하며 사업 종료시점을 통일하여 자금관리를 일원화
- 자금 지원기간 : 공동마케팅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 3년, 산지유통일반조직 1년
- * 수매지원(저장용, 산지가공)사업은 선정기준에 의해서 사업대상자 별도선정

4. 사업대상 선정 및 지원조건

□□ 선정 방식

- 신청자격을 갖춘 산지유통조직을 대상으로 조직 유형별(공동마케팅조직, 전문조직, 일반조직)로 매년 일정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후 선정

□□ 재원 및 지원조건

- 지원조건 : 농안기금 (정부80%, 자부담20)
- 공동마케팅조직 : 3년/1%, 전문조직 : 3년/1~3%, 일반조직 : 1년/3%
- * 계약재배용은 조직유형에 관계없이 무이자로 지원하되, 자금지원 기간은 전문조직은 3년, 일반조직은 1년으로 지원
- * 수매지원(저장용, 산지가공)사업은 자체 지원조건에 의거해서 지원

□□ 자금 용도

- 채소 및 과실 계약재배를 위한 계약금
- * 계약재배 품목(16개) 및 사업별 자금운용(제비용, 운용자금 등) 등은 기존 사업체계 유지
- 공동계산·공동규격 출하 등을 위한 출하선도금, 기타 원료확보자금
- 매취사업자금, 직거래 등 유통사업 운전자금
- 산지유통시설 개보수 및 소규모 장비구입자금(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한함)
- 무이자 인센티브(지원대상 : 공동마케팅조직, 우수 전문조직, 조합공동사업법인)

※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별 세부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시행

① 산지유통활성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장 조재호 사무관 고경만 주무관 정순일	02-500-1931 02-500-1943 02-500-1944
농수산물유통공사 (aT)	유통구성팀	팀장 성장현 차장 홍준수	02-6300-1581 02-6300-1583
농협중앙회	산지활성화팀	팀장 하명곤 차장 기노영	02-2080-6231 02-2080-6221

I. 사업개요

1. 목적

- 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 대형유통업체 성장과 같은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 교섭력 확보
- 면단위 지역조합 또는 소규모 농업법인 위주의 소단위사업권역에서 시·군 단위 이상 광역화된 사업권역으로 발전하도록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1, 제57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공동마케팅조직 80개소 육성, 산지유통전문조직 200개소 수준 유지하여 주요원예농산물 10대품목의 처리비중을 5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산지유통조직 처리비중(%)	36.0	32.4	34.0	35.0	2010.9	(유통조직 처리량 / 주요 원에 농산물 생산량)×100%
▪ 공동마케팅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 매출액 성장률(%)	2.0	신	규	2.0	2010.9	(당연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 × 100

* 주요 원예농산물 : 사과, 배, 감귤, 단감, 토마토, 마늘, 양파, 배추, 감자, 당근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6,249,463	714,000	590,125	541,475	3,790,325
용 자	5,048,652	595,000	471,500	433,180	3,032,260
자부담	1,200,811	119,000	118,625	108,295	758,065
○ 시군 유통회사	-	-	22,500	22,500	157,500
- 용 자	-	-	18,000	18,000	126,000
- 자부담	-	-	4,500	4,500	31,500
○ 공동마케팅조직	234,968	244,800	202,500	212,500	1,487,500
- 용 자	204,320	204,000	162,000	170,000	1,190,000
- 자부담	30,648	40,800	40,500	42,500	297,500
○ 산지유통전문조직	2,965,310	315,600	261,875	218,250	1,527,750
- 용 자	2,384,673	263,000	209,500	174,600	1,222,200
- 자부담	580,637	52,600	52,375	43,650	305,550
○ 산지유통일반조직	3,044,658	153,600	106,250	88,225	617,575
- 용 자	2,459,659	128,000	85,000	70,580	494,060
- 자부담	589,526	25,600	21,250	17,645	123,515

* 시군 유통회사에 대해서는 「시군 유통회사 설립·운영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적용

II. 2010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 * 연합사업단은 공동브랜드 사용(특허청 등록 필), 참여 조합간 출하협약 체결·이행 등 사업체계를 갖추고 별도 사업단이 구성된 조직을 말함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시군 유통회사, 상법상 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공동출자한 법인에 한함), 지방공사 등 농산물 유통조직
 - * 2011년부터 자본금이 최소 1억원 이상인 조직만 지원 예정
- 사업대상자 제외
 - 축협조합, 축산류·양곡류를 주로 취급(판매사업 매출액 대비 50% 이상)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협중앙회의 사업상 자회사
 - * 2011년부터 축산류·양곡류를 주로 취급하는 생산자단체도 지원대상 포함하되 사업실적은 원예농산물 실적만 인정
 - 시군 유통회사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있는 시군에 원예류를 취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연합사업단 포함)을 중복 설립하였을 경우(2011년부터 적용)
 - *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공동마케팅조직(2011년부터는 대형 산지유통조직으로 명칭 변경 예정)

- 최근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상위 25%이내의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기존 공동마케팅조직 중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조직
- 사업규모 : 사업신청 직전년도 또는 신청 당해연도의 매출액(수탁포함, 이하 같음)이 100억원이상
 - * 농협 연합사업단은 책임경영체제 및 독립채산 형태로 운영되도록 3년내 독립법인 전제
- 매출액의 20%(혹은 20억원) 이상을 공동계산 하거나, 매출액의 40% 이상을 계약재배한 실적이 있어야 함
- 원료 농산물을 3개 지역(시·군 또는 읍·면) 이상의 지역조합, 품목조합, 광역합병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부터 출하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 조달
 - * 동일지역(시·군 또는 읍·면)으로부터 공급받은 농산물의 매출액이 2억원 이상 이어야 조달지역으로 인정
 - * 조직내부 법인간 거래는 공식문서로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취급한 실적만 인정
 - * 주민투표로 행정구조를 개편한 제주지역은 2개 시·군이상

나. 산지유통전문조직

- 사업신청 직전년도 또는 신청 당해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이상
 - 단, 거점산지유통센터, 조합공동사업법인, 시군 유통회사, 원예브랜드경영체 등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되, 자금지원 2년 후 산지유통종합평가에서 전문조직 요건 미달시 선정 취소 및 자금 회수
 - * 신규 신설법인 및 사업실적이 전문조직 기준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
- 매출액의 10%(혹은 10억원) 이상을 공동계산 하거나 30% 이상을 계약재배한 실적이 있어야 함.
- 공동마케팅조직 신청 후 탈락한 조직은 별도심사 없이 전문조직으로 선정

다. 산지유통일반조직

- 사업신청 직전년도 또는 신청 당해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함
- 공동계산 또는 계약재배 실적이 있어야 함
- 산지유통전문조직 신청조직 중 탈락조직은 산지유통일반조직 신청자에 포함
- 산지유통일반조직 중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하위 10% 조직은 차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만, 농협·법인별 사업대상 개소수가 50개소 이하일 경우에는 적용제외)

※ 2011년부터 산지유통일반조직은 산지유통전문조직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하되, 명칭을 전문 산지유통조직(전문조직)으로 변경

<'11년 전문 산지유통조직 요건(안)>

- 매출액 기준 : 15억원 이상
- 공동계산이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계약재배 20% 이상

라. 공통사항

- 상위조직에 참여하는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산지유통일반조직은 상위조직을 통해서 자금신청(단, 상위조직을 통해서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상위조직의 지원금리 적용)
 - * 상위조직 순 : 공동마케팅조직 > 산지유통전문조직 > 산지유통일반조직
- 사업대상자 선정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 순으로 결정
- 신청제한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대상조직 중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 등으로 지원자금 전액 회수된 조직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청제한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0조(대출제한) 참고

※ 2011년부터 산지조직간 수직계열화를 통한 규모화 유도를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시·군 유통회사 등에 자금 배정권한 부여

<공동마케팅조직 등 자금배정 권한(안)>

- 조합공동사업법인(공동마케팅조직이거나 일정요건을 구비한 경우)이 있는 시군의 지역조합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하여 자금신청 및 배정
 - * 상위조직에 사업참여시 상위조직과 동일 지원조건 적용
- 시군 유통회사가 있는 시군의 산지조직 중 평가등급 C등급 이하인 시군 유통회사를 통하여 자금신청 및 배정
 - * 상위조직에 사업참여시 상위조직과 동일 지원조건 적용

3. 지원품목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서류, 참깨·땅콩 및 유지작물류,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생옥수수, 풋콩, 완두콩, 강남콩)
임산물류	○ 목과류(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및 도토리 등) ○ 버섯류(표고, 송이, 목이 및 팽이 등), 한약재용 임산물
화훼부류	○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약용작물류	○ 인삼(뿌리삼류에 한함) 및 약용작물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동계산, 공동규격출하 등을 위한 출하 선도금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농산물 가공공장의 원료구입
- 계약재배를 위한 계약금
- 매취자금
- 산지유통시설 개선자금(지원금액의 10% 이내)
 - 단, 산지유통일반조직 경우는 산지유통시설 개선자금으로 사용은 불가능
- 직거래 등 유통사업 운전자금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기금융자 80%, 자부담 20%
 - 공동마케팅조직 1.0%(3년 거치 일시상환), 산지유통전문조직 : 1.0~3.0%(3년 거치 일시상환), 산지유통일반조직 : 3.0%(1년거치 일시상환)
 - * 산지유통전문조직의 금리는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 * 사업의무량 125%를 달성할 경우 자부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 사업의무량 : 지원금액의 125% 이상
 - * 농가에 출하선도금으로 활용하는 자금의 대출취급수수료(대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는 1.5%를 적용(대 농업인 적용 금리)하되, 정부지원 금리에 추가금리 부과 금지

<사업의무량 산출 인정기준>

- ① 출하선도금(선급금) : 선급금 지원액(전년도 이월액 차감)의 100%
 - 산지 공판장 또는 경매식집하장에서 생산자에게 지원한 선도금은 50%만 인정
- ② 매취자금 : 매취자금(전년도 이월액 차감)의 70% 또는 운용실적 평균잔액의 100%
- ③ 외상매출금 : 외상매출금 운용실적의 30% 또는 평균잔액의 100%
 - 공판장 또는 경매식집하장은 운용실적의 15% 또는 평균잔액의 50%만 인정
- ④ 산지유통시설 개선자금 : 자금지원시기부터 상환기일까지 실적
 - * 사업의무량 산출기준기간 : 매년 1.1~12.31 (일반조직은 자금지원 기간)
 - * 다른 자금 지원의 제한(중복지원 제한) : 정부지원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물량은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공동마케팅조직 : 사업비 300억원 이내,
 - 공동마케팅조직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지원 사업비 중 일부에 대해서 무이자 적용(기존의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지원 폐지)

- * 지원한도 : 평가결과 상위 20%(30억원 이내), 21~50%(25억원 이내), 51%이상(20억원 이내) 단, 무이자 대상자금은 지원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공동마케팅조직 중 연합사업단이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자금 중 참여농협당 5억원 한도내에서 무이자 적용(1년간)
- 산지유통전문조직 : 사업비 70억원 이내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5%는 7억원 이내, 10%까지는 5억원 이내에서 기지원자금의 금리를 무이자로 지원(1년간)
 - * 2011년부터 지원금리 체계 개편으로 선택과 집중지원 강화

<지원금리 체계 개편(안)>

○ 평가등급 및 금리

(현행) A 1.0% / B 1.5 / C 2.0 / D 2.5 / E 3.0 / F 3.0

(변경) A 1.0% / B 2.0 / C 3.0 / D 3.0

○ 등급구분

(현행) 상대비율 구분 → A, B, C 등급은 상대비율, D는 일정점수 이하

* (현행) A 상위 5%, B 6~25, C 26~50, D 51~75, E 76~95, F 96~100

* (변경) A 상위 20%, B 26~50, C 51~100, D 일정점수(20~30점 수준) 이하

* 변경되는 A, B, C등급은 일정점수 이상 조직만 구분

* D등급 구간 점수는 매년 10% 이상씩 2회에 걸쳐 상향조정

○ 패널티 강화

- 전년도 B등급 이상이 당해년도 D등급일 경우 1회 10%자금 회수, 2회 연속 30%회수, 3회 연속 지원중단

- 전년도 C등급 이상이 당해년도 D등급일 경우 1회 10%자금 회수, 2회 연속 지원중단

- 산지유통일반조직 : 사업비 30억원 이내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 차등 지원 : 상위 25%이상조직(30억원이내), 25%미만~50%이상(20억원이내), 50%미만~75%이상(10억원이내), 75%미만~95%이상 조직(5억원이내), 95%이상~100%조직(지원제외)
 -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받지 않은 조직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결정
- 산지유통조직 중 공동마케팅조직 및 시군 유통회사 참여조직의 사업물량은 1.0% 금리를 적용하되, 동일 물량에 대해서 중복지원 금지
 - * 사업비 지원한도액은 광역화된 조직(품목조합, 합병조합 등), 매출액, 기타 사업추진여건(하위조직의 사업물량 포함 등) 등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증액 가능
- 매출액에 관계없이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선정된 거점산지유통센터, 조합

공동사업법인, 원예브랜드경영체 등의 사업물량은 2.0% 금리를 적용

* 신규 신설법인 및 사업실적이 전문조직 기준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

- 공동선별비 지원 : 공동마케팅조직(공선비용의 40~50%), 산지유통전문조직(공선비용의 30~40%)
- 홍보비 지원 : 공동마케팅조직에 대해서 30백만원(국고지원 기준)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자부담 50
- 기타 : 공동마케팅조직 회원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 농업종합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평가지 우대 또는 가점 부여
 - FTA기금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회원농가에 가점 부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및 시·도에 시달(매년 1월)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공동마케팅조직 선정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 사업신청서 접수(전년 12.20), 평가(전년12~당해년도 1월)
- 농협중앙회는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산지유통일반조직 선정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 사업신청 현황은 매년 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사업대상 조직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공동마케팅조직 : 전년 12.20까지, 산지유통전문조직·일반조직 : 2.15까지
 - * 신청서 양식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에서 별도공지
- ※ 2011년부터 평가신청 및 결과통보, 정부자금 배정 등 사업시행시 지자체를 경유토록 하여 관내 산지조직을 시장·군수가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할 예정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 공동마케팅조직 : 매년 1월말, 산지유통전문조직·일반조직 : 매년 3월말
- * 공동마케팅조직 선정은 산지유통지원위원회를 개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최종 확정
- 산지유통지원위원회는 산·학·연·관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공동마케팅조직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전년도 12.20~당해년도 1.20)
- 농협중앙회는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산지유통일반조직 선정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당해년도 2.15~3.15)
-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받은 조직도 최근년도 실적을 평가
- * 2011년부터는 평가 및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등을 개선 시행 예정

<평가 및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개편(안)>

- 평가결과 적용 개선
(현행) 전년 경영실적을 6~8월에 평가후 다음연도에 차등금리 적용
(변경) 평가시기를 2~4월로 앞당겨 당해연도에 결과 적용
- 평가 이원화 통일
- 평가를 연초로 앞당겨 기존조직과 신규사업자 선정 평가를 동시에 실시
- 산지조직별 신규사업자 선정시기 통일

	(현행)		(변경)
- 공동마케팅조직	: 1월		
- 전문조직	: 5월	⇒	5월
- 일반조직	: 3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물식품부

- 사업대상 조직에 대한 자금지원 등 세부계획 승인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공동마케팅조직의 자금지원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에 제출('09.3월)
- 농협중앙회는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산지유통일반조직에 대한 자금지원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에 제출('09.3월)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대출취급기관의 자금배정 요청에 근거하여 자금배정(수시)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대상 조직으로부터 자금수요 시기를 파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수시)
- 사업대상 조직에 지원된 자금의 전·수배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실시후 농림수산식품부에 결과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대상 조직 및 사업관리 주체에 대해서 연 2회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현황 조사
 - 점검시기 : 6월, 12월
 - 점검항목 :
 - 자금 운영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자금, 인센티브자금, 홍보사업비 등 자금내역별 적정 집행내역, 자금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사업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대상조직의 사업추진 현황 등에 현장 확인 실시(수시)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으로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시(매년 2~8월)
 - 평가결과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 지원, 부진조직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교육 실시(매년 9~12월)

자금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제재》

사업관리주체 및 자금관리주체

- 사업대상 조직의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서 확인을 실시하고 부당사용이 확인될 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관련규정>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제27,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주관), 농협중앙회(협조)
 - 주요평가지표 : 매출액,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일정 : 매년 2~8월
- * 평가기간중에 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금을 운용한 실적이 있는 조직은 산지유통 종합평가를 받는다.
-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조직에 출하한 실적은 매출실적에서 제외
- * 연도중에 연합사업단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법인격을 전환한 조직은 연합사업단의 실적을 인정하여 평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및 수급안정사업 대상조직에 대해서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시
 - 평가원칙 : 산지유통활성화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조직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산지유통종합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조직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 평가 세부계획은 평가 주관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수립(매년 2월)

《환 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적용>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상위 5%)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 지원, 부진조직(하위 5%)은 경영개선 교육 실시
- 산지유통전문조직 중 상위 10%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금리 무이자) 지원(상위 5%까지 7억원 이내, 상위 10%까지 5억원 이내)
 - 하위 20% 이내 조직의 지원자금 회수 또는 경고조치
 - 하위 5% 이내 조직 : 정부지원액의 10% 자금회수
 - 하위 6~20% 이내 조직 : 주의조치

- 평가결과 2년 연속하위 5% 이내 조직은 퇴출후 정부지원액 전액회수 및 향후 2개년간 산지유통전문조직 신청자격 제한
- 평가결과 2년 연속 6~10% 이내 조직은 정부지원액의 10% 자금회수
 - * 자금관리주체는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 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자금 회수 등 조치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물부에 보고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우수조직은 농림사업시행지침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의한 경영컨설팅 우선 지원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산지유통조직 경영자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
 - 참가대상 : APC경영자 및 시도, 시군 관계공무원(350여명)
 - 주요내용 : 산지유통조직 발전방안, 경영정보 교류, 분임별 토론 등
 - 시기 : 매년 11~12월경
 - 주최 : 농림수산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11. 1. 20까지 시·군에 신청
 - 시·군 : '11. 1. 25까지 시·도에 제출
 - 시·도 : '11. 1. 31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
- 산지유통종합평가(농수산물유통공사)
 - 평가계획 수립 및 제출 : '11. 2. 15까지
 - 종합평가 실시 : '11. 4월 말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 '11. 5월 초순
- 사업비 조정·심의 : '11. 5월 중순
- 지원내용, 우선순위 등은 2010년 사업추진요령 내용 참조(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② 원예작물수급안정 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과장 이재욱 사무관 안형덕	02-500-2011 02-500-2012
	과수화훼과	과장 김응본 사무관 김병천	02-500-2024 02-500-2025
농협중앙회	원예부 (채소팀) (과수화훼팀)	부장 강홍구	02-2080-6320
		팀장 강호성	02-2080-6322
		팀장 조남식	02-2080-6361

I. 사업개요

1. 목 적

-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원예작물(채소, 과일) 수급 및 가격안정 추진
- 생산자단체·조직이 산지시장을 주도하여 시장교섭능력 배양
- 생산자단체·조직의 유통참여 확대로 산지유통개선 촉진
- 농가 ↔ 산지농협 ↔ 농협중앙회 ↔ 농림수산식품부를 연계한 원예작물 수급 안정체계 구축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주요 채소류 가격진폭률을 56%('06)에서 45%('16)로 축소함으로써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
 - '17년까지 수급안정 사업물량을 적정생산량 대비 10%('06)에서 24%로 확대
- 주요 과실에 대한 수탁 또는 매취사업 등 계약출하사업 추진으로 평년가격 수준의 과실가격 안정 도모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7	'08	'09		
▪ 가격진폭률(%)	52	55	53	-	2011. 2	○ 진폭률(5년이동평균)= $\frac{\{(최고가격-최저가격)\}}{\text{평균가격}} \times 100$ *가락시장 도매가격 기준 *당해년도 가격 진폭률은 편차가 커서 지표화 하기 곤란하므로 최근 5개년 진폭률을 평균하여 산출, 최고·최저가격은 월 평균 가격의 최고·최저가격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7	'08	'09		
▪ 적정생산량 대비 사업량 비중(%)	14.0	10.2	12.8	-	2011. 2	○ 적정생산량 대비 사업량 비중(%)=사업량/적정생산량 ×100 *사업량은 농협중앙회의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적정생산량은 노지 5,200천톤 을 기준으로 함.
▪ 주요 과실의 가격 안정도	평년가격 대비 ± 20%이내 유지	20.6	8.3	-	2011. 3	과실수급 인정사업 계약 물량 주 출하기(10~익년 2월중의 사업 품목 평균가격 - 도매가격 : 전국도매시 장 가격 활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노지채소	합계	758,800	33,500	-	25,000	408,250
	정부융자	607,000	26,800	-	20,000	326,600
	농협자금	151,800	6,700	-	5,000	81,650
시설채소	합계	222,200	-	-	-	-
	정부융자	177,700	-	-	-	-
	농협자금	44,500	-	-	-	-
과실류	합계	338,500	-	-	-	-
	정부융자	270,800	-	-	-	-
	농협자금	67,700	-	-	-	-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품목을 취급하는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
- 사업대상품목의 수출업체법인, 당해지역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수집상법인, 연합판매조직,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지방공기업 등
- (과실류) 사업대상품목을 취급하는 산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 병행하여 일괄적으로 신청접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대상자 선정 추진

2. 지원자격 및 요건

2-1. 채소류

가. 사업농협

- 품목별 전국협의회에 가입된 농협
 - 다만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함
- 품목별 일정규모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농협

나. 수출업체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수집상법인, 비회원농협

- 총출자금 1억원 이상 법인
- 해당품목의 법인 운영실적이 1년이상 경과한 법인
- 사업자금의 자부담 및 담보제공능력, 자금관리능력과 사업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법인
- 기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다. 연합판매조직,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지방공기업

-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적용되는 법인 (전년도말 기준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 사업자금의 자부담 및 담보제공능력이 있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2-2. 과실류

가. 농협

- 선과장,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을 조합이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에 참여한 생산자조직(작목반, 영농법인 등)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합

* 선과장, 저온저장고는 필수시설(수탁형은 저장출하 하지 않을 경우 저온저장고 없이도 가능)

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 법인
- 사업자금의 자부담 및 담보 제공 능력, 자금관리 능력과 사업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 기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3. 사업대상품목 및 자금용도

○ 대상품목

구 분	대 상 품 목
노지채소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 당근, 고랭지감자 등
시설채소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풋고추
과실류	사과, 배, 단감, 감귤

* 대상품목은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농협중앙회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과실류는 제외)

○ 자금용도

- 노지채소 : 계약재배자금 및 운용자금
- 시설채소 : 약정출하 선급금
- 과 실 류 : 계약출하자금 및 운용자금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정부자금 80%, 자부담 20%
 - 농협의 자부담은 농협중앙회와 사업농협 각 50% 부담
- 지원조건 : 10년거치, 무이자
- 사업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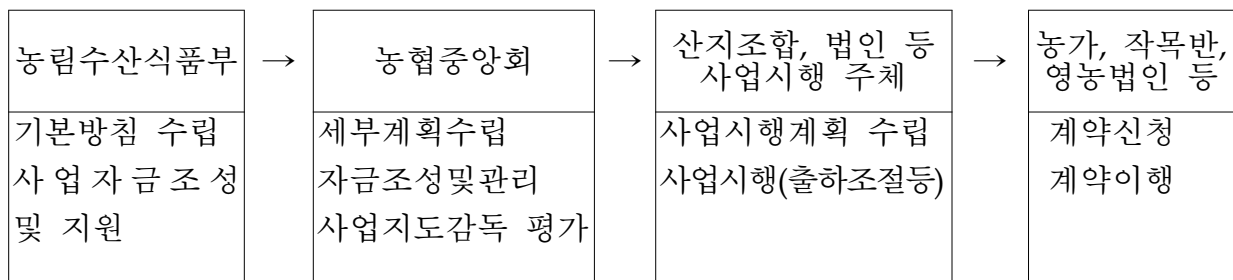
사업명	자금명	내 용
노지채소	계약자금	대농가 계약자금(품대) 및 제비용
	운용자금(사업자금의 50% 이내)	가격차 보전 재원 조성을 위한 금리 운용
시설채소	출하조절용 선급금	약정이행보증금 : 약정금액의 80%이내 제비용 : 약정이행보증금의 20%이내
과 실 류	계약자금(사업자금의 70%이상)	대농가 계약자금(품대) 및 제비용
	운용자금(사업자금의 30% 이내)	가격차 보전 재원 조성을 위한 금리 운용

- 사업방식 : 매취형, 수탁형(단 수탁형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함)
- 지원기간

사업명	지원기간	사업의무량
노지채소	품목별 9~19개월	계약물량의 100%
	※ 품목별 지원기간은 농협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함	
시설채소	사업농협 : 전문조직 3년이내, 일반조직 1년이내 약정농가 : 10개월이내	약정물량의 100%
과 실 류	사업농협 : 전문조직 3년이내, 일반조직 1년이내 계약농가 : 12개월이내	계약물량의 100%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 체계



2.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연도 기본방침 수립, 사업자금 조성 및 지원(1월말)

농협중앙회

- 사업세부계획의 수립
 - 농협중앙회장이 당해년도 자금조성 규모와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 기본계획 수립시달
- 사업세부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장이 사업계획 변경시달

사업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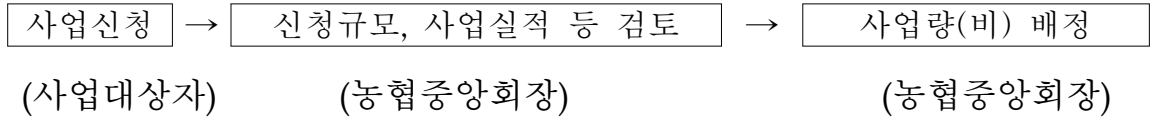
- 사업농협은 품목별 사업물량 계획을 수립하고 농가에 대해 사업설명회 개최 등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 농가의 신청내역을 취합하여 농협중앙회 보고

3. 자금배정 및 사업추진단계

농협중앙회

- 사업량 배정
 - 농협중앙회장이 신청물량, 예년의 사업실적, 당해품목의 생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배정

- 배정절차



○ 사업비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자금과 운용자금을 사업시행전에 사업대상자에게 융자지원
- 사업품목의 특성상 전액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품목은 분할 지원할 수 있음

사업대상자

가. 농가와 계약재배 및 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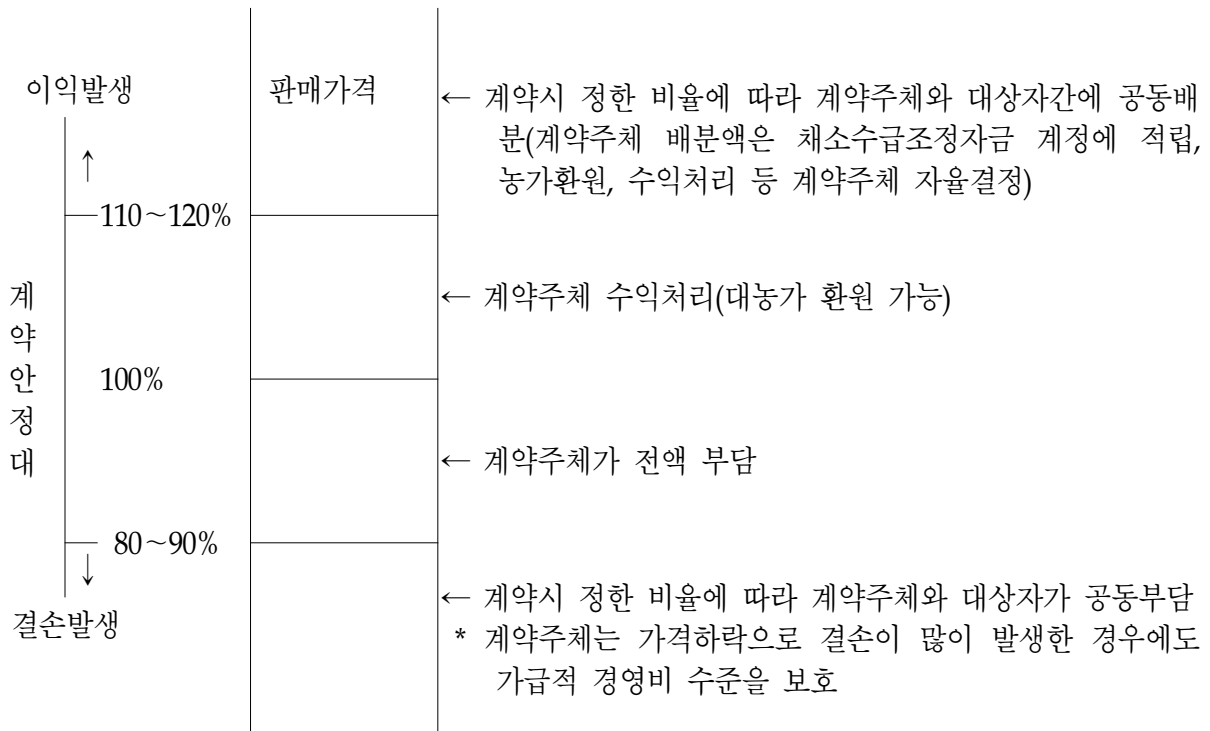
- 계약주체 :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연합판매조직,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등 법인체
- 계약대상 : 재배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계약물량관리 : 계약대상자가 출하시까지 관리
- 대금지급
 - 노지채소 :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 지급
 - 시설채소 : 약정보증금 지급(총 약정금액의 80%이내)
 - 과 실 류 : 계약금(10%~50% 범위 내에서 조합 자율결정), 잔금
- 출하 및 판매 : 가격동향에 따라 시기별, 지역별로 출하조절
 - 농협중앙회장은 저장성이 있는 품목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출하를 명령하고, 불이행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나. 사업정산

<노지채소>

- 출하경비 등 중간제비용을 공제한 순판매가격이 계약안정대(계약가격의 $\pm 10\% \sim \pm 20\%$) 범위내일 경우에는 손익전액을 계약주체가 처리
- 출하경비 등 중간제비용을 공제한 순판매가격이 계약가격 $\pm 10\% \sim \pm 20\%$ 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주체와 계약대상자간에 일정지분의 손·익을 공동부담
- 대농가 정산시기 : 판매후 정산원칙
 - 단, 저장성이 있는 품목 또는 계약후 출하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품목은 출하시 또는 출하전에 정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출하결과 이익 발생시 이익을 계약농가에 추가배분 할 수 있음

[사업정산체계]



주1) 영농조합법인등 일반법인체에 대한 사업정산방식과 수탁형 사업정산 방식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주2) 계약안정대는 계약가격 $\pm 10\sim 20\%$ 를 원칙으로 하되, 품목에 따라 $\pm 20\%$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주3) 저장성품목(고추, 마늘, 양파)은 계약안정대 미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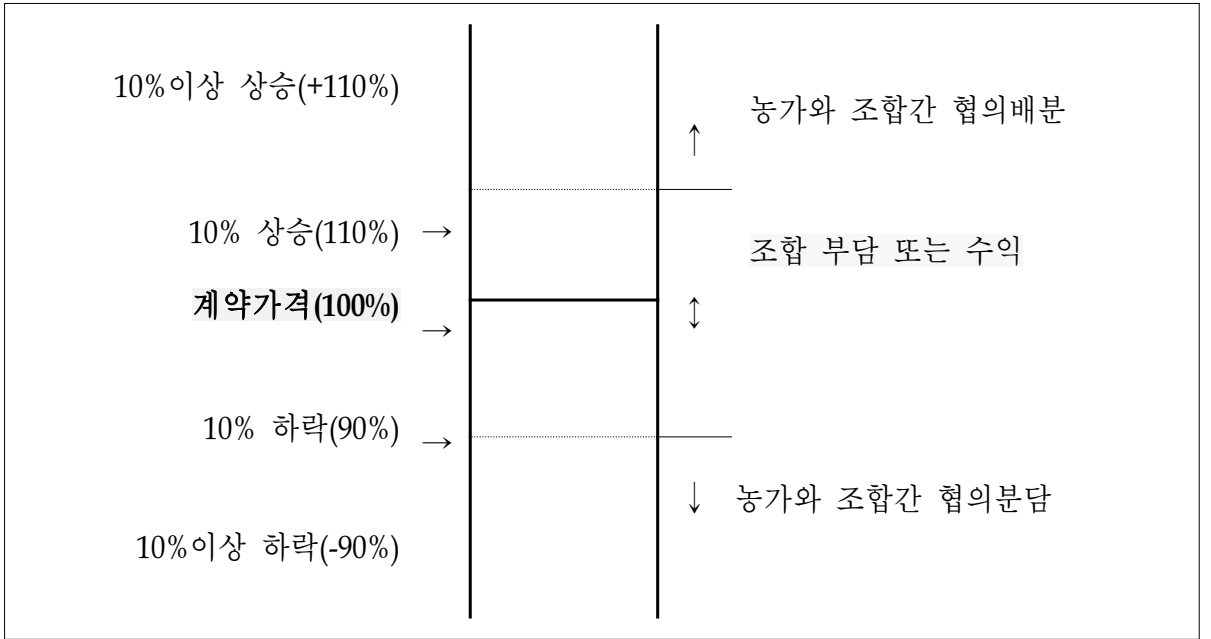
<시설채소>

- 정산시기
 - 공동계산 물량 : 일정기간 구분하여 공동계산 실시
 - 개별계산 물량 : 농산물 판매대금 수령 즉시 정산 원칙
- 출하시장으로부터 농산물 판매대금이 전금오면 판매대금에서 판매비용, 취급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정산

<과 실 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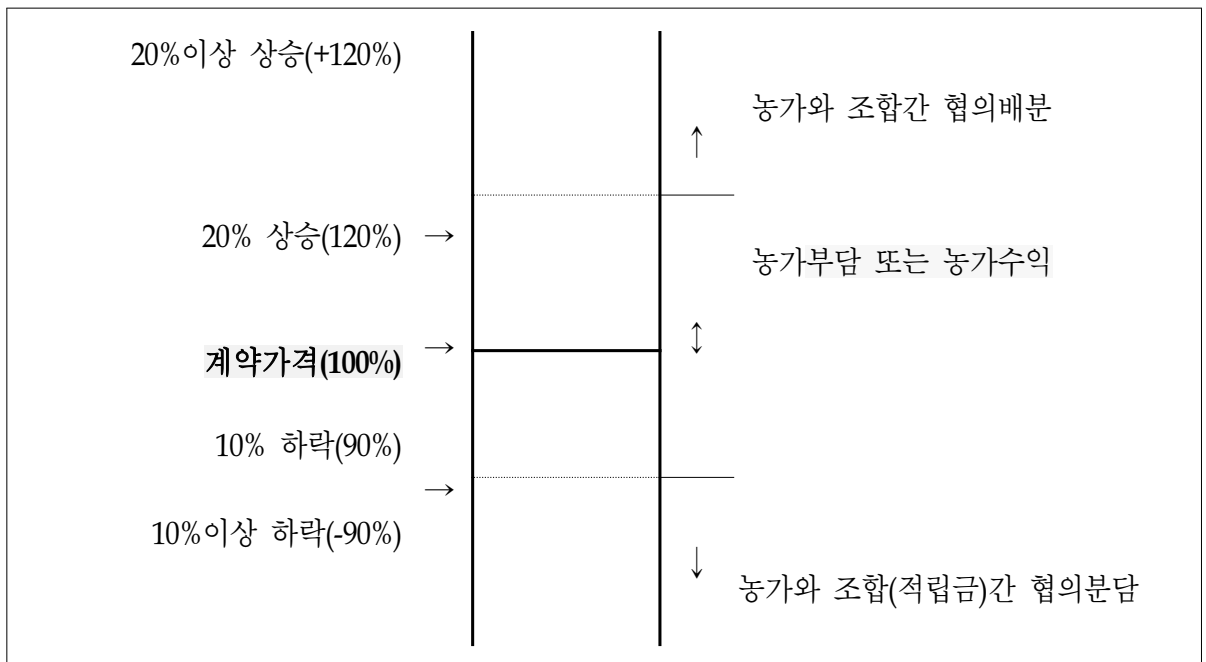
(매취방식)

- 판매가격(산지가격)이 계약가격의 $\pm 10\%$ 범위내일 경우에는 손익전액을 사업대상자가 부담 또는 수익
- 판매가격(산지가격)이 계약가격의 $\pm 10\%$ 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와 계약 농가간에 협의하여 손익을 분담 또는 배분



(수탁방식)

- 출하경비 등 중간제비용을 공제한 판매가격이 계약가격의 -10%~+20% 범위 이내 일 경우에는 손익전액을 계약참여 농가가 부담 또는 수익
- 판매가격이 계약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와 계약농가간 협의 배분(배분방법 등 세부내용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 판매가격이 계약가격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와 계약농가간 협의 분담(계약주체는 적립금 범위 내에서 부담)



다. 가격 폭등·락시 수급안정 방안

<노지채소>

- 무·배추 저온저장 등을 통한 출하조절
 - 저온저장시기 : 소비지 가격이 경영비 이하로 하락시
 - 봄·고랭지 무·배추 출하기(5~9월)
 - 저장물량규모 : 시기별 저온저장 보관능력을 감안하여 추진
 - * 소요비용은 사업조합 유통손실보전자금(채소수급조정자금) 또는 농협중앙회 채소수급조정충당금 활용
- 가격 폭락시 자체폐기
 - 요건 : 산지가격 또는 출하비용을 차감한 도매가격이 최저보장가격(또는 경영비) 이하로 하락이 예상되어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물량 : 사업농협 및 중앙회 자체적립금의 20% 해당물량
 - 재원 : 사업농협 유통손실보전자금 및 농협중앙회 채소수급조정충당금
- 예비묘 공급
 - 시기 : 재해 등으로 절대면적 감소 예상시 사전에 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고랭지무·배추, 가을무·배추 위주)
 - 재원 : 농협중앙회 채소수급조정충당금

<시설채소 및 과실류>

- 도매가격이 『생산비+출하비용』 이하로 하락(예상)시 : 품질규제
 - 품목별협의회 회원간 유통협약을 통한 품위저하품 출하억제
- 도매가격이 『경영비+출하비용』 이하로 하락(예상)시 : 물량규제
 - 출하량 할당, 상품이상 일정물량 산지폐기로 출하량 감축

4.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 : 사업조합(생산자조직)의 지원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사업농협 : 농가별 계약현황 및 수매관리 등 기록관리철저, 위약농가에 대해서는 위약금징수 등 제재조치 강구

나. 사업자금 및 운용 수익의 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와 사업대기자금의 이자를 수급조정충당금 계정에 적립하여야 하며, 동 적립액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교육·홍보, 조사연구, 출하조절(산지폐기 등), 중앙단위 판매사업 촉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비용
- 사업조합의 손실보전
-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사업 등
- 사업대상자는 농가로부터 징수한 위약금 및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품목별 자금운용 수익을 유통손실보전자금 계정에 적립하여야 하며 (사업정산결과 계약안정대 이상 발생한 이익배분액의 적립 여부는 계약주체 자율 결정), 동 적립액은 사업손실보전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농협중앙회장은 수급안정사업자금 및 운용수익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금관리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다. 사업우수자 인센티브 및 부진자에 대한 제재

< 사업우수자 >

- 평가결과 우수농협에 대해서는 운용자금 추가지원
- 계약재배에 3년 이상 참여농가는 가격폭락시 사업조합 유통손실 보전 자금범위 내에서 경영비 수준 우선지원

< 사업부진자(조합·법인) >

- 자금배정액보다 사업실적이 부진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미집행자금에 대해 일정 과태료를 부과
- 익년도 사업지원시 불이익 조치

< 계약 미이행자 >

- 계약금 등 지원자금 및 위약금 징수
- 일정기간 계약대상자에서 제외 등 불이익 조치

5. 성과측정단계

<채소류>

- 성과측정 : 가격진폭률 및 생산량대비 사업물량 점유비
- 측정시기 : 매 회계년도 종료후 측정

<과실류>

- 성과측정 : 계약 출하 품목의 주 출하기간 중 평년가격 대비 수준을 측정
 - 평년가격 대비 $\pm 20\%$ 범위내에서 유지
- 측정시기 : 성과 측정 시기(익년도 3월중)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조합에 대한 평가

- 농협중앙회장은 수급안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내실화를 위하여 품목별 사업정산 완료시 조합별 평가를 실시
- 세부평가 항목 및 요령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 평가결과 환류

- 사업평가결과 현지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사항은 차년도 세부사업계획에 반영
- 평가결과 우수조합에 운용자금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 부진조합에 페널티 부여 등

○ 보고사항

-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상황 :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 * 품목별 사업추진사항은 추진진도를 감안, 수시 보고
- 익년도 사업 및 자금운용계획 : 사업전년도 11월말까지

○ 기 타

- 농협중앙회장이 자금관리지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대출대상자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한 때는 정부의 개별적인 승인 조치가 없더라도 담보취득 가능
- 본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장이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사업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품목별 사업시기 30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장이 별도 시달

③ 수매지원(저장용, 산지가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물부 식품산업진흥과, 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물부	식품산업진흥과	과장 김홍우 서기관 김종실	02-500-1946 02-500-1953
	채소특작과	과장 이재욱 사무관 조호일	02-500-2011 02-500-2017
	과수화훼과	과장 김응본 사무관 안재록	02-500-2024 02-500-2029
농협중앙회	가공사업팀	양인호 팀장	02-2080-6241
농수산물유통공사	자금지원팀	심정근 팀장	02-6300-1150

I. 사업개요

1. 목적

- 농산물가공공장 경영자(이하 “가공업체”라 함)에게 국내산 농산물수매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대량 소비체계 구축 및 고부가가치 향상
- 성출하기에 민간수매지원을 통하여 산지가격 안정과 농가판로를 확보하고, 단경기에 저장물량 출하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57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식
		'07	'08	'09		
<산지가공업체>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6.0	5.0			3월	지원업체 매출액 전수 조사
<채소류저장수매> 수매전후 가격변동율(%)	상한 40.0 하한 10.0	24.0	18.2		12월	○ 수매전후 평균가격을 조사 (도매가격 기준) · (수매 후 3개월 가격/주 출하기 가격)*100% * 주출하기 : 마늘(6-8월), 양파(5-8월)
<과실류저장수매> 단경기중 진폭율(%)	18.0	15.4			익년 3월	· 사업대상 품목의 단경기중 평년가격 진폭율의 평균 (가격시장 도매가격활용) - 단경기 : 1월~3월

4. 연도별재정투입 계획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후
계	112,898	143,838	138,997	138,548	138,548
가공원료 구매자금(용자)	106,558	110,100	106,949	106,500	106,500
채소류 저장용 구매(용자)	34,440	29,538	28,048	28,048	28,048
과실류 저장용 구매(용자)	2,900	4,200	4,000	4,000	4,000

II. 2010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저장용 : 채소류, 과실류 저온저장시설 보유업체
- 산지가공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기타 가공업체)
 - 생산자단체 회원조합 중 정부에서 가공시설 미지원 회원조합도 포함하되, '축산업발전기금' 수혜조합은 지원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국내산 가공용 농산물(수산물 제외) 구매. 단, 우리부 사후관리중인 업체가 농산물과 수산물을 동시 제조·가공하는 일괄지원
- 채소류, 과실류 저온저장시설 또는 마늘가공(탈피)시설을 보유하고 국내산 농산물(채소류, 과실류)을 구매하는 업체
 - *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실적에 따라 가점 부여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내산 가공원료 농산물 구매 및 원 생산물을 가공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밀가루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할 경우에는 당해 원료 포함
- 국내산 채소류(마늘·양파), 과실류(사과·배·단감) 구매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 총사업비의 80% 이내 용자, 자부담 20% 이상
 - 사업 의무량 : 지원금액의 125%이상 국내농산물 구매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4.0%(단, 생산자 단체·농업경영체 연 3.0%)
 - 대출기간 : 농산물 가공업체는 2년 이내, 저장업체는 1년 이내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산물 가공업체

- 업체당 연간 50억원 한도내에서 기금대출 취급기관이 지원한도를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업체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차등 지원
- 농산물 저장업체 : 수매계획량 또는 저장능력 중 적은 물량을 기준으로 소요액의 80% 이내
- *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품목별 배정금액 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협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전년 12월)

농협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원대상자 선정 공고(매년 1월) : 일간신문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 지원 희망업체의 서류 접수(신청서식 : 별지 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농협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원 희망업체에 대한 심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신규 신청업체 및 기존업체 중 시설능력의 변동이 있는 업체에 대한 처리 능력 현지 조사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협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된 세부시행계획 검토·조정

농협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림수산식품부가 시달한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세부시행계획 수립 시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협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 배정

농협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자의 원료처리능력, 사업계획, 전년도 원료수매실적 등을 감안하여 자금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배정시기별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출한도 배정 요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 실적 점검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10월
 - 점검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점검방향 : 사업계획 이행,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자금 집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자금배정 내역을 지원대상에게 즉시 통보하고, 자금대출 실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신속하게 지원 완료
 - 담보부족 등으로 지원이 곤란한 경우 추가 희망업체에 대한 배정
- 사업관리주체는 국내산 농산물을 지원액의 125% 이상 수매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점을 사업자에게 반드시 주지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 자금관리주체는 사업기간 만료 후 아래 사항을 기준으로 사업실적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수매대상처
 - 《저장용 채소류 수매》
 -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지자체가 지정 고시한 마늘·양파 주산지 생산농가(생산자 대표) 또는 지역농협 등 생산자 단체
 - 주산단지의 농협공판장에서 중도매인의 도매·중개에 의하거나 매매 참가인으로 등록된 후 직접 매수
 - 《저장용 과실류 수매》

-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현지 생산대표농가
-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중도매인의 도매·중개에 의하거나 매매 참가인으로 등록된 후 직접 매수

《가공용 수매》

-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현지 생산대표농가
 -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중도매인의 도매·중개에 의하거나 매매 참가인으로 등록된 후 직접 매수
 - 가공용 농산물을 농산물도매시장, 공판장에 등록된 산지유통인(농산물도매시장, 공판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에 한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 포함)으로부터 매수
 - 국내산 전분·밀가루 제조업체로부터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밀가루 매수
- 수매기간
- 저장용 원료수매 : 채소류(매년 5.1~8.20), 과실류(매년 9.1~12.31)
 - 가공용 원료수매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제재》

사업 및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관리주체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거 사업의무미이행 등의 경우에 대출금을 회수하고 제30조에 의거 대출 제한하거나 제31조에 의거하여 위약금을 징구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전년도 사업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지표 측정(3월)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 주요 측정항목 : 사업실적, 지원대상 업체 매출액(가공업체), 저장용 대상품목 가격동향 등
 - 성과지표 측정 : (가공업체)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저장업체) 지원대상 품목의 가격진폭율(최저, 최고)

《만족도 조사》

-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지침의 미비점, 향후 보완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사업지침 개정 등에 반영
 - 조사총괄 : 농림수산식품부
 - 조사기관 :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 조사방법 : E-mail 및 서면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사업이행실적 등을 평가
 - 평가결과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보고 및 다음년도 자금지원시 참고자료로 활용

《환 류》

- 가공업체 : 경영우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 지원(업체당 20억원)
- 저장업체 : 우수업체(사업의무액 150%이상 달성)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 우선 지원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1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업신청 수요서를 작성하여 농협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매년 4월)
- 농협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참여 희망업체가 제출한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농림수산물식품부에 제출(매년 4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1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11년 농안기금 운용계획 확정 후, '10.12월말 ~ '11.1월초에 사업 안내

사 업 현 황

1. 가공 능력

제 품 명	연생산능력(톤)	주 원 료	비 고
1.			
2.			
3.			
계			

2. 생산 및 판매실적(전년도)

(단위 : 톤, 백만원)

제품명	생 산		관 매				재 고	
	물량	금액	국 내		수 출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								
2.								
3.								
계								

3. 가동율 및 수율(전년도)

(단위 : 톤, %)

가 동 율			수 율			
연가동가능일 (A)	실가동일 (B)	가 동 율 (C)	제 품 명	원료투입량 (D)	가공량 (E)	수 율 (E/D)

* 가동율 : 연간 가동가능일에 대한 직전년도 1일8시간 이상 실가동 일수의 비율

* 수 율 : 직전년도의 제품생산에 투입된 총 원료량에 대한 가공량의 비율

4. 원료수급상황

(단위 : kg, 원)

구 분	계 약 재 배			수 매			기 타()			합 계		
	품 목	물량	단가	금액	물량	단가	금액	물량	단가	금액	물량	금액
전년실적												
금년계획												

5. 전년도 원료구입 계획 대 실적

(단위 : 톤, 백만원)

주원료	계 획				실 적						
	계		정부지원		계		정부지원		자 부 담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자금신청서와 상이할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로 기선정된 후에도 자금 지원중단 및 기지원된 자금은 관련규정에 따라 회수 등 조치

6. 가공원료 구입자금 지원금액

구 분	'05	'06	'07	'08	'09
지원금액					
융자잔액					

7. 기타 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선정하기 위한 서류

22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과 장 이재욱 사무관 박윤식	02-500-2011 02-500-2021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팀	팀 장 성창현 차 장 홍준수	02-6300-1581 02-6300-1583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규모화 된 조직을 통해 출하되는 채소류(근채류 제외) 및 버섯류 중 예냉 처리 비중을 26%까지 확대('06년 : 11.1%)
 - 단순 저온저장 유통물량을 제외하고 예냉을 거친 물량으로 목표관리

성 과 지 표	2010 목 표 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 방법
		'07	'08	'09		
▪ 규모화된 조직의 채소·버섯류 예냉비율(%)	11.8	-	-	-	2011.1	(규모화된조직의 채소·버섯류 예냉출하량/규모화된조직의 채소·버섯류 출하량)×100

* 규모화된 조직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산지유통센터(APC) 등 산지유통조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	2011년이후 (2017년까지)
합 계	-	-	-	7,203	111,822
보 조	-	-	-	3,256	47,153
용 자	-	-	-	1,296	28,053
지방비	-	-	-	500	448
자부담	-	-	-	2,151	36,168
○ 산지저온시설 지원	-	-	-	4,319	93,511
- 보조	-	-	-	1,727	37,405
- 용자	-	-	-	1,296	28,053
- 자부담	-	-	-	1,296	28,053
○ 저온수송차량 지원	-	-	-	1,540	13,559
- 보조	-	-	-	770	6,779
- 자부담	-	-	-	770	6,780
○ 소비지 저온시설지원	-	-	-	1,000	896
- 보조	-	-	-	500	448
- 지방비	-	-	-	500	448
○ 화훼류 습식상자 지원	-	-	-	170	2,670
- 보조	-	-	-	85	1,335
- 자부담	-	-	-	85	1,335
○ 홍보 및 교육 등	-	-	-	174	1,186
- 보조	-	-	-	174	1,186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산지 저온시설 지원

- 산지유통종합평가 대상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산지유통일반조직, APC

나) 저온수송차량 지원

-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조직

다) 소비지 저온시설 지원

- 공영도매시장(농안법 17조에 명시된 개설자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

라) 화훼류 습식유통 지원

- 화훼를 취급하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생산자 단체 및 작목반 중 습식유통 생산자조직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습식유통 적격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산지저온시설 지원

-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생산자조직 중 산지유통종합평가 대상으로 2009년 평가결과 상위 50%이내의 조직

* 단, 공동마케팅조직은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신청 가능

나) 저온수송차량 지원

-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생산자조직(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중 저온유통관련 원예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조직

- 저온유통품의 취급을 위한 냉장차량(2.5톤 미만, 2.5톤 이상) 구입에 한함

다) 소비지 저온시설 지원

- 대표성이 있고 저온유통과급효과가 큰 공영도매시장
- 친환경원예농산물을 취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

라) 화훼류 습식유통 지원

- 습식유통 생산자조직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생산자조직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산지 저온시설 지원

- 예냉설비(예냉실, 예냉기),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의 신규설치 및 개보수

* 중점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 농산물, 친환경원예농산물

나) 저온운송차량 지원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2.5톤 미만, 2.5톤 이상)

다) 소비지 저온시설 지원

- 기존 경매장의 저온경매장으로의 개보수 및 신규설치

라) 화훼류 습식유통지원

- 습식유통 시행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 플라스틱 습식용기 임차비. 다만, 습식용기 임차비용보다 습식용기를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습식용기 구입비

- 습식용기로 출하 시 해당 운송비, 습식유통 실시에 따른 수명연장제 구입비

마) 기타(홍보 및 교육)

- 저온유통 기술보급을 위한 사이트 구축 및 홍보

4. 지원형태

가) 재원 : 농안기금

나) 지원조건

○ 산지저온시설 : 국고 70%(보조 40%, 용자 30%), 자부담 30%

* 용자조건 : 연이율 3%(3년거치 7년상환)

○ 저온수송차량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소비지 저온시설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화훼류 습식유통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준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산지 저온시설			저온차량		소비지 저온시설	화훼류 습식유통	홍보·교육	전 체
		예냉 설비	저온 저장고	저온 선별장	2.5t 미만	2.5t 이상	저온 경매장			
사업량	계	15	31	5	25	20	1	1	-	98
	신규	5	10	5	25	20	1	1	-	67
	개보수	10	21	-	-	-	-	-	-	31
사업비		829	2,440	1,050	500	1,040	1,000	170	174	7,203
국고 지원	계	580	1,708	735	250	520	500	85	174	4,552
	보조	331	976	420	250	520	500	85	174	3,256
	용자	249	732	315	-	-	-	-	-	1,296
지방비		-	-	-	-	-	500	-	-	500
자부담		249	732	315	250	520	-	85	-	2,151

주1) 저온선별장, 저온경매장 신규는 기존 시설의 저온화를 의미함

주2) 사업량은 신규·개보수 및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주3) 산지 및 소비지 저온시설·차량·홍보 등의 부문 사업비는 각 사업별 목표량으로 실제 집행시 사업여건에 따라 총 사업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개소당 한도액 및 지원단가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고	
			신규	개보수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예냉설비	차압식	66m ²	70	17.5	신규 : 106만원/m ² 개보수 : 신규의 25%	
		강제통풍식	66m ²	60	15.0	신규 : 91만원/m ² 개보수 : 신규의 25%	
		진공식	1대	200	-	200백만원/대	
		저온저장고	165m ²	150	37.5	신규 : 91만원/m ² 개보수 : 신규의 25%	
		저온선별장	990m ²	210	-	24만원/m ²	기존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냉장차량	2.5톤미만	1대	10	-	20백만원의 50%	
		2.5톤이상	1대	26	-	53백만원의 50%	
소비지저온시설 지원	저온경매장	1818m ²	1,000	-	55만원/m ²	기존경매장의 저온화 개보수	
화훼류습식유통	습식용기 임차료	21,600박스	54	-	2,500원/박스		
	운송비	21,600박스	43	-	2,000원/박스		
	수명연장제	21,600박스	10	-	10백만원/1개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물식품부

○ 사업계획 수립·시달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10년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사업을 위한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

농수산물유통공사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공고방법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및 신문게시
- 공고내용 :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구비서류, 제출기한 등

신청조직

- 산지저온시설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저온수송차량 및 습식유통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소비지저온시설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 대표성이 있고 저온유통 파급효과가 큰 도매시장, 또는 친환경원예농산물을 취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도매시장을 우선 선정

2. 사업자 선정단계

《공 통》

- 선정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 선정시기 : 1~3월 중
- 선정방법

가) 산지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차 서류 및 현장실사(70점), 2차 사업자선정평가위원회 평가(30점)결과를 합산하여 선정
- 1차심의 : '10년도 사업대상의 2배수를 선정기준에 의거 고득점순위로 선정
- 2차심의 : 1차심사후 저온유통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평가기준에 의거 심의 후 선정(저온수송차량은 2차 심의 생략)

* 저온수송차량은 산지 저온시설 지원대상에 우선 지원

나) 소비지 저온시설

- 시범사업자의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후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다) 화훼류 습식유통

- 1차심의 : 신청자 제출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선정위원회에 상정
- 2차심의 : 습식유통 생산자조직 선정 위원회에서 대상자 최종 선정
- 선정위원회는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사)한국절화협의회, 중도매인연합회 등으로 구성하고, 상정된 생산자조직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1개소를 선정하되 사업포기 및 예산의 여유가 있을 경우를 감안하여 2개소를 예비사업자로 미리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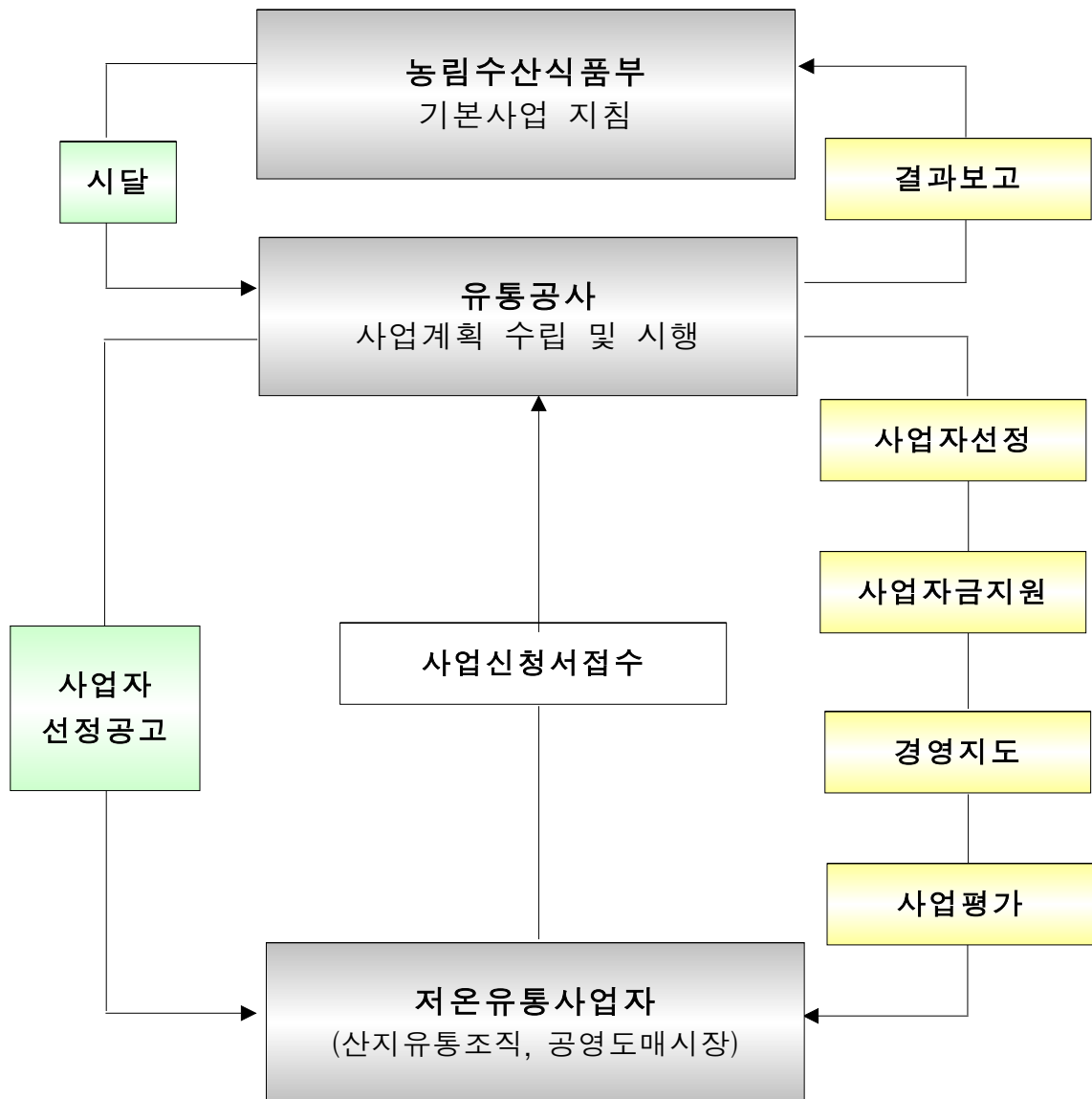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를 확정·통보하고 농림수산물식품부에 최종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저온유통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단, 저온수송차량지원 사업자는 제외)
 - * 세부사업계획서내용 : 1. 지원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등 세부계획
2. 지원시설활용을 통한 세부사업계획 등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토대로 당해 지원사업 관리

< 추진체계도 >



4. 자금배정단계

《공통사항》

농림수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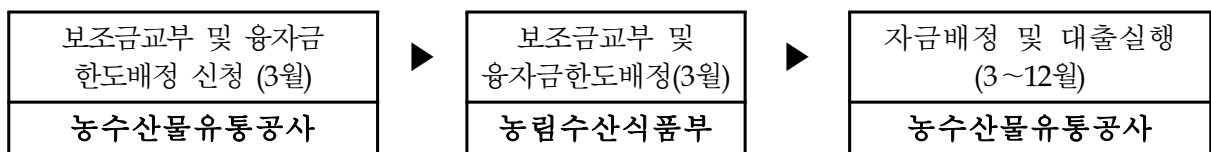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요청받은 보조금 교부 및 용자금한도배정 신청서를 검토 후 소요사업비를 교부 및 용자금 한도배정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당해 사업계획이 시달되면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 및 용자금 한도배정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교부·배정받은 보조금·용자금 집행
 - 보조금의 집행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당해 선정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규정 등에 의거 집행
 - * 지원한도액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사업자금의 집행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조 등을 통한 자부담 전액을 실행한 증거(무통장입금확인증 등)를 확보한 후 보조금 집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보조금 및 용자금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가) 사후관리 일반

- 모니터링체계 구축, 기술·경영 지원, 저온유통관련 전문웹사이트 구축

- 저온유통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홍보 실시

나) 선정 후 자금집행 및 사업착수 등 점검·조치

- 자금집행 및 사업착수 점검(선정당해연도에 한함)
 - 자금집행 및 사업착수 점검은 선정 후 90일 이내 실시하고 '10년도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차년도 1월중)
 - * 점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 및 현황, 자부담·용자금 및 보조금 집행내역
 - 선정 된 조직(산지·소비지)에 대해 사업추진상황을 수시확인 및 지도·감독 실시 후 농림수산식품부로 결과보고
- 농림사업안내문 명시
 - 대상 : 저온유통사업의 건축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5천만원이상 투입되는 사업(저온수송차량은 전 차량에 대해 안내문명시 의무화)
 -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중 II.농림사업실시규정 □□별표2□□'농림사업안내문 표준안'을 적용하여 명시
- 국고(보조금, 용자금)의 부당사용에 대한 조치
 - 보조금 부당사용 조직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동사업의 신청자격을 박탈 하며 농안기금운용규정에 의거 조치
- 사업자 선정 후 사업포기
 - 사업자로 선정된 후 60일 이내 사업 착수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며 사업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의 사업자를 추가 선정
 -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이후 사업포기를 한 사업자는 향후 3년간 동 사업자격을 배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건축물 차량	10년 5년	매각, 교부 목적의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다) 저온시설 운영실태 등 점검

○ 저온시설 실태 수시점검(선정 후 시설 내용연수에 근거하여 실시)

- 저온유통사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시설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방지
(년 2회: 상·하반기에 걸쳐 현지점검 실시 후 농림수산물부 보고)

- 점검부서 : 농수산물유통공사 해당 지사의 유통관련 부서 및 화훼공판장

* 저온시설 운영실태 점검 시 당해연도 선정사업장의 상반기 점검은 자금집행 및 사업착수 점검과 병행

* 사업선정년도 이후 3년간 상반기 점검은 사업평가와 병행 추진

- 선정이후 3년간 저온유통사업장의 점검 프로세스



- 선정이후 3년 초과 저온유통사업장의 점검 프로세스



○ 시설의 목적외사용 등에 대한 조치

- 시설의 목적외사용 및 운영상태가 불량한 조직의 경우 부당사용의 정도에 따라 1~3년간 동사업의 신청자격을 박탈

사업대상자

○ 지원시설·장비의 운영활성화 및 피드백체계도입을 위한 저온시설 운영 실태 등 점검은 선정이후 지원시설의 내용연수에 근거하여 실시

* 사후관리 면제 : 자연재해, 화재, 부도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

○ 저온시설 및 수송차량의 부당사용 등에 대한 조치

- 산지저온시설의 경우 지원시설의 미사용 및 부당사용이 실태점검중에 적발 되면 '농안기금운용규정 제29조 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회수에 의거하여 융자금을 반납하여야 함

- 저온수송차량의 경우 사업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매각하고자 할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후 매각할 경우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1권의 농림수산물사업실시규정의 경영장부 작성요령의 감가상각비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여 국고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선정조직의 채소·버섯류 예냉비율의 증감으로 인한 전년대비 저온유통품 매출 증가분
 - 조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조사방법 : 산지유통종합평가(APC,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실시 시 산지조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취합
 - 측정방법 : 조직의 채소·버섯류 출하량 대비 채소·버섯류 예냉출하량 비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운영평가》

산지 저온시설 지원·저온운송차량 지원

- 목 적 : 저온유통시설을 지원받은 조직에 대하여 사업실시 후 3년간 세부 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조직에게는 인센티브, 부진조직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여 발전지향적인 경쟁구도 마련
 - 평가방법
 - 평가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중장기적으로 산지유통종합평가로 통합추진)
 - 평가기간 : 사업익년 4~5월
 - 평가대상 : 전년도까지 선정·지원된 저온유통사업자
 - 평가기준 : 별도 마련
- * 선정사업자는 선정이후 3년간 저온유통사업계획 및 실적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

습식유통

- 목 적 : 습식유통 시범실시에 대한 사업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습식유통 실시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대안을 마련하여 습식유통 조기 정착화 유도
- 평가방법
 - 평가주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평가시기 : 익년 4~5월
 - 평가방법
 - 장미품목의 공판장 출하량 중 습식유통 출하량의 점유율 및 출하량 등
 - 습식유통 실시 품목의 실시효과 분석
 - 습식유통 실시에 따른 유통주체별 개선 요구사항 도출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 습식유통 유통주체별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및 차년도 예산수립 시 반영

《사업평가에 따른 환류》

- 평가결과
 - 우수사업자는 산지유통종합평가지 가점부여
 - 부진사업자에게는 산지유통종합평가지 감점을 부여하고 부진사유에 대해 대책마련 및 저온유통경영개선 클리닉실시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평가결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저온유통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IV. 2011년도 사업 수요조사

1. 2011년도 사업수요 조사

- 2011년도 저온유통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에 대한 사업신청 수요조사실시
 - 조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구성팀(02-6300-1583)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참여 희망조직이 제출한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농림수산식품부 해당부서에 제출(2010. 5월)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1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0년도 사업 수요조사 방법

- 저온유통사업 희망조직 설문조사 실시
 - 조사대상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산지유통일반조직, APC 등 산지유통조직 및 원예브랜드경영체, 품목별대표조직
 - 조사시기 : 매년 3~4월경
 - 산지유통종합평가 대상 중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산지유통조직 및 저온유통사업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설문지를 배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물식품부 채소특작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물식품부	채소특작과	과장 이재욱	02-500-2011
		사무관 박경희	02-500-2015
		사무관 박윤식	02-500-2022
농협중앙회	인삼사업단	팀장 서명수	02-2080-6373
	채소팀	과장 우해식	02-2080-6385
		차장 이송화	02-2080-6331

I. 사업개요

1. 목 적

- 인삼·약용작물의 전근대적인 생산·유통·가공구조를 생산자단체가 계열화를 통한 참여확대로 유통구조 현대화 및 농가소득안정 도모
- 생산자단체의 가공사업 활성화로 부가가치 제고

2.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고품질 청정인삼·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재배단계부터 이력관리를 실시하는 계약재배 확대
 - 계약재배 면적을 2017년까지 재배면적의 40%수준까지 확대
- 생산자단체가 계약재배 물량을 수매·가공·유통하는 일관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품질 청정인삼·약용작물의 유통비중을 높이고 유통의 효율성 제고
 - 생산자단체가 계약재배 물량을 전량 수매·가공·판매하는 일관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삼·약용작물의 유통구조개선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신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계약재배 이력관리 비율(%/ha)	14.4 (2,015)	13.0 (1,815)	13.6 (1,915)	14.4 (2,015)	'11.2월	이력관리면적/재배면적 ×100
▪ 이력관리 인삼유통 물량 비율(%)	10.1	7.4	10.1	10.1	"	이력관리인삼유통량/인삼 유통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 합 계	46,000	65,250	65,250	61,292	658,348
- 보 조					
- 용 자	36,800	52,200	52,192	49,034	526,678
- 지방비					
- 자부담	9,200	13,050	13,058	12,258	131,670
○ 계약재배	13,500	18,000	18,000	14,612	210,610
- 보 조					
- 용 자	10,800	14,400	14,400	11,690	168,550
- 지방비					
- 자부담	2,700	3,600	3,600	2,922	42,138
○ 수매사업	32,500	47,250	47,250	46,680	447,660
- 보 조					
- 용 자	26,000	37,800	37,792	37,344	358,128
- 지방비					
- 자부담	6,500	9,450	9,458	9,336	89,532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예정지관리를 포함한 재배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등을 실시하여 고품질 청정 인삼·약용작물을 생산하고, 이를 수매·가공·유통하여 생산·유통을 계열화하려는 조직(농협, 일반업체 등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 : 농협, 일반업체
 - 지리적 표시, 수삼경매 참여 실적 및 참여 계획 등을 감안하여 우선권 부여
 - 수출실적이 우수한 농협(업체)에 대하여는 우선권 부여
 - 약용작물(한약재) 저온·가공 등 상품화 시설 보유시 우선지원
- 계약재배 참여농가
 - 인삼(4년근 이상) 또는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인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농약 안전사용 위반자, 사업추진 방해자, 전년도 위약농가, GAP 토양검사에 불합격한 농가(인삼)는 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인삼·약용작물 계약재배 자금 및 수매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계약재배
 - 고품질 청정인삼·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재배단계부터 이력관리를 실시하는 농가와 생산자단체(일반업체)간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계약에 참여하는 농가에 계약자금 지원
- 수매사업
 - 생산자단체(일반업체 포함)가 농가와 계약재배한 물량에 대하여 수매전 계약대상자(농가)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류농약분석을 실시한 후 수매한 물량에 대하여 수매자금 지원
 - * 일반업체는 생산자단체의 계약재배 의무수매물량을 구입하여 유통 및 가공을 할 경우에도 수매자금 지원
 - * 약용작물은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확인(농협)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사업비 재원 : 농안기금
 - 사업비 조성 비율 : 농협(국고융자 80%, 농협중앙회 10, 농협 10)
일반업체(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 일반업체 사업참여 방법 >
- 계약재배 대상농가는 업체 자체선정 또는 농협에서 추천한 농가와 업체간 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이 이를 확인(계약재배 자금은 국고 80% 지원)
 - 예정지관리부터 재배단계의 이력관리, 안전성조사 등은 농협이 대행
 - 수확기 도래시 농가·업체·농협은 시장가격 등을 감안하여 수매가를 결정한 후 전량 수매
 - 농가 또는 업체의 계약과기에 대한 조치사항, 이력관리·안전성조사 비용 등 세부내용은 농가·업체·농협이 상호 협의하여 세부운영지침 또는 계약서 등에 반영하여 운영
- 계약재배
 - 계약주체(사업대상자) : 농협 및 일반업체

- 계약대상 : 인삼(4년근 이상) 및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계약체결 : 계약주체는 계약대상 농가의 재배포장을 확인 후 7.31일까지 계약 완료
- 계약재배 자금지원
 - 지원시기 : 계약체결시
 - 지원조건 : (인삼)5년거치 무이자, 일시상환으로 하되, 연근에 따라 계약 자금 지원시부터 수확시까지로 함
(약용작물)1년거치 무이자, 일시상환
- 사업대상자의 의무
 - 계약대상자(농가)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계약포장별로 수매전까지 재배이력관리
 - 계약주체(사업대상조직)는 계약대상자별·포장별로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농약 등 재배이력 관리실태 확인

○ 수매사업 및 판매

- 수매대상 : 계약대상자의 계약물량 수매
 - 수매물량 배정은 사업대상조직의 계약재배 수확 예정물량 등을 감안하여 배정 하되 세부계획은 농협중앙회에서 별도 수립시행
- 지원조건 : (인삼)5년거치 일시상환(연리 3%), (약용작물)1년거치 일시상환(연리 3%)
- 수매조건 : 수매전 계약대상자(농가)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류 농약분석을 실시한 후 수매
 - *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재배자금 회수(계약자금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위약금 부과 징수)
- 수매기간 : 연중
- 자금지원 : 농협중앙회장은 수매기 전 사업대상조직의 수매계획 및 회전운용 자금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 농협중앙회는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자금에 대한 운용지침 수립 및 자금관리
 - 농협은 수매물량 판매후 회수자금을 지원기간 내에서 수매자금으로 회전 운용하고 동 자금을 수매자금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는 별도관리
 - 일반업체는 수매물량 판매후 회수한 자금에 대해 회전운용 및 사업대기 자금에 대한 운용수익 적립 대신 수매자금의 20%를 익년도부터 매년 12월 20일과 최종상환일에 농협중앙회 상환
- 수매정산 : 수매자금은 수매시 전액 지급하되, 수매금액에서 계약재배지원액을 차감하여 지급

- 수매물량의 처리
 - 수매물량은 사업대상자가 수삼 상태로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출업체가 수출원료용으로 구매를 희망할 경우에는 사전 협약 등을 통해 우선 판매
- 수매실적보고 : 사업대상자는 당해연도 수매실적을 12.15일까지 농협중앙회 보고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계약재배 : (인삼)10a당 3백만원
(약용작물) 계약재배금액의 20%~50%범위내에서 지급
- 수매단가 : (인삼)연근별·등급별로 최근 3년간 농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결정
(약용작물)최근 3년간 농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 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기본계획 수립(농림수산식품부)

- 운영계획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협중앙회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세부운영계획 수립(농협중앙회)

-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달(당해 2월)

계약재배 신청(농업인)

- 사업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계약대상자(농가)에게 계약재배 신청 홍보
-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인삼재배농가는 인삼경작신고시(인삼산업법 제4조)에 해당 농협에 「인삼 계약재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별지1호 서식)
- 약용작물 재배농가는 「약용작물 계약재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별지2호 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대상자 선정(농협, 일반업체)

-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계약재배 대상농가 선정
- 사업농협은 동 지침과 농가신청 결과를 검토한 후 농협의 구매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수립하여 2.28일한 농협중앙회에 제출
 - 사업농협은 계약재배 참여농가의 신청면적을 일반업체 참여분과 농협자체 계약분을 구분하여 중앙회에 제출
- * 약용작물 일반업체는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 및 자금관리 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농협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15일까지 시달
- 농협별 사업계획은 신청물량, 예년의 사업실적, 재배규모 및 생산량, 사업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량 확정

4. 자금배정단계

자금관리 주체(농협중앙회)

- 자금배정 요구
 -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사업비 지원
 - 사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당해사업 시행전에 농협에 지원
 - 계약재배자금은 농협이 계약대상자의 재배포장을 7.31일까지 확인하고 지원
 - 농협중앙회는 농협별 계약재배자금 지원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농협간 자금 전수배 조치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농협중앙회장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농협의 사업추진상황 및 자금관리, 지원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사업자금 및 운용수익의 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에서 상환한 구매자금 등 사업대기자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되 연간 사용계획 및 전년도 사용실적을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과 사업대기자금(계약재배자금, 구매자금)의 운용수익을 충당금 계정에 적립해야 함
- 농협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사업대기자금(구매자금)의 운용수익을 충당금 계정에 적립해야 함
- 충당금 계정 적립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금융기관 취급수수료
 -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구매물의 판매와 관련된 홍보비, 판매촉진비 등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사업
- 농협중앙회장은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자금 및 운용수익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금운용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평가》

- 평가기관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내실화를 위하여 사업 종료 후 평가를 실시하여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업추진 방향 등을 포함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보고

《만족도 조사》

- 농협중앙회장은 인삼계열화사업과 관련 인지도, 사업의 적정성 등 주요관심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에 반영
 - 조사시기 : 12월
 - 조사대상 : 인삼 및 약용작물재배 농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원칙, 평가절차 및 방법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 평가결과는 익년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사업우수농협 인센티브 및 부진농협 등에 대한 제재》

- 사업우수농협 : 평가결과 우수농협에 대해서는 계약재배자금 및 대기자금 충당금 우선지원
- 사업부진농협 :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자금의 목적외 사용 농협 등 평가결과 부진농협은 계약재배자금 및 대기자금 충당금 지원시 불이익 조치
- 계약 미이행자 : 계약물량의 수매기피 및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자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2호】

약용작물 계약재배신청서

경작자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HP)				
계 약 재 배 목 적 물						
경작지	재배품목	재배면적 (m ²)	수 확 예정일	수 확 예상량 (Kg)	경작지구분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차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차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차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차	
<p>상기와 같이 계약재배를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top: 20px;">20 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20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신청자 (서명 또는 인) </p> <p style="margin-top: 20px;">농업협동조합장 귀하</p>						
<p>붙임 1. 계약재배목적물 위치도 1부 2. 경작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지적도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시)</p>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과장 이재욱 사무관 박경희	02-500-2011 02-500-2015
농협중앙회	인삼부	팀장 서명수	02-2080-6373
시·도	채소특작관련담당과	인삼 담당자	

I. 사업개요

1. 목적

- 주요 생산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관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Brand)화를 통한 인삼 전문 생산단지조성

2.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인삼 경작농가의 조직화·규모화 된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생산·유통 체계 일원화를 통해 표준화·규격화를 촉진하여 인삼의 전 근대적인 유통 체계를 개선
- 인삼 생산에 사용되는 고가의 시설·장비의 공동이용으로 생산비 절감과 인삼 경작농가의 조직화·규모화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 교류와 브랜드(Brand)화를 통하여 대외 경쟁력제고
- 인삼재배 전(前)단계(예정지관리)부터 생산·가공·유통·홍보까지 수평·수직적으로 연계된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삼전문단지 육성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인삼전문생산단지 대상 선정 개소수	2	-	-	4	'11.12월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 합 계	-	-	-	4,200	33,600
- 보 조	-	-	-	1,680	13,440
- 용 자	-	-	-	-	-
- 지방비	-	-	-	1,720	13,760
- 자부담	-	-	-	800	6,400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	-	4,000	32,000
- 보 조	-	-	-	1,600	12,800
- 용 자	-	-	-	-	-
- 지방비	-	-	-	1,600	12,800
- 자부담	-	-	-	800	6,400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	-	-	200	1,600
- 보 조	-	-	-	80	640
- 용 자	-	-	-	-	-
- 지방비	-	-	-	120	960
- 자부담	-	-	-	-	-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작규모 200ha 이상 규모로 조직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삼 전문생산 단지로 기존의 농림수산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 단체·농업법인으로 등록된 자 또는 등록 예정자

3. 지원대상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지원내용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가공시설 등 시설비
 - 인삼산업 경쟁력제고 및 수출확대와 관련된 사업 우선

○ 마케팅 · 경영전략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 · 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4. 지원형태

○ 자금의 재원 : FTA기금

○ 지원규모

- 생산 · 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마케팅 · 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지원비율

- 생산 · 유통시설현대화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마케팅 · 경영전략컨설팅지원규모 : 국고 40%, 지방비 60%

* 2010년에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2011년부터 사업추진(선정된 해의 다음해 부터 사업추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기본계획수립(농림수산식품부)

- 인삼 생산 · 유통시설현대화사업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기본계획 수립 · 시달('08.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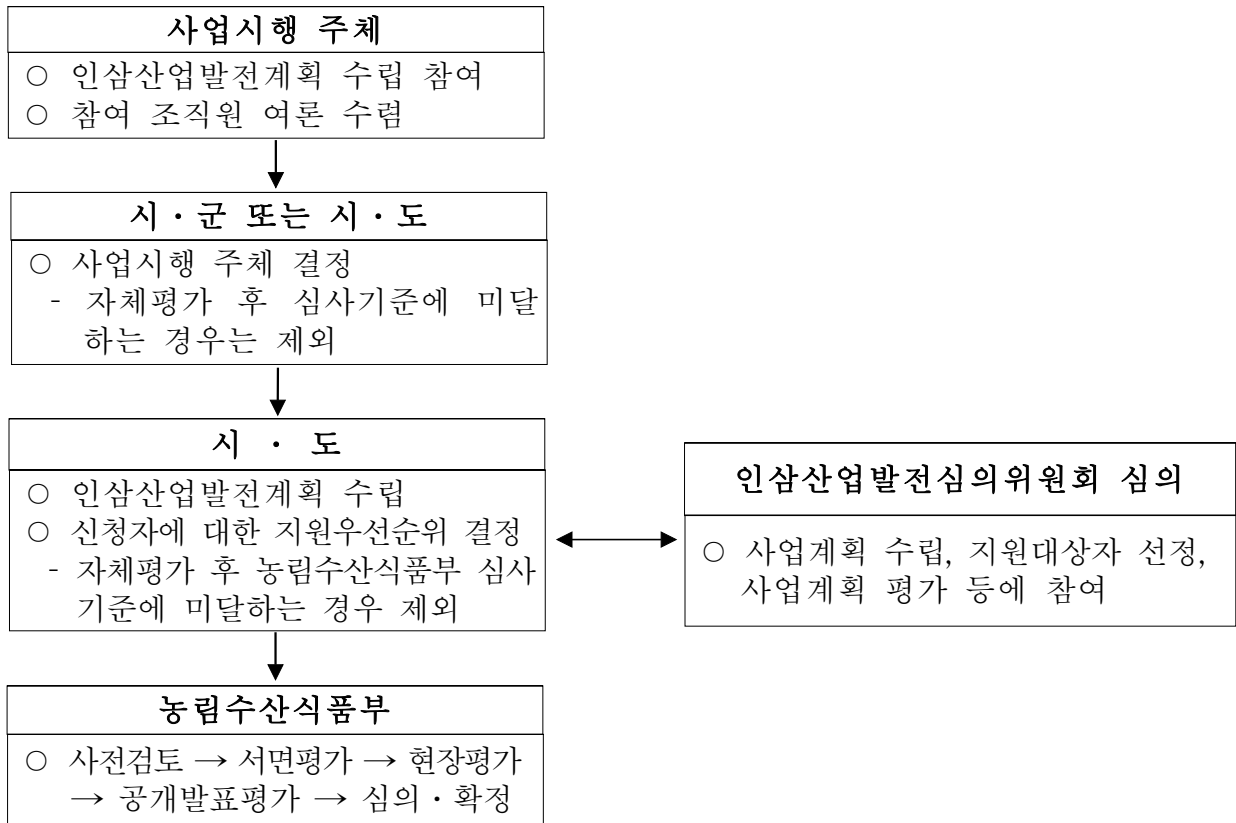
사업신청(시장 · 군수 또는 시장 · 도지사 및 사업법인)

- 사업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삼 생산 · 유통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시장 · 군수에 제출('10.3.31까지)
 - 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 · 도로 제출하고 시 · 도지사가 사업을 직접 수행
- 시장 · 군수는 해당 시 · 군(또는 시 · 도)의 중장기 인삼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 · 도에 제출('10.4.15까지)
 -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공청회 등 농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참여도 제고

- 사업추진 및 사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시·도지사)

- 선정절차



- 시·군 또는 사업법인의 사업계획에 대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에 제출 ('10.4.30까지)
 - 자체 심사·평가지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평가 실시
 - * 각도의 평가심의위원회는 각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 운영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신청자를 알 수 없도록 지역명·사업대상자 등을 기재 하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별도 제출
- 지역 인삼산업발전심의위원회 구성
 - 유통전문가, 경영자문 전문가, 인삼생산 전문가, 학계 및 연구계,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등으로 구성

<인삼산업 발전 심의위원회의 역할>

- ① 지자체의 인삼산업 육성전략 수립
- ②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종료 후 평가
- ④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활동

< 지자체의 인삼산업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해당 지역의 인삼 산업여건 및 전망, 사업별 목표를 계량화하여 설정
 - 기존의 지역 인삼산업여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과 차별화 방안, 소비활성화 및 홍보전략
 - 농업인의 참여비율 제고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 등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법인 설립·운영 및 육성방안
 - 컨설팅 업체, 농업인(품목조직 포함)·농협·지자체·민간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법인
 - 농가조직화 및 조직원에 대한 교육, 인삼산업을 선도할 법인체 육성방안
- 목표달성에 필요한 기존의 농림수산사업과 연계추진 되도록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등 다른 농림수산사업,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추진 방안
- 세부사업별 예산 및 산출근거 등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성과 분석
-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산·유통·가공단계의 생산성 향상 및 마케팅 계획
 - 인삼 제품류별 생산·수출·판매에 대한 연차별 목표량 및 비율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대상자 선정(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신청서 평가에 대한 기본계획 및 평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수립, 농협중앙회 인삼부에서는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평가준비
 -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평가단에 의한 다단계 평가 및 현장실사

○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단계별 평가활용

- 비공개 서면평가 :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서면평가
- 현장 평가 : 사업계획, 사업여건 등을 현장확인 및 면접조사
- 공개발표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사업계획 전반을 총괄평가
- 『인삼계열화사업』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농기계임대사업』 『지리적 표시제도』 등의 사업과 연계할 경우 고득점부여

< 농산물 물류 표준화 : 국고 50~60%, 자부담 40~50% >

* 물류기기공동이용(지게차, 파레트, 플라스틱상자 등), 냉동탑차, 공동선별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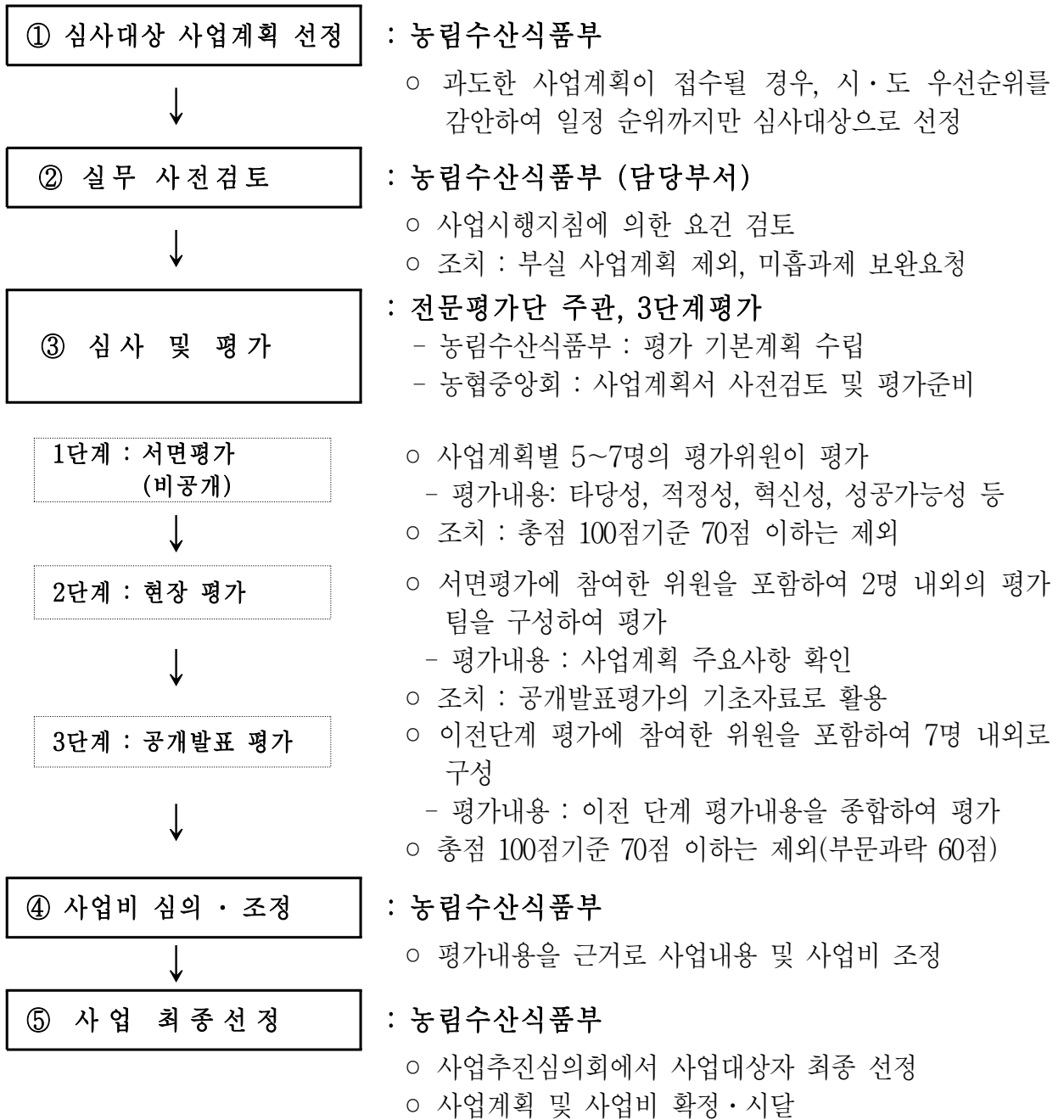
< 농기계임대사업 : 국고 50%, 지방비 50% >

* 예정지 관리용 대형 트랙터, 수확기, 인삼전용방제기 등 임대사업

○ 항목별 선정기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 자금투자 계획의 적정성
	○ 사업비 지원종료 후 운영계획
2. 사업참여 법인의 적합성	○ 사업추진 의지
	○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 사업의 성공가능성
3. 생산 혁신	○ 고품질 원료삼 생산실적 및 계획
	○ 우량묘삼의 안정적 공급 방안
4. 유통 혁신	○ 지리적표시·수삼경매·인삼자조금 참여실적 및 계획
	○ 물류표준화등 유통구조개선 추진실적 및 계획
	○ 수출실적 및 수출확대 방안의 적정성
5. 마케팅전략	○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 컨설팅업체의 적정성
6. 기타	○ 타 농림수산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 연계실적 및 계획

○ 심사절차



○ 심사·평가기준

- 심사위원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구체적인 심사평가 방법은 별도 시행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평가준비(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인삼부에서는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평가준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시·도)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사업법인이 작성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
-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로 부터 세부추진계획서를 사업 확정·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글2002 작성, 별도 CD로 제출)

○ 사업법인 설립·운영

- 사업법인은 농업인, 품목조직, 지역농협, 지자체, 대량수요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여건에 맞는 법인 설립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팅 업체는 경영·유통전문가 반드시 참여
- 사업법인은 공적인 법인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관 등에 제도적 장치 마련
 - 사업수익 또는 부가가치의 참여주체별 환원 및 재투자 방안 마련

○ 사업추진 컨설팅

- 사업법인은 인삼산업발전방안을 토대로 전문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 사업추진 로드맵을 수립·경영자문
- 컨설팅은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평가, 농업인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
- 컨설팅 비용의 지급은 사업 계획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업체와 지자체·사업법인간 계약에 따라 집행
 -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마케팅·경영전략 수립 수립을 기본으로 하되 개소당 예산(국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지방비, 자부담분 추가가능)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 주관 기관(시·도, 시·군)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 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세부사업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사업법인이 작성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
 - 시·도지사는 세부추진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자금배정 신청(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사업추진 진도를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별도서식 없음]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 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사업비 검정 및 정산(시·도)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사후관리(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제39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세부사업별 사후관리는 세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건축물 기계	10년 5년	매각, 교부 목적의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각 단계별 평가결과와 사업성과를 토대로 각종 통계자료를 확인 평가지표 측정(평가주관 : 농림수산식품부)

《만족도 조사》

- 농협중앙회장은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와 관련 인지도, 사업의 적정성 등 주요관심사상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에 반영
 - 조사시기 : 12월
 - 조사대상 : 사업 대상자 및 사업참여 농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자체평가

- 평가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착수 후 3~6월 중
 - 평가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시·도, 시·군평가 실시에 대한 종합 평가·분석
 - 평가방향 : 총평, 사업효과(잘된점, 미비점)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 중앙평가

- 평가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착수 3개월 이후
 - 평가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시·도, 시·군 평가실시에 대한 종합 평가·분석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1년도 신규사업 규모 및 신청방법 등은 추후 시달
 -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의 큰 틀은 동일하므로 2010년도 사업신청요령에 따라 신청
 - 사업지침이 변경될 경우 지자체를 통하여 변경내용시달

<신청서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자료 포함)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10부 (A4용지 크기)
 - 좌철 양면

2. 신청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한글 2002 또는 2004)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5, 오른쪽25, 머리말 15, 꼬리말 15
- 신청서 분량 : 제한 없음

3.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시행지침서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 신청서 양식은 첨부자료 참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장 조재호 사무관 박성기	02-500-1931 02-500-1942
	과수화훼과	과장 김응본 사무관 김을수	02-500-2024 02-500-2033
농협중앙회	공판지원팀	팀장 경종혁 차장 신동식	02-2080-8052 02-2080-8054
농수산물유통공사	도매시장팀	팀장 배상원 과장 김정욱	02-6300-1291 02-6300-1295
	사이버거래소	팀장 황형연 과장 윤미	02-6300-1801 02-6300-1806

I. 사업개요

1. 목적

- 농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 농산물 출하시 대금결제 기능을 강화하여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68조, 제7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도매시장·공판장으로의 농산물 출하를 유인 및 대금결제 기능 강화
- 자금사용 화훼공판장의 거래금액 비율이 전체화훼 공판장 50%수준 유지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신출시기	측정방법
		'07	'08	'09		
· 도매시장·공판장 거래 물량(천톤)	6,795	6,784	7,045	7,256	2011.3	도매시장 거래물량 집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2/4분기) 발행
· 자금사용 화훼공판장 평균거래량 증가율(%)	5	8	5	5	2011.3	· 자금사용 화훼공판장 가중 평균 거래량의 전년비 증가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계	108,840	108,840	791,000	791,000	116,040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법)인	33,100	33,100	30,000	27,500	34,000
농협 공판장 중도매(법)인	40,340	40,340	34,000	31,000	40,340
화훼공판장	13,800	13,800	14,500	13,000	14,800
- 농 협	(5,000)	(5,000)	(4,500)	(4,000)	(4,800)
- 유통공사	(8,800)	(8,800)	(10,000)	(9,000)	(10,000)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	-	-	7,000	26,300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	500	500	500	600	6,000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 도매시장법인(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 포함),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나) 공판장

- 농협중앙회공판장, 회원조합공판장, 경매식 집하장, 화훼공판장, 중도매인
- * 경매식집하장은 정부시책(마늘포장출하 등)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다) 산지유통인

-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한자

라)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법인·시장도매인
-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시장도매인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평가 : 농안법 제77조에 규정에 의함

- 중도매인
 -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결과 상위 20%이내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나) 공판장

- 도매시장공판장 :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공판장
- 산지공판장 : 중앙평가결과 연속 3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공판장
 - 경매식집하장인 경우에는 정부시책(마늘포장출하 등) 상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평가 : 농안법 제77조에 규정에 의함
- 화훼공판장 : 거래물량 또는 거래금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은 공판장
 - 단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 가능
- 중도매인
 -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결과 상위 20%이내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 * 산지공판장 중도매인은 중도매인 평가 유무에 관계없이 지원

다) 산지유통인

- 최근 6개월 이내에 경고처분을 받지 않은 자

라)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3. 지원대상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화훼부류	○ 절화류, 난류 및 분화류 등

*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농수산물 전품목으로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도매시장·공판장

- 선 도 금 : 도매시장·공판장의 출하증대를 활성화 제고를 위한 출하선도금
- 결제자금 : 도매시장·공판장·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결제자금

나) 산지유통인

- 선 도 금 :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

5. 지원형태

- 지원기준

구 분	융자기간	지원금리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출하선도금, 대금결제자금	1년 이내	4.0%
○ 농협공판장(산지, 도매시장) - 출하선도금, 대금결제자금 - 중도매인	1년 이내 “	3.0% 4.0%
○ 유통공사공판장, 중도매인, 화훼경영체 등 - 대금결제자금 - 운영활성화자금	1년 이내 “	4.0% 3.0, 4.0%
○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	1년 이내	4.0%
○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결제자금	1년 이내	무이자

* 지원금리는 농안기금 운영지침에 의거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도매시장·공판장 평가 결과 금리우대지원

구 분	평가결과	지원금리	비고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출하선도금 - 대금결제자금	최우수, 우수	4.0% 3.0%, 3.5%	출하선도금을 사용할 경우, 결제자금만 적용
○ 농협공판장(산지, 도매시장) - 출하선도금 - 대금결제자금	최우수, 우수 “	3.0% 2.0%, 2.5%	상동

6. 지원한도액 및 배정기준

- 용자기준 : 우수관리(GAP) 인증농산물, 농산물친환경농산물, 파렛트출하 거래실적, 브랜드농산물 우수거래자 등은 50%이내서 추가배정 가능
-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 출하선도금(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산지유통인)
 - 용자대상 신청 업체별 최근 1년간 일평균 선도금 지급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 예산 대비 신청업체의 일평균 선도금 지급액
 -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결제자금>
 - 업체별 1회전 대금결제자금 지급실적 금액(최근 1년간)
 - 도매시장 법인 : 상장거래금액의 1/24(24회전)
 - 시장도매인 : 거래실적 1/12(12회전)
 - <중도매인 결제자금>
 - 업체별 1회전 대금결제자금 지급실적 금액(최근 1년간 거래금액 1/4미만)

나) 공판장

- 출하선도금 및 결제자금
 - 출하선도금 : 최근 1년간 일평균 선도금 지급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 결제자금 : 최근 1년간 취급금액의 1/24이내(단 화훼 1/12이내)
- 중도매인 결제자금
 - 업체별 1회전 대금결제자금 지급실적 금액(최근 1년간 거래금액 1/4미만)

다)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 결제자금
 - 결제자금 : 1년간 대금결제자금 취급금액의 1/6이내

7. 사업 의무량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 출하선도금(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자금용자 기간중 일평균 출하선도금 운용실적이 지원금액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 출하선도금(산지유통인) : 정부지원자금의 220%이상을 도매시장에 출하
- 결제자금

- 도매시장의 연간 상장(거래)실적 결제자금이 대출된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 도매시장법인 : 24배이상, 시장도매인 12배, 중도매인 5배이상

나) 공판장

- 출하선도금 : 공판장은 출하선도금을 40%이상 운영
 - 공판장 출하선도금 사용자 사업의무량
 - 사용기간 : 30일까지 출하선도금 상당액, 60일까지 출하선도금 1.5배
60일까지 출하선도금 2배, 120일까지 3배, 150일까지 선도금 4배
 - * 다만, 지원대상자에게 위 기준보다 유리하게 약정할 수 있음
- 결제자금
 - 공판장 : 24배 이상(단 화훼공판장은 12배이상)

다)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 결제자금 :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사업안정화시 도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수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주관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업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통보(1월말)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해당팀)에 보고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지사, 도매시장법인협회, 중도매인협회에 등 관계기관에 시달(2월말)
- * 유통공사홈페이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실시

자금신청자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
 -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용자신청서를 도매시장법인협회(시장도매인협회)에 제출
→ 유통공사(관할지사)

- **중도매인 :**
 -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용자신청서, 중도매인연합회(시장도매인협회)에 제출 → 유통공사(관할지사)
- **산지유통인**
 -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신청서를 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에 제출 → 유통공사(관할지사)

《공판장 : 주관기관(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해당팀)에 보고하고, 농협지역본부 및 회원조합(도매시장 공판장, 산지공판장)에 시달(2월말)
- *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및 도매시장 홈페이지지 게시 등 홍보 실시

공판장

- **농협중앙회공판장**은 농안기금 운영현황 및 소요액 신청서를 농협중앙회 공판지원부에 제출(3월)
- **회원농협공판장**은 농안기금 운영현황 및 소요액 신청서를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에 제출
-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에서는 농안기금 운영현황 및 소요액 신청서와 공판장출하촉진자금 소요액 집계표 를 작성하여 농협중앙회 공판지원부에 제출(3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 주관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업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통보(1월말)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수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등 사업자 선정
 -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매시장법인의 평가 결과, 개설자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공판장(중앙회공판장, 산지공판장)》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공판장(산지, 도매시장), 회원조합공판장(산지, 도매시장)
 -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판장 평가결과, 개설자의 행정처분사항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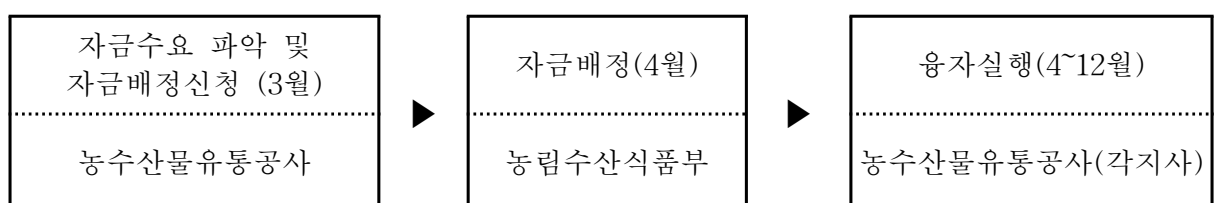
3. 자금배정단계

《농수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법인 등의 소비지유통활성화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농안기금 시장출하촉진자금의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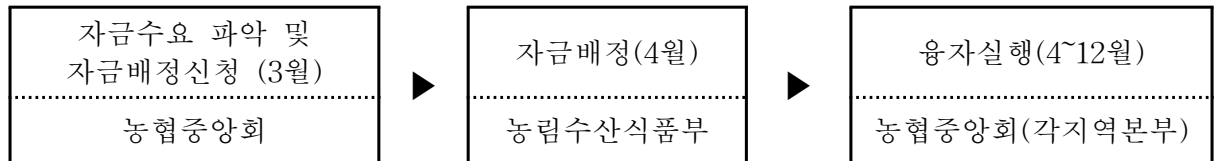
* 화훼공판장 및 농수산물사이버거래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요파악 배정



《공판장(중앙회공판장, 산지공판장)》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공판지원부)에서는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판장 등의 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공판장별 예산(농안기금)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수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사업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 화훼공판장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집행실태 점검

자금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각지사)

- 각 지사에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도매시장팀)의 사후관리 실태점검 계획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수산물유통공사(도매시장팀)에 보고 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6월중 1회, 11~12중 1회)
 - 점검자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공사, 유통공사 각 지사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운영 현황, 사업의무액 준수여부 등

《공판장(중앙회공판장, 산지공판장)》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각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각 지역본부에서는 농협중앙회(공판지원부)의 사후관리 실태 점검 계획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협중앙회(공판지원부)에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공판장, 중도매인 등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6월중 1회, 11~12중 1회)
 - 점검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각 지역본부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운영 현황, 사업의무액 준수여부 등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농림수산식품부

-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자금운영실태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실시

《제재》

사업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및 농협중앙회 각지역본부)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위약금 산출식 : 위약원금(미달차액) × 위약금리 × 사용기간
 - 위약원금 : 사업의무액(운용목표) - 운용실적
 - 위약금리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농협중앙회) - 당해대출금리
 - 사용기간 : 용자일부터 상환일의 전일까지

5.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도매시장, 공판장의 거래물량에 대한 목표량 점검 실시
 - 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공사 거래물량 조사
 - 공판장(산지) : 농협중앙회 거래물량 조사
- 화훼공판장 : 자금사용공판장의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비율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화훼공판장 거래물량 조사 결과

<만족도 조사>

- 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공판장, 화훼공판장 종사자 및 업무관련자에 대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도매시장법인, 개설자, 중도매인 등 관련종사자
 - 조사방법 : 설문(지)조사
 - 주 최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1) 사업평가

- 도매시장, 도매시장 공판장의 정책수행노력, 물량집하·분산노력, 경영관리 노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및 제재 조치

2)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농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액 및 금리 차등적용

구 분	최우수법인	우수법인	부진법인
배정액	30% 증액	20% 증액	50% 감액
금 리	1.0%p 인하	0.5%p 인하	정상금리

* 금리인하는 출하선도금을 사용하는 법인(도매인)으로서 결제자금에만 적용

□ 농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액 감액

○ 출하촉진자금 페널티 부과

- 자금 배정액 50%감액(전년 지원금액의 70%이내)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1년도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농산물 출하촉진자금 용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제출(2010.3.30일까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도매시장법인협회(시장도매인협회, 중도매인협회), → 농수산물유통공사 (관할지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도매시장팀)

〈도매시장공판장, 산지공판장〉

- 중앙회공판장 : 공판장 → 농협중앙회 공판지원부 제출
- 회원조합공판장 : 공판장(회원조합) →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 농협 중앙회 공판지원부 제출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2010.4.15일까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를 기초로 201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10.4.30일)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친환경농업과·식품산업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장 조재호 서기관 김철	02-500-1931 02-500-1935
	친환경농업과	과장 신현관 사무관 류성모	02-500-2125 02-500-2133
	식품산업진흥과	과장 김홍우 서기관 김종실	02-500-1946 02-500-1953
농수산물유통공사	상생협력팀 도매시장팀	팀장 김형목 팀장 배상원	02-6300-1471 02-6300-1291
	식품육성팀 자금지원팀	팀장 박연호 팀장 심정근	02-6300-1301 02-6300-1150
농협중앙회	공관지원부 소비촉진팀	부장 안종일 팀장 이동영	02-2080-8050 02-2080-8063
	산지유통부 친환경농업팀	부장 강홍구 팀장 이택용	02-2080-6320 02-2080-6261

I. 사업개요

1. 목적

- 농수산물시장 개방 확대 및 소비지 대형매장 성장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지와 산지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 유통·식품·외식업체 등 소비지를 정책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산지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산지조직의 규모화 촉진 및 공정거래 정착
- 국내산 농수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 다원화 및 농업인·소비자 편익 증대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 출하선도금 및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농수산물 출하 활성화 및 대금결제 안전성 강화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68조, 제73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 제16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7년까지 산지조직과의 농축산물 직거래 비율을 22%수준까지 향상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산지조직과 농산물 직 거래 비율(%)	14.5	14.5	11.1	13.8	연간 실적	(산지조직과의 직거래 농산물량/ 전체 농산물 거래량)×100

- * 최근 3개년 실적은 직거래·전자상거래 실적임(추정, 행정자료)
- * 산지조직과의 직거래 비율에는 소비자·산지협력사업 지원 대상업체(대형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 등)의 사업실적을 포함함(단, 거래물량은 원예농산물 기준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 계	678,033	167,049	159,919	206,262	205,812
○ 소비자·산지협력사업			26,500	69,943	60,340
○ 직거래매취사업	409,820	39,000	53,100	57,100	53,290
○ 식품 가공원료 매입지원	216,658	106,949	59,219	59,219	74,182
○ 종합유통센터지원	51,555	21,100	21,100	20,000	18,000

II. 2010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세부사업	사업 대상자
소비자·산지 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유통조직과 직접 연간 공급계약을 맺고 직거래를 하는 유통·식품·외식업체 등 * 산지유통조직 : 농·수·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공동마케팅조직, 농협연합사업조직, 육가공업체 등
직거래 매취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단체(친환경농산물포함) : 농협중앙회(판매장 포함) 및 지역농협, 품목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 소비자단체(친환경농산물포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 등 ○ 유통업체 : 백화점·대형점·직영점형 체인사업자 등
식품 가공원료 매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가공업체 및 전통주류제조업체, 한식외식업체, 단체(위탁)급식업체 및 농산물 전처리업체
종합유통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세부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소비자·산지 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업체가 연간 공급계약을 체결한 산지 농수산물유통조직에서 구매하는 국내산 농수산물 직거래 매입 - 유통업체 : 농수산물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소매유통업체. 또는, 공동구매 등을 위해 설립된 중소 소매유통업체 연합체(조합, 체인본부, 자회사 포함) - 식품업체 : 농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연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 외식업체 : 외식체인업체, 단체급식업(위탁급식업 포함)을 운영하는 자로서 연매출액 50억 이상인 사업자 *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으로 지원된 자금이 전액 회수된 조직에 대해서는 2년간 신청자격 제한
농산물 직거래 매취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보리, 가공식품, 수산물 제외한 1차 농산물 및 친환경인증 농산물 매취(단, 전자상거래시 쌀은 지원가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중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 영농조합법인 :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농산물 유통에 부합되고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영농조합법인의 직판장 운영 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자상거래 사업자 : 상품의 주문·결제 등 상거래의 주요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으로 지원된 자금이 전액 회수된 조직에 대해서는 2년간 신청자격 제한
식품 가공원료 매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 전통주류제조, 외식 및 전처리용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수산물 제외) - 가공공장 건립시 정부 지원받지 않은 업체(농업경영체 포함) - 국산 원료 및 부재료를 사용한 민속주, 지역특산주 등 제조업체 -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외식업체, 단체(위탁)급식업체, 전처리업체 ※ 정부지원 가공공장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농협중앙회에서 지원 ※ 수출업체는 수출 실적에 따라 가점 부여
종합유통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지침을 위반한 운영주체는 제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세부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소비자·산지 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조직으로부터 국내산 농수산물의 직거래 매입 자금 ※ 대상품목 : 신선 농축산물(가공식품 제외)
농산물 직거래 매취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보리·가공식품·수산물 제외한 1차 농산물 및 친환경인증 농산물 매취(단, 전자상거래시 쌀은 지원가능)
식품 가공원료 매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원료 및 외식, 급식, 전처리용 국내산 농산물 구매비용 - 원 생산물을 가공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밀가루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할 경우에는 당해 원료도 포함
종합유통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을 위한 출하 선도금 및 농수산물 대금결제자금 ※ 출하선도금은 최소 3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총 배정액은 20억원 이상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세부사업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소비자·산지 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조건 : 연리 4%, 1년 상환 ◦ 사업의무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업체 : 대형유통업체는 지원액의 250%, 중소유통업체는 250% 이상 직거래 매입, 지원액의 100% 선급금 지급 - 식품·외식업체 : 지원액의 250% 이상 직거래 매입, 지원액의 100% 이상 선급금 지급 ※ 직거래매입의무 : 기존 직거래금액 이외에 신규 또는 추가로 달성
농산물 직거래 매취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형태 : 용자 80%, 자부담 20% ◦ 용자조건 : 연리 3%(유통업체는 4%) 1년 상환 ◦ 사업의무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소비자단체, 전자상거래업체 : 지원액의 125% 이상 직거래 매취 - 유통업체 : 지원액의 250% 이상 직거래 매취 ※ 지원형태 용자조건 : 연리 3%(유통업체는 4%), 기간 1년
식품 가공원료 매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형태 : 용자 80%, 자부담 20% ◦ 용자조건 : 연리 4%(농업경영체는 3%), 1년 상환(전통주 제조업체는 2년) ◦ 사업의무량 : 지원액의 125% 이상 국산원료 구매
종합유통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조건 : 용자, 연리 3%, 1년 상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125% 이상(대금결제 월, 출하선도금 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소비자·산지 협력사업

가. 사업신청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유통공사 등에 시달('09.12월말)
- 농수산물유통공사 :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신청 공고 및 신청서 접수(1월)
- 사업 신청자(업체)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

나.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 신청자(업체) 평가에 참여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출한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2월)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기준 수립·시행
 - 사업 신청자(업체) 내역을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 평가를 실시
 - * 「사업자선정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신청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사업계획 수행능력 등을 평가
 - 평가기준에 따라 100점 만전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가(감)점을 적용한 후 최종점수 산출
 - 선정 평가기준에 의거 신청자(업체)를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부여한 평가결과와 신청자(업체) 평가항목의 내용을 종합한 총괄 및 세부현황을 작성 농식품부에 제출(3월말)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자 : 유통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최종 확정 지원액과 사업 신청서 등을 근거로 사업자별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라. 자금배정 단계

- 농수산물유통공사 :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자금 수요시기를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자금 한도배정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 : 유통공사의 자금 한도배정 요청을 근거로 자금 배정
- 사업대상자 : 자금 필요시 유통공사로 자금용자신청서(유통공사 제공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해당 사업자금취급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해당지사)에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고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마. 이행점검 단계

1)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실적 점검(반기 1회이상)
 - 사업추진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계획 이행,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유통공사→농식품부)
 - 지원업체의 사업기간 만료후 사업의무이행 여부확인 등 사업실적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 : 사업성과 측정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로서 사업 및 자금관리주체가 품목별·일자별 매입가격 내역을 요구시 제출

2) 제 재

- 농수산물유통공사 : 정산결과에 따라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별도로 수립한 자금지원지침에 따라 제재조치한 후 관계기관에 통보

사. 성과측정단계

1)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사업대상자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 주요 측정항목 : 직거래 증가 비율, 직거래 비율 등
- * 직거래비율 : $(\text{직거래 농수축산물 매입액} / \text{전체 농수축산물 매입액}) \times 100$

2) 만족도 조사

- 직거래자금 지원 소비지업체와 직거래를 하고 있는 산지조직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 등을 설문지·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사업종료 시
 - 조사대상 : 산지조직
 - 조사방법 : 설문지·인터넷·전화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
 - 조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아.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사업이행실적 등을 평가
 -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및 다음년도 자금지원시 참고자료로 활용

2. 농산물 직거래 매취지원

가. 사업신청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4월초)
- 사업추진기관 :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추진기관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지 또는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고(4월중)
 - * 사업공고서는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사업대상자 : 신청자격, 심사기초자료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농수산물유통공사 관할지사(5월초)에 제출

나.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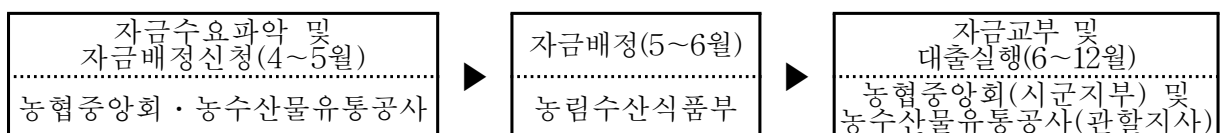
- 사업추진기관 :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추진기관은 세부 추진계획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단체를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5월말~6월초)
 - 사업추진기관은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6월말)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자 : 사업추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최종 확정 지원액과 사업 신청서 등을 근거로 사업자별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라. 자금배정단계

- 사업추진기관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에 지원할 지원금액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기관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로 자금을 배정
- 사업자 : 담보 확보 후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마. 이행점검단계

1) 사후관리

- 농림수산물식품부 : 사업추진 실적 점검(반기 1회)
 - 사업추진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계획 이행,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정산 및 결과 보고(유통공사 → 농식품부)
 - 지원업체의 사업기간 만료 후 사업의무량 이행여부 확인 등 사업실적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보고

2) 제재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정산 결과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에 미달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제31조에 의거 위약금 등을 징구

바. 성과측정단계

- 매년 직거래매취자금지원 대상사업의 전년도 추진성과를 평가
 - 농식품부 사업주관 부서는 지원받은 대상사업자의 매취자금 추진 실적자료를 분기별로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받아 사업의무액 대비 직거래 매취실적 증가율을 측정
- 사업대상자 만족도 조사
 - 운영실태, 운영자금 적정성, 기타 자금사용관련 만족도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사.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사업이행실적 등을 평가
 -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및 다음년도 자금지원시 참고자료로 활용

3.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

가. 사업신청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전년 12월말)
-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원대상자 선정 공고(1월초) 및 지원 희망업체 서류 접수

나. 사업자 선정단계

-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원 희망업체에 대한 심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신규 신청업체 및 기존업체 중 시설능력의 변동이 있는 업체에 대한 처리 능력 현지 조사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된 세부시행계획 검토·조정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식품부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행

라.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유통공사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 배정
-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원대상자 자금배정 및 배정결과 보고
 - 원료처리능력, 사업계획, 전년도 원료수매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자의 희망 시기별 자금배정 및 자금배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배정시기별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출한도 배정 요청

마. 이행점검단계

1)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 실적 점검(반기 1회)
 - 사업추진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계획 이행,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정산 및 결과 보고(유통공사 → 농식품부)
 - 지원업체의 사업기간 만료 후 사업의무량 이행여부 확인 등 사업실적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2) 제재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정산 결과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에 미달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제31조에 의거 위약금 등을 징구

3) 성과측정단계

- 매년 전년도 사업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지표 측정(3월)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 주요 측정항목 : 국산원료 구매실적, 매출액 등

4) 만족도 조사

-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지침의 미비점, 향후 보완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사업지침 개정 등에 반영(매년 11월)
 - 조사방법 : E-mail 및 서면 조사

사. 사업평가 및 환류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사업이행실적 등을 평가
 -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및 다음년도 자금지원시 참고자료로 활용

4. 종합유통센터 지원

가.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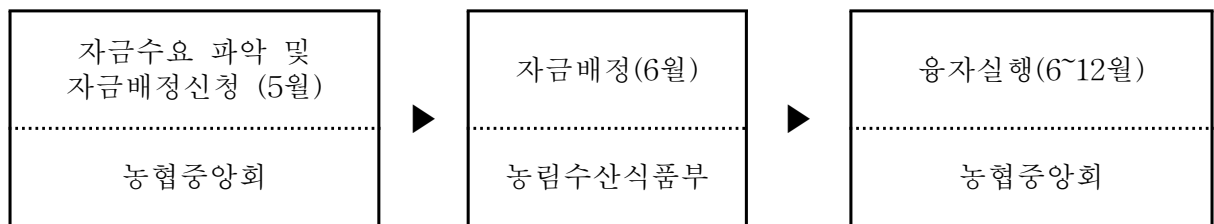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을 농협중앙회에 통보(1월)
- 농협중앙회 :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종합유통센터에 시달(3월말)

*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실시

나.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수산물식품부 : 당해연도 지원사업 대상 확정
 -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된 세부추진계획서에 따라 지원대상자 확정
- 농협중앙회 : 확정된 자금 지원계획을 각 유통센터에 통보

다. 자금배정단계



* 유통센터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배정 신청

라. 이행점검단계

- 농림수산물식품부 :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 농협중앙회 : 자금집행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의무량 - 출하선도금 : 출하선도금 운영실적의 80%이상

대금결제자금 : 월평균 거래실적(연 12회전)이 자금운영 목표(용자액÷0.8)에 미달할 경우

마. 성과측정단계

1) 성과지표 측정

- 농가수취가격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유통실태 조사 결과

2) 만족도 조사

- 종합유통센터 종사자 및 업무관련자에 대하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11월)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세부사업	2011년도 사업 수요조사	문의처
소비자·산지 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사업신청 희망내역서를 작성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2010. 7월)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희망내역서를 취합 농식품부에 보고(2010. 8월) 	유통공사 상생협력팀 (02-6300-1471)
농산물 직거래 매취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농산물 직거래매취사업(친환경농산물 포함)에 참여를 원하는 조직은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제출(2010.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단체 : 농협중앙회 · 일반농산물 : 공관지원부 소비촉진팀 · 친환경농산물 : 산지유통부 친환경유통팀 - 민간유통업체 : 유통공사 도매시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소비촉진팀 : (02-397-7141) ◦ 농협 친환경유통팀 : (02-2080-6242) ◦ 유통공사 도매시장팀 : (02-6300-12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및 유통공사는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010.5.10) ◦ 농식품부 수요조사결과를 기초로 2011년도 예산 요구안 작성 	
식품 가공원료 매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사업신청 수요서를 작성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2010.4.30) ◦ 유통공사는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010.5.10) ◦ 농식품부 수요조사결과를 기초로 2011년도 예산 요구안을 작성 	
종합유통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 수요조사(2010.4.30) 및 결과보고(2010.5.10) ◦ 농식품부 수요조사결과를 기초로 2011년도 예산 요구안 작성(2010.5) 	

※ 기타 세부사항은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

27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농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과 장 이재욱 사무관 조호일	02-500-2011 02-500-2017
	농산경영과	과 장 김남수 사무관 정아름	02-500-1986 02-500-1994
농수산물유통공사	상생협력팀 자금지원팀	팀장 김형묵 팀장 심정근	02-6300-1471 02-6300-1150
시·도(시·군)	농산유통과, 친환경농업과	-	-

I. 사업개요

1. 목 적

- 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수 농산물브랜드 육성
- 원예작물 및 발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비용절감·고품질화시설 및 브랜드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유통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5년까지 우수 브랜드경영체 70개소(원예 30, 발작물 40) 육성을 통해 브랜드 농산물 점유율을 1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브랜드 유통비율(%)	[원예] 2.0 [발작물] 0.6	[원예] 0.2 [발작물] -	[원예] 0.55 [발작물] -	[원예] - [발작물] -	2010.4	$\sum [(품목별\ 브랜드\ 출하량 / 품목별\ 전국\ 출하량) \times 100\%] / 품목수$ * 대상품목 : 사업시행 품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10,966	48,000	79,502	83,930	209,750
농안기금 보조	1,866	9,120	17,990	22,430	78,690
농안기금 용자	6,300	25,200	34,100	27,630	14,000
지 방 비	1,938	10,238	20,706	24,957	86,335
자 부 담	862	3,442	6,706	8,913	30,725
○ 원예작물	10,966	48,000	73,352	75,730	183,100
- 기금보조	1,866	9,120	15,440	19,030	67,640
- 용 자	6,300	25,200	34,100	27,630	14,000
- 지 방 비	1,938	10,238	18,306	21,757	75,935
- 자 부 담	862	3,442	5,506	7,313	25,525
○ 밭 작 물	-	-	6,150	8,200	26,650
- 기금보조	-	-	2,550	3,400	11,050
- 지 방 비	-	-	2,400	3,200	10,400
- 자 부 담	-	-	1,200	1,600	5,200

II. 2010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브랜드경영체(책임경영체제 및 독립채산 형태를 갖춘 독립법인)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 브랜드경영체 : 품목조직, 생산자단체, 지자체, 대량수요업체, 기존법인, 공동마케팅 조직 등이 참여하는 법인체.
 - 사업품목의 지역 통합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구성, 관리 체계 구축
 - '10년 신규사업체가 지역통합 브랜드 경영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예작물은 사업승인전(2월말)까지 법인설립·등록을 완료하고, 밭작물은 법인화 추진일정을 제시
 - * '11년 신규 사업신청자는 사업자 발표평가전까지 법인설립 완료법인에 한하여 신청가능
 - * '12년 이후 사업신청자는 신청전까지 법인설립 완료법인에 한하여 신청가능

3. 지원대상

- 원예작물 : 채소류 · 특작류 · 화훼류
- 밭 작 물 :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잡곡류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직운영 지원 : 심의위원회 운영, 조직결성 및 법인설립, 교육, 경영 컨설팅 등
- 마케팅 지원 : 브랜드 개발 · 관리, 마케팅 기반구축, 상품관측 등
- 생산기반 조성 지원 : 공정육묘장 등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 장비
- 종합처리시설 지원 : 건조, 가공, 위생시설 등
- 용자 지원(원예작물만 해당)
 - 원료확보자금, 비가림시설 등 참여농가 시설 지원, 기타 경상경비(언론매체 홍보비, 포장재 구입비 등 상품의 판매원가에 포함되는 판매사업 제경비)
- 기타 상기항목 이외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 사업비 지원한도는 10억원 기준이며, 기금보조 40%(밭작물은 국고 100%), 지방비 60%
 - 브랜드경영체가 시·군유통회사와 동일주체인 경우 원예브랜드 사업비 지원 제외
 - * 시·군유통회사에서 원예브랜드 사업품목의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사업비 반영
- 생산기반 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 사업비 지원한도는 85억원 기준이며, 기금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 지방비는 시도 및 시·군이 50%씩 부담하되, 지역여건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경영체의 자부담 능력이 미약할 경우 지방비 부담 가능
- 원료확보, 개별생산시설, 기타 경상경비 : 기금용자 100% (연리 3%, 5년 분할상환)
 - 사업 의무량 : 대출금액을 지원용도로 100% 집행
 - 용자금 집행기간 :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 * 연차별 지원되는 용자금 중 원료수매자금과 판매사업 제경비는 집행기간(1년) 만료시점에서 대출기준일을 재설정(' 10년 선정 사업자부터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에서 지원)
 - 브랜드경영체가 시·군유통회사와 동일주체인 경우 개별생산시설만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간 : 원예작물 3년간, 밭작물 1년간
 - 년차별 사업비 배분(원예작물) : 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 * '11년 원예브랜드사업은 책임성 강화를 위해 1년차 20%, 2년차 60%, 3년차 20%, '12년 사업자는 2년차 사업으로 추진 (1+2년차, 3년차)
- 개소당 사업비 기준 : 경영체별 사업특성에 따라 예산범위내 사업비 규모 증감 가능
 - 원예작물 : 95억원(기금보조 38, 지방비 43, 자부담 14)
 - * '09년 신규사업자는 165억원(기금보조 38, 지방비 43, 자부담 14, 용자 70)
 - 브랜드경영체가 시·군유통회사와 동일주체인 경우 : 155억원(기금보조 34, 지방비 34, 자부담 17, 용자 70)
 - * 조직운영·마케팅 지원과 시설지원 사업비 규모에 따라 지방비와 자부담액은 다를 수 있음
 - 밭작물 : 시설사업 10억원/개소(기금보조 4, 지방비 4, 자부담 2),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25백만원/개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신청 기본계획 수립, 시행('09. 12월)

지방자치단체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해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적격 여·부를 판단 적격자는 농식품부에 제출('10. 3월말까지)

《시·군》

- 시장·군수는 브랜드경영체 신청서 내용을 기초로 사업신청 품목의 통합브랜드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위원회(시장·군수 주관) 심의를 거쳐 시·도에 제출('10. 2월말까지)
 - 통합브랜드육성 계획은 사업품목의 생산현황, 사업주체, 기존시설과 연계활용계획, 시설부지, 자부담 이행계획 등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
 - * 계획서 작성 서식은 농식품부 기본계획으로 예시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공청회 등 농업인, 참여조직의 의견수렴 절차 이행

《전문가 심의위원회》

- 도 및 시·군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되, 산·학·관·연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지역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관련 직원 포함)

브랜드경영체

- 붙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10. 1월말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11년 사업신청 경영체 심사평가)

- 농식품부 : 심사평가 기본계획 수립·시행('09.12월), 대상자 확정발표('10.12월)
 - 단계별 심사평가 기준, 일정 제시 등
 - 10명이내의 평가단 구성(원예작물, 밭작물별도 구성)
- 농수산물유통공사 :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계획 수립·시행, 평가단 운영
 - 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 사업추진심의회 세부계획 수립·시행

3. '10년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10년 세부사업계획 작성요령 별도 시행('09.12월, 밭작물은 별도 일정)
- 지자체 제출 세부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시행('10. 2월말, 밭작물은 별도 일정)
 - * 실무 검토·조정의견을 사업추진심의회에 상정, 심의

시·도 및 시·군

-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연차별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0. 1월말, 밭작물은 별도 일정)
 - * 원예작물 2~3년차 사업시행 경영체는 보조사업비 중 320백만원(국고 150백만원)을 감액하여 사업계획 수립(감액 사업비는 연차평가 결과 환류 재원으로 활용 계획)
-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및 경영체 운영실적을 농림사업통합정보 시스템(Agrix)에 입력하여야 함
- 도, 시·군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농산물브랜드 경영체와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일괄발주 가능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다.
- 도, 시·군에서는 농산물브랜드 경영체의 활성화와 제도적 지원방안(조례 등)을 마련

브랜드 경영체

- 연차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제출('10. 1월, 밭작물은 별도 일정)

- 각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계획서(필요성, 추진방법, 일정, 기대효과, 소요예산 등) 제출
- 사업계획수립시 일괄발주가능 사업은 일괄발주 계획수립
- 사업법인은 필요할 경우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에 반영
 - 사업계획 수립, 평가, 농업인 조직화,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해결 등 사업 전 분야에 걸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 브랜드경영체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운영활성화를 위해 운영자금 확보 계획 수립

사업계획 변경절차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 주관기관(시·군)에서 검토하여 시행하고, 변경내역은 시·도와 농식품부에 제출
 - 다만, 단위사업비의 30% 이상을 변경하거나 단위사업간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 단위사업은 조직운영, 마케팅지원, 시설지원 등으로 중분류된 사업이며, 세부 사업은 단위사업내 세부사업임(예시 : 조직운영사업 중 교육사업, 컨설팅사업 등)
- 사업시행주체는 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자금 신청서(보조금 : 지자체, 융자금 :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근거로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시·도에 자금 한도액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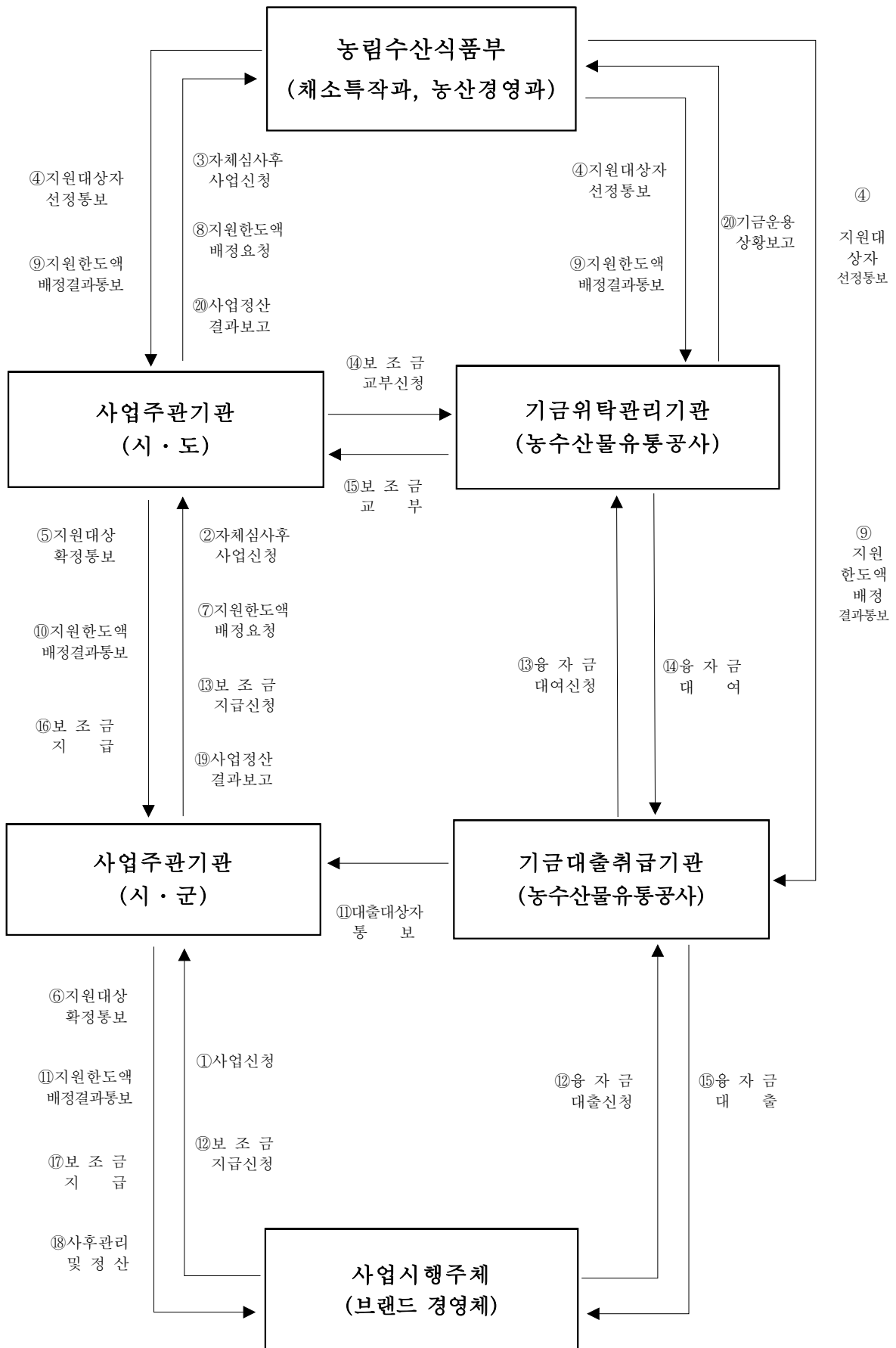
시·도 및 시·군

- 월별 소요자금을 전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 한도배정 요구

농수산물유통공사

- 시·도(시·군)에서 자금배정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자금배정

【 사업비 집행체계도 】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물식품부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10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 법인설립, 자금집행상황, 시설부지확보, 조직운영, 마케팅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가급적 원안대로 추진하고 계획 변경시 도, 시·군의 의견 등을 확인
 - 결과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 등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시·군)

- 중간점검(신규 및 계속 사업체 모두 적용)
 - 점검시기는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후점검(원예브랜드 계속사업체에만 적용)
 -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익년 2월중 실시하고, 점검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고, 연차평가(중앙) 자료로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한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예산 이월, 불용이 예상될 경우 매년 11월말까지 이월, 불용사유서,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아래와 같다.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차량, 장비 등	사업완료 익년 1월부터	5년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건축물 - 콘크리트,블럭조 - 철근 콘크리트	"	10년간		

- 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물유통공사법 제39조(사업의 관리 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자금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 용자금 관리 세부계획 수립 시행(매년 3월중)
 - 대출이후 13개월 이내에 사업자로부터 지원용도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 받아 사업의무 이행여부를 확인
 - 개별생산시설 용자금은 시설설치전과 완료후에 공사(관할지사)에서 현지 확인

《제 재》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시·군)

- 사업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자금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실적 확인결과 사업의무 미이행 등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규정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대출금 회수, 대출 제한, 위약금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농식품부와 시·도(시·군), 브랜드경영체에 통보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브랜드경영체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일정 : 연차평가 시행시 성과측정 병행(매년 3월)
- 매년 사업성과지표 측정시 부진사업(기성고 및 집행율 70%미만)지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 및 페널티 시행

《만족도 조사》

- 조사기관 : 농식품부는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집행
- 조사시기 및 방법 : 매년 10월중, 외부 조사기관에 용역
- 조사대상 : 사업관계자(브랜드경영체, 지자체 등), 브랜드경영체의 주거래 업체, 소비자, 농산물 유통종사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연차평가(원예작물) : 세부평가계획은 별도 문서로 시행
 -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매년 3월에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예산 차등 지원 등 제도개선 등에 활용

《평가결과 환류》

- 우수조직 :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 및 미흡조직 : 제도개선, 예산 일부삭감, 예산지원 중단 등 패널티 부여
 - 대상자 확정 후 법인등록까지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부진조직으로 분류
 -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거나, 브랜드 통합 독립법인 설립이 불투명할 경우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11년 사업 예비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첨부물 없이 제출('10.1월말까지)
 -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브랜드 경영체)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 예비신청서를 제출한 브랜드경영체에 한해서 본 사업신청서 접수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세부내용은 별도 시행(농식품부, '09.12월)
 - 기한 : 브랜드 경영체(1월말까지) → 시·군(2월말) → 시·도(3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10년 신규사업자 부터 융자금 지원을 하지 않음(산지유통활성화사업으로 통합 지원)
- ※ '11년 사업신청자는 발표평기전까지 출자지분, 시설부지 등을 확정하고, 법인설립 완료 신청자에 한하여 발표평가 자격이 있음(법인 설립이 완료 안된 사업자는 발표평가 불가)
- '11년도 사업대상자 결정(농식품부) : '10년 12월

3. 기타사항

- 사업추진 상황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사업비 이월, 불용 상황 보고 : 매년 11월말까지
- 사업정산 보고 : 사업완료 익년도 2월 2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 정산결과 보고

<○○시·도>

(단위 : 천원)

사업 체별	시· 군	단 위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획					집행실적(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세부 사업	품목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용자	국고
						%														

- 주) 1. “단위사업”은 조직운영, 마케팅강화, 생산기반조성사업 등 중분류 사업명 기재
 2. “세부사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세부사업내용 기재
 3.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별지 작성)
 -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 사유 등
 4. 작성서식은 A4 횡으로 변경하여 작성

28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과 장 이재욱 사무관 김재형	02-500-2011 02-500-2019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관리팀	팀 장 차홍식 대 리 임성진	02-6300-1351 02-6300-1358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FTA/DDA 등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증·개축) 전문화를 지원함으로써 원예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원예(채소·화훼) 전문단지 시설현대화 및 단지 증·개축 100개소 추진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원예전문생산단지 수출증가율(%)	5	-	-	신규	'11.2월	○ ('09 사업추진 단지의 전년대비 수출증가율/미 추진 단지의 전년대비 수출증가율)×100-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0년이후
합 계	-	-	65,340	61,348	299,372
보 조	-	-	14,920	12,440	58,140
용 자	-	-	37,320	36,468	182,712
자 부 담	-	-	14,920	12,440	58,520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이하 '농식품부'라함)이 지정한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화훼)의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 및 운영실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 계열화 수출조직 등 수출 농산물 전문생산조직 우선 선정
- 우선지원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2. 지원대상

- 시설현대화 : 공정육묘장,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시설복합환경 제어시설, 에너지 효율형 냉·난방·보온시설, 자동개폐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예냉·저장·선별시설, ERP시스템 등
 - * 지원대상 사업에 선정된 경우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불가
- 단지 증·개축 : 유리온실, 자동화온실 증·개축 및 기존시설 구조개선
 - * 증축은 기존온실 면적의 30% 이내

<지원 제외 대상>

- 시설부지 매수 및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시설비의 5% 초과하는 시설 증축 부지(진입로 포함) 조성비
- 전기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등
-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3. 지원방식 및 지원기준

- 단지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실소요액을 지원방식으로 추진(당해년도 사업으로 변경)
 - * 10ha 단지 표준사업비 : 시설현대화 70억원, 단지 증·개축 31억원
- 국고 재원 : 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60%, 자부담 20%
 - * 농가의 융자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적 지방비 대체보조 가능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침을 시·도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함)에 시달(‘09.11월)

시·도

- 사업지침 및 기본계획을 시·군에 시달(‘09.11월)
-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안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시·도단위 사업계획안(종합의견 첨부)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및 유통공사에 제출(‘09.12월)

시·군

- 시장·군수는 시설원예(채소·화훼)농업인이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계획 공고, 안내통지, 언론홍보·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대해 전문가(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최종 사업계획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09.12월)

<사업계획수립시 유의사항>

- 단지 증축사업은 단지내 기존 온실면적의 30%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함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의 사업메뉴 및 단가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수출 등을 위해 기 설치된 생산·유통·가공·처리시설과의 연계활용 방안 및 계획 중인 타사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원예전문생산단지

- 사업자(대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지 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전문가(농어촌공사, 기술센터, 전문업체 등)의 자문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계획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09.11월)

- 신청서 양식 : [붙임 1] 양식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10. 1월)
 - 시·도단위 사업계획안을 토대로 사업대상자 1차 선정 후 유통공사가 현지 조사, 심의 등을 거쳐 제출한 사업후보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등에 통보

농수산물유통공사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대한 현지 점검, 용자 부담력 조사, 평가기준에 의한 중앙심의위원회 심사·평가 등을 거쳐 도출된 사업후보지를 농식품부에 보고('10. 1월)
 - < 중앙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구성 : 농·학·연·관 전문가(7명 내외)로 구성
 - 농림수산식품부(시설채소·화훼·수출담당관),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3. 사업시행 단계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 사업지침 시달(농식품부→지자체·유통공사·농협) ⇒ 사업 계획(안) 제출(원예단지→지자체→농식품부·유통공사) ⇒ 사업대상 심사 및 후보지 추천(유통공사→농식품부) ⇒ 사업대상 선정 통보(농식품부→지자체·유통공사·농협→사업자)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시장·군수→시·도지사) ⇒ 사업시행승인 결과보고(시·도지사→농식품부) ⇒ 사업시행(시장·군수) ⇒ 결산·정산보고(지자체·유통공사→농식품부) ⇒ 사후관리(시장·군수)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조정·보완('10. 1월)

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승인신

청한 것에 대하여 타당성·효율성, 사업시행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한후, 그 결과에 대해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 승인

1.1.1. 1)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함

2)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온실, 공정육묘장,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조직배양실, 집하장, 선별처리장, 저온처리실, 암반관정 등)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과 같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하여야 함

<철골(유리, 경질판) 및 자동화 비닐 온실>

- 철골(유리·경질판) 온실은 「온실구조설계기준(농림부 채특51240-870; '99.11.18)」, 한국농촌공사, 농촌진흥청(시설원예시험장)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지역·작물 특성, 안전성, 실용성이 높은 시설을 설계·시공하여야 함
- 자동화 비닐온실의 경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농림부 고시 제2008-76호('08.8.26))에 의한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거쳐 제작된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적설심, 풍속) 기준”이상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시설 골조(서까래, 지주, 중방 등) 자재는 KSD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 치수 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D 3760에 준용)를 사용하여야 함

* KS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 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로 확인

(강관종류) (KS마크규격) (직경*두께) (제조사)

SPVHS

KSD 3760

25.4*1.5

○○○○

*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산업표준화법상 시험검사기관)

- 중소기업청, 기술표준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KS D 3760 비닐하우스 도금강관 합격기준(예시)

- (인장강도) 400N/mm²이상, (항복강도) 295N/mm²이상, (파이프 외경 허용오차)

+0.5mm, (파이프 두께 허용오차) 1.6t미만 +0.13mm, 1.6t이상 +0.17mm, (아연부 착량) 양면기준 300g/m²이상, (굽힘시험결과) 90°로 굽혀서 균열이 생기거나 이 음매가 떨어지지 않음, (기타조건) 생략

○ 설계·감리·사업관리비는 다음 요율기준을 적용

(단위 : %)

구분 \ 대상금액		10억원	20	50	100	200	500	1000	2000
		까지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철골 온실	설계	3.06	2.89	2.65	2.45	2.26	2.03	1.87	1.72
	감리	4.12	4.00	3.78	3.57	3.37	3.12	2.91	2.70
사업관리		1.70	1.57	1.42	1.32	1.22	1.10	1.02	0.95

※ 설계·감리비 요율은 농어촌정비법상 기반시설 측량·설계기준의 50%를 적용

※ 요율산정을 위한 대상금액은 순공사비+자재대를 적용(부가가치세, 용지매수비는 제외)

- 자동화온실 설계·감리비는 철골온실의 60%를 적용

- 공정육묘장의 설계·감리비는 철골온실과 동일기준 적용

- 사업관리비는 시장·군수가 단지별 설계·감리대상 주요시설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요율기준 관리비 범위내에서 편성 운영할 수 있음

○ 온실, 공정육묘장 신규설치(또는 재설치) 규모가 1,000m² 이상인 경우 또는 시설비 1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도급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온실시공능력평가 공시업체 등)를 통해 시공

○ 온실 내부시설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은 온실시공능력평가 공시업체 등 3개 이상의 관련업체의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 평가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예냉시설 및 저온저장고>

○ 예냉시설 및 저온저장고는 (재)한국식품연구원(이하 “한식연”이라함)이 개발한 「예냉시설표준설계도」 등을 참고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설계·시공하되 농촌진흥청, 한식연 등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시

○ 시공업체선정 : 공기조화 및 냉동관련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유자 보유업체 또는 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동등한 설치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업체

○ 저온저장고 설치완료 후 준공검사는 농촌진흥청(농업공학부)에서 개발한 성능 검사기준에 합격하여야 함

<기타 시설>

○ 관정은 지하수법, 비상발전기 등 전기시설은 전기사업법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관리하여야 함

- 경유·등유 난방기는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부)에서 고효율 난방기로 평가한 기종 사용을 권장하며, 기타 난방 및 보온시설은 농촌진흥청 등 공인기관의 시험 또는 인증받은 제품, 현장 설치사례 등을 평가한 후 선정
- 난방기는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보증받은 제품을 사용**
 - ※ 면세유 관련하여 '10.1.1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유 사용실적을 확인할수 있도록 가동시간계측기를 부착하여 출고 및 경유공급 제외」 규정 변경됨을 참고
 - ※ 농업기계는 정부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가격이 신고된 제품으로 선정
 - ※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냉·난방기 지원사업도 위 기준 참고
- 조직배양실, 집하장, 선별처리장 등 : 건축 등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를 선정

3)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사업자(또는 시장·군수)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A/S망」 구축 등을 위해 철골, 유리, 철재파이프, 알미늄바 등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 구매를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업주관기관이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장·군수가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사업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을 실시하여야함

4) 사업계획 변경 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획변경안 및 사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와 유통공사에 제출
 - 주요 사업계획내역이 총사업비의 20%이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 사업승인 후 변경 집행

4. 자금배정단계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금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유통공사→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유통공사에 소요자금 한도액을 배정

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매월 사업추진상황에 따른 월별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예정 전월 25일까지 「붙임 2호 서식」에 의해 농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른 보조금 집행시 자금사용 및 지원비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 용자금 대출 원활을 위해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 지침 및 증빙요건(사업등록자가 작성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 발급,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실적 범위내에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야 함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농·축협 포함)

- 유통공사·농협중앙회는 농식품부에서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내에서 대출기관에 자금을 대여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5. 이행 점검 단계

《 사후 관리 》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축물 -양액시설,제어시설,냉·난방 보온시설,자동개폐기 보광시설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농림수산식품부

- 점검시기 : 중간점검(사업착수후 6개월이내), 사후평가(사업종료 익년 상반기내)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야 함

자금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 유통공사는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부진하거나 부적절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 유통공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지원 입증서류 확인과 시설설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사업자금을 정산하여야 함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붙임3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 유통공사는 사업자가 대출금의 목적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대출금 부당 사용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 등을 준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농식품부 및 유통공사는 매년 상반기중에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함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생산 대비 수출실적 등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1년도 사업계획 통보 및 사업신청('10. 6~8월)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010년 9월말까지
- 신청자격 : 2010년도 신청자격과 동일
-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1년부터 농림사업 정책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기타사항

-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사업추진요령은 2010년 사업 내용을 참조바라며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호 서식)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계획 신청서						
신청단지 일반개요	단 지 명			사업자 등록번호		
	부 류	채소류 / 화훼류		재배규모	m ²	
	생산품목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기 준 시설규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m ²	자동화온실 m ²	일반온실 m ²	기 타 m ²	계 m ²
	부대시설	선 별 장 m ²	예냉·저온시설 m ²	선 별 기 식	기 타	-
사업계획	신청내용	시설현대화사업 / 단지 증·개축사업				
	사업규모 (백만원)	시설개선 및 현대화		고품질 생산시설 : 에너지 절감시설 및 장비 : 유통개선 및 안전관리 시설 :		
		단지 증·개축		기존단지 증축 : 기존단지 개축 :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용 자 (신청액)
	<p>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시설현대화사업 또는 단지 증·개축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p>					
신청자	년 월 일		대 표 (서명 또는 인)			
<p>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p>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첨부 1-1호 서식>

‘10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시행 계획서

1. 일반현황

가. 단지개요

단지명		생산품목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단지규모		m ²	전체농가수		호
시설재배규모		m ²	수출참여 시설규모		m ²
기 지원액	(지원년도 : 계 :		사업명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수출업체명		전화 :	담당자 :		
기술지도기관		전화 :	담당자 :		
단지관리기관		전화 :	담당자 :		

나. 기존 시설현황

○ 생산시설

(단위 : m²)

시설규모(합계)	시 설 종 류 및 규 모					
	유리(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부대시설 및 장비

(단위 : m², 대, 톤, 백만원)

부대시설·장비명 (설치년도)	시설규모 및 수량	시설비	보관, 처리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 공동, 개별, 자체, 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2. 사업계획

가. 사업명 :

나. 사업목표 :

다. 세부 사업내역

구분	종류	세부내역	규모(m ²)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참여 농가수 (호)	비고
시설 현대화 사업	고품질 생산시설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장비						난방기는 사용연료 표시
	유통개선 및 안전관리 시설						
	계						
단지 증·개축 사업	온실 등 개축						
	온실 등 추가설치 (부대시설 포함)						
	계						
	기존 단지면적		()				
	기존면적 대비 증·개축면적 비율		()				

※ 단지 증·개축 사업규모는 기존시설 면적의 30% 범위내에서 계획하여야 함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m²(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 시설구분

- 고품질 생산시설 : 공정육묘장,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자동환경제어시설, 시설구조개선 등
- 에너지 절감시설 및 장비 : 냉·난방시설(연료 종류 표시), 보온커튼, 자동개폐시설, 비상발전기, 전기이입 및 변전시설, 보광시설 등
- 유통 및 안전관리 시설 :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저온처리실, 집하장, 선별처리장, ERP시스템 등

라. 자금 세부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정부보조	용 자	지방비	자 부 담		
					소 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시설현대화							
단지증·개축							
합 계							

마.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m ²)	추정가격		소재지 (지번)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바. 생산·수출실적 및 계획 세부현황(과거 3년 및 신청년도 기준)

구 분	연 도	품목(품종)	수출국(업체)	재배면적	물량(톤)	금 액
생산 실적 및 계획	2007년					백만원
	2008년					백만원
	2009년					백만원
	2010계획					백만원
수출 실적 및 계획	2007년					천불
	2008년					천불
	2009년					천불
	2010계획					천불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수출비율은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비율(금액기준), 수출신장은 전년대비 당년도 수출 증감율(금액기준)

사. 수출 및 선별방법(과거 3년 및 신청년도 기준)

구 분	수 출 자		수출방법		선별방법		재배방법	
	자 체	위 탁	개별농가	단지공동	개별농가	단지공동	비계약	계 약
2007년	%	%	%	%	%	%	%	%
2008년								
2009년								
2010계획								

아. 교육실적(수출 등 관련)

○

3.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가. 사업의 필요성

1) 사업여건

○

2) 기 설치 및 계획중인 생산·유통·가공·처리 시설과의 연계계획

○

나. 기대효과

1)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

○

2) 수출 확대

○

3)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4) 유통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

5) 기 타

○

4.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및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가.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1) 시설현대화 및 단지 증·개축 사업 관련 단지 내 의향 조사

- 전체 농가수 : 호
- 참여 농가수 : 호
- 설문조사 일시 및 의향조사 결과 :

나.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성명) :
- 연락처 :
- 구성원수 :
 - 구성원 :
- 운영실적 및 계획
-

5. 지자체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방안

가. 시·도, 시·군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사항

- 중기대책(향후 5년) 및 지원사항
- 장기대책(향후 10년) 및 지원사항

나. 금회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지원 및 활동계획

-

6. 물류표준화 및 안전성 관리 대책

가. 물류표준화를 위한 해당 단지의 노력

-

나. 고품질 안전성 농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 추진 노력

-

7.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첨부 1-2호 서식>

‘09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참여농가 현황

□ 단지명 : (대표자 :)

(단위 : m², 톤)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전화)	농업경영체 등록제 참여 여부 (○,×)	재배면적 및 시설종류			품목명	예상량		사업계획 내용(요약)
					재배 면적	시 설			생 산	수 출	
						종류	면적				
계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관·자동화온실 및 일반하우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사업계획 내용(요약)은 증축, 개보수 등 간단히 기재

주3) 참여농가가 5호이상인 경우,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

(붙임 2 서식)

()단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추진상황보고

1. 사업단지(지역) :

2. 사업자 : ○○○법인(작목반), 대표 □□□(외 △개 법인 또는 농가)

3. 사업진도(총괄)

□ 총사업비 : 백만원

○‘08년 : 총 백만원(국고 , 용자 , 지방비 , 자담)
○‘09년 : 총 백만원(국고 , 용자 , 지방비 , 자담)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별	사업량			사업진도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계획	실적	비율	주요 추진 내역	공정	계		국 고		용 자		지방비		자 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계			%		%											

주) 가. “사업단지(지역)”은 번지수까지 기재

나. “사업량”은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을,

-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m², ha 등으로 기재
- 다. “세부사업별”란은 개별사업의 단위사업명을 기재
- 라. “주요추진내역”란은 부지확보, 건축허가, 시공업체별,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 마. “사업비집행”은 전월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 바.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 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 법인, 작목반 등)로 위 양식에 맞추어 별도 작성·첨부

4. 금후 사업추진일정

5.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6. 기타 참고사항

(붙임 3 서식)

() 단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 천원)

단지명	대표자()외농가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획					집행실적(정산)									
		세부사업명	계획(A)	실적(B)	대비(B/A)	계	국고보조(C)	읍자	지방비보조	자부담	계	국고보조(C)	읍자	지방비보조	자부담	대비(D/C)	차년도이월액	불용또는집행액	착공일	준공일
합계				%																

- 주) 가. “사업량”은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m², ha 등으로 기재
- 나. “세부사업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유리온실, 암반관정, 저온저장고 등을 기재
- 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 라.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 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 법인, 작목반 등)로 위 양식에 맞추어 별도 작성·첨부

29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과 장 이재욱	02-500-2011
		사무관 김재형	02-500-2019
한국농어촌공사	녹색사업처	처 장 최범용	031-420-3113
		차 장 윤천한	031-420-3884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채소·화훼·과수)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원인 지열 및 목재펠릿 난방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
 - * '10년부터 과수 품목을 사업 대상에 포함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시설농업 도입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절감 추진

2.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3. 성과목표

- '13년까지 시설원예 분야에 지열·목재펠릿 난방기·에너지 절감시설 4,500ha 보급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 증가율(%)	5	-	-	5	'11.2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시설 증가면적/가온면적)×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0년이후
합 계	-	-	52,000	265,500	979,000
- 국 고	-	-	15,600	139,650	533,700
- 지방비	-	-	15,600	59,650	213,700
- 용 자	-	-	10,400	13,100	35,800
- 자 부 담	-	-	10,400	53,100	195,800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지열난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시설원예 농가 중 겨울철 난방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법인)
- 시설원예작물 재배기술이 우수하며 자부담 능력이 있고, 시설원예작물 가온 재배 경력이 충분히 있는 농가
 - 농협에서 난방용 면세유 사용증명서 등 확인이 가능한 농가
- 기존 온실 뿐 아니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으로 신규 온실 설치 예정 농가도 포함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이 다른 경우는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 시설부지에 대한 장기임차농도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신청 가능
- 설치 대상 온실은 자가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농의 경우 온실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지방비 지원예산을 확보한 지자체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농가 신청
- 사업추진 제한지역
 - 상습 침수지역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곳
 - ※ 현장조사 확인서에 사업신청 지역의 최근 침수된 연도 표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군에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 지질 및 토성이 암석이 많거나 매립지로 굴착 또는 시추작업을 할 수 없는 지역 및 양질의 토양이 없어 지열난방 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는 곳
- 시설 기준
 - 농가(법인체)당 온실면적 0.1ha(1,000m²)이상의 자동화 비닐하우스 또는 철골 온실을 기준(단, 지원 사업비 초과는 농가에서 충당)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 시범사업>

- 시설원예(채소·화훼·과수) 농가 중 겨울철 난방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법인)
- 시범사업 수요가 많은 지역 중 목재펠릿 생산 공장 근접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 대상 시·군 선정
 - ※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 시범사업의 경우 같은 해에 타 연료(경유·등유 등)를 사용하는 고효율난방기 보급사업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시범사업 종료후에는 기존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과 통합하여 시행

<에너지 절감시설(고효율난방기 포함) 설치지원 사업>

- 채소·화훼·과수를 재배하는 시설원예 농가 중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필요성이 큰 농가

2. 지원대상

<지열난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가. 대상시설

- 현대화된 온실 중 자동화 비닐하우스 또는 철골온실
 - ※ 보온시설 설치비용은 본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 수평밀폐형 지열난방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열교환용 파이프를 매설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능한 시설
 - 온실면적과 동일한 면적 이상의 공간 토지 필요
 - 기존온실 주변에 매설 공간이 없는 경우는 온실 내에 굴착기가 들어가 내부 바닥을 파고 지열교환용 파이프 매설작업이 가능한 시설
 - 유리온실 등 내부 바닥이 콘크리트로 고정된 시설은 온실 내부에 지열교환용 파이프를 매설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온실 옆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가 있어야 함

- 수평밀폐형 지열난방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지열교환용 파이프 매설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수직밀폐형 또는 SCW(Standing Column Well)형 설치
 - 수직밀폐형 또는 SCW형도 시추공 설치를 위한 일정면적의 공간 확보가 필요
- 인근에 지열교환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확보된 공간의 토지는 반드시 시설 부지 소유권자와 동일인 또는 해당 토지사용 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함

<지열시스템 형태별 특성>

수평밀폐형	수직밀폐형	SCW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부지가 많이 필요 - 시공비가 가장 낮음 - 유지보수가 용이함 - 설치깊이 : 2~3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으로 가장 많이 보급 - 수평밀폐형에 비하여 설치부지가 적게 필요 - 시공비가 가장 높음 - 시추깊이 : 100~200m - 시추공간격 : 5m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함 - 지하수를 이용하여 열교환을 하고 다시 지하로 내보내는 방식이므로 열교환 효율은 높으나 장기 사용시 스케일로 인한 효율 저하의 우려가 있음 - 시공비는 수직밀폐형 보다 낮음 - 시추깊이 : 350~450m - 시추공간격 : 12~15m

※ 석회암 분포 지역에는 수직형 설치가 어려우며, SCW형 설치 시에는 시추공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나. 대상 작물

- 지열난방 시스템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중·고온성 과채류, 화훼류, 기타 가온을 필요로 하는 작물
- 공정육묘장 등 난방을 필요로 하는 시설작물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군지자체장의 확인 후 변경 추진하되 이 경우에도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을 선택함

※ 별첨 시설원에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을 적용하되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생육온도 조건 등을 감안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함 (붙임 참고1)

다. 지원 시설

- 지열난방 시스템을 위한 토목, 천공, 그라우팅,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함
- ※ 지원 시설 중 기계장비는 냉동공조인증센터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후 관리 보장 등을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으로 부터 품질보증을 받음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 시범사업>

- 시설원예용 목재펠릿 난방기(온풍기·보일러)
 -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발간하는 「농업기계 가격집」에 등재된 시설원예용 목재펠릿 난방기에 한해 보급
 - ※ 목재펠릿·우드칩·고체연료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고체연료 난방기는 ‘10년에는 농진청에서 「고체연료 이용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추진 결과에 따라 향후 지원여부 결정

<에너지 절감시설(고효율난방기 포함) 설치지원 사업>

-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환기장치 등 에너지 절감시설
- 고효율 난방기 : 경유·등유 난방기
 - ※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난방기에는 가동시간계측기 부착(문의:농식품부 농산경영과)
 - ※ 농진청(농업공학부)에서 시행하는 고효율 난방기 평가 품목에 등유 난방기 추가

3. 지원방식 및 지원기준

<지열난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지원형태 : 에특회계 국고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지원형태 : 에특회계 국고(보조 30%, 용자 20%), 지방비 30%, 자담 20%
 - 용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4.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 사업메뉴별 표준사업비 단가 및 지원기준

세부사업	단 가	지 원 내 용
○ 지열난방 설비 보급	10억원/ha	○ 시설원예 지열난방 설비 설치 지원
○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	1.5억원/ha	○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
○ 다겹 보온커튼	15천원/m ²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5겹 미만의 경우 열전도율 2.0w/m ² K 이하인 보온커튼 *5겹 미만의 열전도율은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을 높일 계획임
○ 고효율 난방기	6천원/m ²	○ 경유·등유 난방기 *유류 난방기 지원은 향후 지열·목재펠릿 난방기 보급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어나갈 계획임
○ 순환식 수막재배 시설 ○ 열회수형 환기장치	5천원/m ²	○ 순환식의 경우만 지원하며, 일반 비순환식 수막시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동 보온덮개 ○ 배기열 회수장치	2.5천원/m ²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

* 목재펠릿 난방기는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 등으로 부터 보증 받은 제품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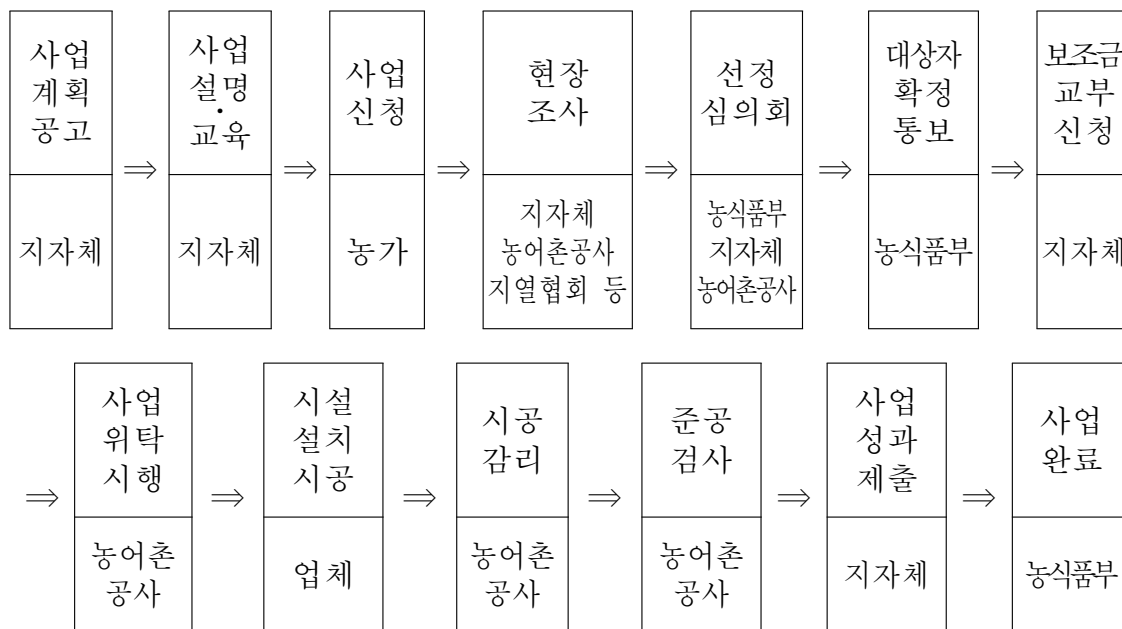
* 5겹 미만의 다겹 보온커튼의 경우 방재시험연구원, 전자재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등 공인기관에서 측정한 열전도율을 사용

* 경유 및 등유 난방기는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부)에서 고효율 난방기로 평가한 기종 사용을 권장하며, 검증된 장비의 구매 및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등으로부터 품질을 보증받은 제품 사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지열난방 설비 설치 지원 사업

<업무 흐름도>



1. 사업신청 및 선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도에 시달('09.12월)
-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에서 취합·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원에 지열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대상 농가를 각 지자체에 통보('10.3월)
 - 중앙심의위원회 구성 :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열전문기관 등 10명 내외
 - * 중앙단위 평가단장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장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지자체별 사업 수요를 파악하고,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를 취합('09.12월)
- 지자체 및 지열협회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현장조사 실시('10.1~2월)
- 중앙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실무 작업 수행

시·도

- 농식품부 기본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시·군에 통보('09.12월)
- 시·군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09.12월)
- 현장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시·군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09.12월)
- 농가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09.12월)
 -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등의 검토의견을 받아 종합 검토의견 제출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2호), 현장조사결과서식(붙임 3호, 3-1호)
- 농어촌공사와 함께 사업신청 농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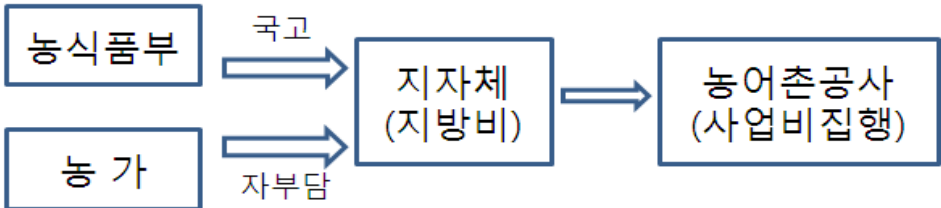
농업인(사업자)

- 시설원예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협동조합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를 내실있게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2. 사업시행 단계

-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
 - 지자체장은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국고 보조금과 농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사업자인 농어촌공사로 이체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자금 흐름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별 선정 결과에 따라 국고지원 사업비를 지자체로 배정
-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위탁시행에 대한 감독을 행하고, 수시로 점검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자체로부터 이체 받은 사업비로 시설원예 지열난방 설치 사업을 위탁 시행
 - 사업비 집행은 사업위탁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사업 준공후 해당 지자체장(시·군)에 준공 완료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감리전담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
 - 감리전담반에서 사업의 위탁시행 및 시행 기간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사후관리 등을 담당함

본사 : 위탁사업 총괄 관리	지역본부 : 배정된 사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 업무협의 및 조정 ● 사업지구 입지선정 지원 ● 전체 사업기본계획 수립 ● 시설설치에 따른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 작성 보급 ●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작성 보급 ● 본부별 사업배분 및 기술지원, 지도 점검 ● 관련지침 및 기술업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본부별 시행계획 수립 ● 해당 지구별 설계도서 검토 ● 해당 지구별 감리업무 수행 ● 공사 준공 후 기술지원

- 설계·감리비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사업비 중에서 별도로 관리·운영
 - 설계비 산정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공사비요율(건설부문의 업무별요율)에 의한 방식 적용(지식경제부공고)

<설계비 요율표>

공사비 \ 요율	건설부문의 업무별요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5천만원이하	3.24	6.49
1억원이하	3.04	6.07
2억원이하	2.42	4.85
3억원이하	2.22	4.43
5억원이하	2.01	4.03
10억원이하	1.77	3.55
20억원이하	1.63	3.27
30억원이하	1.57	3.15
50억원이하	1.54	3.09
100억원이하	1.51	3.01
200억원이하	1.46	2.91
300억원이하	1.45	2.90
500억원이하	1.41	2.84
1,000억원이하	1.40	2.79
2,000억원이하	1.38	2.76
비 고	*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 감리비 산정기준 : 감리업무는 수행 시를 고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09호)

※ 소요예산 : 47.47억원/년

항 목	산 출 근 거	비 고
합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747,355,765 원/년 - (a+b+c+d+e) 	
직접 인건비(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969,050원 × 391명 = 1,551,898,550원/년 - 중급기술자 기준 	
직접 경비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72,455,652원 + 31,037,971원 + 1,500,000 = 404,993,623원/년 - 주재비 : a×80%×30%, 출장비 : a×20%×10%, 도서인쇄비 	
제경비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07,088,405원 - 제경비 : a×10% 	
기술료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1,797,391원 - 기술료 : (a+c)×20% 	
부가세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1,577,796원/월 - (a+b+c+d) × 10% 	

시·도,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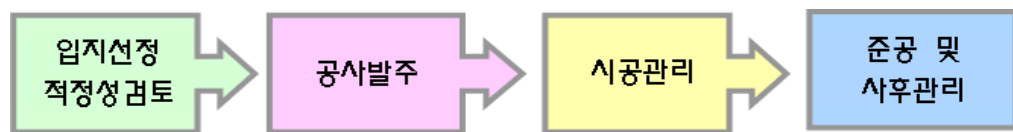
- 지자체장은 사업시행주(농업인, 법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하고,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를 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교부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준공완료 보고후 사업비를 정산하여 결과를 시·도로 보고하고, 시·도는 해당 시·군 사업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시행 기간 중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

<한국농어촌공사 감리단 역할 및 시설설치 단계별 추진사항>

가. 감리단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컨설팅 및 발주업무 수행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최저한계)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지중부분은 반드시 천공깊이, 검측보고서 등 현장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사후관리, 교육 등

나. 업무 추진단계



다. 단계별 업무 내용

① 선정입지 검토 단계(현장조사)

- 조사시기 : 시·군에서 입지선정 후, 공사 발주전

- 조사내용 :

- 1) 선정된 사업자 및 대상지가 본 사업시행 지침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
- 2) 지하수 이용시 주위 영향시설 존재유무 확인
- 3) 주변 500m 이내 타 지열설비 존재유무 확인
- 4) 지열 보어홀 설치위치가 온실 내 지열설비와 근접해 있는지 여부 확인

※ 조사결과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군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사업자 변경 또는 취소)

② 설계 단계

- **설계업체 자격**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로 기계부문(공조냉동기계분야) 이거나 건설부문(건축기계설비분야)에 등록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분야로 합동기술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 **설계업체 선정 및 설계검토**
 - 지열시스템 설계 실적이 있는 유자격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 낙찰된 설계업체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시행중인 지방보급보조사업 및 그린홈 보급사업의 지열이용 검토 전문가에게 검토 확인 필

③ 발주 단계

- **시공업체 자격**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로 건축기계설비공사면허 업체 또는 공조냉동기계공사면허 업체로서 신재생(지열)전문기업 등록 업체
- **시공업체 선정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선정한 일반보급보조사업 및 그린홈 보급사업의 참여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또는 시설원에 부분의 지열시스템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 중 공개 경쟁입찰에 의한 선정
- **발주시 업무** : 발주공고, 서류접수, 적정업체 선정

④ 시공 단계

- **시공 기준** :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 고시)』에 의거 시공
 - ※ 고시에 없는 사항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 **공사착수 전 업무**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 중 업무**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서에 의거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시공 상태 확인과 시공과정 중 주요 확인사항

【 관련법규조항 】

구분	법규조항	내 용
지중열	법 제9조의 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영 제14조의3 제2항3호, 규칙 제9조의4, 규칙서식12의7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신고대상
지하수 이용 (공통)	법 제7조, 제8조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지하수영향조사
	법 제9조의5, 제30조의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규칙 제5조, 제6조, 제8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 지하수개발·이용신고 등
	규칙 제9조의5, 규칙 별표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관리 등,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
	규칙 서식2, 규칙 서식7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수질규칙 제10조, 제12조	수질검사대상, 수질검사의 주기 (SCW형의 경우 3년마다 1회-생활용수 기준)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하자보증기간(제17조제3항 관련) 】

원 별	하자보증기간
태양광발전설비	3년
풍력발전설비	3년
소수력발전설비	3년
지열이용설비	5년
태양열이용설비	3년
기타 신·재생에너지설비	3년

【 시공 단계 확인 사항 】

공통사항	수평밀폐형	수직밀폐형 및 SCW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히트펌프 용량 및 인증 제품 여부 · 판열형교환기 용량 · 축열조 용량 · 배관자재의 KS규격품 사용 여부 · 배관수압테스트 및 장 비류 시험성적서 확인 · 시운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열교환기 총 길이 및 파이프 규격, 직경 · 지열교환기 매설작업 : 매설간격, 깊이 등 · 부동액(에틸알콜) 주입 용량 및 혼합비율 확인 · 기타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추공 깊이 및 간격 · 지열교환기 파이프 규격, 직경 · 보어홀 그라우팅 재료 확인 · 기타사항 확인

⑤ 준공 단계

- 준공 시 업무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 등)는 사업시행주(농가, 농업법인 등), 및 시군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정산
-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시행주, 시·군 담당자

4. 사후관리 단계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농어촌공사는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련 기술지원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사후관리 시행

지자체 및 농업기술센터

- 지방자치단체장은 현장평가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농업인 대상 기술 지원 자료로 활용
-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시설원에 지열난방 시스템 보급사업장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및 농가교육 등 작물재배 기술지도

농업인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와 확대보급 유도(붙임 5호 서식)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난방기·에너지절감시설 지열히터펌프시스템	5년 10년	매각, 교부 목적의 위배 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5. 성과 측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종료 익년 7~8월중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절감실적·장비의 활용도, 사후관리실태 등을 평가하여 우수농가는 중점 관리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 평가대상 : 전체 사업지구
 - 평가기준 : 별도 수립
- 우수단지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 사업종료 익년 7~8월중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농업인의 의견 수렴정도, 지역실정 반영여부 등에 대하여 지자체 공무원, 생산자단체 관계자, 농업인 등 관련 종사자들이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우편, 전화,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대상 : 지자체 공무원,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 참여농업인 등
 - 조사방법 : 전화, 우편, 면담 등을 활용하여 설문조사

지자체 및 농업기술센터

-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원예 지열난방 시스템 보급사업장에서 작물재배 및 현장평가 등 사업추진 성과를 정밀 분석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사업 익년 8월)
-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장은 지열난방 시설 설치 농가별 에너지 절감 실적을 평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사업익년 8월)

□□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 시범사업

1.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군별 시범사업 수요 조사('09.11월)
- 사업시행지침 및 시·군별 시범사업 수요 등을 토대로 선정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시·도지사에게 시달('09.12월)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시범사업 수요를 농림수산물식품부에 제출('09.11월)
- 농식품부에서 시달받은 시범사업 대상 시·군에 사업량 배정계획을 시달('09.12월)
- 시·군에서 제출한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검토 후 시·도단위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09.12월)

시·군

- 농식품부 및 시·도의 시범사업 대상 수요조사에 따른 시·군별 수요를 시·도에 제출('09.11월)
- 시·도로부터 시달받은 사업 배정량에 따라 시·군단위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09.12월)
 - 농업인의 사업신청서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시행상 문제점 여부 등에 대해 전문기관(농진청, 기술센터, 농기계조합 등)의 협조를 받아 검토

<사업계획수립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은 본 지침에서 제시한 사업메뉴, 지원규모 및 단가 등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 특성에 알맞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계획은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확인, 첨부하여야 함
-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농업인(사업자)

- 시설원예(채소·화훼·과수) 농업인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협동조합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를 내실있게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물식품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계획량 및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 농협중앙회에 통보('09.12월)

시·도, 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해당 농업인(법인)에 통보

3. 사업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검토·조정·보완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점검

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확정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사업시행요령 및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미리 통지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목재펠릿 원료 공급 등 농가가 목재펠릿 난방기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고, 농업기계 가격집에 등재된 난방기만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사업계획 변경시 절차>

- 사업자(농업인)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야함
- 시장·군수는 계획변경 신청내용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농식품부로 변경 사항을 제출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 장관은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대출취급 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을 배정

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 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 신청서를 제출받고,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월별 소요 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 전월 2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 용자금 대출 실행 원활을 위해 사업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사업등록자가 작성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를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하며,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야 함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에너지 관리공단, 농협중앙회

- 에너지 관리공단 사장은 농식품부 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에 의거 자금을 대출취급기관에 대여
- 대출취급 기관이 지원 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집행 기성고(준공)확인서 등에 의하여 대출

5. 이행 점검 · 관리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점검시기 : 중간점검(사업착수후 6개월이내), 사후평가(사업종료 익년 상반기내)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지자체(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조금 취득자산에 대해 사후관리를 해야 함

자금관리 주체

- 자금관리 주체는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부진하거나 부적절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 및 사업자로부터 지원 및 사용 관련 입증서류 확인과 시설설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사업자금을 정산하여야 함

<제 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자금관리 주체는 사업자가 대출금의 목적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대출금 부당 사용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 등을 준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농식품부 및 각 지자체는 매년 상반기중에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 지표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함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등 조사

□□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

1.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대상지 조사계획(온실 및 가온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배정 등)을 시·도지사에게 시달('09.12월)

시·도

- 사업 대상지 조사계획 및 사업량 배정계획을 시·군에 시달('09.12월)
- 시·군에서 제출한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검토 후 시·도단위 사업대상자 우선 순위를 부여한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0.1월)

시·군

- 시장·군수는 시설원예(채소·화훼·과수) 농업인이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을 쉽게 알수 있도록 사업계획 공고, 안내통지,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도로부터 시달받은 사업 배정량에 따라 시·군단위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10.1월)
 - 농업인의 사업신청서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시행상 문제점 여부 등에 대해 전문기관(농진청, 기술센터, 농기계조합 등)의 협조를 받아 검토

<사업계획수립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은 본 지침에서 제시한 사업메뉴, 지원규모 및 단가 등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 특성에 알맞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계획은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확인, 첨부하여야 함
-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농업인(사업자)

- 시설원예(채소·화훼·과수) 농업인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협동조합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를 내실있게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계획량 및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 농협중앙회에 통보('09.1월)

시·도, 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해당 농업인(법인)에 통보('09.1월)

3. 사업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검토·조정·보완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점검

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확정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사업시행요령 및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미리 통지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공인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농업기계 가격집에 등재된 난방기만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사업계획 변경시 절차>

- 사업자(농업인)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 주관기관(시·군)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야함
- 시장·군수는 계획변경 신청내용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농식품부로 변경 사항을 제출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 장관은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대출취급 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을 배정

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 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 신청서를 제출받고,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 전월 2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 용자금 대출 실행 원활을 위해 사업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사업등록자가 작성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를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하며,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야 함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에너지 관리공단, 농협중앙회

- 에너지 관리공단 사장은 농식품부 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에 의거 자금을 대출취급기관에 대여
- 대출취급 기관이 지원 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집행 기성고(준공)확인서 등에 의하여 대출

5. 이행 점검 · 관리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점검시기 : 중간점검(사업착수후 6개월이내), 사후평가(사업종료 익년 상반기내)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지자체(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조금 취득자산에 대해 사후관리를 해야 함

자금관리 주체

- 자금관리 주체는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부진하거나 부적절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 및 사업자로부터 지원 및 사용 관련 입증서류 확인과 시설설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사업자금을 정산하여야 함

<제 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자금관리 주체는 사업자가 대출금의 목적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대출금 부당 사용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 등을 준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농식품부 및 각 지자체는 매년 상반기중에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함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등 조사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 조사

- 2011년도 사업계획 통보 및 사업신청('10.10~12월)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10년도 12월중(구체적 일자는 추후 통보)
- 신청자격 : '10년도 신청자격과 동일(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3. 기타 사항

- '11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0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첨부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 ③ 지열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 ④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 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협약서 1부.
3. 임대농업인이 사업 신청 할 경우
 -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 ④ 시설물임대차 임대차 계약서 1통
 - 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협약서 1부.
4. 지열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및 토지이용계획서 각 1부
5. 법인체는 법인명의로의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 확인서, 가축자가 사육 확인서, 매출증명서 각 1부
6. 면세유 사용농가 사용기간 동안의 확인서(농협) 1부.
※ 기타 연료를 사용한 농가는 해당연료 사용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7.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붙임 3호 서식)

시설원에 지열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계획서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성명				휴대폰				이메일		
사업수행기관								신청지역 최저기온(최근10년평균)		℃	
사업신청시군 시설원예현황	시설면적	계(ha)	유리온실	비닐연동	비닐단동	기타	가온 면적				
	작물별 재배면적 (다면적순)	계 (ha)	채소류					화훼류		기타	

신청농가 법인체 일반개요	농가명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농가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농가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설치장소	(地番까지)						
연락처	전화				팩스			
	휴대폰				이메일			
시설현황	사업대상 시설규모	계	유리온실	비닐연동	비닐단동	기타		
		m ²						
	부대시설	육묘장	선별장	예냉·저온시설	선별기	기타		
m ²		m ²	m ²	식				
추진계획	공사입찰	년	월	순	공사계약	년	월	순
	착공시기	년	월	순	완공시기	년	월	순

시설원에 지열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대표) : (인)

○○시군 농정과장 (직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시설원에 지열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세부계획서 1부.

(붙임 3-1호 서식)

시설원에 지열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세부계획서

1. 사업신청 농가 현황

가. 전체 보유시설 현황

기존 보유시설					가온면적				가온배력 년	전기시설			
계	유리온실		비닐온실		기타	계	온풍난방기	온수보일러		기타	현재용량 kW	주변거리 m	비상발전기 kW
	벤로형	양지붕	연동	단동									
m ²						m ²							

나. 사업예정시설 현황

사업예정온실			사업예정온실 세부내역			기타시설장비	비고
시설형태	면적	기존/신규	생산시설	외피복재	내피복재		
	m ²						

* 사업예정온실 : 아래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시설형태 : ①벤로형유리온실 ②양지붕형유리온실 ③비닐연동 ④비닐단동 ⑤기타
- 기존/신규 : ①기존 보유온실 ②신규온실 설치

* 사업예정온실 세부내역 : 아래 모든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생산시설 : ①양액재배 ②점적관수 ③자동환경제어 ④공정육묘장
- 외피복재 : ①유리 ②PE ③EVA ④PO ⑤불소수지 ⑥PET ⑦PC ⑧PVC ⑨외피복 1중 ⑩외피복 2중 ⑪외피복 3중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 ①다겹보온커튼 ②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부직포 1중 ⑤부직포 2중 ⑥부직포 3중

* 기타시설장비 : ①예냉시설 ②저온저장고 ③저온처리실 ④집하장 ⑤선별처리장 ⑥보광시설 ⑦선별기 ⑧운송차량

2. 사업계획

가. 지열난방 시스템 설치

지열난방 시스템 선택								축열조량 톤	기계실적 m ²	실내열교환기 유형
계	면적 m ²	수평형				수직 밀폐형 m ²	수직 개방형 m ²			
		지열교환기(○)		설치장소(○)						
	m ²	직관형	슬린키형	온실내부	온실외부					

나. 사업장 작물재배 계획

재배작물	재배면적	작 물 재 배 시 기				겨울철 최저기온 설정온도 ℃
		육 묘	정 식	수확시작	수확완료	
계	m ²	월 순				

다. 연차별 생산농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09		2010		2011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m ²	톤	백만원					

라. 재원 조달계획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백만원				-

마.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 농가 교육 및 현장지도, 평가회 개최계획 등
-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 가. 난방비 절감 효과
-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5. 시·도 및 시·군의 종합 검토 의견

- 첨부서류 : 1. 예비 대상농가별 사업 신청서(1호 서식) 각 1부.
 2. 예비대상 농가별 현장조사 확인서(2호 서식) 각 1부.
 3. 사업 신청 장소 지적도(시설배치 예정도 포함) 1부.
 4.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5. 설치 예정 장소별 사진 2매.

(붙임 5호 서식)

시설원에 지열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추진성과 보고서

1. 작물재배 현황

시군	농가명 법인체명	작물명	시설유형	면적 (㎡)	방법 (양액/토경)	재배기간 (월일~월일)	수확량 (kg, 단, 분)
○○							

※ 인근에서 경유온풍기를 활용하는 동일한 작물과 작형의 농가와 비교하되, 인근에 없을 경우 시군>도>전국 평균자료로 비교. 시설유형은 유리온실, 비닐연동, 비닐단동 등으로 구분

2. 10a당 수익성 효과

시군	농가명 법인체명	총수량(kg, 단, 분)			上品 수량(kg, 단, 분)			조수입(천원)			소 득(천원)		
		사업농가	인근	%	사업농가	인근	%	사업농가	인근	%	사업농가	인근	%

3. 10a당 난방비 절감시설 및 효과

시군	농가명 법인체명	구 분	외피복재	내피복재	가온기간 월.일~월.일	재배기간 설정온도 ℃	전 기		유 류	
							전기 소모량 kW	비용 천원	경유 소모량 L	비용 천원
		사업장								
		인 근								

* 외피복재 : ①유리 ②PE ③EVA ④PO ⑤불소수지 ⑥PET ⑦PC ⑧PVC ⑨외피복 1중
⑩외피복 2중 ⑪외피복 3중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 ①다겹보온커튼 ②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부직포 1중 ⑤부직포 2중 ⑥부직포 3중

4. 교육 및 평가결과

시군	교 육		현장지도		평가회개최		평가회 참석자 사업내용 만족도					
	횟수	인원	횟수	연인원	횟수	인원	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	회	명	회	명	회	명	명					

5. 미흡한점 및 개선방안

시군	미흡한점	개선방안

6. 사업 추진 단계별 사진

(붙임 6호 서식)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단 지 명 :
- 법 인 명 : (대표 , 참여농가 호)
- 소 재 지 :
- 시설면적 :
- 투자계획 :

2. 검토의견

* 시장·군수는 에너지관리공단,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등 각 기관에 사업계획서 검토의뢰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종합 검토의견서 작성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

직인

(붙임 참고1)

시설원에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

□ 시설원에 작물별 생육온도 조건

구분	고온성작물	중온성작물	저온성작물
채소	파프리카, 메론, 고추, 가지	호박, 오이, 참외, 무, 수박	딸기, 배추, 상추, 시금치, 샐러리, 쪽갓, 철쭉
화훼	심비디움, 장미, 백합, 야자류, 호접란, 국화, 유스토타마, 아나나스	고무나무, 카네이션, 글라디올러스, 동양란, 선인장, 거베라	튤립, 금어초, 스톡크, 데이지, 아이리스, 펜지, 안개초, 프리지아, 페츰니아, 프리물라, 시크라멘

* 주) 위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면세유류 용량조건표 작성 기준임

□ 작물별 온도관리 기준

<채소류>

작물명	생육온도(℃)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멜론	15	18	28~30	35
고추	13	16	23~30	35
가지	13	16	22~30	35
파프리카	15	18	25~30	35
토마토	10	16	25~30	33
호박	10	11	23~25	35
오이	8	12	25~28	35
참외	8	11	22~28	35
수박	10	13	25~30	35
무	8	11	15~20	25
딸기	3	6	17~20	30
배추	5	8	13~18	23
상추	5	8	15~20	25
시금치	5	8	15~20	25
샐러리	5	8	15~20	25
쪽갓	5	8	15~20	25

<화훼류>

작물명	생육온도(℃)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심비디움	12	15	20~25	30
장미	5	15	24~27	30
아나나스	12	15	20~25	30
야자류	12	15	25~30	40
호접란	15	23	25	30
유스토마	12	15	20~25	30
백합	13	16	20~25	30
국화	7	15	18~20	30
거베라	7	13	16~20	30
고무나무	10	13	25~30	40
글라디올러스	10	13	25~30	35
동양란	10	13	20~25	40
선인장	10	13	25~30	50
카네이션	7	13	15~21	30
철쭉	4	8	20~25	35
프리지아	7	10	13~16	30
튜울립	5	10	15~20	30
아이리스	7	10	15~20	30
숙근안개초	7	10	15~18	20
금어초	7	10	15~20	25
스톡크	7	10	20~25	25
팬지	7	10	15~20	25
데이지	7	10	15~20	25
페츄니아	7	10	20	30
프리물라	7	10	15~20	25
시크라멘	7	10	18~20	30

* 주) 야간온도설정 : 최저생육한계온도 + 3℃

<첨부2 : 목재펠릿 난방기 시범보급>

(붙임 1호 서식)

시설원에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 사업 신청서						
신청지 개요	부 류	채소류/화훼류/과실류		온실규모	m ²	
	생산품목			재배규모	m ²	
	대표자(남/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시 설 규 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m ²	자동화온실 m ²	일반온실 m ²	기 타 m ²	계 m ²
	부대시설	선 별 장 m ²	예냉·저온시설 m ²	선 별 기 식	기 타	-
사 업 계 획	사업신청 규 모 (시설종류별)	* 시설종류별 사업량(m ² , 대) 및 사업비(백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구분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지 방 비	용 자 (신청액)	자부담
<p>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펠릿 난방기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p>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첨부 1-1호 서식>

‘10년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비 지원 사업시행 계획서

1. 일반현황

가. 농가개요

성명		생산품목		생년월일	(남/녀)
주소				연락처	전화 :
					핸드폰 :
					팩스 :
시설재배규모		m ²		난방면적	m ²

나. 시설현황

○ 생산시설

(단위 : m²)

시설규모(합계)	시설종류 및 규모					
	유리(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부대시설 및 장비(보유한 경우)

(단위 : m², 대, 톤, 백만원)

부대시설·장비명 (설치년도)	시설규모 및 수량	시설비	보관, 처리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 공동, 개별, 자체, 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사업명	규모(m ²)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목재펠릿 원료 조달계획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				

(붙임 2 서식)

(/4분기)시설원에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사업 추진상황 보고

1. 사업진도(총괄)

□ '10년 총사업비 : 백만원

○ 국고 , 용자 , 지방비 , 자담

(단위 : 천원)

농가 명	사업량			사업진도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계획	실적	비율	주요 추진 내역	공정	계		국 고		용 자		지방비		자 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계			%		%										
시군 소계															

주) 가. “사업량”은 세부사업별(난방·보온) 시설설치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m² 등으로 기재

나. “주요추진내역”란은 입찰,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다. “사업비집행”은 계획대비 보고 전월말까지의 집행실적을 기재

2. 금후 사업추진일정

3.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4. 기타 참고사항

(붙임 3 서식)

시설원에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사업 정산실적 보고

(단위 : 천원)

농가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획				집행실적(정산)								대비(D/C)
	세부사업명	계획(A)	실적(B)	대비(B/A)	계	국고보조(C)	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	계	국고보조(C)	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			
시도계				%													
시군소계																	

- 주) 가. “사업량”은 세부사업별(난방·보온) 시설설치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m² 등으로 기재
- 나. 사업정산 실적은 총괄표와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법인 등)로
 위 양식에 맞추어 구분 작성·첨부

<첨부 1-1호 서식>

‘10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시행 계획서

1. 일반현황

가. 농가개요

성명		생산품목		생년월일	(남/녀)
주소				연락처	전화 :
					핸드폰 :
					팩스 :
시설재배규모		m ²	난방면적		m ²

나. 시설현황

○ 생산시설

(단위 : m²)

시설규모(합계)	시설종류 및 규모					
	유리(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부대시설 및 장비(보유한 경우)

(단위 : m², 대, 톤, 백만원)

부대시설·장비명 (설치년도)	시설규모 및 수량	시설비	보관, 처리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 공동, 개별, 자체, 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사업명	규모(m ²)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비고

(붙임 2 서식)

(/4분기)시설원에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상황 보고

1. 사업진도(총괄)

□ '10년 총사업비 : 백만원

○ 국고 , 용자 , 지방비 , 자담

(단위 : 천원)

농가 명	사업량			사업진도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계획	실적	비율	주요 추진 내역	공정	계		국 고		용 자		지방비		자 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계			%		%										
시군 소계															

주) 가. “사업량”은 세부사업별(난방·보온) 시설설치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m² 등으로 기재

나. “주요추진내역”란은 입찰,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다. “사업비집행”은 계획대비 보고 전월말까지의 집행실적을 기재

2. 금후 사업추진일정

3.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4. 기타 참고사항

(붙임 3 서식)

시설원에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정산실적 보고

(단위 : 천원)

농가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획				집행실적(정산)								대비(D/C)
	세부사업명	계획(A)	실적(B)	대비(B/A)	계	국고보조(C)	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	계	국고보조(C)	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			
시도계				%													
시군소계																	

- 주) 가. “사업량”은 세부사업별(난방·보온) 시설설치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m² 등으로 기재
- 나. 사업정산 실적은 총괄표와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법인 등)로
 위 양식에 맞추어 구분 작성·첨부

30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 장 김홍우 사무관 문석호	02-500-1946 02-500-1950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관리팀	팀 장 차홍식 차 장 서병교	02-6300-1351 02-6300-1352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에 대하여 선별, 포장, 운송 등 수출물류비 및 수출보험, 안전성 확보 등 수출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원하여 수출확대 도모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WTO/농업협정 제9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0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0년까지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 과일, 화훼) 수출액을 160백만불 이상 확대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원예전문생산단지 수출실적(백만불)	160	130	140	150	2011.2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수 출실적 증빙자료

* 성과지표 설정 방법 : 연간 상승률 7% 반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248,676	32,684	41,277	41,535	107,077
보 조	248,676	32,684	41,277	41,535	107,077

II. 2010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국산 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생산자단체, 농업인(이하 “수출업체”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일정규모 이상의 국산농식품 수출업체

3. 지원대상

- 국산 농식품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및 수출인프라강화 사업대상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산 농식품 수출물류비 및 수출인프라강화 사업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국고보조, 사업신청 조건충족 시 표준물류비의 일정수준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표준물류비 일정비율, 각종 인센티브제도 지급기준 별도 운영

* 2009년 표준물류비의 20% 지급

※ 기타 세부내용은 2010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지원지침 참조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세부지원지침을 작성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세부지원지침 작성 및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자 선정은 신청자격(일정규모 수출)을 갖춘 수출업체를 신청시점에 농수산물유통공사 해당지사를 통해 신청받아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세부계획 검토 및 확정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세부계획 보고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세부지원계획(목적, 지원자격, 대상, 신청절차 등) 홍보
- 사업자 선정은 신청자격(일정규모 수출)을 갖춘 수출업체를 신청시점에 농수산물유통공사 해당지사를 통해 신청받아 선정
 - 고객지원시스템 신청분과 수출신고서 확인 후 각 지사를 통해 지원

신청업체

- 신청업체는 매월 전월 수출분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고객지원시스템에 입력신청하고, 수출실적 증빙서류를 농수산물유통공사 관할지사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고보조금 신청을 받아 교부결정 후 통지
-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개산급 신청 받아 개산급 교부(매분기)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분기별 개산급 교부받아 매월 해당업체에게 지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비 집행상황을 점검
 - 사업비 적정집행여부, 집행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국산원료사용여부 및 사업비의 적정 집행여부 등 수시점검
- 매월 자금 월집행현황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제재》

농수산물유통공사

- 수출물류비 부당수령 시 물류비 회수조치 등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지원 지침에 따른 제재조치에 따라 처리

6. 성과측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실적을 보고 받은 후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제도개선 시행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사업평가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연초 전년도 사업 자체평가 및 차년도 사업 반영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없음(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사업참여 수출업체 별도 조사)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31	농산물수출업체운영활성화지원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 장 김홍우 사무관 문석호	02-500-1946 02-500-1950
농수산물유통공사	자금지원팀	팀 장 심정근 차 장 조창익	02-6300-1150 02-6300-1151
농협중앙회	수출팀	팀 장 장철훈 차 장 정승혁	02-2080-6183 02-2080-6185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농식품 운영·매취자금을 용자 지원하여 국내 수출 농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력 제고, 농가소득 증진 및 농업생산기반 유지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운영활성화자금 지원업체 수출실적을 '10년까지 750백만불 규모로 확대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지원업체 수출실적 (백만불)	750	637	672	710	2011.2	자금지원업체의 수출실적 증빙자료

* 성과지표 설정 방법 : '08년대비 '09년(추정치) 상승률 5.7% 반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 운영활성화지원	4,569,114	350,000	363,000	360,200	
- 용 자	4,569,114	350,000	363,000	360,200	

II. 2010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국산 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생산자단체, 농업인(이하 “수출업체”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산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당해연도 수출계획이 있는 수출업체

3. 지원대상

- 국산 농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에게 운영자금 융자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산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농안기금-융자, 사업의무는 대출액의 50% 수출의무 부여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수출업체별 전년도 수출액의 2배까지 지원한도 설정

※ 운영활성화지원사업 세부지원계획은 대출취급기관별 별도 시행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물식품부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세부지원계획을 작성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 농림수산물식품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 일간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홍보, 계통조직에 문서로 전달
※ 주요 홍보내용 : 목적, 지원내용,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장소 등

사업신청

- 일반수출업체는 농수산물유통공사, 회원농협은 농협중앙회로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대출취급기관의 세부지원계획에 의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 기관별 대출계획 수립 및 용자기업 공고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의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원대상자별 지원 금액을 확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한도배정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자금소요시기별 자금배정 결과에 따른 지출한도배정 요청을 받아 자금 배정(매월)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대출취급기관이 대출한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와 대출취급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 월별 자금집행실적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 대출취급기관은 세부지원계획에 의거 대출한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위약 등 대출업체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제재》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의 자체 세부지원계획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는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 운영활성화자금 지원목적인 국산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대출업체를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 및 차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농림수산식품부

- 대출기관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사업시행 시 반영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대출기관별 운영활성화자금을 이용 업체에 대한 사업수요조사 수시 실시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 장 김홍우 사무관 박승준	02-500-1946 02-500-1957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기업육성팀	팀 장 박연호 과 장 김서령	02-6300-1301 02-6300-1312

I. 사업개요

1. 목 적

- 전통·발효식품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통·발효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하여 품질경쟁력 향상 및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제2항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전통·발효식품 평균 매출액(백만원)	999(P)	1,024	942	970(P)	익년 8월	총매출액/업체수 - 정부지원 전통식품업체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	-	11,500	10,500	75,188
○ 경쟁력 강화	-	-	11,500	11,500	75,188
- 보조	-	-	-	-	-
- 융자	-	-	9,200	8,400	60,150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2,300	2,100	15,038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정부지원 산지 가공업체 중 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 (이하 “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라 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로서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업체

3. 지원 대상

- 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 및 시설투자자금 등을 받고자 하는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시설의 신축·증축·증설·개보수 및 물류 장비 등 구입비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기준 : 융자 80% 이내, 자부담 20%,
- 지원(융자) 조건 : 연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업체당 지원 한도액 : 총 사업비의 80% 범위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수산물부

-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세부지원계획을 수립
- 일간지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업내용 공고 및 계통조직 문서 통보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농림수산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작성한 세부 지침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
 - 세부 지침에는 사업자 선정기준(평가기준 포함) 및 선정방법 등을 포함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자 선정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에 제출,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2010년 1월말까지 세부계획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에 제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 시행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세부계획 승인 전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모집(공고 포함) 등은 실시할 수 있음

농림수산식품부

-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세부계획 검토 조정 및 시행 승인

4. 자금배정단계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지원 신청시 계약서, 견적서 등을 토대로 사업비 검토에 의하여 자금 배정(매년 상반기)
- 자금배정은 연1회 신청하여 매년 상반기 연간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포기 자금, 추가자금, 신규업체 신청자금에 대하여는 필요시 월별 배정도 가능

농림수산식품부

-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자금소요 시기별 자금배정 결과를 토대로 지출한도 배정 요청받아 한도배정 승인(매년 상반기)

5. 이행 점검단계

《사후관리》

사후관리 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대상자가 사업목적에 따라 자금을 적정 집행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

자금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대출업체의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수행여부 확인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시설 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6월, 11~12월)
 - 점검자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농수산물유통공사, 품질인증기관 등

《제 재》

사업관리주체 및 자금관리 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 대출취급기관의 자체 세부지원 계획에 의함.
 - 세부시행계획에 없는 사항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 및 대출기관의 여신 규정에 의함

6. 성과 측정 단계

- 전통·발효식품 생산업체 생산액을 전체 업체수로 나누어 평균 생산액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사업결과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사업과정 및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및 차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 및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전통식품명인협회 등에 공문 발송하여 사업 수요조사 실시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 장 김홍우	02-500-1946
		팀 장 김종실	02-500-1953
	한식세계화추진팀	팀 장 박순연	02-500-1961
		사무관 고경만	02-500-1964
유통정책과	과 장 조재호	02-500-1931	
	사무관 조규표	02-500-1945	
축산경영과	과 장 허태웅	02-500-2058	
	사무관 이연섭	02-500-2063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육성팀	팀 장 박연호	02-6300-1301
		과 장 김서령	02-6300-1312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분사	부 장 임관민	031-3489-7720
		차 장 박귀현	031-3489-7721

I. 사업개요

1. 목 적

- 식품제조·신선편이 가공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현대화 시설 및 개보수 등 지원
- 소비지 유통망 확충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기반 구축
- 축산물 열처리가공품 수출 확대를 위한 가공시설 및 장비 등 지원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45조·제16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제68조, 축산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자금 지원업체의 매출액을 2014년까지 2,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우리 농산물 수요증대 및 우수 농식품 공급 확대 도모
 - '14년까지 식품업체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지원업체 200개소 육성
 - 생산자단체의 소비지 유통업체를 '14년까지 100개소로 확대 지원
 - 축산물 열처리가공장 : 열처리 가공제품 수출확대를 위해 '17년까지 1,500톤 규모의 가공시설 22개소 육성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농식품업체 시설현대화 지원업체 수(누계치)	(68) 20	(12) 12	(31) 24	(48) 17	'10.12	- 매년 농식품업체에 지원 사는 시설현대화 지원업 체 개소수
▪ 생산자단체의 소매유통 점유율(%)	10.0	8.0	9.1	9.5	'11.2	- 농협중앙회의 농산물 총 매출액에서 소매 매출액 비율
▪ 열처리가공장 준공(개소)	3	-	-	2	'11.2	- 열처리가공장 준공 개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179,400	55,000	70,000	51,500	59,000
보 조 용 자	179,400	55,000	70,000	51,500	59,000
○ 식품업체 시설현대화 - 용 자	149,400	15,000	35,000	19,500	35,000
○ 신선편이 시설현대화 - 용 자	-	10,000	11,000	8,000	-
○ 소비지유통 시설활성화 - 용 자	30,000	30,000	10,000	10,000	10,000
○ 축산물 열처리가공장 - 용 자	-	-	14,000	14,000	14,000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식품업체·신선편이 업체

-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등 식품안전 인증·개보수를 받고자 하는 식품제조(신선편이) 업체 및 농식품수출업체(단, 농산물가공업체 선지원 후, 축산물가공업체 지원)

*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의 경우 인삼 등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가공 하는 업체의 경우 해당

* 신규 창업자(사업자 등록 및 운영이 1년 미만) 및 식품산업분류상의 음식료품 제조업에 속하지 않는 업체는 지원 불가

○ 소비지유통 시설활성화

- 1,000㎡ 이상의 중대형 농산물 판매장을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신·증축 또는 임차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의 지역조합

- ①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지역
-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 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지역
- ③국토해양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도시 지역
- 축산물 열처리가공장
 - 축산물 열처리가공시설은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자 희망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식품안전인증(HACCP 등)·개보수를 받고자 하는 식품제조·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업체
 - (단, 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이 1년 미만인 업체는 지원불가)
- 농식품수출업체의 경우 시설현대화 자금지원(단, 품질인증 관련업체 우선지원)
-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자 하는 자
- 인구 10만 이상 소비지 유통시설의 중대형 농산물 판매장

3. 지원대상

- HACCP, GMP 등 품질인증 획득 및 개보수와 관련한 식품제조업체의 시설 투자자금 지원
 - 가공공장 신축 또는 증설, 시설현대화·자동화 등 개보수, 저장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기타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시설 및 기계·장비의 구입비용 등
 - * 생산자 융·복합사업 대상자의 경우 사업자 선정시 우선순위 부여
- 축산물 열처리가공시설의 경우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중대형 농산물 판매장을 신·증축하는 경우 건축비 및 임차하여 설치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50% 이내
- 농산물에 필요한 저장·처리·가공시설과 부대시설(건물 등)의 증축·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운반차량 등)
 - * 지원대상 업체가 자금지원을 신청할 CO₂ 절감 설비 등을 포함하여 CO₂ 경감량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식품제조·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업체의 식품안전인증(HACCP 등)·개보수 및 농식품 수출업체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
- 농산물 판매장 및 지원시설(사무실, 주차장, 창고 등)의 건축비 및 임차보증금
- 축산물 열처리가공 및 중대형 농산물 판매장의 관련 시설현대화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규모 : 70,000백만원
 - 식품제조업체 시설현대화 : 19,500백만원
 - 신선편이 시설현대화 : 8,000백만원
 - 소비지 유통시설 활성화 : 10,000백만원
 - 축산물 열처리가공장 : 14,000백만원
- 대출 금리
 - 식품제조·신선편이업체 시설현대화, 축산물 열처리가공장 :
 - 3~4%(일반업체는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는 3%)
 - * 정부정책 변경으로 금리 변경 시, 금리 변경 전 지원 대상 업체에 대하여도 금리 변경 연도부터 변동금리 적용
 - 소비지 유통시설 활성화 : 3%
 - * 자부담율 : 부지(자부담), 건축비·임차보증금(지원액의 50% 이내)
- 대출 기한 : 10년 이내(3년 거치 7년 상환)
- 지원 기준
 -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농산물판매장 건축비용은 공정에 따라 소요액의 50% 지원(단, 임차비용은 임차계약서 및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원)
 - 소비지유통시설활성화 융자 50%(자부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식품제조업체 시설현대화 : 3,500백만원
- 신선편이 시설현대화 : 1,500백만원
- 소비지유통 시설활성화 : 10,000백만원
- 축산물 열처리가공장 : 14,00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지침을 작성하여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며 해당 매체를 통하여 공모·홍보 추진
 - 일간(전문)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업내용 홍보하고 계통조직에 문서 시달
- 축산물 열처리가공장 사업희망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식품제조업체 및 신선편이농산물가공업체 지원대상자는 농산물유통공사로 신청
- 소비자유통시설 활성화의 사업대상 지역농협은 신·증축사업 및 임차사업을 농협중앙회에 신청
- 축산물 열처리가공장 지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신청

농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대출취급기관의 세부지원계획의 의거하여 사업자 선정
- 축산물 열처리가공장 지원의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 검토 후 농식품부로 추천하고, 농식품부는 지원조건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주관기관(농식품부)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사업시행기관(유통공사, 농협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 사업시행기관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기초하여 세부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기관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을 기본으로 세부지원계획을 마련하여 '10년도 2월 이내에 사업주관기관(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사업추진기관(유통공사, 농협중앙회)은 사업시행 중 지침내용을 벗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
- 축산물 열처리가공장의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체를 투명성 있게 선정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가 입회하여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을 지도·감독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 실시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기타 자금집행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등을 따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자금소요 시기별 자금배정 결과를 토대로 지출한도 배정 요청을 받아 한도배정 승인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시행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은 사업지원 신청시 계약서, 견적서 등을 토대로 사업비 검토에 의하여 자금배정
- 자금배정은 연1회 신청하여 매년 상반기 연간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포기 자금, 추가자금, 신규업체 신청자금에 대하여는 필요시 월별 배정도 가능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추진기관(유통공사, 농협중앙회)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한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와 대출취급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 및 반기(1회

- 씩, 연간 2회) 현지 점검을 실시
- 사업추진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추진상황을 분기별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대출취급기관은 세부지원계획에 의거 대출한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위약 등 대출업체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
- 사후관리기관 : 용자금 상환시 까지
 - 사후관리 기간 내 사업목적에 벗어나는 용도로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자원 지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추진기관의 자체 세부지원계획에 의함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등에 대한 제재는 농림 사업운영규정에 의하며, 위반 대상사업체에 대하여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경중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등의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추진
 - 세부지원계획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 및 대출 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는 당해 연도 사업종료 후,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사업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 식품업체의 경우 매년도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받는 업체의 개소수(누계)가 확정되는 시점에 농식품부에 통보받아 익년도 1월에 성과지표 적용
 - 소비지 유통시설 활성화의 경우 농협중앙회의 농산물 총매출액 대비 소비지 유통시설의 소매 매출액 현황이 확인되는 익년도 2월까지 농식품부에 통보받아 성과지표 활용
 - 축산물 열처리공장의 경우 매년도 자금을 지원받는 업체의 개소수(누계)가 확정되는 시점에 농식품부에 통보받아 익년도 1월에 성과지표 적용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는 사업시행기관에서 별도로 설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환 류》

- 운영실태 및 관련 업체(종사자)들이 실지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설문지 및 인터넷·우편 등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고 정책 및 시행지침에 반영
- 매반기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 등은 사업목적에 의거 사업 과정 및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및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며 익년도 시행지침에 반영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축산물 생산 및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시 수요 조사 실시
 - 사업참여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방법과 시기, 양식, 제출기관, 제출방법 등을 제시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 사업신청서 등 신청양식은 대출취급기관의 세부지원계획에 의함
- 2011년도에는 사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 등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며, 식품업체와 신선편이업체를 통합 지원 추진

34 | 생산자용·복합형식품기업육성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 장 김홍우 서기관 김종실	02-500-1234 02-500-4567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육성팀	팀 장 박연호 과 장 김서령	02-6300-1301 02-6300-1312

I. 사업개요

1. 목 적

-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를 통한 식품제조기업에 안정적 원료공급과 제조·마케팅 능력을 갖춘 식품제조기업 육성으로 생산자와 식품기업 상생
- 국산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의 부가가치 창출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생산자와 식품기업이 공동 출자한 융·복합 식품제조기업의 설립을 활성화 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신규 설립하는 ‘융·복합 기업수(누계치)’를 설정
 - 융·복합 식품기업을 ‘15년까지 30개소 육성 목표
 - ‘09 신규사업으로 효율적 지원과 생산자와 식품기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융·복합 식품기업 육성 기여
 - 성과목표 달성확인은 매년도 말까지 융·복합 식품기업 설립 후, 지원되는 개소수 파악(농수산물유통공사)을 통해 확인 가능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융·복합 식품업체 (개소수)	5 (3)	-	-	2	‘10.12	- 신규로 설립하는 융·복합 식품기업 지원 개소수(누계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기업 육성	-	-	10,000	6,000	6,000
- 보 조	-	-	-	-	1,000
- 용 자	-	-	10,000	6,000	5,000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II. 2010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식품업체의 새로운 모델로서 농수산물 생산자(생산자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생산자”라 한다)와 식품제조업체간에 공동 출자한 융·복합형 식품제조기업
 - 융·복합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는 업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참여도 가능(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생산자와 식품업체간의 상호 운영 및 법률적인 부분을 협력하는 경우도 가능)
 - * 융·복합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사업추진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와 식품제조업체가 공동출자하여 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업체
 - 생산자의 경우 지분참여 범위는 10% 이상

3. 지원대상

- 생산자(생산자단체 등) 및 식품제조업체, 지방자치단체
 - 선정대상 : 참여 희망업체 및 운영 중인 융복합형 식품업체
 - 지원분야 : 시설 및 운영자금
 - *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접참여 및 생산자와 식품업체 간의 업무협약에 의한 참여도 가능
 - *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업체에 선정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농식품 지원정책 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 용·복합형 식품제조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축 및 물류장비 구입 등
- 운영자금 : 용·복합형 식품제조업체의 농수산물 저장·가공원료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규모 : 6,000백만원
※ 총액 범위내에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 지원조건 :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용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금리 : 연 3.0%
- 대출기한 : 시설자금(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생산자 용·복합 식품기업 : 총 사업비의 80%(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생산자 용·복합형 식품제조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09.12월 통보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0년 2월까지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
- 일간지 및 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사업내용 공고 및 계통조직 문서 통보

2. 사업자 선정단계

- 생산자 용·복합형 식품제조기업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 또는 각 지사에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

농수산물유통공사

- 생산자 용·복합형 식품제조기업 육성지원 농림사업 지침 및 대출취급기관의 세부지원 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유통공사)에 통보하며,
 - 유통공사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기초하여 세부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식품부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을 기초하여 세부지원계획을 '10. 2월까지 마련하여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 유통공사에서는 사업시행 중 지침내용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농식품부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유통공사로부터 자금소요 시기별 자금배정 결과를 토대로 지출한도 배정을 요청받아 한도배정 승인

농수산물유통공사

- 유통공사는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원대상자별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농식품부에 한도배정 요청
- 유통공사는 사업지원 신청시 계약서, 견적서 등을 토대로 사업비 검토에 의하여 자금배정
- 자금배정은 연1회 신청하여 매년 상반기 연간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포기자금, 추가자금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월별 배정도 가능
- 유통공사는 배정된 자금을 사업수행 시기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대출취급기관이 대출한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와 대출취급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 및 반기 1회씩 연간 2회 현지 점검 실시

농수산물유통공사

- 유통공사는 대출업체의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내역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

《제재》

농수산물유통공사

- 유통공사에서는 자체 세부지원계획에 의함
 - 사업대상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등에 대한 제재는 사업운영 규정에 의하며, 위반업체의 사업참여 제한 등이 기간을 별도 산정하여 추진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시행기관(유통공사)에서는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사업결과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지원 대상업체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여부를 확인하고 그 개소수를 지원대상 업체에 대하여 매출액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관기관(농식품부)에 '11.2월까지 결과 보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세부적인 평가원칙, 절차, 대상 등에 대하여서는 사업시행기관의 세부지원 지침에 정하여 추진

《환 류》

-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제조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목적에 의거 사업과정 및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익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
- 사업의 평가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익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예산 편성시 반영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융·복합형 제조기업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 및 관련협회 등에 공문 발송하여 사업 수요조사 실시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기업 육성사업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 공통분야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 검토
- 융·복합 컨설팅, 제품개발, 교육 등에 대한 공통분야에 대하여 국고보조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과장 최대휴 사무관 김봉희	02-500-2101 02-500-2111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팀	차장 유영배	02-6300-1586
한국식품연구원	유통연구단	단장 김병삼	031-780-9142

I. 사업개요

1. 목적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확산
- GAP 농산물의 수확 후 세척·선별 등으로 GAP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격리·안전시설을 갖추게 함으로써 일관된 안전농산물 공급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제7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산물 안전성강화를 위해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과 잔류농약·중금속 등 농식품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안전 농산물 생산·공급기반 구축
 - 2012년까지 GAP 인증 농가를 1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 방식
		'07	'08	'09		
▪ 인증농가수(호)	50,000	10,000	20,000	30,000	매년 12월	- 인증기관별 인증실적 보고자료
▪ 인증농가비율(%)	5%	1%	2%	3%	매년 12월	- 인증기관별 인증실적 보고자료 - GAP인증농가수/전체 농가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GAP시설보완(총계)	6,580	2,666	5,340	8,006	11,000
- 보 조	2,000	800	1,602	2,402	3,300
- 지방비	1,805	533	1,068	1,601	2,200
- 자부담	2,775	1,333	2,670	4,003	5,500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1. 사업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공동출자법인, 작목반
 -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사업체로서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
 - 규모기준 : 유통시설(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규모가 660m² 이상인 시설 및 시설 규모가 660m² 이하의 소규모 유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3. 지원대상

- GAP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장비
 - ※ 사업비에 토지매입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위생시설·장비(예시)
 - 전처리작업장(공조시설 포함)
 - 세척기(1·2차 세척)
 - 위생소독실(에어샤워기, 소독실, 이물질제거, 작업복 등)
 - 부산물 처리시설(미생물제조기, 투입기, 액비제조기)
 - 물류기기 세척시설(농산물운송차량·상자 세척)
 - 작업장 격리 및 내부안전시설(화장실 개·보수, 공동작업장 해충방제시설, 출입구 격리시설, 바닥·벽·천장 항균처리시설 등)
 - 식품오염물질 처리시설(세척 후 오염물질 처리, 생물학적 전처리 등)
 -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구분 배수시설, 정수 및 멸균시설) 등
 - 기타 위생시설, 상품화 시설 등의 세척 기계·장비·시설

< 참 고 사 항 >

- 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위생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사업비에 부지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산지유통센터 위생시설의 기계설비·시설 기술검토 및 감리
 -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술검토와 감리 하에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시공해야 함
 - 지역농협의 경우 세부시설 설치 전에 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야 함

- 전체사업비 2%내에서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비용 및 감리비 등 사용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비율
 - 생산자단체 :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시장·군수 : 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규모 : 275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
 - 필요시 추가사업 신청 계획 통보

시·도(지자체)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GAP 위생시설·장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신청대상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자 명세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신청품목을 주 사업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GAP 실시에 필요한 생산유통시설(APC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조직 중 다음의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선정

<우선선정대상 기준>

- 참여의지와 품질관리능력, 가동일수, 손익현황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산지유통전문조직 또는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되어 운영중인 우수 조직
- 전국 단위 농산물자조금 단체에 가입되어 정부지원을 받는 생산자단체로서 수출 등을 통한 국내 수급조절기능을 실시하는 조직
- 참여농가의 수와 재배면적이 규모화 되어 있는 조직
- 신청품목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GAP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조직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GAP 위생시설·장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신청대상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신청자 명단과 사업진단계획 및 일정을 수립해 시·도, 농관원, 유통공사에 통보

- 시·도지사는 농관원, 유통공사와 합동으로 사업성진단 실시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으로 사업성진단을 실시
 -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경우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99호) 제48조의 요건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사업성 진단을 실시
 - 사업성진단서는 GAP 위생시설·생산기반지원사업 심사기준표(별지 제3호 서식, 작목반의 소규모시설은 별지 제3-1호 서식)의 심사항목에 따라 시·도에서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단, 수지전망은 향후 3개년 분석)
 - 사업성 진단에 참여한 진단자(시·도, 농관원, 유통공사)는 진단서 하단에 직위·성명을 기재 서명하여야 함.
 - 행정기관(시·도, 시·군)은 사업성진단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진단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현지 확인 방문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 진단에 차질 없도록 함.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성 진단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함(별지 제3호 서식), (작목반 : 별지 제3-1호 서식)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별지 제4호 서식)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성진단결과 반영현황(별지 제5호 서식)을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우선순위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지원액포함)를 조정하여 시·도에 통지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신청자 명단과 사업진단계획 및 일정을 수립해 시·도, 농관원, 유통공사에 통보
- 시·도지사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우선순위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지원액포함)를 조정하여 시·도에 통지

농수산물유통공사

- 시·도지사, 농관원과 합동으로 사업성진단 실시
 - 사업성진단 결과를 시·도, 농관원,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함

(별지 제3호 서식, 작목반 : 별지 제3-1호 서식)

- 심사결과(별지 제4호 서식)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별지 제5호 서식)을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별지 제6호 서식)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변경 절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수산식품부 보고)
 -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는 세부시행계획 승인, 승인결과 및 월별공정계획(별지 제6호 서식)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월별공정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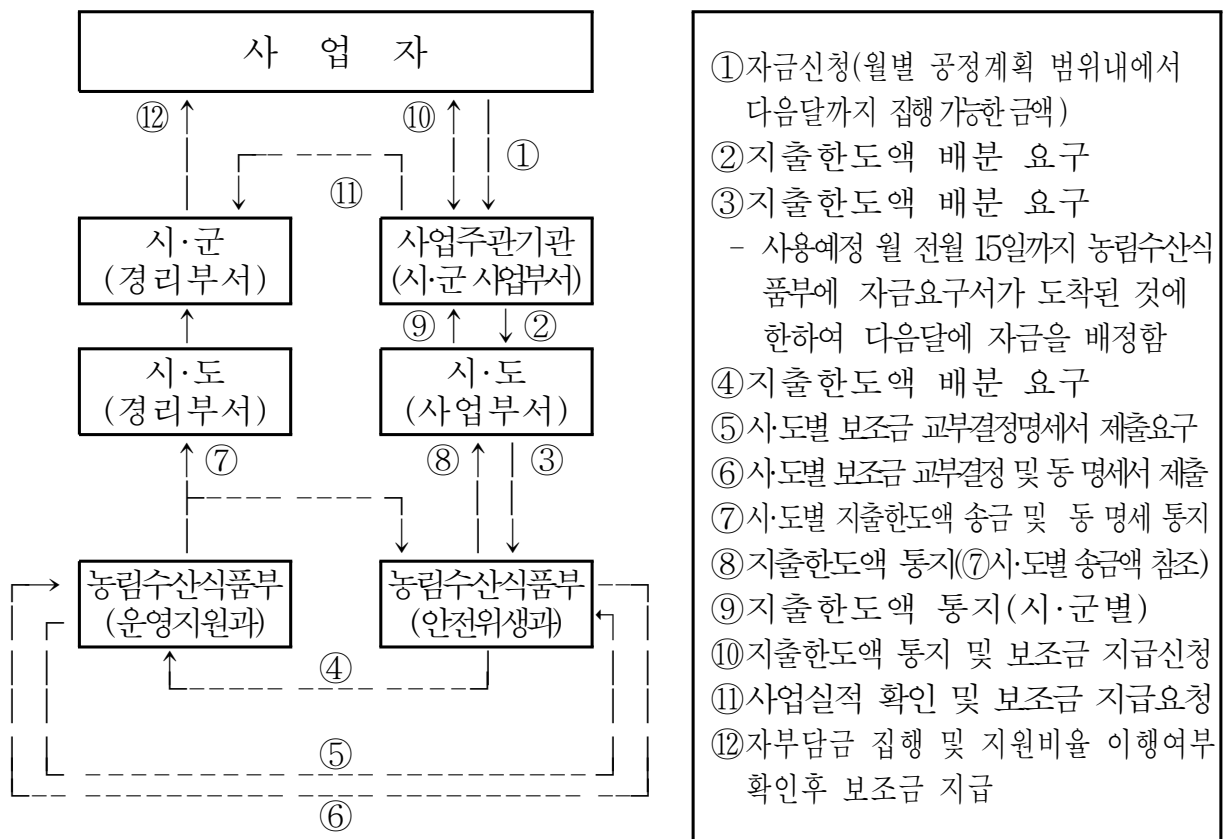
사업자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4. 자금배정단계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보조금집행자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시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리비는 사업비 정산시 시장·군수 책임 하에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보조금에서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함
-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보조금 집행절차>



시·도(지자체)

- 보조금집행자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함.
- 생산·유통시설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생산·유통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는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유통정책과)에서 실시하며, 종합평가지 시·도는 협조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사후관리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에 준하여 관리.

사업자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함.

- 생산·유통시설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GAP 시설보완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감독 등에 관한 내용은 한국식품연구원에 자문을 요청하여 건설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점검 실시
 - 세부 사업별 결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예산집행내역 점검

《제재》

지자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시)

6. 성과측정단계

- GAP인증기관에 제출한 인증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여부 측정
 - 농산물품질관리원은 GAP인증기관별 인증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GAP제도 사업 평가회 추진
 - 농림수산식품부, 농진청, 농관원, 지자체, 인증기관 및 GAP관련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GAP제도 평가회 실시
 - GAP제도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 모색

《환 류》

-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익년도 추진계획에 반영

8. 기 타

- 이 지침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시행
- 지원내용 세부사업추진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1년도 사업 계획 통보 및 사업신청(상반기 중)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011년 3월말까지
- 신청자격 : 2010년도 신청자격과 동일

3 기타사항

- 본 지원사업 이외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을 통해서도 GAP위생시설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등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참조
-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사업추진요령은 2010년 사업내용을 참조바라며,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GAP 시설보완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다. 전년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신청조직 처리물량 (전국유통량)	농산물 인증 (톤)	상표명	주 요 출하처	출 하 형 태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 (주) - 상표명 : ○○ 딸기, ○○ 사과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 출하형태 : 전처리형태(세척, 신선편이 등), 선별, 예냉, 소포장 등

라.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 기	기타공동 시설 및 장비
동 m ² ()	동 m ² ()	동 m ² ()	동 m ² ()	동 m ² ()	조 ()	()

(주)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시설설치계획

가.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국고용자	지방교부금	사료사균비	자부담
사업비 (시설·장비 등)						

(주)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나.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제작회사	처리대상 품목
		천원	백만원	-		
○ 시설·장비						
-전처리작업장	m ²			처리능력/시간		
-세척기	조			"		
-위생소독실	m ²			"		
-부산물처리시설	m ²			"		
-물류기기세척 시설	m ²			"		
-작업장격리 및 내부안전시설	m ²			"		
-식품오염물질 처리시설	m ²			"		
-세척수정수 및 멸균시설	m ²			"		
-기타시설·장비				"		

(주) GAP 위생시설·장비설치 기본설계서(안) 첨부(기기제원 제시)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설계보완 :
- 착 공 :
- 준 공 :

4.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지역(시·군)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원 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 비율(%)			전처리 비율(%)		저온창고 평균보관 물량/일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전처리	무처리	

-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자부담금 ○ 운영비 - 매취자금 - 관리비 등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매취판매액 -선별포장수입 ○ 기타		○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관리비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바. GAP사업 참여 및 품질관리 계획

5. 기 타

-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용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기사항

(별지 제2호 서식)

GAP 시설보완사업 신청자 명세서

(시·도)

신청자	사군	구분	주요 시설·장비									사업비	주요품	비고
			전처리작업장	세척기	위생소독실	부산물처리시설	물류기기세척시설	작업장격리내부안전시설	식품오염물질처리시설	세척수정수 및 멸균시설	기타시설·장비			
		기존	m ²	조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천원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주)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 비고란에는 “신규” 또는 “확장” 중 하나를 기재하되, “확장”의 경우는 최초설치 연도 및 추가설치 연도를 ()안에 기재. 예 : 확장('95, '97, '99)

(별지 제3호 서식)

GAP 시설보완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APC)

□ 사업신청 조직명 :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1.GAP 참여도 (15점)	GAP인증 농가수	15	12	9	5	A : GAP인증농가수 41명 이상 B : GAP인증농가수 26~40명 C : GAP 인증농가수 11~25명 D : GAP 인증농가수 10명 미만	
2.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 (15점)	'08년산지유통 종합평가결과	15	12	9	5	A : 상위 25%이내 사업자 B : 상위 26~50%이내 사업자 C : 상위 51~75%이내 사업자 D : 상위 75% 이하 사업자, 평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	
3.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15점)	3-1.규격상품화 참여정도	5	4	3	2	A : 조직구성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 이상 B : 조직구성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 출하량 3,000-5,000톤 미만 C : 조직구성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 출하량 1,000-3,000톤 미만 D : 조직구성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톤 미만	
	3-2.공동사업 실적	10	8	6	4	A : 포장재 지원사업에 따른 농관원 평점이 90점 이상(최우수조직) B : 80-90점 미만(우수조직 중 상) C : 70-80점 미만(우수조직 중 하) D : 70점 미만(일반조직, 미분류조직)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4.사업수행 능력 (30점)	4-1.경영구조 및 경영관리 능력	10	8	6	4	A : 평점 20점 B : 평점 16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미만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10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정리상태 우수	10
						분사형 책임경영	8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중 한가지만 우수	8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6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미흡	6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4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불량	4
	4-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 인력	5	4	3	2	A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4-3.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A : 평점 20점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4억원 이상	10	150% 이상	10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8	100% 이상 150% 미만	8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	50% 이상 100% 미만	6	
2억원 미만	4	50% 미만	4						
4-4.자부담 능력	10	8	6	4	A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을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를 초과하고, 앞으로의 조달계획이 합리적임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미만이나,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합리적임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하며,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불투명함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5.사업계획의 적정성 (25점)	5-1.투자의 효율성	5	4	3	2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text{※투자의 효율성(\%)} = \frac{\text{영업이익}}{\text{투자비}} \times 100$																				
	5-2.입지조건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확보 여건)	10	8	6	4	A : 평점 15점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0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10점 미만																				
						<table border="1"> <thead> <tr> <th>경합 보완성</th> <th>평점</th> <th>교통여건</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 <td>유사시설이 없고 물량확보 양호</td> <td>10</td> <td>양호</td> <td>5</td> </tr> <tr> <td>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td> <td>7</td> <td>보통</td> <td>3</td> </tr> <tr> <td>유사시설이 있고 물량확보 곤란</td> <td>4</td> <td>미흡</td> <td>0</td> </tr> </tbody> </table>	경합 보완성	평점	교통여건	평점	유사시설이 없고 물량확보 양호	10	양호	5	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7	보통	3	유사시설이 있고 물량확보 곤란	4	미흡	0				
						경합 보완성	평점	교통여건	평점																	
유사시설이 없고 물량확보 양호	10	양호	5																							
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7	보통	3																							
유사시설이 있고 물량확보 곤란	4	미흡	0																							
5-3. 예상 가동율	5	4	3	2	A : 평점 10점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text{※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table border="1"> <thead> <tr> <th>선과기 가동일수</th> <th>평점</th> <th>저온창고 가동일수</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 <td>150일 이상</td> <td>5</td> <td>300일 이상</td> <td>5</td> </tr> <tr> <td>120일 이상 150일 미만</td> <td>4</td> <td>250일 이상 300일 미만</td> <td>4</td> </tr> <tr> <td>100일 이상 120일 미만</td> <td>3</td> <td>200일 이상 250일 미만</td> <td>3</td> </tr> <tr> <td>100일 미만</td> <td>2</td> <td>200일 미만</td> <td>2</td> </tr> </tbody> </table>	선과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150일 이상	5	300일 이상	5	120일 이상 150일 미만	4	250일 이상 300일 미만	4	100일 이상 120일 미만	3	200일 이상 250일 미만	3	100일 미만	2	200일 미만	2	
선과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150일 이상	5	300일 이상	5																							
120일 이상 150일 미만	4	250일 이상 300일 미만	4																							
100일 이상 120일 미만	3	200일 이상 250일 미만	3																							
100일 미만	2	200일 미만	2																							
5-4.사도지사 조정	5	4	3	2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4개소 이하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가점부여(각 5점) : ①공동마케팅조직,사업연합,산지유통전문조직의 시설설치 및 보완시, ②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 첨부, ③타 조직 유통시설·장비에 대한 양수 실적이 있는 조직, ④농산물품질관리사를 1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조직						가 점																				
						기본점수+가산점 합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지원가	지원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 사업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별지 제3-1호 서식)

GAP 시설보완사업 소규모 신청자 심사기준표

□ 사업신청 조직명 :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1.GAP 사업 여건 (25점)	1-1.GAP인증 농가수	10	8	6	4	A : GAP인증농가수 10명 초과 B : GAP인증농가수 6~10명 C : GAP 인증농가수 1~5명 D : GAP 인증농가수 없음	
	1-2.유통시설 운영 실적 (선별장, 선 별기, 예냉실, 저온저장고 등)	15	12	9	6	A : 4종 이상 B : 3종 C : 2종 D : 1종	
2. 자부담 능력(15점)		15	12	9	6	A : 자본조달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계획서가 제출됨 B : 자본조달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나, 계획서 미제출 C : 자본조달 계획은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이지 못함 D : 자본조달 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음	
3. 사업추진 적정성 (45점)	3-1. GAP시설 보완 적정성 *농관원현장 진단의견서에 의한 점수 부여	15	12	9	-	A : 시설설치가 여건에 맞게 적정 설계되어 있으며, 합리적인 사업추진 예상 B : 시설설치가 여건에 맞게 적정 설계되어 있지 않거나, 합리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C : 시설설치가 여건에 맞게 적정 설계되어 있지 않으며, 합리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3-2.입지조건 (교통여건 및 물량확보 여건)	15	12	9	6	A : 평점 15점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0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10점 미만				
					경합 보완성		평점	교통여건	평점
					물량확보 양호		10	양호	5
					물량확보 곤란		7	보통 미흡	3 0
3-3. 예상 가동율	15	12	9	6	A : 평점 10점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과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150일 이상		5	300일 이상	5
					120일 이상 150일 미만		4	250일 이상 300일 미만	4
					100일 이상 120일 미만		3	200일 이상 250일 미만	3
					100일 미만 미보유		2	200일 미만 미보유	2
4.시·도지사 조정(15점)	15	12	9	6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4개소 이하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합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가점부여(각 10점) : ①공동마케팅조직, 사업연합, 산지유통전문조직 사업 참여 여부(계약재배 혹은 사업협약) ②상품 출하 시 브랜드 사용					가	점			
					기본점수+가산점		합계		

<p>< 평가자의 종합의견 ></p>					
지원가	지원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 사업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별지 제4호 서식)

GAP 시설보완사업 신청자 심사결과

(시·도)

순위 (평점)	신청 자	사 군	구 분	주요 시설									사 업 비		주요 품목
				전처리 작업장	세척기	위생 소독 시설	부산물 처리 시설	물류기 기 세척 시설	작업장 작다내 부안전 시설	식품오 염물질 처리 시설	세척수 및 정수 및 멸균 시설	기타 시설 장비	신청 액	조정 액	
1 (00.0)			신청	m ²	조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천원	천원	
			조정											< >	
2 (00.0)			신청												
			조정												< >
3 (00.0)			신청												
			조정												< >
4 (00.0)			신청												
			조정												< >

(주) ○ 조정액에는 규정된 지원비율 및 자부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비와 별도로 < >안에 추가부담액을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신청자 심사시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

(시·도)

사업자 (법인명)	사업성 진단기관	사업성 진단 주요 내용	신청자 심사시 진단결과 반영내용	비 고
		<문제점> <보완사항>	<반영내용>	

※ 사업규모, 사업비 조정내역은 반드시 기입.

- 진단결과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 및 반영내용 기입.
- 사업여건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별지 제6호 서식)

GAP 시설보완사업 월별 공정계획서

사업자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시·도 시·군

		구분	월 별 공 정 계 획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착 공 전	설계	공정				설계 보완								
		금액 (백만원)				()								
	인허가	공정				건축허 가신청	건축허 가완료							
		공정 계약					공사계약 체결	제작계약 체결	구매계약 체결					
착 공 후	건축 공사	공정					착공	%	%	%	100%			
		금액 (백만원)							()	()	()			
	전기 공사	공정					착공	%	%	%	100%			
		금액 (백만원)							()	()	()			
	설비 공사	공정						착공	%	%	100%			
		금액 (백만원)								()	()			
구매	공정									납품				
	금액 (백만원)									()				
제작	공정							착수	%	100%				
	금액 (백만원)									()				
사업 비계	공정				%	%	%	%	%	100%				
	금액 (백만원)					()	()	()	()	(2,000)				

- (주) ○ 자부담금을 착수시와 50% 공정시 각각 반씩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음(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2항)
- 공정은 누계공정이며, 금액란의 ()안은 누계금액임.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함.

(별지 제7호 서식)

총 공통 - 9

2007년 GAP 시설보완사업 정산 보고

시·군	사업자명 (대표자명)	(지역)전화번호	사업장 위 치	사 업 규 모				비율 (B/A) %
				사업계획		사업실적		
				시 설 (A)	장비별 수량	시 설 (B)	장비별 수량	
				㎡		㎡		%

사 업 비 (천원)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집 행 계 획				집 행 실 적 정 산				비율 (B/A)		
계	국고 보조 (A)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보조 (B)	지방비	자부담			
									%	

사 업 세 부 명 세										
시설·장비류(평, 개소수)										
계	전처리 작업장	세척기	위생 소독실	부산물 처리시설	물류기기 세척시설	작업장 격리 및 내부안전 시설	식품오염 물질처리 시설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	기타시설 ·장비

(주) 사업세부명세는 생산·유통시설 등의 GAP위생시설·장비에 한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입니다.

①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치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 장 김홍우 사무관 박승준	02-500-1946 02-500-1957

I. 사업개요

1. 목 적

- 천일염 수급 조절을 통한 생산 현지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생산자 개인이 각각 수행해온 수집, 저장, 선별, 유통 시스템을 규모화, 집단화, 현대화하여 처리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 천일염 중장기 저장·숙성을 통한 식품안정성 확보 및 수출 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천일염의 수출실적 (천\$)	513	534	399	466	익년 6월	천일염 수출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	-	3,600	5,400	7,200
○ 저장·선별시설지원	-	-	3,600	5,400	7,200
- 보조	-	-	1,440	2,160	2,880
- 용 자	-	-	-	-	-
- 지방비	-	-	1,080	1,620	2,160
- 자부담	-	-	1,080	1,620	2,160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공기업 및 천일염 영농조합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기업 및 천일염 영농조합법인 등
 - 천일염 관련 전문 유통 조직을 반드시 갖추고 있거나, 갯출 계획을 수립되어 있을 것
 -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사업 참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

3. 지원대상

- 지원시설 : 천일염 저장·선별·분쇄시설, 기계·운반 및 부대시설(부지 매입비 제외)
- 설치규모 : 천일염 8,000톤 이상 저장가능 및 선별·분쇄 등 작업 공간 확보가 가능한 면적(1,980㎡)이상으로 시설하되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가감 가능
- 시설기준
 - 시설 부지는 집단화된 염전과 인접한 한 곳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함
 - 시설 내부는 식용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 및 소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간수 배출이 가능하고, 자연건조가 되도록 시설하고 건물 내 상층 부분은 자동운반 기계 설치 등이 가능하여야 함
 - 선별·분쇄·포장 작업을 위해 이물질선별기, 입자선별기, 분쇄기, 자동계량기, 포장기 등을 갖추어야 함
 - 저장·이송 작업을 위한 지게차, 이송 컨베이어, 카고 크레인 등을 갖추는 것
 - 작업공간은 운반 및 작업이 용이하도록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이동식 칸막이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저장 공간은 품질별로 저장 가능하도록 이동식 칸막이 등으로 구분을 하여 시설하여야 함
 - 시설관리 및 위생적 작업을 위해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부지 매입비는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되며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및 지원 조건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단위:백만원)

사업명	지원대상	단가	국고보조	지방비	자담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공기업 및 천일염 영농 조합법인 등	1,800	720	540	540

- 2010년도 지원 사업비 현황

(단위:개소,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3	5,400	2,160	1,620	1,620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사업지침 및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적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3월말 까지)
 - 시장·군수는 시설 예정부지가 건축법, 환경보전법, 도시계획법, 기타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사전 확인 후 필요한 방안 조치 강구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기업화·규모화 가능성, 운영자금 확보 능력, 지역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량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확정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4월말까지)

사업자

-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매년 2월말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을 토대로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자에 대하여 생산 지역별 배분기준과 선정기준에 따라 시·군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계획 및 세부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계획 및 세부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시장·군수에 통보

사업자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사업계획서(별지 1호 서식) 및 세부 사업시행계획(월별 공정계획서 포함)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대상자는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시행

《부지선정 및 시설물 설치공사》

사업자 및 지자체

(1) 부지선정

- 염전의 특성상 약한 지반을 감안하여 지반이 견고하고 진입로 등 접근성이 좋은 지역
- 집단화된 염전과 인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가 가능한 지역
-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충분한 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

(2) 건축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가. 설 계

- 시장·군수는 적절한 설계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건설 법령상 설계 유자격자 선정 및 설계서 이용이 원칙
- 시장·군수는 국내 및 해외유통망을 갖춘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천일염법인 사업자에게는 투자협약 기업들의 기술 등을 접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 적용 제외

나. 시 공

- 해당분야 관련법에 의한 면허를 가진 자(일반 또는 전문건설)로서 시공 능력, 시공실적, 기술자 확보,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참여 허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 시설별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
- 시장·군수는 적절한 시공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경쟁 입찰 적용 원칙
 - 시장·군수는 국내 및 해외유통망을 갖춘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천일염법인 사업자에게는 투자협약 기업들의 기술 등을 접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 적용 제외

다. 장비 설치

- 기기의 구조, 성능, 조작의 난이도, 안정성 등 공공기관의 형식 검사에 합격된 모델을 선정하고 설치 후 반드시 성능검사 이행

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업체 또는 감독공무원 지정 선택 운영

- 시장·군수는 감리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경쟁 입찰 실시

마. 시장·군수는 감리업체를 선정한 경우 감리가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준공 검사 시 입회하여 설계서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선정 적합여부, 설치 및 시설 적정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설치 및 시설규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공사 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 점검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1회 이상 현지 점검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시설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적정 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6월~7월, 10월~11월)
 - 점검방법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농산물유통공사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보조금 집행상황 등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정산서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3호 서식]의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사업검정 및 정산서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감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천일염 산지종합리장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천일염 품질관리, 상품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통한 천일염 유통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시설설치 완료 익년부터	10년간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10년간 관리 의무 - 사업자는 목적에 위배되는 시설 용도변경, 시설양수 불가. 단, 불가피한 사유발생시는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보고서식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시·도지사		별지 1호 서식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별지 2호 서식
사업비 정산 실적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별지 4호 서식

6. 성과측정단계

- 과거 3개년 천일염 수출수량 대비 10% 증가한 수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관세청 통계 발표자료를 근거하여 성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매년 운영실적 평가
 - 평가원칙 : 외부 전문컨설팅 등 측정의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 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등)
 - 주요평가대상 : 매출액,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절차 : 운영주체가 사업관리 주체(시장·군수)에 의뢰하여 실시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 측정기간 : 매 익년 1월 ~ 3월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반영
 - 사업량 과다 이월 및 반납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감 배정
 - 사업량 배정 미 이월하고 연내 추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추가 배정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천일염산지종합리장 수요 조사
- 천일염산지종합리장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천일염산지종합리장 사업계획서(별지 1호 서식)수립하여 작성
- 사업참여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방법과 시기, 양식, 제출기관, 제출방법 등을 제시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3호 서식]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설치사업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 기관 :
 2. 작성년 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생년월일)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자담
	계	국고 보조	지방비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타
							거래처, 전화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
	소계						
	소계						
합계							

〈작성요령〉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 등)
 -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작업일지, 기타 사업추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한 상세하게 구분

[별지 4호 서식]

사업비 집행정산 실적보고

〈사업명 : 사업〉

(년 월말 현재)

시 군	사 업 자	①사업계획						②사업추진상황					③사업비 집행상황							비 고	
		사업량			시설능력			부 지 확 보	건 축 허 가	착 공 일	공 정 률	준 공 일	계획			실적(집행·정산)					
		부 지	건 물	기 계	저 장	숙 성	가 공						계	국 고 보 조	지 방 비	자 부 담	계	국 고 보 조	지 방 비		자 부 담
계		m ²	m ²	종	톤	톤	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천 원				천 원				

○ 시설능력 : 저장·숙성은 연간처리능력, 가공은 1일 8시간 기준 생산능력

※ 사업추진 부진 및 문제점 발생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첨부

② 염전 생산시설(소금창고, 해주) 개선 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 장 김홍우 사무관 박승준	02-500-1946 02-500-1957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팀 장 안봉훈 차 장 오영석	02-2080-6781 02-2080-6785
수협중앙회	수산금융부	팀 장 송운용 과 장 김수용	02-2240-8520 02-2240-8525

I. 사업개요

1. 목 적

-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 미흡으로 염전개발 초기에 설치되어 노후화된 소금 창고, 해주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 도모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천일염의 수출실적 (천\$)	513	534	399	466	익년 6월	천일염 수출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	-	2,680	3,000	6,920
○ 창고·해주시설개선	-	-	2,680	3,000	6,920
- 보조	-	-	-	-	-
- 용 자	-	-	1,876	2,100	4,844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804	900	2,076

II. 2010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천일염 생산자, 천일염 영농조합법인, 천일염 작목반, 천일염 일반단체
 - 천일염 생산을 위해 현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자 선정 원칙
 - 임차 생산자의 경우 임대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선정 가능

3. 지원대상

- 지원시설 : 시설 지붕 및 바닥, 벽면, 기둥 시설 전부
- 설치규모
 - 신축 : 소금창고는 생산면적에 따라 1년간 보관이 가능한 규모, 해주는 1년간 생산이 가능한 규모로 시설하되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가감 가능
 - 개선 : 일부 개·보수를 통해 식품안정성 및 품질확보가 가능한 소금창고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개선규모 결정
- 소금창고 시설기준
 - 신축 : ①생산 시기별(봄·가을, 여름)로 천일염 저장이 가능하도록 창고 내부를 구분하거나 구분저장이 가능한 공간 또는 시설을 확보하여야 함
②시설은 식용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소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간수 배출이 가능하고, 자연건조가 되도록 시설하고 자동저장·운반 기능을 포함하여야 함
 - 개선 : 소금창고의 개·보수 시에는 식용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소재)를 사용하여야 함
- 해주 시설기준
 - 지붕 및 기둥은 식용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 및 소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함수 유입·배출 설비는 인체에 무해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용자 70%, 자부담 30%
- 지원(용자) 조건 : 금리 3%,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 용자취급기관 : 농협, 수협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소금창고 : 국고 84,000천원 이하(120,000천원의 70%)

- 해주 : 국고 5,600천원 이하(총사업비 8,000천원의 70%)
 - 2010년도 지원 사업비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용자	지방비	자담
소금창고 시설개선사업	17	2,040	1,428	-	612
해주 시설개선사업	120	960	672	-	288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추진방향, 사업물량,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자금지원 조건, 자금용도 등을 반영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하여 통보

시·도(시·군)

- 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10년 1월
 -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또는 반상회보 등재 등
- 사업 신청서 접수 : 2010년 2월
- 시·도지사는 시·군별 사업 신청 접수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용자 취급기관별 사업대상자를 구분하여 농협 및 수협에 각각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사업신청 시 용자 취급기관을 사전 결정토록 조치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확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시설물 공사》

사업자 및 시·도(시·군)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 가.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표준 설계도서 제공을 요청할 경우 표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나.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경쟁 입찰에 의한 시공사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현지 및 시공 여건상 사업자 직접 시공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직접 추진 가능
- 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 라.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계획서 또는 설계서 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 마. 사업자는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기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을 위해 사업 완료 확인서를 시장·군수로부터 받아야 함

4. 자금 배정 및 집행단계

시·도(시·군)

- 시·도(시장·군수)는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 대상자에게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융자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7항에 따라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융자 취급기관에 통지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실적에 따른 기성률을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사업추진확인서(기성확인서)를 발급하고, 융자 취급기관에 통지

융자 취급기관

- 융자취급기관은 해당 사업시행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실행

- 용자취급기관의 용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특회계용자업무지침」,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등에 의함
- 용자취급기관은 용자금 대출실적을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분기 익월 10일 까지 통보하여야 함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구에서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용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규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초 금융기관에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실제 자금 대출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시행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 인출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공정율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다만, 해당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 관리주체

- 시·도지사는 사업 시·군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현지점검 이행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현지점검 이행

《제 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 부여

《사업비 정산》

용자 취급기관

- 용자취급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용자 지원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

《사후관리》

사업 관리주체

- 시장·군수는 완료 사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과거 3개년 천일염 수출수량 대비 10% 증가한 수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관세청 통계 발표자료를 근거하여 성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품질별 생산·저장 만족도 평가
 - 주요 평가대상 : 품질별 생산량, 출하량, 매출액 등 성과
 - 평가절차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고 시·도지사가 설문 조사 등 실시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 측정기간 : 매 익년 1월 ~ 3월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요구사항 반영

IV. 2011 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
- 사업신청 : 생산자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신청서류 : 염전 생산시설(소금창고, 해주)개선사업 신청서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③ 염전바닥재 개선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 장 김홍우 사무관 박승준	02-500-1946 02-500-1957

I. 사업개요

1. 목 적

- 노후화된 염전 바닥재를 식품에 적합한 친환경소재로 교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 도모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P)		
▪ 천일염의 수출실적 (천\$)	513	534	399	466	익년 6월	천일염 수출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	-	-	3,000	12,000
○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	-	-	-	3,000	12,000
- 보조	-	-	-	900	3,600
- 용 자	-	-	-	-	-
- 지방비	-	-	-	900	3,600
- 자부담	-	-	-	1,200	4,800

II. 2010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천일염 생산자, 천일염 영농조합법인, 천일염 작목반, 천일염 일반단체
 - 천일염 생산을 위해 현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자 선정 원칙
 - 임차 생산자의 경우 임대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선정 가능

3. 지원대상

- 지원시설 : 염전 바닥재 교체
- 설치규모 : 1어가 당 염전 면적의 20% 이내
- 바닥재 자재 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식품공전”의 「7.식품기구 및 용기·포장재의 기준 규격」에 적합하도록 하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식품공전”의 「7.식품기구 및 용기·포장재의 기준 규격」에 적합 할지라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i-(2-ethylhexyl)-phthalate, DEHP, 일명 DOP)를 사용한 자재는 사용(지원) 불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염전바닥재개선 지원	100ha	3,000	900	900	1,200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추진방향, 사업물량,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자금지원 조건, 자금용도 등을 반영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하여 통보

시·도(시·군)

- 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10년 1월
 -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또는 반상회보 등재 등
- 사업 신청서 접수 : 2010년 2월
- 시·도지사는 시·군별 사업 신청 접수 결과를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물식품부

-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확정하여 농림수산물식품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시설물 공사》

사업자 및 지자체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 가.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표준 설계도서 제공을 요청할 경우 표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나.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시공사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현지 및 시공 여건상 사업자 직접 시공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직접 추진 가능
- 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 마.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계획서 및 설계서 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4. 자금 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수산물식품부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선정 적합여부, 설치 및 시설 적정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설치 및 시설규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공사 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 관리주체

- 시·도지사는 사업 시·군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현지점검 이행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현지점검 이행

〈제 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 부여

《사업비 정산》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정산서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1호 서식]의 염전 바닥재 사업검정 및 정산서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사후관리》

사업 관리주체

- 시장·군수는 완료 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인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과거 3개년 천일염 수출수량 대비 10% 증가한 수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관세청 통계 발표자료를 근거하여 성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생산·품질·판매 만족도 평가
 - 주요 평가대상 : 생산량, 품질, 판매 등 성과
 - 평가절차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고 시·도지사가 설문 조사 등 실시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 측정기간 : 매 익년 1월 ~ 3월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요구사항 반영

IV. 2011 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
- 사업신청 : 생산자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물식품부
- 신청서류 : 친환경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 신청서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1호 서식]

천일염 바닥재 개선사업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 기관 :
 2. 작성년 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생년월일)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 보조	지방비	자담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타
							거래처, 전 화번호, 기 타 필요 한 사항
	소계						
	소계						
합계							

〈작성요령〉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 등)
 - 사업추진 중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작업일지, 기타 사업추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한 상세하게 구분

④ 천일염 포장재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 장 김홍우 사무관 박승준	02-500-1946 02-500-1957

I. 사업개요

1. 목 적

- 천일염 포장재 지원으로 저질의 수입산 천일염의 국산둔갑 방지 등 천일염 안전성 제고 및 고급화 추진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천일염의 수출실적 (천\$)	513	534	399	466	익년 6월	천일염 수출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	-	-	666	1,333
○ 천일염포장재지원	-	-	-	666	
- 보조	-	-	-	200	400
- 용 자	-	-	-		
- 지방비	-	-	-	200	400
- 자부담	-	-	-	266	533

II. 2010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천일염 생산자, 천일염 영농조합법인, 천일염 작목반,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3. 지원대상

- 지원내역 : 천일염 포장재 지원
 - 소규모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 box형 포장재(20kg 이하 규격) 제작
 - 대규모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 box형 포장재(20kg 이하 규격) 및 2중코팅 고급 포대형 포장재 (20kg 이하 규격) 제작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사업비 현황

(단위 : 천개,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천일염포장재지원	2,100	666	200	200	266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추진방향, 사업물량,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자금지원 조건, 자금용도 등을 반영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하여 통보

시·도(시·군)

- 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10년 1월
 -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또는 반상회보 등재 등
- 사업 신청서 접수 : 2010년 2월
- 시·도지사는 시·군별 사업 신청 접수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확정하여 농림수산식품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포장재 제작》

사업자 및 지자체

〈포장재 디자인 및 규격 등〉

- 시장·군수는 소규모 영농종합법인, 작목반에게 지원하는 포장재는 해당지자체에서 디자인, 규격 등을 확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
 - 위 사항이 불가능한 지자체는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별로 디자인, 규격 등을 확정하여 지원
- 천일염 포장자동화 설비, 기타 관련설비 등이 시설되어 대규모로 처리 가능한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은 디자인, 규격 등 자체 선정 가능

〈포장재 제작업체 선정 등〉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포장재 제작업체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사업지침 대로 완료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4. 자금 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규모 등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 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 관리주체

- 시·도지사는 사업 시·군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현지점검 이행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현지점검 이행
- 〈제 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 부여

《사업비 정산》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정산서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1호 서식]의 포장재 지원 사업검정 및 정산서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사후관리》

사업 관리주체

- 시장·군수는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

6. 성과측정단계

- 과거 3개년 천일염 수출수량 대비 10% 증가한 수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관세청 통계 발표자료를 근거하여 성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판매 만족도 평가
 - 주요 평가대상 : 포장재 품질, 천일염 판매 등 성과
 - 평가절차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고 시·도지사가 설문 조사 등 실시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 측정기간 : 매 익년 1월 ~ 3월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요구사항 반영

IV. 2011 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
- 사업신청 : 생산자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신청서류 :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1호 서식]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 기관 :
 2. 작성년 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대표자) 주소·성명 : (생년월일)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 보조	지방비	자담

○ 세부명세

포장재 형태 (box형, 포대형)	규격 (가로*세로)	포장 중량 (20kg, 10kg · · ·)	제작수량 (개)	제작단가 (원)	금액 (원)	기타
	소계					
	소계					
합계						

〈작성요령〉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사업비 합계와 일치)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 등)
 - 포장재 인계 운송비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
- 포장재 디자인 도안 및 완성사진, 기타 사업추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Ⅱ.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	과장 김응본 사무관 황재윤 주무관 최경철	02-500-2024 02-500-2031 02-500-2032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팀	팀장 정성남 차장 김창국	02-6300-1171 02-6300-1173
농협중앙회	자금지원팀	차장 윤원근	02-2080-6782

I. 사업개요

1. 목적

-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 외국산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주시설, 관수관비시설 등 과수농가의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경쟁력 확보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04년부터 '17년까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등을 통해 고품질 과실 생산체계를 확립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을 기준연도('04년) 대비 126%까지 확대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u> 	126		신규	121	2011.1	(10a당 평균수량 / 기준연도('04년) 10a당 평균수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372,216	156,036	156,036	159,756	827,612
- 보 조	93,304	39,009	39,009	39,939	206,903
- 용 자	85,316	23,405	21,600	18,900	99,313
- 지방비	93,304	39,009	39,009	39,939	206,903
- 차부담	100,292	54,613	56,418	60,978	314,493

* '10년부터 고당도과실생산자재지원사업은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통합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약정한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공동브랜드 및 GAP 등 참여농가 우선지원
- 지원대상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자
- 농업종합자금지원시스템에 의해 지원 가능한 농가 우선지원
 - * 심사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한 농가에게는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의견제출 기회 부여

[선정기준 미달 농가에 대한 재심사]

- ◆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시·군에 심사위원회를 두어 재심 요청이 가능하도록 체제 구축
 - 사업성취가능성, 신용도, 기술,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 후 대출기관에 통보
 - * 심사위원회 : 과수발전협의회, 농정심의회 활용 또는 행정·지도기관·관련단체·독농가 등으로 구성

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

- 고품질생산 : 우량품종 갱신, 지주시설, 비가림 시설 등
- 생산비,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재해예방 : 방풍시설, 조수방제시설, 관수시설
-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 기타 : 시설포도, 시설과채류의 시설 개보수 등

* 기타 시설과채류의 시설개보수 등은 2011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시사업]

- 우량품종갱신,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방풍시설, 지주시설, 시설하우스 개보수 등
-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전승인 필요(붙임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참고)

[지원제외 대상]

- ①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등)
- ②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분무기, 온풍기, 예초기 등)
- ③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 ④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 ⑤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 ⑥ 2004년 5월 31일 이후 조성한 과원 및 시설포도(신규과원) 단, 기존과원을 대체하는 과원은 지원 가능(대체과원)
- ⑦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 * 붙임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참고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보조 50%(국고 25, 지방비 25), 용자 30, 자부담 20
 - 국고용자 상환조건 : 연리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자금지원팀)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붙임” 참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9월말)

농 가

- 사업신청서('08지침 별지 1-1호 서식)와 출하약정서('08지침 별지 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자체 및 시행주체에 제출(전년도 10월말)
- 용자 희망농가는 거래농협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액 확인

사업시행주체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은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농가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사업량, 중도포기자 등을 감안하여 추천)(전년도 11월말)
 -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 단, 천재지변 등 과수발전협의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지침에 의거 용자금의 3천만원을 넘는 사업은 대출기관에서 사전심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대출기관은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
 - 3천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신청자가 대출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사업시행주체에서 추천한 농가의

우선순위 적정성(선정순위 준수 등) 등을 검토한 후 과수발전협의회(농정 심의회 대체 가능)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과수발전협의회 사업자 선정 심의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예) 농업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

* 선정절차 관련규정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3조 내지 제25조 참조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농림수산정보시스템 (AgriX)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영농철 이전에 공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1월말까지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개시 통보를 완료

<선정 순위>

○ 1 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공동 선별·공동 계산하는 출하약정을 한 농업인

○ 2 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출하권 위임을 장기계약 체결한 농업인

①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농가는 지원제외

② 대상자 선정 순위 준수(생산량 대비 출하량 비율을 우선기준으로 판단)

③ 심사기준표는 표준(안)을 활용하여 지역별, 사업별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

④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

예) A,B 농업인이 각각 소유한 500㎡의 포도과원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각각 500㎡을 신청 ⇒ A,B 농가에 각각 250㎡씩 나눠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선순위가 빠른 농업인에게 필요사업량 500㎡을 모두 지원(나머지 농가는 차기 지원)

⑤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미개시, 포기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최대한 사업대상자 선정 후보자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되 사업대상자 기준 30% 전후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⑥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농가와 사업을 주어진 기간 내에(시군별로 사업완료 기간을 정함) 완료하지 않는 농가는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됨. 단, 천재지변 등 과수발전협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⑦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다만, 자부담금 우선집행(시공업체 계약금, 자재 구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개시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를 생략할 수 있음

- ⑧ 선정 취소(미개시자 및 미 완료자)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함. 또한 당해연도에 지원을 받지 못한 예비대상자는 가급적 다음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예고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 예측성 강화
- ⑨ 참여조직별로 사업량을 분배하여 추진 금지
 - 참여조직은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등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
 - 시행주체가 우선순위선정, 유통업무 등을 수행하여 유통규모화 도모
- ⑩ 품종갱신 사업은 농촌진흥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농가에 대해 우선 선정

<요건 확인>

- 관련기관 또는 농업인 등으로부터 계약체결, 이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농림수산물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G4C, 토지대장 등을 통해 확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 여건에 맞도록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 작성하여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세부 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지시
 - 시·도지사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수산물식품부 제출

사업추진 컨설팅

- 전문가협의체 등을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 수립·보완 및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내용 : 사업계획 수립참여 및 평가, 사업지원 대상자의 선정참여, 경영·기술 지도, 현장애로 해결, 사업추진 지도·점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

- 컨설팅 비용의 지급 : 사업계획의 규모·내용 등을 감안하여 기금사업 운영비에서 일괄 지급
 - 비용지원분야 : 전문가 협의체의 운영,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사업평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대상조직은 사업계획 선정시 승인된 생산자단체에 한하나 법인화에 참여하지 않은 조직은 제외, 참여조직 변경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신규사업계획 평가시 승인된 품목에 한하며 품목변경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 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단, 지원단가 총액을 30% 초과 증가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시·군 및 사업계획간 사업비 조정은 자체 조정 후 1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지원단가의 조정 절차]

- “붙임”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행정·지도·농협·농가대표·관계전문가 등으로 “과수발전협의회(사업비 단가 조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세부사업별 지원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조정

시공방식 결정 등

- 사업추진 시·군과 사업시행주체는 세부사업별로 시공주체(업체 또는 농가)를 검토한 후 과수발전협의회에 승인요청, 과수발전협의회는 적정성(부실시공 우려 등)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농업인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공지
 -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선정·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조합 등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추진 농가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는 자체 구입 및 시공을 공동입찰 또는 공동계약으로 일괄추진 가능

기타 주의사항

- 우량품종갱신의 공급요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 보증요목이어야 함. 단, 자체보증요목이 공급되지 않는 품목이나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종자산업법에 의한 규격요이어야 하고, 식재 후 다른 품종 혼입 등 요목이 문제가 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가 책임진다는 계약서 작성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과 사업 시행주체(품목조합, 지역농협, 법인 등)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이 모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변경 내용, 보조금 신청 및 집행상황 등을 수시로 농림수산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은 반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년 1회 이상 시·도(시·군)간 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현금 거래 불가)
 - 직접노무비는 3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1/6 한도내에서 지원 대상 농가에서 1인에 한해 지급 가능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 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고품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과원을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에서 생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을 차감하고 지급
- 대체과원은 동일 면적·동일 품목에 한하여 가능하고,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보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기타사항은 과원폐업지원사업(신청서에 첨부할 추가 서류, 현지 확인·조사, 사후관리, 제재 등)에 준하여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 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 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거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농협)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①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④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주요 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을 조사·평가
 - 조사기관 : 통계청
 - 조사내용 : 주요 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 조사시기 : 매년 12월
 - 조사방법 : 통계청의 과실 생산량 등 통계조사 결과 활용

《만족도 조사》

-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농정 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 중 (10일간)
 - 조사대상 : 지자체, 생산자단체, 과수농가 등 관련 종사자 약 5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인사과(주요정책 고객만족도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1) 자체 평가

- 평가 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후 3~6월 중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지역농업 특화사업단,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2) 중앙 평가

- 평가 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 착수후 3개월 이후
 - 평가 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 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6월 이내
 - 평가 방법 : 민간평가기관 사업성과분석 용역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1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주체 및 시·군에 제출(2010.1.31일까지)
- 시·군은 사업 참여희망 농가가 제출한 2011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농림수산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2010.2.28일까지)
- 시·도는 사업 참여희망 시·군이 농림수산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한 2011년도 사업신청 현황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로 전송(2010.3.30일까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농림수산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전송받은 사업신청 현황을 기초로 201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0.6.30일)

《수요 조사》

- FTA기금 관계자 연찬회 활용
 - 매년 하반기 중 FTA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 시군 등 지자체와 운영주체 관련자에게 과수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와 함께 수요파악

《홍 보》

-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등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정보 및 소비지 유통업체 등에 생산지유통 정보를 홍보하고 경영혁신 사례 전파
 - 홍보매체 : 언론(전문지 등), 홍보책자(CD) 등
 - 홍보내용 : 각 지역별 농가소득증대 성공사례 등
 - 홍보매체 발간 : 매년 11월경
 - 제작주최 :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
 - 자료배포 : 산지유통조직, 소비지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세부 사업별 지원 단가

— < 단가적용 기본원칙 > —

-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기준모델 및 일반모델에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로 사업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가산출내역은 2008년 상반기에 표본조사 지역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별도 자료집 참조)
 - 지원단가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를 적용하고 단가산출내역은 사업추진에 참고(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 설계도와 시방서는 과원의 여건 및 지역에 따라 변경하여 사업추진 가능
 - 일부 사업의 경우 사용자(농가 등)의 사업추진 편의를 위하여 특정회사 제품을 모델로 작성하였음.
 - 과원의 여건에 따라 동일한 성능의 다른 기종 및 타 회사 제품으로 변경 가능
 - 주요 기계·장비는 가급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 ◇ 사업추진 지자체와 시행주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지를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시행
 - 지원단가 조정은 【사업계획변경절차】 와 【지원단가의 조정절차】 참고
 -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수산식품부 지정고시 제2008-76호 참고)
 - 농가별 지원단가 산출시 면적과 관련 없는 기본장비 등은 기본단가를 근거로 산출하고, 면적증감과 관련 있는 자재는 면적에 비례하여 산출
- * 단, 농가가 지원내역과 별개로 추가로 시설자재를 투입하는 것은 제외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비 고
1. 관수관비시설		
1.1. 수동 스프링클러	5,000천원/0.5ha	
1.2. 수동 점적	3,500천원/0.5ha	
1.3. 자동 스프링클러	7,400천원/0.5ha	
1.4. 자동 점적	6,000천원/0.5ha	
1.5. 집수정	2,600천원/개소	
1.6. 지중관수시설(반자동)	10,285천원/0.5ha	
2. 관정개발		○지하수법 제 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 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기준채수량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30% 이내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2.1. 5인치(우물자재형)	4,400천원/공	
2.2. 6인치(우물자재형)	15,400천원/공	
2.3. 6인치(일반형)	9,400천원/공	
2.4. 8인치(우물자재형)	25,800천원/공	
3. 농산물운반기		
3.1. 모노레일	13,800천원/0.5ha	
3.2. 무동력운반기	1,300천원/0.5ha	
3.3. 동력운반기	3,929천원/0.5ha	
4. 무인방제시설		
4.1. 고정식	15,000천원/0.5ha	
4.2. 이동식	50,000천원/0.5ha	
5. 방풍망시설		
5.1. 격자형	50,000천원/0.5ha	
5.2. 산간지형	20,000천원/0.5ha	
5.3. 일반형	8,700천원/0.5ha	
5.4. 해안형	14,600천원/0.5ha	
6. 배수시설		
6.1. 반명거	790천원/0.5ha	
6.2. 유공관	9,900천원/0.5ha	
6.3. 차수막	3,800천원/0.5ha	
7. 비가림시설		○비 밀폐식(가온가능시설 설치 제외)
7.1. 간이형(강선)	10,000천원/0.5ha	
7.2. 간이형(파이프-대)	78,000천원/0.5ha	
7.3. 간이형(파이프-소)	41,000천원/0.5ha	
7.4. 연동형(개폐식)	132,000천원/0.5ha	
7.5. 연동형(맞배식)	130,000천원/0.5ha	
8. 비가림 하우스		○밀폐식(포도는 시설포도로 구조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치 불가)
8.1. 감귤(키위-해안)	180,000천원/0.5ha	
8.2. 무가온	111,000천원/0.5ha	
8.3. 일반	100,000천원/0.5ha	
8.4. 자두	110,000천원/0.5ha	
8.5. 키위(내륙)	135,000천원/0.5ha	
9. 서리우박피해방지		
9.1. 미세살수장치	5,400천원/0.5ha	
9.2. 방상펜	17,000천원/0.5ha	
9.3. 우박피해방지	22,000천원/0.5ha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비 고
10. 시설하우스 개보수		○아래 이외 개보수사업은 비인정
10.1. 강제환풍기	5,000천 원/0.5ha	(경질필름 교체 등)
10.2. 보온덮개교체	81,000천 원/0.5ha	○기존시설 교체만 가능
10.3. 보온덮개개폐기	6,800천 원/0.5ha	
10.4. 비상발전기	10,000천 원/대	
10.5. 재난방지시스템	900천 원/대	
10.6. 지붕개폐기	8,200천 원/0.5ha	
10.7. 파이프교체	7,100천 원/0.5ha	
10.8. 하우스운반기	3,000천 원/0.5ha	
11. 야생동물 방지시설		
11.1. 방조망(산간지형)	19,000천 원/0.5ha	○방조망은 폭설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가급적 개폐식으로 설치
11.2. 방조망(일반형)	13,000천 원/0.5ha	
11.3. 방조·방풍망시설	19,500천 원/0.5ha	
11.4. 전기 울타리	1,500천 원/0.5ha	
11.5. 조수류퇴치기	6,500천 원/0.5ha	
12. 작업로정비	7,400천 원/100m	
13. 지주시설		
13.1. 개별식	7,600천 원/0.5ha	
13.2. 격자형	19,000천 원/0.5ha	
13.3. 덕개량	8,400천 원/0.5ha	
13.4. 우산형	4,800천 원/0.5ha	
13.5. 울타리식	7,300천 원/0.5ha	
13.6. 일문자형	10,800천 원/0.5ha	
13.7. 콘크리트	6,800천 원/0.5ha	
13.8. 평덕식	7,000천 원/0.5ha	
13.9. Y자형	13,900천 원/0.5ha	
14. 친환경 과원관리		○개소당 30ha 이상, 개별농가단위 지원 금지
14.1. IFP	165,000천 원/30ha	
14.2. IPM	165,000천 원/30ha	
14.3. GAP	234,300천 원/30ha	○GAP인증 단체 또는 조직에 한함
15. 품종갱신		○기존과원의 갱신(대체포함)만 가능(신규불가)
15.1. 감귤	20,000천 원/0.5ha	○종자산업법에 의한 자체보증묘목 또는 규격묘에 한함(포도는 접목묘에 한함) ○사업기간 : 2년차(1년차 30%, 2년차 70% 배정)
15.2. 감귤(연차갱신)	19,000천 원/0.5ha	
15.3. 단감	12,300천 원/0.5ha	
15.4. 배	31,900천 원/0.5ha	
15.5. 복숭아	20,300천 원/0.5ha	
15.6. 사과(밀식)	29,000천 원/0.5ha	
15.7. 키위	35,600천 원/0.5ha	
15.8. 포도	9,000천 원/0.5ha	
16. 공동이용설비		○영농조합 등 법인격의 생산자단체만 가능
16.1. 과수목파쇄기	53,000천 원/대	
16.2. 꽃가루은행	35,000천 원/개소	
16.3. 석회유황합	30,000천 원/대	
16.4. 식물영양제조기	20,000천 원/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	과 장 김응본 사무관 황재운 주무관 최경철	02-500-2024 02-500-2031 02-500-2032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총괄팀	팀 장 윤홍일 차 장 김억래 과 장 양승지	031-420-3611 031-420-3616 031-420-3617

I. 사업개요

1. 목적 및 추진방향

-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과수수출단지 정비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생산단지를 우선 추진하여 과수 생산거점으로 육성
- 지역 여건, 농업인 수요에 따라 개발 유형을 달리하여 사업비 차등 지원
- 품목별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농어촌정비법 제5조 내지 제12조, 제94조, 제95조, 제99조, 제101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04년부터 '17년까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등을 통해 고품질 과실 생산체계를 확립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을 기준연도('04년) 대비 126%까지 확대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u>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u>	<u>126</u>		<u>신규</u>	<u>121</u>	<u>2011.1</u>	<u>(10a당 평균수량 / 기준연도('04년) 10a당 평균수량)×100</u>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o과실전문단지기반조성	40,709	12,108	10,850	16,451	68,916
- 보 조	32,744	9,700	8,730	13,231	55,133
- 지방비	7,965	2,408	2,120	3,220	13,783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규모가 50ha이상(최소 3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
 - 1단계 : 과실전문생산(수출) 단지
 - 2단계 : 30ha이상 과수주산지 지구
- *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FTA기금 과실 생산·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50ha 이상(최소 3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선정요건
 - FTA기금 과수산업육성대책 등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지구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30ha이상)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마을도로 위주개발, 생활용수개발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택

- 단지, 공단 등 타 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3. 지원대상

- 용수원 개발 : 과수단지 관개용수(암반관정, 양수장 등) 개발
 - 용수이용 시설 : 저수조 및 송·급수관 설치
 - * 개별 농가별 용수원 개발은 제외
- 경작로 정비 :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등
- 과원경지정리 : 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시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조사설계비(기본조사)
- 과수기반정비에 필요한 공사비,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부대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조사설계비 : 보조 100%(국고 100)
 - 기반조성 사업비 : 보조 100%(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 2년(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30%, 2년차 7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조사설계비 : 461천원/ha
 - 기반조성 사업비 : 32,520천원/ha
 - 개발유형에 따라 단가 차등 : 90~110%
 - I 유형 : 29,268천원/ha, II 유형 : 32,520, III 유형 : 35,722

<개발유형>

- I 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 중 단일공종 사업
- II 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용수개발
- III 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과원경지정리 사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자(신청조직)

- 품목조직의 장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 예정지가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및 50ha(30ha)이상 과수재배 주산단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추진사업 신청에 포함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전년도 2월말)
-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시에는 아래사항을 해당 시·군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함
 - 사업수혜농가들이 FTA사업 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 출하약정 여부('08지침 별지 1-4호 서식 참조)
 - 과실전문(수출)단지 포함여부와 품목별 생산자 조직구성 또는 계획여부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
 - 특히 재배품목 여건상 용수량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의 경우에는 용수개발을 지양하고, 농로정비 등 필요한 공종만으로 계획
 -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마을회의 등을 통하여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이며, 주민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에 한하여 사업 예정지구로 선정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FTA기금 지방자율추진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년도 3월말)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관할 시·군과 공동으로 예정지 답사를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현지 조사대상 지구 선정
 - 현지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
 - 당년도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비를 감안하여 선정
-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지조사결과 및 시·도별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지구 선정

한국농어촌공사

- 현지 조사를 통한 실무검토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주요 검토내용 : 지구집단화 정도, 기존 시설물 현황, 사업여건, 주민호응도, 출하약정 체결여부,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사업추진 상 문제점 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사업시행자

- (1)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지구별 추진위원회 및 유지관리 조직 구성
- 사업시행자는 지구별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시·군), 농업인대표,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함
 - 사업계획내용 검토 및 시설, 영농관리 등 책임부여
 - 사업시행자는 관정을 개발할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2) 영농기술지도 강화

- 사업시행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 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토록 하여 영농기술 지도를 강화하여야 함

(3) 용수원 개발 및 용수이용시설

○ 용수원 개발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신규개발
- 용수원개발은 지표수 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지표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지하수 등 다른 용수원을 검토
- 용수원 개발시에는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토록 조치
- 암반관정의 1일 채수량은 150톤/공 이상으로 하며, 착정심도는 소요수량 확보가 가능한 적정심도까지 개발. 다만, 지하수의 부존량이 적은 산간, 해안 또는 도서지역 등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1일 채수량 100톤/공까지 조정시행 가능
- 관정 개발시에는 사업비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공당 채수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급수면적을 늘려 개발 공수를 최소화
- 시추조사는 적정심도까지 1공을 시행하며, 시추조사 실패시는 1공을 추가 시행
- 시설농업의 양액 재배용수나 음용수를 겸하는 용수는 수질검사를 엄격히 실시
- 관정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드시 KS규격의 자재를 사용
- 저수조와 수혜 농경지의 표고차에 의하여 과도한 수압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압 저감방안 마련

○ 용수이용시설

- 수원에서 저수조까지의 송수관로는 내수압 등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
- 저수조에서 경작지까지의 급수관로는 수압, 구경,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재질의 관을 사용하고, 농업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장소에 분수공을 설치토록 계획.
- 급수시설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미터기를 설치토록 계획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sprinkler) 또는 물방울관개(Drip irrigation) 실시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살수 관개 또는 물방울관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정 수압이 유지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
- 기타 관개계획은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계획 설계기준, 관개편('98.12 농림수산 식품부)의 과원관개 분야 계획 설계 기준에 따라 조사·설계하여 계획수립

(4) 경작로 정비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에서부터 경작지까지의 연결도로인 진입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포장공법으로 확·포장
- 농기계 통행 등 작물재배에 주로 이용되는 경작농로는 진입로와 연계하여 정비
 -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 상위도로의 확·포장이 안 된 지역은 관련 부서와 사업시행시기를 협의하여 연계 추진
- 배수계획
 - 가능한 한 자연 배수토록 계획하고, 배수로에 낙차공, 침사지, 사방댐 등의 구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준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조사자(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하 생략)는 답사보고서 및 예정지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안) 작성
- 기본조사자는 지자체(시·도, 시·군)와 지방비 부담 가능여부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여부, 주민 호응도, 현지 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이며,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 기본조사자는 품목재배 등에 관한 농업기술센터의 의견과 기본조사내용에 대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본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함
- 기본조사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품목별 주산(특산)단지 면적 및 연간소득
 - 작부체계 및 농업인의 재배품목 전환 가능성
 - 경사도, 재배품목, 경지이용형태 등 지역입지여건에 맞는 토양유실방지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 진입·경작로 개설계획
 -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용수공급계획
 - * 원칙적으로 저수지, 양수장, 농촌·농업생활용수 공급용 암반관정, 기타시설 등 기존 수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선검토하고, 기존 수원 활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암반관정 등으로 용수개발계획을 수립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 또는 물방울관개 실시 희망여부
- 과수산업육성대책, 농촌마을개발사업, 원예특작생산지원 등 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여부(사업수혜농가들의 5년 이상 80%이상 출하약정 여부 등)
- 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 현황
- 농산물의 규격상품 출하 여부
- 유통체계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부담, 기타 유지관리 방안지관리조수혜민 또는 대표지관과 협의하여 제시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되 기본계획(안)의 주요사항을 변경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지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확정되면 기본계획서를 시·군 및 기본조사자에게 송부함
- 시·도지사는 지구별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수립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함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대상지구를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함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경제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세부설계 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 특히 용수개발계획 및 개발유형의 적정성, 주민들의 과원 관정 등 시설물

- 유지관리조직 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조직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기간은 사업규모, 지역여건, 재배품목 등에 따라 1~2년으로 설정함
 - 관정, 기계, 전기시설, 저수조, 송수 및 급수시설, 농로, 정지 등 공사내용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2년차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다만, 공종이 단순하고 사업규모가 작은 지구는 착수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지구가 선정되면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및 동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함.
- 기본조사결과 지하수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세부설계와 병행하여 지하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되 아래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하수 부존량 평가를 위한 지질조사, 물리탐사(원격탐사포함), 시추조사 등의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업무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지하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지하수개발은 지하수법 제22조 및 제33조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중에서 선정하여 개발토록 함
 - * 지하수개발은 개발단계에서 가뭄 등 비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반기에 착정을 완료토록 함
 - 관정 시추결과 채수량 부족 등으로 부적합한 시추공에 대하여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폐공처리)하여야 함
 - * 다만, 지역주민이 비상시 용수로로 활용코자 존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주민에게 인계할 수 있음
 - * 이때 시장·군수는 주민들이 지하수법에서 정하는 허가 또는 신고,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준공신고 등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 관정이 불필요하여 활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폐공처리 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주민에게 인계함

- 시장·군수로부터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에 대한 위탁을 받은 자는 지구별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추공의 위치, 심도, 채수량, 안정수위 등 세부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 세부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고결과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혜민의 동의서, 준공후 시설의 인수·관리 예정자의 확인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하는 측량·설계 요율의 범위내에서 집행함

세부설계자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 이해 당사자 등과 협의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용수개발계획, 개발유형, 유지관리 조직 구성 등 유지관리계획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와의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가구당 부담액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지하수개발 결과를 토대로 암반관정 및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세부설계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타사업과의 연계추진방안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지하수 이용시설의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 취약부분에 대한 동파 방지대책
 - 토양침식 및 토사유출 저감 시설물 설치 계획
 - 수도미터기 설치계획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물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여야 할 사항(수혜민들과 협의)

- 기타 기본조사내용의 확인 및 여건변화사항 조정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영농기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입찰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입찰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공사시행 및 공사감리》

시·도

- 사업시행자의 시행계획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판단
- 시·도지사는 시공 중 사업지구 변경,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한 면적 증감,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10%이상의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 사상황을 매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비는 개발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사업시행 중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부담함
- 사업시행자는 시공 중 현장여건에 따라 시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가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완료할 경우 아래사항에 대하여 수혜농가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혜민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게 하며, 시설물 사용설명서를 제작·비치하여야 함

- 주요시설의 배치상황 및 시설물 사용방법
-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취약부분에 대한 동파방지 방법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가구당 예상 전기요금 부담액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 방안 등
- 사업관리비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도서인쇄비, 회의 개최비, 출장비 등으로 사용하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한 요율 범위내에서 집행함
-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나, 다양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공종임을 감안,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의 위탁시행을 원칙으로 함
 - 일반용역업체에 위탁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농업토목 전문기술자는 물론 전기, 기계, 지하수 등의 전문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 감리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감리비는 감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특수기술부분 위탁감리비, 특수시험 위탁비를 실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공사감리 요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사감리 직원의 인건비, 자산취득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용지매수 및 보상》

시·군

- 용지매수는 진입도로, 간선농로 등의 농로와 저수조, 관정 등의 공공시설 부지는 매수할 수 있으나, 예산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 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비 등 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보상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함

《준공검사》

사업시행자

-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업자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수혜민들을 완료한 때에는 였는지 여부와 였는지 여부와 비치여부를 반드시 시설물하여야 하며, 료한 때에는 지 않았을 경우에는 료한 때에는 도록 하여야 함

- 수혜민들의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준공 검사시 수혜민을 참여시킬 수 있음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 내용,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민에게 실시한 교육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조직 구성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이 준공되면 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지도를 실시하도록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 검사시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수혜민 교육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행토록 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는 준공 검사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한국농어촌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 감리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안됨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

수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군

- 완공된 관정 등 시설물에 대한 완공년월일, 채수량, 안정수위와 기타시설에 대한 준공사진이 첨부된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동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함
 - 과원기반정비 시설 등록은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과수기반시설”로 등록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를 적립토록 하고, 전기료 등의 이용비용을 자체 부담토록 지도함
- 시장·군수는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고소득 작물 재배에 관한 영농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조치하여야 함
- 암반관정 개발지구에 대하여는 소형관정개발을 지양함
- 수질검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환지업무는 경지정리사업 지침을 준용함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지하수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름.

시·도

- 시·도지사는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동 시행령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등 동 사업으

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토록 지도

* 관리조직(수리계)의 자체규약 : 농림수산식품부 시설51350-10543(2000.11.8)의 붙임 3과 과원기반정비사업 우수사례집(2000년, 농림수산식품부)의 “과원기반정비 시설물 유지관리계(수리계)구성 및 운영계획(시안)” 참조

- 수리계를 조직·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직접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거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참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참조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1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주체 및 시·군에 제출(2010.1.31일까지)
- 시·군은 사업 참여희망 농가가 제출한 2011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시·도에 제출(2010.2.28일까지)
- 시·도는 사업 참여희망 시·군이 제출한 2011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농림수산 식품부에 제출(2010.3.30일까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신청현황을 기초로 201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0.6.30일)

《수요 조사》

- FTA기금 관계자 연찬회 활용
 - 매년 하반기 중 FTA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 시군 등 지자체와 운영주체 관련자에게 과수경쟁력제고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와 함께 수요파악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시행

- 연차사업과 당해연도 완료사업으로 구분 시행

- 1년차(착수) : 사업계획 선정, 기본조사·설계, 공사발주 및 계약, 공사시행
- 2년차(마무리) : 공사완료

(2) 사업담당부서

- 사업총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과수화훼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 시·도 : 농정국 농업기반과(농촌개발과,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등)
 - 시·군 : 건설과(협조 : 과수생산유통 관련과)
- 기본조사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업총괄팀)

(3)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
 - 주 관 개 용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일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4) 사업 추진 절차

- 사업계획신청 → 예정지 조사(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합동)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 선정 →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인가 → 공사발주 및 계약 → 공사시행 → 준공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	과 장 김응본 사무관 황재운 주무관 최경철	02-500-2048 02-500-2055 02-500-2056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팀	팀 장 정성남 차 장 김창국	02-6300-1161 02-6300-1173
	유통조성팀	팀 장 성장현 차 장 유영배	02-6300-1581 02-6300-1586
농협중앙회	연합마케팅팀	팀 장 임규수 차 장 서성권	02-2080-6251 02-2080-6227

I. 사업개요

1. 목 적

-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Hub)으로 육성하고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
- 선별·저장·가공시설·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 및 위생시설을 일괄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
- 농산물 물류효율화와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

2. 근거법령

- 설치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고품질 과실 브랜드 유통비중을 전체 과실생산량의 8%까지 확대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7	'08	'09		
▪ 고품질 과실브랜드 유통비중 비율(%)	8		신규	7	2011.1	(고품질 브랜드 과실생산량 / 과실 생산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 거점산지유통센터	184,443	36,312	2,500	16,998	121,000
- 보 조	86,296	14,923	750	6,799	44,000
- 지방비	91,811	19,773	500	5,099	44,000
- 자부담	6,336	1,616	1,250	5,100	33,000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 *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지원기준>

* 다음 기준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만 지원

- ① 先 조직화, 後 시설지원 원칙 준수
 - 운영주체가 정부지원 유통회사일 경우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 대형산지유통조직(구, 공동마케팅조직)일 경우
- ② 해당 시군에 경합되는 규모화된 조직이 없고 다음조건에 해당 될 경우
 - 농축산물 연간 생산액이 3천억원 이상인 시군
 - 과실류의 연간 생산량이 3만톤 이상인 시군
 - 운영주체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고, 3년 이내 흑자가 가능한 경우

3.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사업규모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이 5천톤~2만톤 내외인 유통시설 설치 및 추가·보완

(2)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

- 주체를 확보하고 원료조달 및 마케팅계획이 타당한 시설의 설치 및 추가·보완
- 과수품목별 대표조직 계열화(공동브랜드사업) 사업계획에 포함된 권역별 규모화 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추가·보완

(3) 지원내용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 예냉·냉장수송과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은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단, 신선편이시설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음
- 가동을 제고를 위해 과채류 등 부품목 취급은 가능하나 과일류 이외 품목의 설비와 장비는 자체 조달
- 다만, 정부예산의 범위에서 신규시설 설치 및 시설 보완사업의 사업비 한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일괄지원의 예외>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시설 중 일부가 이미 구비된 경우는 당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 사업계획상 냉장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저온수송을 하고자 할 경우는 냉장탑차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소규모 분산투자 방지를 위한 지원규모 제한>

-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고는 각각 330㎡(기준시설 포함)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예냉·저온저장고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저온저장이 불가능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집하·선별·포장장으로 변경 가능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 신규시설 150억기준(연간 1~2만톤 처리능력 기준)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1. 설계 및 감리			예산편성 지침기준	6. 유통시설장비			
- 기본조사설계비	식		공사비의 1.28%	- 수송차량	대		자체 운송
- 실시설계비	식		공사비의 2.04%	- 팔레트	개		0.5톤/1개
- 감리비	식		공사비의 1.87%	- 지게차	대		3단마스트(최대양고5.5m)
- 시설부대비	식		공사비의 0.18%	- 컨베어	대		입고 및 출고
- 건축디자인비	3.3㎡		3.3㎡당 1만원	- 운반상자	개		보관량의 %(농기보유감안)
2. 토 목				- 파렛타이저	식		전자동,스트랩핑 포함
- 기반 공사	식			- 에틸렌가스제거기	대		66㎡당 1개
- 상하수도설비	식			7. 위생시설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3. 전기공사	식			- 오수처리시설	조		선별 및 세척수 처리
4. 건 물	m ²			- 작업자 소독실	조		입출입자 위생소독
- 선별장	m ²		향온 클린룸설치	- 에어샤워기	조		입출입자 위생소독
- 집하장	m ²		하차, 검수 등	- 해충방제시설	조		전기식 살충
- 출고장	m ²		상차, 배송	- 출입구격리시설	조		에어백 및 스피드도어, 적재함 높이 조절장치
- 예냉고	m ²			- 공중세균측정장비	조		작업장내 세균 측정
- 저온저장고	m ²		처리물량의 % 저장 (톤)	- 물류기기세척장비	조		박스, 팔레트 세척
- CA저장고	m ²		처리물량의 % 저장 (톤)	- 집진기	대		오염 공기의 집진, 배출
- 사무실	m ²		소회의실, 상황실포함				
- 품질검사실	m ²		품질 및 잔류농약검사	- 바닥 청소기	대		바닥 왁스 청소
- 일반창고	m ²		포장자재, 소모품 등 창고	- 세탁 건조기	대		위생복 세탁 건조
- 교육실	m ²		장비, 비품은 비인정	8. 품질 검사장비			
- 부속시설	m ²		식당, 샤워실, 화장실 등	- 농약속성검사기	대		자체 품질검사 장비
5. 선별포장장비				- 이동식 비파괴측정기	대		자체 품질검사 장비
- 비파괴선별기	조		1조당 1일 ()톤처리	9. 경영지원시스템	식		ERP,SCM,CRM 등
- 부작물선별기	조		부작물이 있을 경우	10. 차량계근대	조		원물 중량 계근
- 세척건조기	조		세척건조, 날개포장	11. 조경공사	식		
- 박스제함기	대		제함실 건축비포함				
- 봉합기	대		자동 박스 봉합기				
- 자동 소포장기	식		자동계량, 폰네포장				
- 세척수 제조기	조		1일 ()톤 생산				
							총계

주) 비고란에는 산출근거, 장비사양 등을 자세히 기재

【참고사항】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하면 위의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가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 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해야 함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세부시설 설치 전에 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야 함

-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 시설·장비 설치에 관하여 위탁운영주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한국식품연구원 등 설계 및 설비 설치에 관한 전문컨설팅업체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
- CA저장고의 최소 설치규모는 가급적 8.5m(H)×385m² 이상으로 설치
- 사업비중 부지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은 개발업체와 협의하여 시스템 호환문제 등을 해결 (관련된 사항은 별지 3-1를 참고)
- 선별방식 선정 : 농진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농업과학원),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농협중앙회, 산지유통 전문가, 품목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별방식 선정 협의체를 통하여 선정
 - 전처리(세척 등) → 선별(중량, 당도, 산도, 색택 등) → 포장 → 팻릿 적재 및 랩핑까지 자동일괄처리가 가능한 선별방식을 선정하되 별지 3-2호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신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연간 과일 선별물량 5천~2만톤 내외의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부지매입비 제외)
 - *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참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일반유형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 자부담 원칙을 준수하되 총 사업비 증가시 지방비 추가 부담은 가능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공공유형은 특별한 사유로 일반유형 지원이 곤란하다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사업기간
 - 신규사업 : 3년(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5%, 2년차 35%, 3년차 60%)
 - * 단, '11년 신규사업부터는 부지확보 및 형질변경 등이 완료되어 조기 완료할 수 있는 경우 2년 사업으로 추진 가능(1년차 50%, 2년차 50)
 - 추가·보완사업 : 1년

이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사업이 아닌 산지유통시설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사업 신청
예) 지역농협단위 APC 설치 및 보완(선별기·저온창고 교체 또는 증설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15,000백만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 15,000백만원 이하의 중규모 시설도 지원 가능
 -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시설의 활용, 구조조정 계획을 감안하여 신규시설 인정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신규 지원은 「대형산지유통조직(구, 공동마케팅조직)」 수준, 시설보완(개·보수)은 「산지유통전문조직」 수준을 선별·지원
 - * 대형산지유통조직(구, 공동마케팅조직) : 전년도 실적 100억원 이상
 - * 산지유통전문조직 : 전년도 실적 30억원 이상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
- * 운영주체가 농협인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농협중앙회

- 회원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고정투자한도, APC 필요성, 과투자, 원물확보 등)을 회원농협에 통보

시·군

- 신규 및 추가·보완사업으로 신청할 사업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을 실시 받고 다음년도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신청
- 사업성진단 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 필요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도 등에서 진단에 참여할 수 있음
 -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인 경우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 사전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사업성 진단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신청(2월말 기한)

-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설계개요, 기계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 부지전경사진, 유통사업 입증서류, 농가조직화 입증서류 등
- * 사업계획서의 과수면적, 생산량, 사업량 등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자료 인용 또는 검토의견을 첨부
- 사업성진단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진단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현지 확인 방문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 진단에 차질 없도록 함
- 사업성진단 결과는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시 첨부물로 제출

농수산물유통공사

- 신청현황 보고 및 통보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신청 현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5일 기한)
- 진단결과 보고 및 통보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진단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말일 기한)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3. 지원대상」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성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현황과 사유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한 후 사업성 진단에서 제외하여야 함
- 사업성진단서는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시·도에서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단, 수지전망은 향후 3개년 분석)
 - 사업성 진단에 참여한 진단자(유통공사, 농협 등)는 진단서 하단에 직위·성명을 기재 서명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함 (사업성진단을 받지 않은 신청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성진단 결과 반영현황은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
- 총사업비(10% 이상), 운영주체, 취급물량(20% 이상), 사업부지 등은 사업성진단 이후 변경 불가
 - 사업성진단 이후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심사·평가에서 제외

<심사항목 외 시·도지사가 고려할 우선순위>

- ①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 대형산지유통조직(구, 공동마케팅조직)·사업연합·산지유통전문조직·자조금 조성단체 추천조직 등
 - *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방지, 운영능력이 검증된 사업자를 선정
- ② 농지가 아닌 곳에 사업장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경우(확보된 농지의 전용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포함)
- ③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경영장부(경영일지)의 기록실적이 양호하고,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는 법인
- ④ 농지 중 지목이 “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 *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 농업진흥지역밖에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감면하고 있음 (농지법시행령에 규정)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별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 및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 실시(5월중)

세부 심사·평가절차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 당년도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비를 감안하여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 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다. 심사 및 평가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수산식품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비공개 서면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2단계 :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사업계획 내용 정밀 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 심사평가기준 : [‘08지침 별지 제3-1호 서식] 참조

라. 사업비 심의·조정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동점 발생시 13번 대분류 평가항목(유통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사업 포기자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년도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계획수립》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
 -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월별 공정계획서식)

시·군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사업계획변경 절차》

시·도(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수산식품부 보고)
- * 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인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완공 후 운영자(사업성진단을 실시한 법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감리》

사업자(신청조직)

-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성능검사》

사업자(신청조직)

- 선별시설 : 국립농업과학원(농업공학부)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 적합판정된 모델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선별시설 전체에 대하여 전문기관(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함(국립농업과학원 시험방법 참조)
- (설치 전) 종합검정 확인 → 선별기 설치 → (설치 후)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지급
- 저온저장고의 경우 설계 등 각 단계마다 전문 공공기관(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등)이나 학술단체(수확 후 관리연구회 등)의 기술검토(컨설팅)를 실시한 후 최종 성능검사 실시
 - * 기술검토 단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공단계 → 판넬시공 → 기계반입 → 기계설치 → 성능검사
- 주요 기계·장비는 가급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사업자(신청조직)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기타 사항》

사업자(신청조직)

- 세부시설별 사업비 표준단가는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음. 다만 지역간·사업장간·유사 세부시설 등에 대한 객관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단가 산출명세서 첨부)하여야 함.
- 시설규모 산정을 위한 상담 및 문의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에 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여 건설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함

시·군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공공유형 시설일 경우 시장·군수)명의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

《입찰의 방법(공공 및 일반유형)》

국가계약법령 및 예산회계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내용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가. 제한경쟁 입찰방식 선택의 경우

1) 설계 및 감리의 발주

- 시공과 설계를 분리 발주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는 동일 업체로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엔지니어링진흥법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별 엔지니어링기술」 중 기술부문별 전문분야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한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장은 도시계획 변경, 예냉설비, 과실세척 설비, 과실봉지 소각 설비 등 사업내용에 따라 필수 또는 선택적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소지면허를 추가할 수 있다.
- 예냉시설에 대한 감리는 농산물의 생산·유통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연구원이 감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에 따라 지급한다.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의 검증

-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기본설계 후 시설물의 최적화를 위해 적정성 검증을 해야 하며 최적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적정성 검증내용에는 물류흐름, 입고에서 출하단계까지의 공정별, 설비별 최적화, 전체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최적화, 설비의 유연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적정성 검증방법은 일괄입찰방식에 준하여 실시한다.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농협중앙회의 집중자문을 받아야 한다.

나. 일괄입찰방식(Turn-key 방식) 선택의 경우

- 일괄입찰(일명 : Turn-key 방식)로 발주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정의) 제1항 제6목에서 정의한 “기본설계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4조(일괄입찰의 입찰참가자격)에 입찰참가를 허용하되,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및 제25조(공동계약)에 의거 선별기 제조업체(국외업체의 경우 그 해당업체의 본사 또는 국내 지점)와 공동계약(컨소시엄)을 해야 하며 주관업체는 국내업체로 해야 한다
-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심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구성 및 기능)에 의거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되, 복합공종사업으로 공종별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토목, 건축, 산업기계, 공조냉동, 기계공정, 정보통신 등의 전문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성위원의 1/2이상은 아래와 같은 농산물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과수 수확 후 관리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급 이상인 자
 - 과실 선별기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조교수급 이상인 자
 - 농수산물유통공사 차장급 이상으로 농산물유통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선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예냉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처리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세척공정이 있는 경우)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농협중앙회 차장급 이상으로 농산물유통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 있는자(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필수 참석)
 - 시설운영주체(기관)의 실무책임자로서 선별기의 사양, 성능 등에 지식이 있는 자 등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시·도(시·군)

- 공공유형 지원시설물(시장·군수 소유)은 거점APC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위탁운영자의 선정기준, 운영기간, 운영방법, 위탁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운영하여야 함
- 부지와 건물 등의 소유자가 각각 상이한 경우(예, 부지는 위탁운영자, 건축물은 시장·군수)에는 향후 재산권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조례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산지유통센터 등 산지유통 관련시설에 대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농림수산식품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참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장·군수는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부진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에 참여하고 시도지사는 매년(12월) 부진조직의 운영 및 경영개선 현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익년 1월)
 - 경영클리닉 대상조직은 익년도에 경영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는 경영개선계획서를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2월)
 - 시장·군수는 경영클리닉 결과 용도변경 및 양수도 대상 권고조직에 대하여는 이행상황을 중점관리하고 용도변경, 양수도 이행 즉시 계통보고 (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기계·장비		5년간	

* 참고 :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2006.1.1) 시행 참조

- 시·도지사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해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사업실적 등)하여야 함.
- 기타사항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 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 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거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고품질 과실 브랜드 유통비중 비율을 조사·평가
 - 조사기관 : 통계청 및 시·도
 - 조사내용 : 국내 총 과실생산량, 고품질 과실 브랜드 유통량
 - 조사시기 : 매년 12월
 - 조사방법 : 통계청의 과실 생산량 등 통계조사 결과 및 지자체를 통하여 고품질 과실브랜드 유통량 등을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원칙

-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준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매년 산지유통센터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조직에 대한 패널리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경영컨설팅과 연계하여 산지유통센터 운영능력을 제고

- 「산지유통종합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광역화·조직화 등을 적극 유도

나. 2010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 대상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관리중인 거점산지유통센터
 - * 신규사업자의 경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후 운영 및 가동실적이 최소 6개월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함
- 평가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가지표개발 및 보완 등은 외부 전문컨설팅기관에 의한 연구용역 추진(자유경쟁입찰)
 - 용역분야 선정기관 : ① 전년도 평가지표 보완 및 종합분석 등 총괄(전수조사)
② 평가결과 부진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실시
- 평가기간 : 2~6월 상순까지
- 평가기준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평가지표 기준 참조
- 사업실적 평가 대상기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또는 평잔기준)까지를 원칙으로 함.(농협 이외 법인의 경우 결산일 기준)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1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2010.2.28일까지)
- 시·도는 2011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2010.3.31일까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신청현황을 기초로 201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0.6.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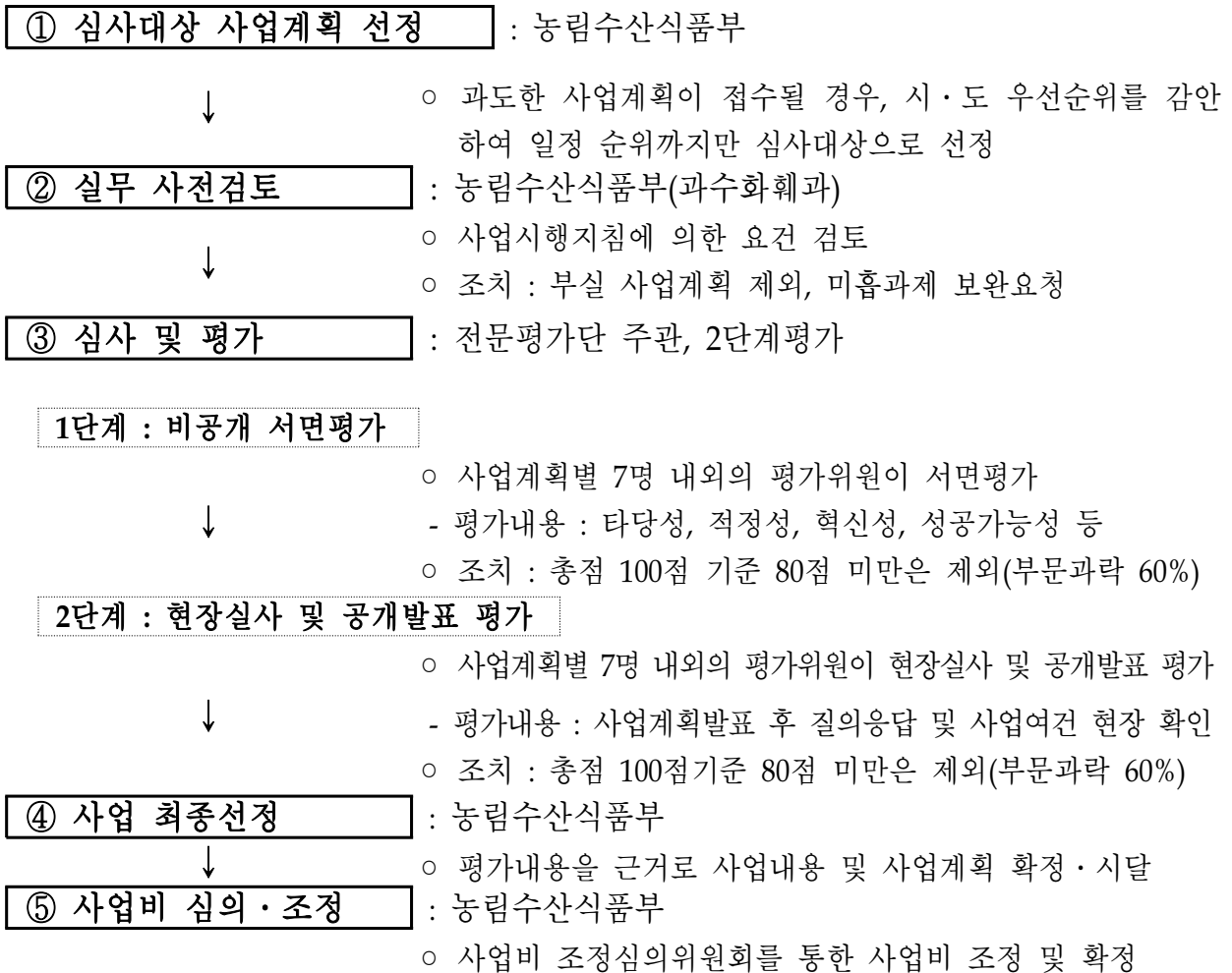
《수요 조사》 :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참조

《홍 보》 :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참조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신규사업 선정평가절차 】



[별지 3-1호]

거점APC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시 사전 점검사항

○ 거점APC 건립 중인 사업추진주체가 선별기 등 시설물과 향후 ERP 시스템간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사전에 준비 및 점검해야 할 사항임

1. 주요 점검 대상

- 선별기, 계근대, 저온저장고, CA저장고, 팔렛타이징, RFID, 바코드, AP(Access Point),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2. 점검 대상별 상세

선별기 관련 : 별첨내용 참조

계근대

- 계근정보를 계량과 동시에 알 수 있도록 Display해주는 LED 전광판(생산자와의 신뢰도 측면에서 필요한 장치이며 필수장치는 아님)
- 계근된 중량을 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도록 계근대 설치시 업체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수신 가능토록 함(필수)
- RFID Tag를 이용한 계근자동화시스템 구축시 계근대 좌우 양쪽에 2단으로 RFID Tag Reader를 설치해야 함(선택)

저온저장고

- **센서** : 저장고의 온·습도를 측정하는 센서정보가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신 될 수 있도록 함(필수)
 - 저장고 센서에서 송신하는 정보가 ERP와 연동 될 수 있도록 저장고외부에 정보 송신용 전기.네트워킹 공사(필수)
- **센서정보 LCD 패널**(선택)
 - 저장고 온·습도를 저장고 입구에서 볼수 있도록 저장고 입구에 부착하는 LCD Display판. 없을 경우 ERP화면에서 온·습도 확인가능
- RFID Tag를 이용한 재고관리시 저장고 출입문 좌우 양쪽에 2단으로 RFID Tag Reader를 설치해야 함(선택)

CA저장고 : 기준은 저온저장고와 동일, 개폐정보를 ERP에 전송해야 함

팔렛타이징

- 최종 출하시점에서 팔레트에 적재된 상품정보(품종, 적재수량)를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송신

RFID(선택)

- RF Tag정보를 ERP에서 별도 입력작업 없이도 자동인식 가능토록 계근대, 저장고, 선별기투입구 부분에 적용가능, 이동식리더기 별도필요.
- **점검사항(RFID 선택시 필수사항)**
 - **핸드헬드 리더기**: 고정식 RF 리더기 고장에 대비 이동형 리더기 보유
 - **핸드헬드 리더기 프로그램** : Tag정보를 Read/Write하고 관련정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으로 납품업체에서 납품시 리더기에 내장
 - **미들웨어** : 고정식 및 이동식 리더기와 ERP와의 연동시 필요한 기능으로 납품업체에서 납품시 프로그램 포함
- ※ ERP연계 : Read/Write되는 정보는 모두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수신 되어야 함.

바코드

- 필요기기 및 분야
 - 프린터기(원물 입고장, 포장라인), 리더기(저장고, 선별기투입구), 바코드라벨 자동부착기(최종포장라인)

- 내부관리용 : 내부 물류이동(입고, 재고, 출고, 선별투입 등)을 관리하기 위해 A4용지에 식별내용(농가, 품목, 수매번호 등) 출력관리
- 출하용 : 최종 포장하여 소비처에 출하 시 사용

○ 점검사항

- 바코드프린트기 필요지점

- 원물입고장 : 계근후 팔레트에 적재된 원물에 부착
- 선별후 1차포장라인 : 선별기에서 선별된 원물의 등급정보를 알 수 있도록 1차 포장라인에서 바코드 라벨을 박스에 부착

- 최종 포장라인 : 출하처에 출하하기 직전 최종라벨을 출력 부착

- 바코드라벨자동부착기 : 최종포장라인에서 바코드를 자동 부착하는 장치

- 바코드리더기 : 저장고에 입출고되는 원물 및 상품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 각 저장고별, 선별기투입구에 필요(유선 또는 무선)

- 바코드리더기 프로그램 : 이동식 바코드리더기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이 필요(납품업체에서 제공)

※ ERP연계 : Read/Write되는 정보는 모두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수신 되어야 함.

□ AP (Access Point)

- 기능 : RFID 핸드헬드 리더기와 무선바코드리더기 사용시 무선으로 정보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장치

- 점검사항 : APC 네트워크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게 공사시 설치

□ 초고속정보통신망

- 기능 : APC 기기장치와 ERP와 연동할때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데 네트워크 단절로 “ERP연동 불가”를 사전대비 조치

※ 국내에 건립되는 APC는 여건상 시내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건립되는데 네트워크 단절이 종종 발생함.

○ 점검사항

- 네트워크 단절을 대비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를 이중화(ex, 데이콤과 한국통신 이중가입)

※ 네트워크 단절시 ERP 및 APC 기기장치와의 연동이 전면 중단

<별첨 1>

거점APC 선별기 관련 표준시방서(예)

- 선별관련 모든 정보는 발주자의 외부프로그램(이하 ERP시스템)과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 연계 데이터는 ERP시스템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송수신되어야 한다.
 - 연계에 소요되는 H/W 및 S/W비용은 모두 제작자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 인터넷단절에 대비 자체제어로 48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인터넷복구시 단절시간동안의 선별관련 데이터를 ERP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 선별기관련 제어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100%한글화(프로그램화면, 매뉴얼, 작업대)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연계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관련 소스 및 모든 라이선스 또는 사용권은 발주자에 제공 또는 권리인정을 항구적으로 하여야 한다.

- 연계 내용
 - 선별투입
 - 바코드 또는 RFID등에 의해 농가별로 구분된 투입정보(투입중량, 농가코드 등)는 수기작업을 거치지 않고 ERP시스템에 전송되어야 한다.
 - Job Change시 ERP시스템이 송신하는 정보(농가코드,품목/품종,작업지시번호, GAP번호 등)를 선별기에서 수신하여 선별 각단계에서 이용해야 한다.
 - 선별
 - 농가별 농가선별결과정보(등급, 품목/품종, 선별중량, 작업 지시번호 등)를 전송해야 한다.
 - 포장
 - 농가별 포장정보(포장수량, 투입중량, 개입수, 등급, 포장타입 등)를 전송해야 한다.
 - ERP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라벨인쇄부착기를 이용하여 포장상자의 지정된 위치에 자동적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상자의 이송속도에 따른 작업지연이 없어야 한다.
 - 팔렛타이징(Optional)
 - 팔렛트에 적재된 상품내역정보(농가, 품목/품종, 포장타입, 적재수량, 팔렛타이징No. 등)를 전송해야 한다.
 - 단위적재표시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별지 3-2호]

선별방식 선정시 고려 사항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시설에 설치할 선별기는 과종별 선별 항목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당도 오차 0.5brix 이내
2. 산도오차 0.2%이내 (감귤 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일회의 캘리브레이션으로 동일지역 동일 품종에 대해서 상당기간 상
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3. 사과는 색깔별, 착색부위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육안선별 수준)
4. 선별기 투입 및 이동 중 압상 및 상해가 없는 기종(사과, 배, 복숭아 등)
5. 표면의 흠과 상처 수준별 선별 및 내부의 병과(갈변, 심부병, 물배 등) 선별이 가능한
기종(사과는 밀병과 갈변 구분이 가능해야 함)
 - 상처과, 상해과의 수준별 정확한 선별(육안선별 수준)
6. 과형 및 중량 선별이 가능한 제품
7. 다양한 소포장이 가능한 제품(비닐팩, 망포장, 종이팩, 다양한 상자포장)
8.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병과, 흠과를 선별해내고, 당도, 과형, 착색, 무게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9. 국제수준의 선별 능력을 가진 선별기

(부대사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거점시설의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 당도와 산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7. A/S 조건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40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	과 장 김응본 사무관 안재록	02-500-2034 02-500-2029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이하 “연합회”)	션플러스사업부	부 장 박연순 과 장 전재석	02-6300-2292 02-6300-2293
농수산물유통공사	FTA기금팀	팀 장 정성남 차 장 김창국	02-6300-1161 02-6300-1173

I. 사업개요

1. 목 적

- DDA/FTA 등으로 과실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과실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공동브랜드를 육성하고
- 지역단위 군소 브랜드를 통합하여 과실주산지를 중심으로 지역공동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고품질 과실 브랜드 유통비중을 전체 과실생산량의 8%까지 확대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7	'08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과실브랜드 유통비중 비율(%) 	8		신규	7	2011.1	(고품질 브랜드 과실생산량 / 과실 생산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 과실브랜드육성	4,107	5,107	4,480	3,482	23,852
- 보 조	2,227	2,507	2,256	1,847	9,791
- 지방비	840	1,200	1,012	720	7,028
- 자부담	1,040	1,400	1,212	915	7,033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공동브랜드 : 7개 시·도 이상으로 조직된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공동브랜드 :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
 -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 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3. 지원대상

- 과실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포괄 지원
 -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 * 브랜드 경영체가 회원농가 기술지도 → 고품질 과실생산 → 상품화(선별, 가공 등) → 브랜드관리를 일원화하는데 필요한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브랜드 품질관리 : 기술지원단·홈페이지 운영, 유통정보화, 농가유통 교육, 산지·소비자 품질조사, 컨설팅, 브랜드 평가회 등
- 마케팅 운영 : 인건비·마케팅 활동비, 바이어 사업설명회, 상품개발비,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사무실 운영비 등
- 브랜드 홍보 : 광고·홍보비, 소비촉진 시식회, 과실브랜드 축제, 브랜드개발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전국공동브랜드 : 국고 82%, 자부담 18%
 - 지역공동브랜드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전국공동브랜드 : 총사업비 5,228백만원 기준(4년간 연차별 사업수요 반영)
- 지역공동브랜드 : 개소당 총사업비 1,200백만원 기준(3년간 균분지원)
 - 개소당 연간 지원액 : 3~4억원 내외(국고 160백만원, 지방비 120, 자부담 120)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붙임” 참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브랜드경영체

□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제출(1월말)

-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회원조합, 지자체,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추진 및 사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포함
- 과실 생산, 유통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
 - 유통, 경영, 품목생산 등 분야별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관련 행정기관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10명 내외)
 - 사업계획서의 과수면적, 생산량, 사업량 등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자료인용 또는 검토의견을 첨부
- * 2개 시·군 이상 연계해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관 시·군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해당 지역의 산업여건 및 전망분석, 사업별 목표를 계량화하여 설정
 - 사업완료시와 완료 후 5년, 10년 후 등의 장기비전 제시
 - 참여농가 수, 브랜드 출하비율 등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FTA 기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목표달성에 필요한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거점 APC 등 기존시설 또는 계획 중인 유통시설을 이용한 마케팅 계획
- 세부사업별 예산 및 산출근거 등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성과 분석
- 회원관리, 과실생산·유통 및 소비지 관리 등 각 단계에 필요한 마케팅 운영 및 브랜드 홍보 지원 계획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시·군

- 브랜드 경영체에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농정관련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시·도에 제출(2월말)

시·도

- 시·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평가기준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3월말)
 -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상이한 사업계획서는 농림수산식품부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시·도가 직접 추진하는 광역사업계획은 시·군과 같은 절차로 작성하되 우선순위 없이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 및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 실시(5월중)

세부 심사·평가절차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 당년도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비를 감안하여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수산식품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비공개 서면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5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공개발표평가의 평가 자료로 활용

<2단계 :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사업계획 내용 정밀 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 심사평가기준 : ['08지침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기간, 사업 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동점 발생시 4번 대분류 평가항목(유통혁신 및 계획)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연합회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계획의 검토·조정 및 확정 시달

브랜드경영체

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시·군)에 제출(20일 이내)
 - 매년 사업비 확정 후에는 당해년도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브랜드사업 추진

- 브랜드 상품 생산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참여자들의 이행체제를 구축
 - 브랜드 경영체는 품목조직 대표, 기술지원단 등과 협의하여 재배 및 품질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브랜드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여 조직원들이 반드시 『규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생산관리 프로그램에는 브랜드 경영지침서의 품종선택, 토양·수질관리와 재배 및 수확 후 관리의 표준화 등을 포함해야 함
 - 농업인의 생산관리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시 브랜드 사업의 참여배제 및 지원자금 회수 시스템 구축
- 수매·가공·판매를 위한 브랜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품목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따라 규격을 생산자조직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적격품을 수매 또는 위탁판매
 - 수확 후 유통·저장·가공단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
 - 브랜드(이름, 디자인, 로고 등) 개발, 마케팅 전략, 브랜드 홍보 및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전략 수립
- 브랜드의 명칭, 로고 등을 신규 제작할 경우에는 그 중요성을 감안 세계시장에서 이미지 표출이 가능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를 목표로 제작

다. 사업추진 컨설팅

- 관련전문가 또는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을 받아 사업을 실시
- 컨설팅은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평가, 농업인조직화 교육, 경영 및 기술 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라. 사업계획 변경절차

-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 세부사업별 비중 조정은 총사업비 축소와 전체 지원비율 조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시·도(시·군), 연합회

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시·도(시·군)는 브랜드 경영체가 작성한 세부추진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1개월 이내)

나. 사업계획 변경절차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기준사업비 내 품명과 세부사업비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 연합회)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금액)를 기준으로 세부사업비의 30%를 초과 증감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사업비 조정 절차]

- “붙임” 세부사업의 항목별 사업비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단, 사업비 증감조정의 범위는 30% 이내이며, 30% 초과 조정할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
- 사업비 조정시에는 행정·지도·농협·농가대표·관계전문가 등으로 “과수

발전협의회(사업비 단가 조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세부사업별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조정

4. 자금배정단계

- 사업주관기관은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함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시·군, 연합회)

- 사업추진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팀)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2월말 기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연합회는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직접 제출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연합회는 과실브랜드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시·군, 연합회의 사업비 집행실태와 사업추진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추진지침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거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연합회)

- 시·도지사 및 연합회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참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참조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참조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1>

전국공동브랜드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세 부 내 역
1. 브 랜 드 품질관리	174,000	<input type="checkbox"/> 고품질 안전과실 재배·유통 지도 ○ 전문 강사료 : 48,000 - 200×20회×12월 ○ 전문위원 수당 : 102,000 - 500/인×17인(사과10,배5,감귤2)×12월 ○ 현장지도 실비 : 24,000 - 일 50/인×2인×20일/월×12월
	26,400	<input type="checkbox"/> 포털사이트 운영 및 관리 ○ 인건비 : 12,000(1,000/인×12월) ○ 전용 회선비 : 2,400(200/월×12월) ○ 시스템 향상 유지보수 1,000 ○ 홈페이지 개편 10,000 ○ 도서구입 등 정보수집비 1,000
	35,800	<input type="checkbox"/> 품질조사 및 브랜드 인지도 조사 ○ 품질조사(잔류농약분석) : 25,800 - 분석비 25,000=100점×250/점 - 시료대 400=4천원/점×100점 - 시료운송비 400=4천원/점×100점 ○ 브랜드 인지도 조사 : 10,000
	60,000	<input type="checkbox"/> Work-shop 및 사업평가회 개최 ○ Work-shop 개최 : 30,000 - 10,000×3회(사과, 배, 감귤) ○ 사업평가회 개최 : 30,000 - 10,000×3회(사과, 배, 감귤)
	11,700	<input type="checkbox"/> 유통교육(회원조합 임직원) ○ 강사료 : 5,200 - 200×2인×13개지역×1회 ○ 제비용(교재대 등) : 6,500 - 500×13개지역×1회
	15,200	<input type="checkbox"/> 브랜드 컨설팅 : 15,200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세 부 내 역
2. 마 케 팅 운영지원	6,000	<input type="checkbox"/> 과일 선별 전문가 수당 ○ 선별 전문가 : 6,000(150/일×1인×40일)
	60,000	<input type="checkbox"/> 마케팅 활동비(시장조사 및 거래처 발굴 등) ○ 6인×10개소×200×5회 = 60,000
	20,000	<input type="checkbox"/> 바이어 사업설명회 ○ 5,000×4회 = 20,000 - 장소임대료, 식대, 안내장, 선물 등
	20,000	<input type="checkbox"/> 자문위원회 및 협의회비 ○ 5회×20명×200 = 20,000
	43,800	<input type="checkbox"/> 사무실 운영비 ○ 임차료 : 37,800 (90㎡×35/㎡×12월) ○ 통신, 소모품비 등 : 6,000(500×12월)
	135,100	<input type="checkbox"/> 상품개발(box 디자인 등) ○ 소포장 및 서브 브랜드 개발 등 : 50,000 ○ box 견본 : 1,000(100매×5건×2,000원/매) ○ 디자인 등록비(특허청) : 1,100 <input type="checkbox"/> 판매촉진 유통비 : 83,000
3. 브 랜 드 홍보지원	350,000	<input type="checkbox"/> 광고 및 홍보비 ○ 광고제작비 : 20,000 ○ 신문광고 : 10×5,000=50,000 ○ 지하철 홍보 : 4개노선×1개월×10,000=40,000 ○ 전광판 홍보 : 5개소×2개월×5,000=50,000 ○ 판촉 홍보물 제작 : 20천개×2,000=40,000 ○ 라디오 광고 : 100회×1,500/회=150,000
	117,000	<input type="checkbox"/> 소비촉진 행사 ○ 시연회 과일 - 10,000×6회=60,000 ○ 행사운영요원 - 10인×150/일×6회×5일= 45,000 ○ 기타경비 - 2,000×6회=12,000
	12,000	<input type="checkbox"/> 홍보물 제작 ○ 생활용품 등 : 12,000(3,000매×4,000/매)
합계	1,087,000천원(기금 870백만원, 자부담 217)	

<붙임 2>

지역공동브랜드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산 출 근 거
① 브랜드 품질관리	12,000	<input type="checkbox"/> 기술지도 및 교육 : 12,000 ○ 지도위원수당 - 4인×200천원×10회=8,000 ○ 자문위원수당 - 4인×200천원×5회=4,000
	9,000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 관리 및 브랜드유통정보화 : 9,000 ○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 2회×3,000천원=6,000 ○ 시스템 유지보수 : 100천원×10월=1,000 ○ 회선관리비(IDC) : 100천원×10월=1,000 ○ 장비구입 및 수리비 : 100천원×10월=1,000
	22,000	<input type="checkbox"/> 품질조사 : 22,000 ○ 산지 품질조사: 6,000 - 안전성 검사비 : 10점×200천원×3회=6,000 ○ 소비지 품질조사: 6,000 - 안전성 검사비 : 2개소×5점×200천원×3회=6,000 ○ 브랜드 인지도 설문조사 : 10,000 - 1회×10,000천원=10,000
	11,000	<input type="checkbox"/> 유통교육 : 11,000 ○ 임직원 및 약정농가 교육 : 11,000 - 강사료 : 5명×300천원×2회=3,000 - 제비용(교재인쇄비 등) : 2,000천원×4회=8,000
	30,000	<input type="checkbox"/> 브랜드 컨설팅 : 30,000 ○ 지역공동브랜드 컨설팅 : 30,000
	10,000	<input type="checkbox"/> 표준매뉴얼 제작 : 10,000 ○ 브랜드 표준 매뉴얼 제작 : 10,000
	10,000	<input type="checkbox"/> 브랜드 평가회 : 10,000 ○ 지역공동브랜드 평가회 : 10,000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산 출 근 거
② 마케팅 운영지원	10,000	<input type="checkbox"/> 바이어 사업설명회 : 10,000 ○ 2회×5,000천원=10,000 - 장소임대료, 식대, 안내장, 선물 등
	20,000	<input type="checkbox"/> 협의회비 : 20,000 ○ 10회×10명×200천원=20,000
	40,000	<input type="checkbox"/> 상품개발비 : 40,000 ○ 공동브랜드 상품개발 : 40,000
	6,000	<input type="checkbox"/>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 6,000 ○ 빔 프로젝트 1대×4,000천원=4,000 ○ 노트북 1대×2,000천원=2,000
③ 브랜드 홍보지원	170,000	<input type="checkbox"/> 광고·홍보비 : 170,000 ○ 신문, 잡지, 지하철, 전광판 광고 등 - 광고제작비 : 20,000 - 신문광고 : 5회×5,000천원=25,000 - 지하철 홍보 : 4개노선×2개월×10,000천원=80,000 - 전광판 홍보 : 5개소×1개월×5,000천원=25,000 - 판촉 홍보물 제작 : 10천개×2,000원=20,000
	50,000	<input type="checkbox"/> 소비촉진 시식회 : 50,000 ○ 시연회 과일 - 5,000천원×2회=10,000 ○ 행사 도우미 - 10인×150천원×2회×12일=36,000 ○ 기타 경비 - 2,000천원×2회=4,000
계	400,000천원(기금 160백만원, 지방비 120, 자부담 120)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	과 장 김응본	02-500-2034
		사무관 안재록	02-500-2029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팀	팀 장 장성원	031-420-3361
		차 장 진성봉	031-420-3378

I. 사업개요

1. 목 적

- 과원매매·임대차를 통해 과수재배농가의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
-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 까지 적정영농규모(1.5ha)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과수전업농 24천호를 육성하여 전체과수 생산량의 50% 담당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과수전업농 생산량비중(%)	46	43	44		'11. 2	과수전업농생산량 / 전체생산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11년이후
합 계	32,364	35,175	31,658	32,260	108,540
용 자	32,364	35,175	31,658	32,260	108,540
○ 과원매매사업	25,704	29,400	26,460	26,460	91,140
- 용 자	25,704	29,400	26,460	26,460	91,140
○ 과원임대차사업	6,660	5,775	5,198	5,800	17,400
- 용 자	6,660	5,775	5,198	5,800	17,400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원매도·임대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
- 과원매입·임차대상자
 - 과수농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
- 대상농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안의 과원(실제 이용현황기준)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과원매매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이하 “만”이라 한다) 60세 이하의 지원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과수를 재배한 농업인으로서 주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품목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농가. 다만, 60세를 초과하는 농업인은 영농기반을 승계할 수 있는 농업후계 인력이 있는 경우에 후계 인력 명의로 지원 가능
 - 과원 경영 규모가 0.1ha 이상인 농업인
 - * 3년 이상 과수재배 경력확인 : 농지원부 또는 이장 등의 확인

<농업후계인력의 요건>

- ㉠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자 포함)
- ㉡ 직계비속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업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업계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이 경우 영농 경력의 제한은 없음)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며, 조합원, 사원 또는 주주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총 출자액의 30%이상을 과원으로 출자하고, 경작하고 있는 법인명의 소유과원이 각각 영농조합법인은 3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이상인 법인
 -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조합원 2/3이상이 과수재배경력 3년 이상인 법인
 - 운영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2) 지원 제외자

- 허위·담합으로 지원받은 자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 경영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시설로 전용한 경우와 종전면적으로 자력 확대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현재 재배하고 있는 주된 작목 이외의 작목이 식재된 과원을 매입 신청하는 자
 - 당해 과원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지원대상자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결한 시·군지역 이외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과원규모확대를 위하여 주 경작지를 동일 또는 연결한 시·군지역 이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소지 이전 후 지원 가능 (주소지 이전은 1회에 한함)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동안 지원중단. 다만, 환매권의 실행 등 경영회생을 이룬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계약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나. 과원임대차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원매매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과 같음

(2) 지원 제외자

- 과원매매사업 지원 제외자와 같음. 다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에도 농지임대차 지원 가능

3. 지원 대상농지

가. 과원매매사업

(1) 매입대상과원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 실제이용현황(사실상 과원)을 기준으로 매입하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후 매입

(2) 매입우선순위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상기 매입대상 과원을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하며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규모가 큰 과원을 우선 매입

-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처분 의무기간내에 있는 농지(과원) 중 과원 매입 희망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과원
- 국·공유의 과원, 담보권실행 등에 의한 경매과원

(3) 매입 제외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비용은 매도자가 부담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 가능
 -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과원(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전매제한기간(8년)이 경과되어 과원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 이상 경작된 과원
 - 경매로 인하여 매매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 이상 경작된 과원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과원(세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에 따른 농지)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토양으로 판명된 후 복구되지 않은 과원
-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과수경작에 부적합한 과원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과원.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매입예정자가 인정(인정서 징구)하고 공사의 채권확보에 지장 없는 경우에는 매입 가능

나. 과원임대차사업

(1) 임차 대상과원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 실제이용현황(사실상 과원)을 기준으로 임차

(2) 임차 우선순위

- 과원소유자가 공사에 임대한 과원으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

(3) 임차 제외과원

-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비용은 임대자(과원소유자)가 부담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차 가능
 -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과원(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상황이 완료되고, 「농지법」 제23조제3호·제4호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는 과원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과원(세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에 따른 농지)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토양으로 판명된 후 복구되지 않은 과원
-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과수경작에 부적합한 과원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과원.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매입예정자가 인정(인정서 징구)하고 공사의 채권확보에 지장 없는 경우에는 임차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과원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임대차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임대

5. 지원형태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기금)
- 지원기준

구 분	용자 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 과원매매	연리 2.0%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상환
· 과원임대차	무이자	5~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과원매매 및 임대차 지원한도(매매:기존 소유규모, 임차:기존 임차규모 포함)
 - 과수농가 : 5ha
 - 과수를 주 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 10ha
 - * 공사는 지원대상자의 농업노동력, 전문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과원매매, 임대차 지원대상자별 적정 지원수준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지원한도 결정
 - * 과원매매의 상환기간은 과수농가의 연령을 고려하여 약정하고, 농가단위 또는 필지단위 거래시는 기존소유(임차)규모를 포함하여 다소 초과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방법

가. 지원한도

- 과원매매 : 제곱미터(m²)당 12,100원(과수목 포함)
- 과원임대차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나. 지원방법

(1) 과원매매사업

(가)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1인 신청시는 생략)를 정하여 선정
 -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등)와 공동선별·공동계산 등을 출하약정을 한 과수농가
 - 전업(轉業)·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코자하는 농가의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매입신청 규모가 큰 자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 자
 - 자력확대규모가 큰 자, 연령이 낮은 자, 통작거리가 가까운 자, 농업계 학교 졸업자 등

(나) 공사 매입 대상과원 가격결정,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방법

- 매입가격의 결정

- 과원(과수목 포함)의 매입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공사의 현지조사 가격 등을 감안하여 과원 매도자와 합의하여 결정하되, 과수목은 감정평가협회 등 공인기관의 “과종별·수령별 취득가격” 이내에서 합의하여 결정. 다만, 당사자간 이의가 있거나 농가가 희망할 경우 감정평가 실시(감정평가비용은 과원매도자가 부담)
- 과원가격 현지조사시에는 이장, 인근주민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
-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 공사는 과원소유자와 매매협의를 완료된 때에는 매매계약을 체결
 - 공사가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 및 잔금지급
- (다) 공사 매도 대상과원 가격결정,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방법
 - 매도가격의 결정
 - 공사가 매입한 가격 기준. 다만, 경매 또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회수에 의하여 매입한 과원은 시가 기준
 - 매매가격의 체결 및 채권확보
 - 공사는 매입신청자와 매매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계약 체결
 - 매매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의 부실화 방지
 - 공사로부터 매입한 과원은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매매 계약일로 부터 8년간 전매·임대·위탁경영 등이 제한되며,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 공사는 타인에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음
 - 공사는 매도대금을 분할 수납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과원 외에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가능
 - 매매대금의 납부
 - 일시불 : 과원매입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일시불로 납부
 - 분할납부
 -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분할 납부
 - ㉠ 농업인 납부기간 = 75 - 지원당시 연령(1월 1일 기준)
 - ㉡ 농업법인 납부기간 : 20년
 - ※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납부방법 : 원금 균등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후 상환 잔여기간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가능
 - 자연재해 등에 따른 납부연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충해로 인하여 과원매매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1년간 납부 연기. 다만, 지원받은 필지의 피해가 있을 때 신청가능
 - 자연재해로 인한 납부연기
 - ①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를 첨부하여 공사에 납부 연기신청
 - ② 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 병충해로 인한 납부연기
 - ① 병충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신고
 - ② 피해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해인정 승인 요청
 -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에 납부 연기신청
 - ④ 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 ※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란 지원받은 과수농가가 경작(소유+임차)하고 있는 과원에 대한 피해율

(2) 과원임대차사업

(가)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임대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1인 신청시는 생략)를 정하여 선정
 - 공사로부터 임차한 과원을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계속 재임차하고자 하는 자
 -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등)와 공동선별·공동계산 등을 출하약정을 한 과수농가
 - 전업(轉業)·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코자하는 농가의 과원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
 - 임차신청 규모가 큰 자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나) 공사가 과원 임차시 임차료결정, 임차계약체결 및 임차료지급 방법 등

- 임차기간 : 5~10년

- 임차료의 결정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지역관행 임차료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
- 임차계약의 체결
 - 공사는 과원소유자와 과수목의 과실수확 가능 연수 등을 고려한 임차 기간 및 임차료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차 계약을 체결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과원소유자)이 부담
 - ①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 ②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다만, 임차료 선급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서 징구 불가
- * 당해 농지의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는 연대 보증을 할 수 없음
- 공사에 과원을 임대한 자(과원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
 - 각종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 「농어촌정비법」 제5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부과되는 부과금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제외)과 용자금의 상환금
 -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으로 과원(과수목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다) 공사가 임대하는 과원의 임대료결정, 임대계약체결 및 임차료납부 방법 등
 - 임대료의 결정 : 공사가 선지급한 임차료 총액으로 결정
 - 임대계약 체결 및 채권확보
 - 공사는 임차신청자와 임대차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임대계약을 체결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인의 소유농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보증서 징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 보증서 징구는 임차계약 시와 같음
 - 임차료의 납부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한 과수농가 등은 공사에서 과원소유자에게 선지급한 임차료를 임차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매년 공사에 납부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
 -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과원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자연재해 등에 따른 임차료의 감면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또는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충해로 인하여 임차료의 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임차료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 신청절차 및 피해율 적용기준은 과원매매자금 납부연기 시와 같음
- 임차료 감면기준

피해율	임차료 감면율	피해율	임차료 감면율
30%~40% 미만	45%	60%~70% 미만	80%
40%~50% 미만	55%	70%~80% 미만	95%
50%~60% 미만	70%	80%이상	10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성과목표, 재정투입 계획 및 지급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 시행지침을 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까지)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사장(각 지사 포함) 명의로 전문지, 공사 홈페이지 및 공사 관할지사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1월말)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과원매도신청서, 과원매입신청서 등 해당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사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및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에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접수된 매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 사장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사업지침 시달 후 30일 이내)
-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 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공사 각 지사 게시관 등에 10일 이상 게시 공고(1월말)
- 사업홍보
 - 공사는 지방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과수농가 등의 참여를 촉진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사업내용 등을 게재하여 사업 참여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경영지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용자취급기관장은 사업 실적이 우수한 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한 경우 농촌발전 관련 각종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공사는 과수농가의 정보화 및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
- 사업추진실적 보고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까지)
- 업무지침의 운영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및 지원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운영할 수 있음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승인 시달(사업승인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담당기관인 공사에 자금배정 및 시달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는 확정된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자금소요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소요자금 대여신청(기금수탁관리자는 자금집행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여)
 - 자금의 대여 및 지원 받은 농업인으로부터 상환된 원리금 상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공사는 각 지역본부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하되, 각 지역본부별 자금소요 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적기 사업비 배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 공사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는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해당 과수농가에 지급
- ※ 사업비정산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과원영농규모화사업”에 따라 회계연도말까지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익년도 1월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가. 과수농가 관리

(1) 관리기간

- 자금지원 상환기간이 최장기인 융자금의 상환만기까지

(2)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 공사 사장(지사장)은 지원 받은 과수농가 등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매년 12월말까지)

(3) 자격 승계

- 지원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자격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 지사에 자격 승계신청
 - 사망, 질병 또는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없는 경우
 - 만 61세 이상으로서 농업후계인력에게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 공사 지사장은 피승계자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원받은 과원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과원영농규모 확대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적격자에 자격승계 조치
 - 피승계자의 자격 요건
 - 과원매매사업에서 정한 농업후계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배우자·형제자매에 한함(배우자·형제자매의 경우는 만 60세 이하

이어야 함)

- 공사 지사장은 승계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원 등 지원받은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을 조건으로 승계를 승인

(4) 자격 승계

- 사업계획의 변경 등
 - 지원받은 자가 농업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공사 지사에 제출
- 사업장소 및 관리기관의 변경
 - 지원대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당초 관할 공사 지사장에게 이전사실을 통지
 - 댐·저수지 건설, 산업단지·택지조성, 공용·공공용지 편입 등으로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
 - 결혼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영농규모 확대 또는 집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주지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나. 지원과원 관리

(1) 사후관리 상황조사

- 공사는 전년도 12월말일까지 과원의 매매, 임대차사업으로 지원한 과원 및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
 - 지원을 받은 자와 농업후계인력의 이농 또는 전업(轉業)여부
 - 지원된 과원의 전매·증여·임대·전대·대리경작 또는 무단전용 여부
 - 지원받은 당시 과수품목 이외의 타 작목 재배 여부
 - * 지원당시 과수목으로 품종갱신은 허용
 - 경영규모 축소여부

(2)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

- 공사는 과원을 매입한 자로부터 당해 과원의 전매·증여, 임대·위탁경영, 전용 등의 동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동의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과원을 전매·증여하는 경우
 - 지원 받은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그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여 과원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지원받은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지역 내에서 농업이외의 직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 공사로부터 매입한 과원을 상속 받은 자가 당해 과원을 전매하는 경우
 - 지원받은 농가의 개인파산 등에 따라 채권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고 공사의 과원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과수농가에게 전매하는 경우

- 기타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위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과원 경영규모확대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 「농지법」 제9조 및 제23조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 「농지법」 제35조에 따라 과원을 전용하는 경우

(3) 공공용지 편입 및 농지전용시 조치

- 공공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공사의 동의를 받아 과원을 전매하거나 농지 전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면적 이상의 과원을 새로이 구입하거나 조성해야 함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신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면적 이상 과원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는 부족면적에 대한 지원금 회수로 대체

농림수산물부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공사를 통한 사후관리 등 현장실태 점검(반기 1회 이상)
 - 사업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실태 현지점검
 - 공사 사후관리 이행사항 점검 등

《제재》

가. 과수농가 관리

(1) 계약해제·해지 사유

- 허위·담합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 지원받은 과수농가가 지원자금을 지원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본인 또는 농업후계인력이 사망, 신병, 전출, 전업, 사업포기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파산·금치산신고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신분 및 신용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과원을 지원받은 이후 소유과원(공사지원 과원 포함)을 고의로 증여·매도 및 임대·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할 자로서 경영규모 축소 익년도부터 2년 이내에 종전 면적으로 과원경영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해지 사유에서 제외
 - ① 공공용지에 편입되거나 각종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

- ② 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③ 농업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지원받은 농지의 경우 상환완료 후 출자)
- ④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신고 시설로 전용한 경우(지원 농지는 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 공사 지원과원을 전매 등의 행위제한특약사항에 반하여 전매제한기한(8년) 이내에 전매 또는 증여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할 때에는 6월 이내에 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 하지 않은 경우
- (2) 시정조치 및 지원금 등의 회수
 - 공사 지사장은 계약해제·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즉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자금을 상환(반납)하도록 통보
 - 과수영농시설 복구 및 작목입식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취소사유 발생 확인시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자금 회수 조치
 - * 다만,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승계도 불가능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용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용자시의 용자조건에 따라 회수

나. 지원과원 관리

- (1)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공사에서 정한 시정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하며, 사후 관리대장 또는 P/G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매도과원 : 지원금 또는 당해과원 회수
 - 임대과원 : 임대차계약 해지
- (2) 회수과원 가격결정 : 실제 거래가격 범위 내에서 당초 매도가격에 다음 경비를 가산한 금액(경매취득 과원의 경우 실거래가격)
 - 이자 : 이미 상환한 이자와 매매계약 체결시까지 상환할 이자
 -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 법무사수수료
 - 기타 과원매입에 직접 소요된 경비 : 취득세, 등록세
- (2) 계약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행위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위약금을 부과
 - 당초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일부부터 납입일까지 기산하여 연리 15%를 부과. 다만,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사후관리 위반 등으로 확인되면 위약금을 부과

-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위반일 또는 위반사실을 안날(임대인과 공사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납입일까지 연리 15%를 부과. 다만,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다. 기타 행정사항

- 농림수산사업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군, 농협 및 공사 등 관계기관은 관련자료 열람 등 요청시 보유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
-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관련기관은 공사가 지원한 과수농가의 경영규모 변동 및 사후관리조사 등을 위한 농지원부 확인 등에 적극 협조
- 공사 사장은 지원과원에 대한 사후관리상황조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10월 31일까지)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과수전업농 생산량 비중을 평가
 - 조사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조사내용 : 과수전업농생산량, 총과수생산량
 - 조사시기 : 매년12월말(1.15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서 제출)
 - 조사방법 :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여 매년 과수전업농 생산량 비중을 조사
-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지원농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만족도 파악 및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불만요인 등을 파악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8월~9월
 - 조사대상 :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을 지원받은 농가 등
 - 조사방법 :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
 - 주 최 : 공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칙

- 매년 과수농의 경영규모 확대실적을 평가, 2013년까지 적정 영농규모(1.5ha)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과수전업농 24천호를 육성하여 전체 과수 생산량의 50%를 담당토록 하는 중장기 사업목표의 원활한 달성 도모

나. 사업평가실시 절차

- 평가대상 : 전체 과수지원 농가
- 공사 사장은 매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사업성과평가계획」을 포함하여

- 수립한 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사업지침 시달 후 30일 이내)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사업성과평가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시달 (사업승인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 공사 사장은 과수농가 개별 경영면적을 토대로 사업성과 자체평가서를 작성 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제출(익년도 2월)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성과 자체평가서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한 검증 후 확정(익년도 3월)

《환 류》

-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사업목표 점검, 중기재정계획 및 익년도 예산에 반영(익년도 4월)
- 당해 연도 실적지표 80%이하 달성시 익년도 정부예산 감액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참여 의향 등을 설문조사하여 익년도 사업물량 및 소요사업비 추정에 반영
- 사업추진에 관한 만족도 조사시 병행 실시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1)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

(2) 신청자격

- 농지매도·임대 : 비농가,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과수농가 등
- 농지매입·임차 : 과수농가, 농업법인

(3) 사업절차

-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지원 대상자 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4) 구비서류

- 과원매도신청서, 과원매입신청서, 과원임대신청서, 과원임차신청서 중 해당 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및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에 게재
 - 첨부서류 : 해당신청서의 아래 참조

(5) 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신청자에 대한 제출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확인 등을 실시한 후 이를 기초로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지원

42	과수소득보전직접지불제
----	-------------

▶ 이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	과 장 김응본 사무관 안재록	02-500-2024 02-500-2029
각 시·도	원예담당부서	-	-

I. 사업개요

1. 목 적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칠레산 과실의 수입증가로 국산 과실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과수 재배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직불제 발동요건 충족시 피해농가에 직불금 지급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7	'08	'09		
▪ 농가소득지지율(%)	97	-	-	-	2011.1	[(당년조수입+직불금)/기 준조수입]×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보 조	-	-	-	-	5,070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04.5.24)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당해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후 직불품목 D/B화 관리농가로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농업인 등”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농업인, 동법 제15조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함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품목고시일 이후 신규로 조성한 과원
 - 노지 포도 생산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요건 : 아래의 각 지원요건이 동시에 해당할 경우 지원
 - 지원대상품목의 국내생산량 대비 칠레산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증가
 - 당해년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이상이면서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증가
 - 또는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5%이상 증가
- * 수입량 산출시점 : 포도 1~6월, 키위 4~5월
- 지원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 * 당해연도 평균가격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주출하시기 동안에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거래금액을 거래물량으로 나눈 단위중량당 가격
- * 주출하시기 : 시설포도 3~6월, 키위 전년11월~5월
- *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은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정관리자로 지정된 지방공사에서 집계한 품목별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

3. 지원대상

- 지원대상품목 : 시설포도(가온이 가능한 완전밀폐형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포도), 키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당농가의 피해액 중 일정부분을 직접 보조

5. 재원 및 지원형태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기금), 정부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산출방법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품목별 단위면적당 표준재식주수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신청과원의 실제 재식된 주수가 표준재식주수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면적을 지원 대상면적으로 인정하고 표준재식주수 이하일 경우에는 과원 실제면적에 표준 재식주수 대비 실제재식주수 비율을 곱하여 지원대상 면적 산정
 - ⇒ 지원대상면적 = 과원실제면적 × (실제재식주수/표준재식주수)
 - 표준재식주수 : 시설포도 울타리식 100주, 평덕식 20주 키위 20주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5년간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
 - 이 경우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작물통계조사(농림통계연보)에 의한 당해품목의 생산량을 재배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말하고,
 - 작물통계조사 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산물소득조사(농축산물표준소득자료집)에 의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말함
- 지급단가 :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보전비율 80%를 곱하여 산출한 가격
 - ⇒ (기준가격 - 당해연도 평균가격) × 80%
 - 지원대상품목별 기준가격 : 시설포도 4,560원/kg, 키위 1,700원/kg
 - 기준가격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일 직전 5년간의 주출하 시기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80%를 곱하여 산출한 가격
- 조정계수 : 당해품목의 최소허용보조액 ÷ 지급신청 총액(산출결과 1을 초과할 수 없음)
 - 당해품목의 최소허용보조액 : 품목총생산액 × 10%(WTO 허용 보조율)
 - 조정계수는 지급총액이 WTO 최소허용 보조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급신청총액이 WTO 최소허용보조를 초과할 경우에만 최소허용보조액과 같아지도록 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과수화훼과(02-500-2029)
- 시·도 : 원예담당부서
- 시·군·자치구 : 원예담당부서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09년도 사업시행지침과 동일하며, 시·군·자치구에 비치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통보
- 지원요건 심사 결과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당해품목에 대한 지급단가 등 세부지원계획을 시·도에 시달

시·군·자치구

- 사업내용공고 및 홍보
 - 시·군·자치구에서는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지침을 시·군·자치구(읍·면·동)의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

전국단위 당해품목의 생산자 조직

- 품목별로 지원요건이 충족될 경우 당해품목의 전국단위 생산자 조직은 농림수산식품부(과수화훼팀)에 직불금 지원심사 요청
- 관측정보 등에 따라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요건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생산자조직의 요청이 없더라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권으로 지원요건 심사

농업인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
 - 신청시기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계획 시달시 통보
 - 신청기관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원예담당부서)

- 신청서류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등기부등본등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자치구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토지대장등 관련서류를 토대로 다음사항을 조사·확인(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필히 현지조사·확인)
 - < 신청서 등 조사·확인할 사항 >
 - 영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품목을 실제 생산한 농업인인지 여부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역·생산기간 및 생산면적 등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 신청인의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농지원부 등으로 확인(필요시 마을 이장 등을 통해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등을 조사·확인 후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확인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 작성 비치
 - 기타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 ※ 조사·확인한 관련 서류는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부착하여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최종지급일부터 5년간 보관 관리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적합할 경우에는 농정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자치구)

-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소득보전직불 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별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세부계획서를 취합 검토 하여 시·도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세부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및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예산(자금)신청서(별지 제 4호 서식)를 제출
-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후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을 변경시에는 시·군·자치구의 사업비 내에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승인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행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포기나 지원대상자의 추가 등으로 사업비 과부족이 발생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변경 시행
 -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간의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시행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계획 변경시 계통보고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 전체 사업량 변경이 없는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생략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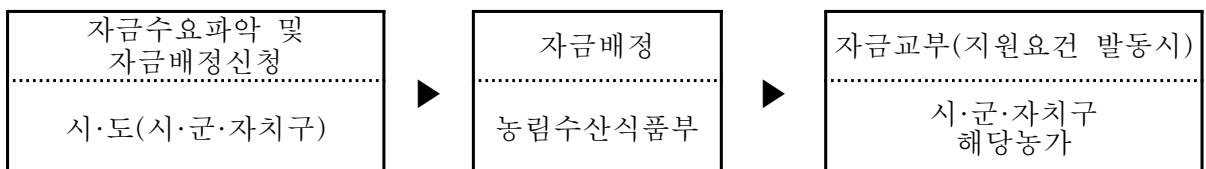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시·도의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세부계획서 및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예산(자금) 신청서를 검토 후 시·도에 예산배정

시·도

-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시·군·자치구에 재배정

시·군·자치구

- 시·군·자치구에서는 배정된 예산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송부하고 그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입금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및 자금관리주체(시·군·자치구)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소득보전직불금 최종지급한 후 5년간 소득보전직불금수령자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기록 관리
- 사업비 정산
 - 사업비는 보조금 관련 법률 및 사업지침에 의거 집행하며,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보고한 소득보전직불사업정산서(별지 제7호 서식)를 검토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동서식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기타사업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과 보조금 관련 제규정에 따름
- 보고
 - 소득보전직불금 지급결과보고(별지 제6-1호, 제6-2호 서식)
 - 시·군·자치구(완료후 5일이내) → 시·도(시·군·자치구 보고된 후 5일이내) → 농림수산식품부
 -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별도 수시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원요건 발생으로 직불금이 지급될 경우 각 시·도의 사업비 집행실태와 사업추진현황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 사전 방지 및 사업효율화 추진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시·군·자치구
 - 점검일정 : 지원요건 발생시 추후 시달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제재》

사업 및 자금관리주체(시·군·자치구)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후 다음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합한자로 판명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원된 직불금을 회수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견되었을 경우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지원요건 발생시 소득보전직불사업의 전년도 사업 추진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
 - 주요평가지표 : 피해농가 발생 수, 지원농가 수 등
 - 평가일정 : 정산서 제출(12월)
 - 성과지표 측정(익년도 1월) : 정산서를 토대로 피해농가지원을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지원요건 발생시 전년도 사업을 평가하여 사업방식, 추진절차 등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환 류》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침 개정 등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 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환류